기본연구 2021-03

여성어업인 노동정책 방향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Labor Policy for Fisherwomen

홍혜수 · 박찬엽 · 이동림 · 박지해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저자	**홍혜수, 박찬엽, 이동림, 박지해**
내부연구진	연구책임자 홍혜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박찬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연구원 공동연구원 이동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박지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연구원

연구기간	2021. 1. 1. ~ 2021. 10. 31.

보고서 집필내역

연구책임자	홍혜수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내부연구진	박찬엽 제2장 제1절 일부, 제3장 제1절, 제2절 일부, 제5장 제2절 일부 이동림 제2장 제1절 일부, 제5장 제2절 일부 박지해 제2장 제2절, 제5장 제2절 일부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안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회장 김순기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부회장 이정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부회장 성정희 구룡포어촌계 계장 이창미 백미리어촌계 계장 임옥녀 서산수협 이사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 윤자영 충남대학교 교수 홍지훈 부산대학교 교수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명화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이창수 수협중앙회 책임연구원 임우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진혜민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 팀장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명수한 해양수산부 사무관 이정미 해양수산부 사무관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발간사

국제적 여성인권 담론은 비차별 평등주의를 넘어 여성이 갖는 차이까지도 여성의 권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적극적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성노동권과 노동의 질 논의 또한 여성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노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권을 명문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가부장제 억압과 성별분업에서도 해방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수산업 또한 국제적 성평등 담론 아래 FAO의 성평등정책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여성어업인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1990년대 이후 연안어업과 어촌을 중심으로 한 인구감소,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문제로 이어졌다. 이러한 산업적·지역적 변화로 여성어업인은 정책 논의 대상으로 부상하였으며, 정부는 여성어업인 육성을 통한 수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2001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여성어업인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까지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흘렀지만, 이들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도 이뤄지지 못하였으며, 현행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17~2021년) 세부 정책 상당수가 이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기존 계획은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지역 복지 측면에서 마련되어 성평등 기반 조성에 한계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제5차 기본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우리나라 여성어업인의 노동환경 실태를 진단하고, 구체적 정책수요 발굴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여성어업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노동권, 여성어업인 관련 논의 동향을 검토하여 정책의 지향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어업 노동시장의 성별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 어업인 성별에 따라 노동환경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여성어업인의 정책수요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업종의 여성어업인을 면담조사하여 현장의 의견을 심도 있게 담고자 하였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여성어업인의 경제적 기여를 가시화하고 위상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여성어업인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인권적 논의를 넘어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우리 수산업에서는 지속가능성 담보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여성 어업종사가구원 비율과 여성 어업경영주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업과 어촌 유지 측면에서 여성어업인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가 앞으로 수립될 여성어업인 정책에 유용한 자료로 쓰이기를 바란다.

이 연구는 수산연구본부 홍혜수 전문연구원과 박찬엽 연구원, 이동림 전문연구원, 박지해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여성어업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 연구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연구 수행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이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를 표한다.

2021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 종 덕

목차

정책제안 _ i

요약 _iii

Executive Summary _xi

01 서론 _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5
1. 연구 내용 5
2. 연구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검토 9
1. 선행연구 9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

02 국내외 여성어업인 관련 정책 동향 _23

제1절 여성, 여성어업인 관련 국제 논의 동향 24
1. 여성 노동에 관한 이론적 검토 24
2. 여성 노동 관련 국제 논의 동향 34
3. 여성어업인 관련 국제 논의 동향 39

제2절 여성어업인 관련 국내 법·제도 46
1. 우리나라 여성노동 관련 법·제도 46
2. 우리나라 여성어업인 관련 법·제도 52

제3절 소결 69

03 여성어업인 현황과 어업 노동시장 구조 _73

제1절 어업 인구구조 변화와 여성어업인 74
1. 어가 및 여성어업인 인구변동 74
2. 여성어업인 노동환경의 특성 85

제2절 어업 노동시장의 성별 구조적 특성 90
1. 어업 노동시장의 현황 및 특성 90
2. 노동시장의 성별 구조적 특성 96
3. 어업 노동에서 성별 직종분리 103

제3절 시사점 117

04 여성어업인 노동환경 실태와 정책수요 _121

제1절 남녀어업인 노동환경 실태조사 122
1. 실태조사 개요 122
2. 성별에 따른 어업 노동환경 125
3. 성별에 따른 지위와 의사결정 권한 132
4. 성별에 따른 삶의 질과 시간 활용 145
5. 업종별 여성어업인의 정책수요 156

제2절 여성어업인 노동의 경제적 가치 추정 163
1.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개념 및 추정 방법 163
2. 여성어업인 노동의 경제적 가치 추정 168

제3절 여성어업인 정책수요 조사 173
1. 면담조사 개요 173
2. 양질의 노동환경 실현을 위한 정책수요 175

제4절 시사점 184

05 여성어업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_187

제1절 여성어업인 정책 기본방향 187

제2절 여성어업인 정책 추진전략 191

1. 여성어업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전략 191
2. 여성어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추진전략 200
3. 여성어업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전략 209
4. 여성어업인의 일과 삶 균형을 위한 추진전략 216

06 결론 및 정책제언 _221

제1절 요약 및 결론 221

1. 요약 221
2. 결론 226

제2절 정책제언 228

1. 지원체계 정비 228
2. 어업분야 성 주류화 실현 230
3. 여성어업인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232

참고문헌 _233

부록 _251

1. 여성, 여성어업인 관련 국제 논의 동향 관련 자료 251
2. 국내 여성어업인 관련 법·제도 관련 자료 257
3. 선행연구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세부 구성 263
4. 여성어업인 노동환경에 관한 설문조사지 264

표 목차

〈표 1-1〉 연구 방법 ····· 7
〈표 1-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17
〈표 2-1〉 국제기구별 노동의 질 개념과 세부 영역 ····· 31
〈표 2-2〉 ILO 양질의 노동 세부 영역별 측정지표 ····· 32
〈표 2-3〉 성평등지수 ····· 35
〈표 2-4〉 여성노동권 보장을 위한 ILO 주요 협약 ····· 37
〈표 2-5〉 FAO 성평등 정책 2020-2030 주요 내용 ····· 41
〈표 2-6〉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변화(1차~2차) ····· 48
〈표 2-7〉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일자리 대책(제6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49
〈표 2-8〉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 51
〈표 2-9〉「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목적별 주요 내용 ····· 56
〈표 2-10〉 제4차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과제 ····· 61
〈표 2-11〉 4차 기본계획 전략별·추진 과제별 예산(2018~2020년) ····· 64
〈표 2-12〉 시·도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현황 ····· 65
〈표 2-13〉 시·도별 해녀 지원사업 현황(2019년 기준) ····· 67
〈표 2-14〉 주요 부처별 여성정책 영역 및 실행목표 ····· 70
〈표 3-1〉 어가 및 어가인구 현황 및 추이 ····· 75
〈표 3-2〉 가구원 수별 어가 현황 및 추이 ····· 76
〈표 3-3〉 귀어가구 및 인구 현황 ····· 77
〈표 3-4〉 다문화 어가 및 어가인구 현황 ····· 78
〈표 3-5〉 성별 어가인구 변화 추이 ····· 79
〈표 3-6〉 성별 어업종사가구원 변화 추이 ····· 81
〈표 3-7〉 성별 어업경영주 변화 추이 ····· 83
〈표 3-8〉 연령별 여성 어업경영주(여성/전체) 비중 추이 ····· 84
〈표 3-9〉 선행연구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설문 개요 ····· 86
〈표 3-10〉 2005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 87
〈표 3-11〉 2017년, 2019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 88
〈표 3-12〉 고용형태별 어업 종사자 현황(2018년 기준) ····· 91
〈표 3-13〉 국적별·성별 어업 종사자 현황(2018년 기준) ····· 91
〈표 3-14〉 어업 유형별·경력별 고용 현황(2018년 기준) ····· 92

〈표 3-15〉 어업유형별 종사자 월평균 임금(2018년 기준) ····· 94
〈표 3-16〉 어업 노동시장의 특성 ····· 95
〈표 3-17〉 성별 평균임금과 임금비 ····· 97
〈표 3-18〉 우리나라 노동시장 및 어업 성 분절지수(2009~2019) ····· 110
〈표 3-19〉 수산업 노동시장의 던컨지수(2017~2018년) ····· 111
〈표 3-20〉 수산업 노동시장의 성 분절지수(2017, 2018년) ····· 112
〈표 3-21〉 15세 이상 어가인구 성 분절지수 ····· 114
〈표 3-22〉 어가인구 어업 주종사부문 성 분절지수 ····· 116
〈표 4-1〉 실태조사 개요 ····· 122
〈표 4-2〉 실태조사 구성 ····· 123
〈표 4-3〉 응답자 특성 ····· 124
〈표 4-4〉 어업인 시간활용 조사의 활동 구분 ····· 151
〈표 4-5〉 행동분류표에 따른 시간 활용 유형 ····· 169
〈표 4-6〉 대체비용법 활용을 위한 시간당 임금 추정(2019년 기준) ····· 170
〈표 4-7〉 여성어업인 무급노동 투입 시간 ····· 171
〈표 4-8〉 여성어업인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 ····· 172
〈표 4-9〉 면담조사 기초 질문 ····· 174
〈표 4-10〉 면담조사 대상 ····· 174
〈표 4-11〉 의견수렴 사례 ····· 175
〈표 5-1〉 양질의 노동 지표를 활용한 선행연구와 여성어업인 정책수요 비교 ····· 189
〈표 5-2〉 여성정책 관련 사례에서 살펴보는 거버넌스의 역할 ····· 192
〈표 5-3〉「양성평등기본법」 제정을 통한 양성평등정책 강화 추진 ····· 196
〈표 5-4〉 연구자별 지위(Status)에 대한 정의와 개념 ····· 200
〈표 5-5〉 연구자별 여성의 지위에 대한 정의와 개념 ····· 201
〈표 5-6〉「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0조 여성농어업인 지위 향상에 관한 조항 ···· 203
〈표 5-7〉 여성어업인 지위에 관한 주요 검토 사안 및 정책방향 ····· 205
〈표 5-8〉 작업안전건강의 성 주류화를 위한 10가지 지침 ····· 210
〈표 5-9〉 여성어업인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주요 검토사안 및 정책방향 ····· 211
〈표 부록1-1〉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체계 ····· 251
〈표 부록1-2〉 UN 여성차별철폐협약 법체계 ····· 252

〈표 부록1-3〉 SDG 5번 목표 내용 ····· 252
〈표 부록1-4〉 성 관련 이슈들이 포함된 SDGs 목표 ····· 253
〈표 부록1-5〉 연도별 한국의 GII 순위 ····· 254
〈표 부록1-6〉 GII 상위 10위 국가 및 아시아 주요국 현황 ····· 255
〈표 부록1-7〉 연도별 한국의 GGI 순위 ····· 255
〈표 부록1-8〉 성격차 상위 10위 국가 및 아시아 주요국 현황 ····· 256
〈표 부록1-9〉 연도별 한국의 GDI 순위 ····· 256
〈표 부록2-1〉 1, 2차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과제 ····· 257
〈표 부록2-2〉 3차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과제 ····· 258
〈표 부록2-3〉 4, 5차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과제 ····· 259
〈표 부록2-4〉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2018년도 예산 ····· 260
〈표 부록2-5〉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2019년도 예산 ····· 261
〈표 부록2-6〉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2020년도 예산 ····· 262
〈표 부록3-1〉 선행연구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세부 구성 ····· 263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 8
〈그림 1-2〉 여성의 수산업 참여 관련 기존 연구의 주제 및 조사방법 ····· 21
〈그림 2-1〉 성평등한 수산분야 의사결정 체계 ····· 42
〈그림 2-2〉 국가별 수산업 내 여성의 종사 비율과 의사결정 권한 직종 종사 비율 ···· 43
〈그림 2-3〉 전 세계 수산업 분야별 여성 종사 비율 ····· 44
〈그림 2-4〉 알래스카 지역의 여성 선원 면허증 및 어업허가권 비율 추정 ····· 45
〈그림 2-5〉 여성농업인,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 흐름 ····· 53
〈그림 2-6〉 여성어업인 관련 법·제도 체계도 ····· 55
〈그림 2-7〉 어업인, 수산인의 정의 비교 ····· 58
〈그림 2-8〉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전략별 시행예산 ····· 62
〈그림 3-1〉 어업 경영주 연령대별 현황 및 추이 ····· 76
〈그림 3-2〉 여성 어가인구 연령대별 추이 ····· 80
〈그림 3-3〉 성별 어가인구 비중 추이 ····· 80
〈그림 3-4〉 여성어업인 연령대별 추이 ····· 82
〈그림 3-5〉 성별 어업종사가구원 인구 비중 추이 ····· 82
〈그림 3-6〉 여성 어업경영주 연령대별 추이 ····· 84
〈그림 3-7〉 2021년 우리나라의 성격 차 지수(GGI) ····· 96
〈그림 3-8〉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던컨지수 추이(2009~2019) ····· 109
〈그림 3-9〉 15세 이상 어가인구 던컨지수 추이(2010~2019) ····· 113
〈그림 4-1〉 응답자 성별 주 종사업종 ····· 125
〈그림 4-2〉 소유어선 규모 ····· 126
〈그림 4-3〉 어선승선 유형 ····· 126
〈그림 4-4〉 어업 참여 유형(어선어업 외) ····· 127
〈그림 4-5〉 어업 종사 이유 ····· 128
〈그림 4-6〉 성별·업종별 어업 종사 이유 ····· 128
〈그림 4-7〉 어업활동 책임자 ····· 130
〈그림 4-8〉 성별·업종별 어업활동 책임자 ····· 130
〈그림 4-9〉 가족 구성원과의 노동 분담 비율 ····· 131
〈그림 4-10〉 어업인으로 종사상 지위 ····· 133
〈그림 4-11〉 성별·업종별 어업인으로 종사상 지위 ····· 133

〈그림 4-12〉 어업생산 활동에서 의사결정 권한 ····· 135
〈그림 4-13〉 성별·업종별 어업생산 활동에서 의사결정 권한 ····· 135
〈그림 4-14〉 어획물 가공 활동에서 의사결정 권한 ····· 136
〈그림 4-15〉 성별·업종별 어획물 가공 활동에서 의사결정 권한 ····· 137
〈그림 4-16〉 어획물 판매 활동에서 의사결정 권한 ····· 138
〈그림 4-17〉 성별·업종별 어획물 가공 활동에서 의사결정 권한 ····· 138
〈그림 4-18〉 어업 외 경제활동에서 의사결정 권한 ····· 139
〈그림 4-19〉 성별·업종별 어업 외 경제활동에서 의사결정 권한 ····· 140
〈그림 4-20〉 주요 가계지출에서 의사결정 권한 ····· 141
〈그림 4-21〉 성별·업종별 주요 가계지출에서 의사결정 권한 ····· 141
〈그림 4-22〉 소규모 가계지출에서 의사결정 권한 ····· 142
〈그림 4-23〉 성별·업종별 소규모 가계지출에서 의사결정 권한 ····· 143
〈그림 4-24〉 수협 조합원 가입 및 참여 현황 ····· 144
〈그림 4-25〉 어촌계원 가입 및 참여 현황 ····· 144
〈그림 4-26〉 여성어업인단체 가입 및 참여 현황 ····· 145
〈그림 4-27〉 어업인 건강상태 ····· 146
〈그림 4-28〉 어업종사에 따른 질환 ····· 147
〈그림 4-29〉 의료기관 이용 시 애로사항 ····· 148
〈그림 4-30〉 문화·여가생활 현황 ····· 149
〈그림 4-31〉 문화·여가생활의 애로사항 ····· 149
〈그림 4-32〉 어업인 필수시간 활용 현황 ····· 152
〈그림 4-33〉 어업인 의무시간 활용 현황 ····· 152
〈그림 4-34〉 어업인 여가시간 활용 현황 ····· 154
〈그림 4-35〉 하루 평균 시간 활용(어업인, 농림어가, 비농림어가) ····· 155
〈그림 4-36〉 여성들의 하루 평균 시간 활용(어업인, 농림어가, 비농림어가) ····· 155
〈그림 4-37〉 업종별 교육 중요성 ····· 156
〈그림 4-38〉 교육 참여 어려움 ····· 157
〈그림 4-39〉 사회활동 참여 어려움 ····· 158
〈그림 4-40〉 어업 종사 시 어려움 ····· 158
〈그림 4-41〉 업종별 어업 종사 시 어려움 ····· 159

〈그림 4-42〉 업종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 160
〈그림 4-43〉 선결과제 ····· 161
〈그림 4-44〉 정책수요 ····· 161
〈그림 4-45〉 업종별 정책수요 ····· 162
〈그림 4-46〉 어획 후 처리 작업환경 ····· 177
〈그림 4-47〉 사륜오토바이 활용 모습 ····· 178
〈그림 5-1〉 여성정책 거버넌스 구성 체계 ····· 193
〈그림 5-2〉 여성어업인 정책 기반 추진을 위한 기존 정책과제 ····· 195
〈그림 5-3〉 여성어업인 정책 지역단위 네트워크 확장(안) ····· 198
〈그림 5-4〉 여성의 수산업 참여 관련 기존 정책과제 ····· 204
〈그림 5-5〉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존 정책 과제 ····· 217
〈그림 6-1〉 여성어업인 노동정책 기본방향 ····· 225
〈그림 6-2〉 여성어업인 지원체계 구축(안) ····· 229
〈그림 6-3〉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례 ····· 231

약어 목록

- CEDAW(여성차별철폐협약):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EU(유럽연합): European Union
-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GDI(성개발지수):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 GGI(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 GII(성불평등지수): Gender Inequality Index
- GNI(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 ILO(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NOAA(미국 해양대기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H(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 UDHR(세계인권선언):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UN(국제연합): United Nations
- UNDP(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WEF(세계경제포럼): The World Economic Forum
- WHO(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정책제안

▌분석 내용 및 방법

1. 여성문제 담론 및 법·제도 분석: UN, ILO 등 국제기구의 여성문제 논의 동향을 검토하여 여성정책의 지향점을 살펴보고, 국내 여성노동권 및 여성어업인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해 기존 여성어업인 정책의 한계점을 도출함

2. 어업 노동시장의 성별 구조적 특성 분석: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해양수산업통계조사, 농림어업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성 분절지수(던컨지수, 성 집중도 모형)를 추정하여, 어업 노동시장의 성별 직종분리 현상을 분석함

3. 여성어업인 노동환경 분석: 전국 어업인 211명(남성 63명, 여성 148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 의사결정 권한과 사회적 활동, 삶의 질, 시간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 어업인 성별에 따른 노동환경 차이를 제시함

4. 여성어업인 무급노동 가치추정: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여성어업인 무급노동의 양적 규모를 바탕으로 대체비용법을 활용, 어가 내 여성어업인의 무급 가사노동과 어업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

5. 정책수요 고도화: 면담조사를 통해 실태조사에서 제시된 정책수요를 보다 구체화함. 이를 통해 노동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 지위향상 수요를 발굴함

▌정책제안

1. 여성어업인 지원체계 정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규정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자문회의, 정례적 실태조사 등을 이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내 여성어업인정책 전담 조직 신설을 제안함. 전담 조직 설치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 협업 창구를 일원화하여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기대함

2. 어업분야 성 주류화 실현: 정례적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어업인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승인통계를 마련하고, 기존 해양수산분야 통계의 성인지 통계로 전환, 해양수산부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확대 시행을 제안함

3. 여성어업인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여성어업인 관련 정책의 실효성·인지도·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산재된 지원정책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고, 정책 신청을 용이하게 하여 수혜자 만족도 제고를 도모함

요약

1. 연구의 목적

▪ **여성어업인 노동환경 실태 분석**

- 남녀어업인의 노동실태, 의사결정 권한 및 사회적 활동, 삶의 질, 시간활용 수준을 비교 제시

▪ **구체적 정책수요 발굴을 통한 여성어업인 정책의 방향성 제시**

- 정책 내실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전략, 지위향상 추진전략, 노동환경 개선 추진전략,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제시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의 방법

▪ **(1단계) 국내외 여성노동권, 여성어업인 관련 논의 동향을 검토하여 정책 지향점 파악**

- (연구방법) 선행연구 분석(여성어업인, 여성노동, 여성지위 등), 국제 논의 동향 파악(UN, ILO, FAO 등), 법·제도 분석(「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양성

평등정책,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등), 전문가 자문

- **(2단계) 여성어업인 현황과 노동시장의 성별 구조적 특성, 노동환경 진단**
- (연구방법: 여성어업인 현황) 인구구조 변화(통계청 어가인구구조 변화 분석), 선행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연구방법: 노동시장 성별 구조적 특성) 어업 노동시장 특성(해양수산업통계조사 분석, 선행연구 분석 등), 여성참여 노동시장 특성(선행연구 분석, 성 분절지수 실증분석), 전문가 자문
- (연구방법: 노동환경 진단) 전국 어업인 211명 대상 방문·설문조사를 통해 어업인 성별에 따른 노동실태, 의사결정 권한과 사회적 활동, 삶의 질, 시간활용 차이를 제시
- **(3단계) 여성어업인 친화형 어업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 발굴**
- (연구방법: 수요 발굴) 여성어업인 면담조사를 통해 노동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 지위 향상 수요 구체화
- (연구방법: 전략 발굴) ILO 양질의 노동 개념을 인용한 양질의 노동환경 구축 전략 모색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여성어업인의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요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연구임**
- **국내 여성어업인 선행연구와 달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성별 직종분리 현상을 검증함**
- **남녀어업인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성별에 따른 노동환경 차이를 제시함**

- 여성어업인 무급노동의 양적 규모를 조사하고, 대체비용법을 활용하여 여성어업인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여성인권에 대한 국제 논의는 비차별 평등주의를 넘어 여성으로 누려야 할 차이도 권리로 인정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발전함. 여성노동권 개념 또한 궁극적 성평등 달성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여, 공적영역을 넘어 사적영역에서의 여성 차별 철폐를 도모함
- 국제사회의 노동권 논의는 'ILO 양질의 노동(Decent work)' 개념 아래 양적 측면(얼마나 고용되는지)에서 질적 측면(어떤 일을 하는지)으로 발전함
- 우리나라는 성별에 따른 권한과 임금 격차가 크고,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높은 특징을 보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정책들을 수립함
- 1차 산업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과 해양수산부의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시행됨
- 3차까지 이행된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여성농업인 정책에서 파생되었으며, 잦은 소관부처 이관, 미비한 실태 파악 등으로 구체적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를 보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립된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또한 상당수 세부 계획이 이행되지 못한

채 2021년 종료가 도래함

- 어가 인구구조변화를 통해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국면에서 여성어업인이 갖는 산업적·지역적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2000년 이후 여성 어업경영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함
- 약 15년의 시간을 두고 이루어진 기존 여성어업인 실태조사를 검토하여, 여성어업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배우자보다 작고, 자신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변화하지 않음을 확인함. 이는 어업인으로 지위를 논함에 1차 생산과정을 우선하고, 어획 후 처리과정을 부차적으로 인식하는 고정관념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됨
-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어업 노동시장은 종사자의 성비가 불균형함을 확인하였으며, 성 분절지수를 통해 성별에 따른 업종별 분리현상이 존재함을 확인함. 성 분절지수 추정 결과, 여성 집중도가 높은 업종은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집중도가 높은 업종은 어선어업으로 나타남
- 여성어업인이 집적된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은 여성참여 노동시장의 특성인 과밀효과를 보이며, 성별에 따른 업종별 분리현상이 존재함은 향후 여성어업인 정책을 수립함에 업종별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함
- 실태조사를 통해 어업인 노동환경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갖는지 살펴보았으며, 종사 이유, 의사결정 권한, 업종별 지위 인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임. 남성어업인은 본인의 선택 또는 가업을 잇기 위해 어업에 종사한 반면, 여성어업인은 남성 배우자를 돕기 위해 어업을 시작함. 어업노동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남성어업인은 본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타 가족 구성원에 비해 크다고 인식하지만, 여성어업인은 본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적다고 인식함

- 남성어업인은 업종을 불문하고 어업활동 책임자가 본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성어업인은 업종별로 차이를 보임. 여성 집중도가 높은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종사자는 본인을 어업활동 책임자로 생각하는 반면,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종사 여성어업인은 배우자를 책임자로 인식함
- 시간활용 조사에서 일 평균 노동시간은 남성어업인 488.6분(8.1시간), 여성어업인 504.3분(8.4시간)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다만, 남성어업인은 대부분의 노동시간을 유급노동에 할애하는 반면, 여성어업인은 전체 노동시간의 절반가량을 가정 내 무급 어업노동과 가사노동에 사용함
- 성별에 따른 시간활용 차이는 어가 내 무급 어업노동과 가사노동을 여성어업인이 전담하고 있음을 보여줌. 여성어업인의 노동 이중고는 이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남성어업인과 동일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 부담이 요구되는 현실을 시사함
- 여성어업인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무급노동의 양적 규모를 바탕으로 대체비용법을 활용함. 여성어업인이 수행하는 무급노동을 타인에게 의뢰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월평균 약 151만 원, 연평균 1,817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면담조사를 통해 정책수요를 구체화하였는데 노동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 여성어업인 지위 향상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작업환경 개선, 작업 안전 확보, 직업병에 대한 정책적 지원 수요가 제시됨.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의료 인프라 확충, 가사노동 경감, 복지제도 확대, 여성어업인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역할·인식 제고, 성평등 기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됨

2) 정책 제시 및 정책화 활동

- 여성어업인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여성어업인 친화형 어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책 거버넌스 구축, 지위향상, 노동환경 개선, 일과 삶 균형을 구분·제시함
-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어업 내 성평등 내실화, 정책연구 강화, 어업의 지역집약형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 네트워크 및 정책 네트워크 확립을 제시함
- (지위향상 추진 방안) 여성어업인 단체의 역할·기능 확대와 활동 지원, 경제적 지원 정책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홍보·정보제공 강화, 여성어업인 교육과 신규인력 양성을 연계한 교유·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함
- (노동환경 개선 추진 방안)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교육 강화를 통한 작업 안전 강화, 완력 기반 어업 특성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여성친화형 작업기반 구축, 직업성 질병 사전적·사후적 지원을 제시함
- (일과 삶 균형 추진 방안) 신체적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사회적 건강을 위한 복지지원, 정신적 건강을 위한 문화·여가 지원을 제시함
- 또한, 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정책수요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화 활동을 수행함
  - 산·학·연·정 여성어업인 정책 협의회(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수협중앙회, 지역재단, 지역농업네트워크, 해양수산부 관계자 참석/2021. 8. 11)
  - 여성어업인 워크숍(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여성어업인 참석/2021. 9. 30)
  - ‘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간담회(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지역농업네트워크, 해양수산부 관계자 참석/2021. 11. 12)

3) 기대효과

- 향후 여성어업인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여성어업인 노동환경 실태)
- 여성어업인 정책 수립의 방향성과 구체적 방안 제시

EXECUTIVE SUMMARY

1. Purpose

-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of the labor environment of fisherwomen
  - This study compares and presents labor conditions, decision-making power as well as social activities, quality of life, and the level of time utilization between fisherwomen and fishermen.
- The suggestion of policy direction for fisherwomen through the development of specific policy demand.
  - This study intends to devise and propose several implementation strategies to substantiate relevant policies as follows; strategies to establish governance, enhance the status of fisherwomen, improve the labor environment and promote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life.

2. Methodology and Features

1) Methodology

- (Step 1) A review of domestic and foreign discussions relevant to women's labor rights and fisherwomen led to the understanding of policy goals.

- (Research Methods) Analysis of preceding studies (fisherwomen, women's labor, women's status, etc.), understanding the trend of international discussion (UN, ILO, FAO, etc.), analysis of laws and systems (the 'Support for Female Farmers and Fishers Act', gender equality policy, the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Female Farmers and Fishers, and the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Female Fishers, etc.), and consultation with experts.

- (Step 2) The present status of fisherwomen,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gender in the labor market, and the labor environment were diagnosed.

- (Research methods: the present status of fisherwomen) Analysis of demographic change (analyzing the change of fishery household population by Statistics Korea),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preceded status survey.

- (Research methods: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gender in the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of the fishery labor market (analyses of the Survey on Fishing Industry in Korea as well as preceding studies etc.),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market

participated by women (analysis of preceding studies, empirical analysis of Index of Sex Segregation), consultation with experts.

- (Research methods: diagnosis of the labor environment) Based on visits and surveys targeting 211 fishermen nationwide, labor conditions, decision-making power as well as social activities, quality of life, and the level of time utilization were compared according to the gender of a fisher.

▪ (Step 3) Finding strategies for the establishment of fisherwomen-friendly industrial foundations.

- (Research methods: identification of demand) Interviews with fisherwomen were able to specify the demand for improving the labor environment, promoting the quality of life, and raising status.
- (Research methods: development of strategies) Citing the Decent Work Agenda of the ILO, this study seeks strategies for establishing the environment assuring decent work.

2) Features

▪ This study focuses on policy research with aims to understand the labor environment of fisherwomen and specifically identify policy demand.

▪ Unlike domestic preceding studies on fisherwomen, this study takes a structural perspective on the labor market, verifying occupational segregation by gender.

- A status survey of the labor environment was conducted both targeting fishermen and fisherwomen, presenting different labor environments depending on gender.
- After investigating the quantitative size of unpaid work carried out by fisherwomen, this study estimated its economic value based on replacement cost methods.

3. Results

1) Summary

- International discussions surrounding women's rights have moved beyond non-discriminatory egalitarianism and developed into an active concept of recognizing the difference of being a woman as rights. The concept of women's labor rights has developed and moved in the direction of ultimate gender equality, promoting the abol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not only in the public sector but also in the private sector.
- Under the concept of the ILO decent work agenda', discussions surrounding labor 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developing and shifting from a quantitative perspective (how many of each gender are employed) to a qualitative perspective (what kind of work does each gender take part in).

- In South Korea, the gender gap concerning decision-making power as well as income is wide while the burden of housework for women is high. To address these issues, the 'Framework Plan for Gender Equality Policies' was implemented at a governmental level and had led to the formulation of specialized policies by industry.
- As for the primary industry, in accordance with the 'Support for Female Farmers and Fishers Act', the 'Framework Plan for the Promotion of Female Farmers' wa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Framework Plan for the Promotion of Female Fishers' was enact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Having been implemented by the third round, the 'Framework Plan for the Promotion of Female Fishers' was derived from policies for female farmers. This plan has demonstrated limitations in producing concrete policy results due to frequent transfer of departments in charge and a poor understanding of present conditions. The 4th Framework Plan for the Promotion of Female Fishers which was established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came to an end by the end of 2021 with a number of specific plans not being implemented.
- From demographic changes of fishery households, this study identified the industrial and regional significance of fisherwomen in the current situation of declining fishery households and the aging population. In particular, the ratio

of women business owners in fisheries has increased since 2000.

- The study reviewed preceding studies which had been conducted in around 15 years' time difference in the actual conditions of fisherwomen. The result confirmed that there was a tendency for fisherwomen to possess lower decision-making power than their spouses and their underestimated status has not changed. This is likely predominantly as a result of the stereotype in discussing their status as fisher and that the primary production process takes priority over the secondary processing procedure after a catch.
- The analysis of statistics verified that the gender ratio of workers in the fisheries labor market is imbalanced. The Index of Sex Segregation confirmed that occupational segregation does exist based upon gender. According to the result of estimating the Index of Sex Segregation, women are concentrated on fishery businesses such as fishing without gear and free dive fishing, while men dominate fishing boat fishery.
- Dominated by fisherwomen, fishing without gear and free dive fishing demonstrate the crowding effect which is a feature of women participatory labor markets. Moreover, the presence of occupational segregation by gender implies that policies for fisherwomen should be established by the type of business.

- As this study conducted a status survey on whether the labor market of fisher is different depending on gender,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are gender differences in terms of reasons for engaging in business, decision-making power and the perception of status by type of business. Whereas fishermen engage in the fishery business by their choice or by taking over the family business, fisherwomen start in the fishery business by assisting male spous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levant to fishery labor, fishermen consider their decision-making power to be superior to that of other members of the family, while fisherwomen perceive their decision-making power as inferior.
- Regardless of the type of business, fishermen consider themselves as the person in charge of fishery activities, whereas fisherwomen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business. Those engaging in fishing without gear and free dive fishing, to which women are concentrated, perceive themselves as being in charge of fishery activities. However, fisherwomen engaging in fishing boat fishery and aquaculture consider their spouses as those responsible for their activities.
- The survey on the time used for labor does not show much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the daily working hours of fishermen were 488.6 minutes (8.1 hours) on average and those of fisherwomen recorded 504.3 minutes (8.4 hours). However, most of the fishermen's labor time was spent on

paid labor whereas approximately half of the fisherwomen's total labor time was used for unpaid fishery labor in the family or housework.

- The difference in time utilization by gender clearly demonstrates that fisherwomen are fully responsible for unpaid labor within fishery households and housework. The labor 'double whammy' faced by fisherwomen declines the quality of women's life, implying the reality that women have to take on bigger labor burdens to generate the same income as fishermen.
- This study utilized replacement cost methods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unpaid work performed by fisherwomen based on its quantitative size. If the unpaid work carried out by fisherwomen was requested to other people, it is estimated to cost approximately a monthly average of 1.51 million KRW and an annual average of 181.7 million KRW.
- This study specified policy demand through an interview with fisherwomen and classified them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improving the labor environment, increasing the quality of life, and enhancing the status of fisherwomen. Suggestions to improve the labor environment include making a better working environment, securing working safety, and the demand for policy support for occupational diseases. In order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measures including improving cultural and medical infrastructures, reducing the time for

housework, and expanding the welfare system were proposed. The status of fisherwomen can be enhanced by boosting the role and awareness of fisherwomen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gender quality.

2) Policy suggestions and policy-making activities

- As a strategy to provide a quality labor environment to fisherwomen and further to establish fisherwomen-friendly fishery foundations, this study classified and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policy governance, enhancement of status, improvement of the labor environment, and the balance of work and life.
- (Measures to establish policy governance) This study suggests specific measures as follows; strengthening gender equality in the fisheries industry, reinforcing policy research, and building a regional-level network as well as policy network taking regional-intensive characteristics of fisheries into account.
- (Measures to enhance the status of fisherwomen) Suggestions made by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 expanding the roles and functions of fisherwomen's organizations and supporting their activities, strengthening the PR and information provision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financial support policies and building an exchange and cooperation network

that connect the education of fisherwomen and training of new manpower.

- (Measures to improve the labor environment) This study proposes measures including strengthening work safety through improving currently poor working environment and reinforcing safety education, establishing a mid-to-long- term women-friendly working foundations to address characteristics of the fisheries industry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physical strengths, and offering prior-and post-supports for occupational diseases.
- (Measures to promote work and life balance) Medical support for physical health, welfare support for social health, and cultural and leisure support for mental health were proposed.
- In addition, policy-making activities were conducted as follows in order to collect the opinions of policy demand drawn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this study.

- Female fishermen policy meeting in collaboration with industry-academia-government-research institutes (attended by relevant officials from the Korean Fisherwomen's Association,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Korea Regional Development Foundation, Region & Agriculture Network Cooperative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11th of August, 2021)
- Female Fishermen's Workshop (participated by female fishermen in North Jeolla province, Gochang gun, Gochanggun Fisheries

Cooperative, Jeonbuk Fishing Village Specialized Support Center / 30th of September, 2021)

- A meeting regarding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5th Framework Plan for the Promotion of Female Fishermen' (attended by relevant officials in the Korean Fisherwomen's Association, Region & Agriculture Network Cooperative,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12th of November, 2021)

3) Expected benefits including policy contribution

-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policies for fisherwomen. (Actual conditions of the labor environment of fisherwomen)
- This study presents a direction and specific measures in establishing policies for fisherwomen.

01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는 사회의 공정성과 성평등 달성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1] 나아가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젠더 이슈 등 인권 문제를 넘어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국가와 산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 국제적으로 수산업에서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여성어업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FAO는 2019년 제17차 수산위원회 수산물 교역소위원회를 통해 세계 식량안보와 경제 성장에 있어 여성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여성의 역할이 제고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전히 수산업 내 비주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FAO는 성평등한 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2013년 성평등정책을 수립하였으며, UN 여성기

1) OECD대표부(2014. 7. 4), p. 1.
2) 권순헌(2017), p. 47.

구, UN 여성지위위원회, 미국 해양대기청 등은 수산업 내 여성 권리신장을 중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

수산업 현장에서도 여성 역할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국가에서 여성들은 수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산업이 남성 중심 산업이라는 오랜 인식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활동에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다. 과거 여성들이 어구를 손질하거나 어획물을 가공·유통하는 형태로 수산업에 참여하였다면,[3] 최근에는 여성의 수산업 종사 범위가 생산단계까지 확대되고,[4] 공동체 돌봄, 어촌체험마을 운영 등 어촌 유지 활동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5]

이처럼 여성어업인의 역할이 다변화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약은 여전히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많은 국가는 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성별 구분 데이터를 갖추지 못해 여성 종사자의 규모도 추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 공백은 여성어업인 지위에 대한 과소평가로 이어진다.[6]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여자가 배를 타면 재수가 없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갈 때 여자가 앞길을 가로지르면 재수가 없다' 등 어업활동에 관한 여성 관련 금기가 전승[7]되고 있어 여성들의 참여 기회를 더욱 제약한다.

나아가 수산업도 성별의 사회적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성별에 따른 권력의 역학관계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8] 일례로 UN 여성기구(2018)는 전 세계 수산업에서 여성들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직종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9] Zhao, M. *et al.*(2013)은 경험을 기준으로

3) Zhao, M. *et al.*(2013), p. 1.
4) 이창수·박지훈·임종선(2019), pp. 3~5.
5) 해양수산부(2017), p. 2.
6) Zhao, M. *et al.*(2013), p. 2.
7) 이인혜(2012), pp. 195~196.
8) FAO(2017), pp. 3-4.
9) UN WOMEN(2018), p. 122.

어업면허를 할당하는 현행 어업 전문화 제도가 남성 중심의 수산업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반면, 여성을 소외하고 산업 내 영향력을 약화시켜 여성들의 수산업 참여를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10]

우리나라는 어가인구의 감소가 어업과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여성어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어업의 기반인 어가는 우리나라 어업경영체[11]의 95% 이상을 차지하는데,[12]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어가 수는 4만 3천 가구, 어가인구는 9만 8천 명으로 2015년 이후 5년간 20% 이상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가구당 어업 종사자 수는 1970년 2.5명에서 2015년 1.6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어가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과거 어업에 종사하지 않았을 어가 내 여성들도 어업활동에 참여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13]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5년 단위의 동 기본계획은 어업 공동경영주 제도를 도입하고, 여성어업인 단체를 조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어업 특성에 대한 고려와 정책 지속성에 한계점을 갖는다.

여성노동 문제를 다룸에 있어 사회 전반의 불평등 체계가 노동시장에서도 구조화된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노동환경의 성별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14] 수산업 내 여성노동 문제 또한 개별 여성의 인적자본 향상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접근을 넘어 산업 내 노동환경의 구조적 기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여성어업인이 갖는 산업적·지역적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일

10) Zhao, M. *et al., op cit.*, p. 2.
11) 어업경영체는 어업인(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과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등)을 지칭함(자료: 귀어귀촌종합센터(검색일: 2021. 9. 6))
12) 해양수산부(검색일: 2021. 9. 6)
13) 김병호 외(2017), p. 24.
14) 신경아(2016), p. 325.

부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여성어업인이 직면한 구조적 기제에 관한 진단과 고찰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어업의 남성 중심 구조를 살펴보고, 불평등 구조 속에서 여성어업인의 노동환경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노동환경 실태는 향후 여성어업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발굴된 정책수요는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과 같은 정책 수립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목적

국내 여성어업인 관련 연구는 최성애·황진회·엄선희(2005) 이후 시작되었으나,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지 못하고, 관련 통계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남성 중심의 어업 구조 속에서 여성어업인의 노동환경을 살펴보고, 이들 노동과 기여를 경제적 가치로 가시화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어업인이 갖는 정책수요를 구체화하여, 여성어업인 친화형 어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수산업 내 여성에 대한 논의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기점으로 여성수산인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 여성어업인 실태에 대한 고찰도 선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범위는 여성어업인으로 한정한다.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어업과 어촌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여성 참여가 정책적 대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었으며, 여성어업인의 다변화된 역할을 고려하여 여성수산인으로 정책 확대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을 앞둔 현재까지도 정책 수혜자인 여성어업인의 정확한 규모와 실태 파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어업인의 노동실태를 살펴보고, 정책수요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6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은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여성노동권과 여성어업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국내외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여성문제와 여성어업인 관련 국제 논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여성노동에 관한 우리나라 국가 정책 기조를 살펴보고, 여성어업인 정책 배경 및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법·제도를 검토하여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여성어업인 현황을 추정하고 어업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현황 추정을 위해 어가의 인구구조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어촌 소멸 위기 속에서 여성어업인이 갖는 산업적·지역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또한, 어업 노동시장 특성과 여성참여 노동시장이 갖는 구조적 특성을 고찰하고, 어업 노동시장에서도 성별 직종분리 현상이 존재하는지 추정하였다.

15) 해양수산부(2017), p. 13.

제4장에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여성어업인의 노동환경 실태와 정책수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어촌에 거주하는 어가 구성원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남녀어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성별에 따른 노동환경 및 사회적 지위, 삶의 질 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특히, 제3장의 성별 직종분리 현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집중업종과 남성 집중업종의 의사결정 권한 수준 등을 살펴보았으며, 시간 활용 조사를 바탕으로 여성어업인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나아가 정책수요를 구체화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더불어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4장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어업인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성 주류화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환경, 사회적 지위, 삶의 질, 거버넌스 구축으로 구분하여 전략별 개념을 검토하고,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각 장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결론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아래 〈표1-1〉과 같이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내용 추진을 위해 주로 사용된 연구방법론은 문헌조사, 통계자료 조사·분석, 성별 직종분리에 관한 실증분석, 노동환경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및 시간 활용 조사, 무급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 추정, 정책 구체화를 위한 현장 면담조사,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이다.

각 장별로 살펴보면, 제2장 국내외 여성어업인 관련 정책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 등 국내외 문헌을 조사하였으며,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어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어업인의 산업적·지역적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어가인구 통계 등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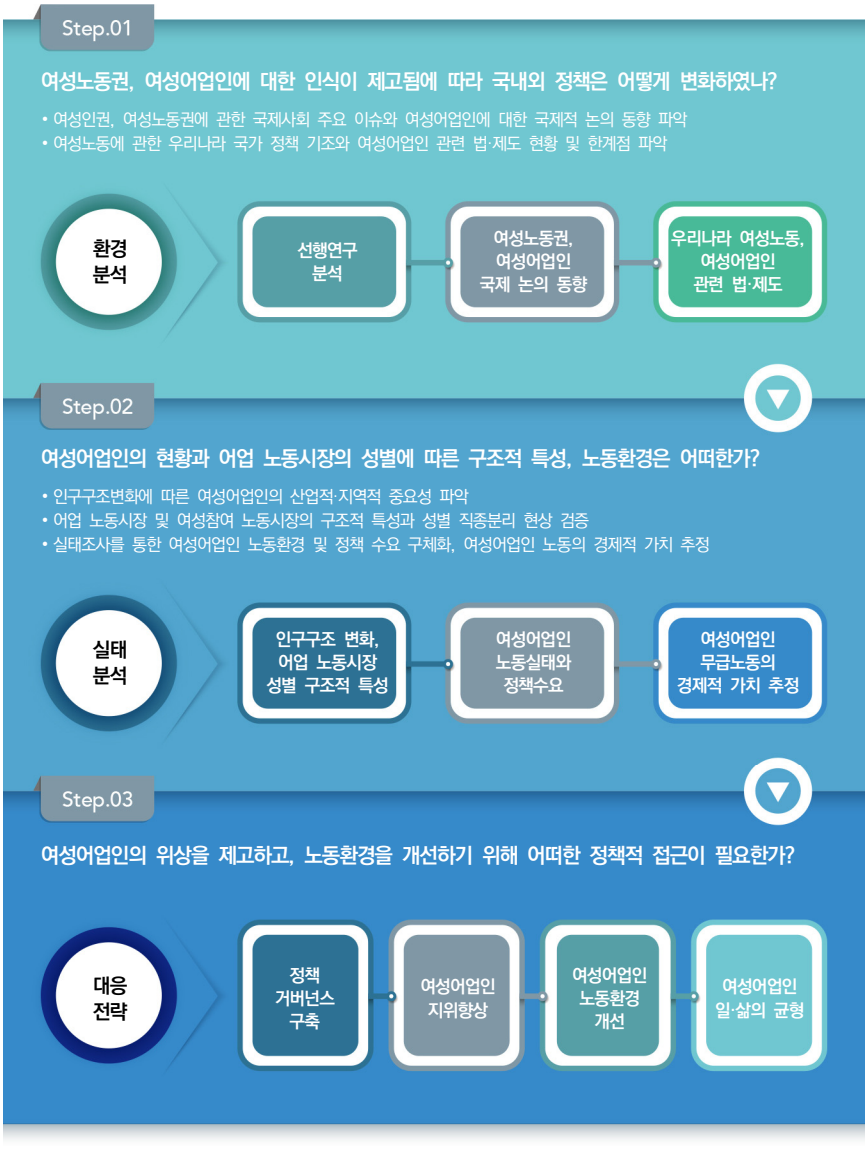
통계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어업 및 여성 노동시장의 특성과 여성어업인의 노동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수산업의 성별 구조적 기제를 파악하기 위해 성 분절지수를 활용하여 성별 직종분리 현상을 추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여성어업인 노동실태 및 성별에 따른 노동환경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남녀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시간 활용 조사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정책수요를 구체화하기 위한 현장·면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대체비용법을 활용하여 여성어업인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가시화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서 도출한 정책수요와 ILO 양질의 노동 지표를 비교하여 여성어업인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성 주류화에 부합하는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1-1〉 연구 방법

구분	세부 내용
문헌 및 통계자료 조사·분석	- 국외: UN, FAO 등 국제기구 논의 동향 등 - 국내: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 및 정책연구 보고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 관련 선행연구 등 - 통계조사·분석: 통계청 「해양수산업통계조사」, 「농림어업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 수산업 인구구조 관련 성인지 통계자료
성별 직종분리 실증분석	- 목적: 수산업 노동시장 내 성별로 분절된 성별 직종분리 현상 존재 여부 확인 - 실증분석 방법: 수산업 종사자 성인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성 분절지수(던컨 상이지수, 성 집중도지수) 계산
실태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 목적: 여성어업인 노동참여 제약요인 및 정책수요 도출, 시간활용 조사 - 설문조사 방법: 연안어업 종사 남녀어업인 대상 방문면접조사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 추정	- 목적: 여성어업인의 어가 내 무급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 역할과 기여를 가시화 - 추정 방법: 시간 활용 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급노동의 양적규모에 대체비용법을 적용
외부전문가 자문	- 여성 정책의 필요성과 특수성에 관한 전문가 자문 - 여성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 이해를 위한 전문가 자문 - 성별 직종분리현상에 관한 수산업 및 여성, 노동경제 전문가 자문
현장조사 및 관계자 면담	- 여성어업인 노동활동 제약요인 및 정책수요 구체화를 위한 면담조사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1) 여성어업인 관련 선행연구

(1) 어촌여성의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최성애·황진회·엄선희(2005)는 국내 어촌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파악한 최초의 연구로, 어촌여성의 노동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6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동 연구는 여성노동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에 관한 차별은 여성이 재생산노동을 담당하거나, 향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인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여성정책을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평등을 목적으로 국가에 의해 행해지는 노력들의 총체로 규정하였으며, 여성노동정책은 여성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불평등을 제거하고 노동시장 내에서 평등을 지향하는 국가적 노력으로 개념화하였다.[16]

동 연구는 어촌여성 경제활동실태에 관한 기초조사사업 실시, 여성어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수산업협동조합 지도사업 하 어촌여성 지원대책사업 추진과 같은 3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 여성 건강관리 및 무료검진 확대, 노인후생복지 기반 확충과 같은 삶의 질 영역 정책수요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부부 공동 어업인 후계자 양성, 기술 및 자금지원, 여성어업인 조직 결성 등 직업 역량에 관한 정책수요를 제시하였다.

16) 최성애·황진회·엄선희(2005), p. 28.

(2) 어촌 여성금기의 변화와 지속: 충청남도 서천군 W리 사례를 중심으로

이인혜(2012)는 어촌 근대화 과정에서 어로어업에 대한 여성금기가 해체되고, 여성들의 참여가 일어나는 과정을 사례연구로 제시하였다. 동 연구는 오랜 시간 어촌사회 어로어업에서 여성에 대한 다양한 금기가 전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성들의 어로어업 참여 이유로 어촌 내 남성노동력 공백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문화적 가치의 결합으로 여성금기가 해체되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러한 탈 금기화는 어로어업 전 과정에 걸쳐 이뤄지지 못하고, 할머니당 제사 등 의례 영역에서는 여전히 여성금기가 유지되는 양상을 관찰하였다. 이에 동 연구는 어로어업과 관련된 여성금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못하고, 생업에서는 여성 참여에 관한 금기가 해체되었지만, 종교 행위에서는 유지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3) Women as visible and invisible workers in fisheries

Zhao, M. *et al.*(2013)은 여성의 수산업 종사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과 기여가 산업적, 통계적으로 규명되지 않아(invisible) 관련 정책이 부족하고, 이들의 역할이 가사노동의 연장으로 경시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동 연구는 북부 잉글랜드 지역을 대상으로 수산업 내 여성 역할을 규명하고 다양한 참여 제약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관찰·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어업 현장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적은 이유로 성별에 따른 어업 종사 제약과 성희롱, 문화적 금기가 노동현장에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수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및 어가여성 또한 '어업은 험한 일'이라는 인식 아래 직접 생산보다는 어구 손질, 회계 등의 업무를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업은 상대적으로 여성종사자를 선호하였

으나, 결정권을 가진 책임자로 종사하는 여성은 드물고 유통에서도 여성은 주로 소규모 거래상으로 종사할 뿐 경매인 등 전문적 자격을 요하는 업종에서는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 내 여성들이 다양한 수산분야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역할이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무급노동 또는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의사결정 권한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였다.

(4)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엄선희 외(2016)는 '제4차 여성어업인 기본계획'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위해 문헌·통계조사, 실태·현장조사,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였다. 동 연구는 여성어업인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2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라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천일염 생산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성으로 정의하였다.[17] 동 연구는 여성어업인 정책 현안과 문제점으로 여성어업인의 법적 범위가 수산인을 포괄하지 못하는 점, 남녀 공동경영주 제도의 미도입, 관련 통계의 부재, 담당 조직 및 거버넌스 부재, 여성어업인 대표 단체의 부재를 꼽았다.

(5) 여성어업인 실태 및 인식 변화 분석

이창수·박지훈(2019)은 여성어업인 실태와 2017년과 동일한 설문조사를 재시행하여 변화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항목은 어업노동 실태와 인식, 교육 인식과 실태, 가사노동과 생활만족도, 정책 수요, 정부 및 지원기구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17) 엄선희 외(2016), p. 3.

2019년 실태조사 결과, 여성어업인의 어업참여 동기는 생계유지와 어촌 인력난에 기인하였으며, 어업 의사결정 권한은 남편에게 집중된 반면 출하·판매는 여성어업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가사노동, 여유시간 부족 등 여성어업인의 여건 개선을 제기하였다. 2017년 실태조사와 비교 시 여성어업인은 본인의 위상을 여전히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가사 및 생활 전반의 만족도가 낮고 어업종사를 위한 여건 개선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 Addressing the Gender Gap: Us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to Illuminate Women's Fisheries Participation

Szymkowiak and Rhodes-Reese(2020)는 수산업 참여 여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개발도상국 소규모어업을 다루어 온 점에 주목하여, 동 연구를 통해 유럽과 북미 선진국 내 여성의 수산업 참여 역학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문헌조사와 통계조사를 통해 기존 연구의 경향성을 살펴보았으며, 알래스카 지역 내 표적집단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다.

65개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수산업 참여 여성에 관한 데이터 부족은 전 세계 공통적 현상으로 많은 연구들이 현장조사와 인터뷰, 문헌조사 등 정성연구를 통해 이뤄졌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알래스카 및 선진국 여성의 수산업 참여는 가족이 수산업에 종사함에 따라 어획 전후 부문에 참여하는 양상으로 개발도상국 여성들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어획활동 참여는 선진국 여성이 개발도상국 여성보다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원인으로 첫째, 선진국 수산업은 자본집약적 성격으로 주로 근해에서 조업함에 따라 가정 내 여성의 역할·책임과 상충되고, 둘째 어획권 허가제도 등이 기존 수산업 참여 이력을 기반으로 함에 따라 여성의 어획활동을 제약하던 과거 고정관념이 유지되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러한 구조적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별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마련하여 여성의 수산업 참여·기여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여성노동 관련 선행연구

(1)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직종분절화현상과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신경수(2002b)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성별 직종분리현상과 성별 임금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외에도 성 분절지수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현상을 분석하였으며, 인적자본이론에 따른 혼잡가설과 성별 임금격차를 검증하였다. 동 연구는 던컨지수(Duncan & Duncan Dissimilarity Index)와 규모표준화지수(Size-standardized Dissimilarity Index), 집중지수(Concentration Index, Crowding Index)를 사용하여 직종대분류별·사업체규모별 성별 직종분리현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혼잡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직종별 여성비를 기준으로 남성직종, 혼성직종, 여성직종으로 구분하고, 오악사카(Oaxaca) 분해모형을 활용하여 임금격차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으며, 직종별로 여성 비중이 증가할수록 임금이 하락하는 혼잡현상 또한 심화됨을 확인하였다.

(2) 여성농업인 역할 변화와 정책과제

강혜정·마상진(2007)은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기여를 규명하고, 경제·사회활동의 제약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주 활동영역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였다. 잠재임금 추정 결과, 농

가 여성농업인의 잠재임금이 농촌 내 고용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근거로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지위향상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주요 활동 제약요인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전문역량 부족과 농촌 내 불평등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3)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의 변화

사명철(2015)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지수의 변화 추이와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는 던컨지수를 활용하여 성별 직종분리 추이를 분석하고, 푸크스(Fuchs) 기간 간 분해기법을 통해 성 비중 효과와 직종규모 효과를 분해하여 성별 직종분리현상을 살펴보았다.

19993년부터 2013년까지 성별 직종분리지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노동시장의 성별 직종분리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학력별로 대졸 미만과 대졸 이상 집단의 성별 직종분리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변화된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성 비중 효과와 직종규모 효과로 직종분리지수를 검토한 결과, 직종규모 효과는 분리지수를 감소시켰으나, 성 비중 효과는 분리지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 기간 전체 노동시장의 성별 직종분리는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 후 정체 현상을 띄는데, 각 직종 내 성 비중 효과가 정체 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에 관한 여덟 가지 질문

신경아(2016)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젠더 관점에서 여성 노동시장 변화와 쟁점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는 여성 노동시장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의해 확대되었으나, 청장년층과 노년층 여성의 저임금 심화와 성별 임금격차는 지속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특징 하에서 여성 노동시장 변화의 주요 쟁점으로

경력단절, 기업내부노동시장, 일가족 양립제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시간제 고용, 성별직업분리,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꼽았다. 특히, 노동시장 내에서 성별에 따라 직업이 분리되는 성별직업분리는 남성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낳는 주요한 원인으로 규정하였다. 동 연구는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으나 상대적 고임금과 고용안정을 제공하는 내부노동시장은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일제와 시간제 분절이 성별에 따른 분절과 중첩되어 노동시장 내 여성들의 낮은 위상과 지위를 지속시켜 왔다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주의 노동연구가 여성 노동시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의 의식과 운동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여성주의 노동연구와 노동운동, 여성노동운동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 여성의 지위에 관한 선행연구

(1) Indicators of Gender Equality for American-States and Regions

Sugarman and Straus(1988)는 미국 각 주에서 여성의 사회적 접근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얼마나 동등한 수준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성의 지위 수준을 지표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 연구에서 여성의 지위 개념은 남녀간 성취의 차이와 평등한 정도로 보았으며, 경제적 자원, 정치적 권한, 법적 권리 세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자원에 해당하는 요소들은 경제활동 참가율, 관리직, 전문기술직 등이고, 정치적 권한은 의회의원, 상원의원, 하원의원, 판사, 시장 등에서 여성의 수이며, 법적 권한은 공정 고용법, 동일임금에 대한 법률, 성차별 금지법 등의 법률 수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을 활용하여 여성과 남성의 평등 수준을 제시하였으며, 세 영역 모두에서 주별 지역적 차이를 발견하였다.

(2) 경제개발과 여성의 지위 -한국의 사례-

이금순(1994)은 한국의 사례를 들어 국가개발에 있어 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근대화·산업화 등 한국이 맞이한 경제개발이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절대적으로 향상시켰으나,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지위를 갖게 한 것은 아님을 주장하였다. 여성의 지위를 정치, 사회, 경제 체제에서 양성이 동등한 기회와 참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남녀 간 실질적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변수 간 상관관계를 검토하였으며, 여성취업률, 임금 노동자 성비, 남녀간 임금격차, 직종분리를 활용하여 성차별 정도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 경제개발과 여성의 동등한 지위간 긍정적 관계 가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여성의 지위가 단순히 경제적 요소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3) Toward an Integration of Theory and Research on the Status of Women

Bradley and Khor(1993)는 여성의 지위를 규명하기 위해 여성과 지위에 관한 이론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지위는 사회가 형성되면서 차별화, 가치 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위치를 인식하는 현상이며,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보유한 자연적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특히, 성별 간 지위는 사회적·제도화 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형성된 것으로 보았는데, 여성의 지위를 경제·정치·사회적 차원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경제적 요인으로는 여성의 행정적 지위, 빈곤율, 노동권에 대한 법정구성 등으로 접근하였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여성의 조직화, 고위공직자 수, 모권에 대한 부권의 우위성 등으로 보았으며, 사회적 차원으로는 고등교육, 재생산권, 교육투자 등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부문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여성이 성 차이로 인해 경험하는 사회적 불평등 요소로 바라보았다.

(4) 한국여성의 사회적 지위변화: 진보와 반동

김영란(2010)은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을 전후로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30년간의 국내 여성의 사회적 지위변화를 추적하여 변화의 특성을 살펴보고, 향후 성평등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정의와 성평등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지위에 대한 개념, 여성의 지위, 성평등 개념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경제참여 부문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를 지표로 하여 남성과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전문·기술·행정 관리직 종사자 비율, 남녀 임금격차 추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정치 참여부문에서는 의원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수, 고시 합격자의 수를 고려하였으며, 인권부문에서는 성폭력 발생 건수, 여성긴급전화 상담 종류 등을 고려하였다.

〈표 1-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연구 제목 및 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여성 어업인 관련	1	• 과제명: 어촌여성의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 연구자: 최성애·황진회·엄선희(2005) • 연구목적: 어촌여성의 수산업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 문헌조사 • 해외사례분석 • 통계자료분석 • 설문조사	• 여성노동의 이론적 검토 • 여성노동 정책 동향 • 여성어업인 정책사례분석 • 어가 내 여성인력 분석 • 노동실태 분석 • 정책과제 도출
	2	• 과제명: 어촌 여성금기의 변화와 지속 • 연구자: 이인혜(2012) • 연구목적: 어촌 내 여성금기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어로어업 참여과정 규명	• 문헌조사 • 면접조사 • 사례분석	• 여성의 어로어업 참여 관련 이론적 배경 • 어로어업과 마을의 사회적·경제적 변화 • 어촌 내 금기와 인식, 의례 변화
	3	• 과제명: Women as visible and invisible workers in fisheries: A case study of Northern England	• 문헌조사 • 관찰조사 • 면접조사	• 수산업 내 여성 종사자 현황 • 어업 내 여성참여 제약요인(성별 직종분리, 성차별, 문화적 금기)

구분		연구 제목 및 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연구자: Zhao, M. *et al.* (2013) • 연구목적: 북부 잉글랜드 내 여성어업인의 어업 참여 역할 규명		• 어업의 어업참여 요인 • 수산업 내 여성 종사 실태
	4	• 과제명: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연구자: 엄선희 외(2016) • 연구목적: 여성어업인 실태 파악 및 여성어업인 권리·위상 제고 필요성 제시	• 문헌 및 통계조사 • 실태조사 • 전문가 자문	• 여성어업인 정책 현황 및 문제점 • 여성어업인, 결혼 이민 여성 실태조사 • 국내외 여성어업인 정책사례 •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안)
	5	• 과제명: 여성어업인 실태 및 인식 변화 분석 • 연구자: 이창수·박지훈(2019) • 연구목적: 여성어업인 실태와 인식변화 파악	• 설문조사	• 여성어업인 노동 및 인식 실태 • 여성어업인 노동 및 인식 변화 양상 • 여성어업인 필요 정책 도출
	6	• 과제명: Addressing the Gender Gap • 연구자: Szymkowiak and Rhodes-Reese(2020) • 연구목적: 선진국 여성의 수산업 참여 역학관계 규명	• 문헌조사 • 통계자료 분석 • 표적집단 면접조사	• 어가 및 지역사회 내 여성 기여 경시 현상 • 여성의 수산업 참여 양상 • 기존 선행연구 경향성 • 알래스카 수산업 실태조사
여성 노동 관련	1	• 과제명: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직종분절화현상과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 연구자: 신경수(2002) • 연구목적: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현상과 성별 임금격차 실증분석	• 문헌조사 • 통계자료 분석 • 실증분석 (성분절지수 도출) • 계량분석 (임금함수 추정)	• 성별 직종분절화 및 임금격차 이론적 검토 • 노동시장 취업구조 및 임금구조 • 성별 직종분절화, 성별 임금격차 실증분석 • 혼잡가설 검증
	2	• 과제명: 여성농업인 역할 변화와 정책과제 • 연구자: 강혜정·마상진(2007) • 연구목적: 여성농업인 활동 실태와 경제적 중요성 규명, 제약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	• 문헌조사 • 통계조사 • 통계계량분석 (잠재임금추정) • 설문조사	• 여성농업인 활동영역별 실태와 특징 분석 • 여성어업인 역할에 대한 가치평가 • 활동영역별 제약요인과 정책수요 분석

구분		연구 제목 및 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3	• 과제명: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의 변화 • 연구자: 사명철(2015) • 연구목적: 성별 직종분리 지수 변화 추이 및 변화 원인 규명	• 문헌조사 • 실증분석	• 성별 직종분리에 관한 인적자본론·노동시장 분단론·젠더이론 검토 • 성별 직종분리 지수 분해
	4	• 과제명: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에 관한 여덟 가지 질문 • 연구자: 신경아(2016) • 연구목적: 젠더 관점에서 여성 노동시장 변화에 관한 연구 동향 검토, 주요 쟁점 도출	• 문헌조사	• 여성노동 연구 동향과 젠더 관점의 검토 •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 • 여성 노동시장의 주요 쟁점 도출
여성 지위 관련	1	• 과제명:Indicators of Gender Equality for American-States and Regions • 연구자: Sugarman and Straus(1988) • 연구목적: 여성의 지위 수준 확인을 위한 남녀평등 지수 산출	• 문헌조사 • 통계자료분석 • 국내·외 사례분석	• 여성의 지위 개념 • 양성평등지수 도출
	2	• 과제명: Toward an Integration of Theory and Research on the Status of Women • 연구자: Bradley and Khor(1993) • 연구목적: 여성 지위에 관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고찰 및 규명	• 문헌조사 • 국내외 사례분석	• 지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여성의 지위 범위와 구조 • 여성의 지위 구성요소
	3	• 과제명: 경제개발과 여성의 지위 -한국의 사례- • 연구자: 이금순(1994) • 연구목적: 산업화 시기 경제개발과 여성의 동등한 지위 확보 간의 관계 규명	• 문헌조사 • 통계자료분석 • 국내·외 사례분석	• 산업화가 여성에게 미친 영향 • 한국 여성의 경제참여 실태 • 한국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관한 통계분석
	4	• 과제명: 한국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 진보와 반동	• 문헌조사 • 통계자료분석	•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정의 및 성평등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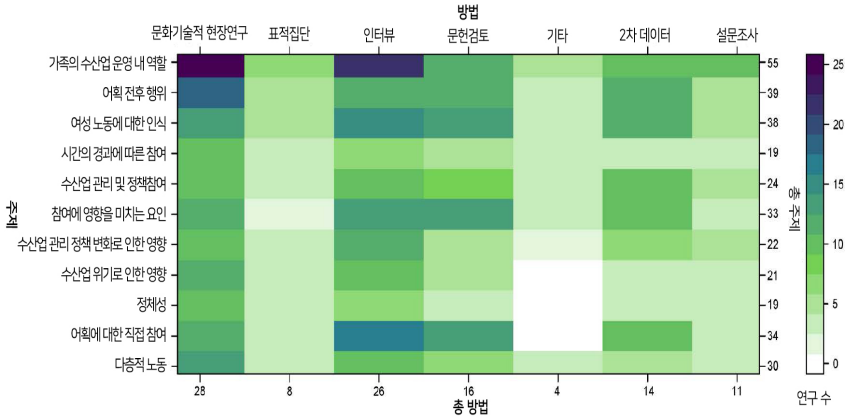
구분		연구 제목 및 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연구자: 김영란(2010) • 연구목적: 여성 지위변화 추적 및 정책방향 제안	• 국내·외 사례분석	• 데이터를 통한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변화(정치·경제·인권) 추적
본 연구		• 남성 중심의 어업 구조 속에서 여성어업인의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어업인 역할과 기여를 가시화 • 이를 바탕으로 여성어업인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함 • 나아가 어업 내 성 주류화를 실현하고, 여성어업인 친화형 수산업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문헌조사 • 통계자료 분석 • 실증분석 (성 분절지수 도출, 여성어업인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 추정) • 남녀어업인 대상 노동환경 실태 및 시간활용현황 조사 • 전문가 자문 • 현장 및 면담조사	• 국내외 여성어업인 관련 정책 동향 • 여성어업인 현황과 어업 노동시장 구조 • 여성어업인 노동환경 실태 • 여성어업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자료: 저자 작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우리나라 여성어업인 선행연구는 최성애·황진회·엄선희(2005)로 시작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으며, 여성어업인 관련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어가 여성인구를 통한 규모 추정,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국외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이루어지는데, FAO 등 공신력을 갖춘 관련 통계가 부재함에 따라 현장조사와 면담조사 등 정성적 연구 방법을 통해 여성어업인의 역할과 기여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 또한 제한된 여건 아래 여성어업인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요를 도출하기 위해 통계자료분석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림 1-2〉 여성의 수산업 참여 관련 기존 연구의 주제 및 조사방법



자료: Szymkowiak and Rhodes-Reese(2020), p. 7.

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최성애·황진회·엄선희(2005), Zhao, M. *et al.*(2013), 엄선희 외(2016), 이창수·박지훈(2017)은 통계자료분석과 설문조사 등 정성적 연구 방법을 통해 여성어업인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에 나아가 본 연구는 어업 노동시장 내 성별에 따른 구조적 기재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성분절지수를 도출하고, 업종별 성별 직종분리현상이 발생하는지 실증 검증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 국내 선행연구와 달리 실태조사를 행함에 있어 남녀어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어업인 성별에 따른 노동환경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 어업인 하루 평균 생활시간 활용 현황을 조사하여 어가 내 여성어업인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2019년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를 바탕으로 시간활용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설문 결과를 통해 어업인 성별에 따른 노동시간을 제시하고, 여성어업인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어가 내 여성어업인의 기여를 가시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02
국내외 여성어업인 관련 정책 동향

제2장에서는 여성어업인과 관련된 국내외 논의 동향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여성어업인 정책의 현황 및 한계점을 점검하고자 한다. 제1절에서 여성인권 및 여성노동권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선행하고, 노동의 질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 여성노동권과 관련성이 큰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여성어업인 노동정책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기 위해 여성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과 협약을 검토하고, 여성어업인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여성노동권에 대한 이해와 국제 논의 동향을 바탕으로 여성노동권과 관련된 국내 주요 법·제도 및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여성어업인 관련 법·제도의 변천과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정책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기존 정책이 갖는 한계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1절 여성, 여성어업인 관련 국제 논의 동향

1. 여성 노동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여성인권과 여성노동권의 개념

(1) 국제사회와 여성인권[18)]

과거 인권이란 '자국 국민에 대한 국가의 대우방식'으로 이해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과 1950년대 UN 인권활동을 계기로 국제적 인권논의와 인권체제가 확립되었다.[19)] 국제사회의 여성운동은 여성인권담론이 지구적 합의라는 정당성을 부여하였으며, UN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이하 UDHR) 등에 결실로 나타났다.[20)] 이는 여성과 남성 간의 공식적·법적 평등과 인간 평등을 위한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규약으로 평가된다.[21)]

일부 조약을 통해 여성의 권리가 명문화되었지만, 여성인권의 실질적 실현과는 차이를 보였다. 1979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CEDAW)은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여성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장전으로 평가된다. 동 협약에서 여성차별은 성평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저해,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갖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등으로 정의한다.[22)] 다만, 동 협약은 여성권리를 비차별 평등주의(Equality based on

18) 각 지침의 세부 내용은 부록1 참조
19) 허민숙(2013), pp. 101~103.
20) 위의 책, pp. 101~102.
21) 위의 책, p. 104.
22) IWRAW(검색일: 2021. 6. 4)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에 입각하여 공식적인 정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근거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는 점에서 남성 경험을 기준으로 한 성 중립적 원칙을 여성에게도 적용한다는 한계를 가진다.[23] 이에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성 중립적 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간과되거나 무시된 여성의 경험을 반영한 새로운 인권 개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24]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대회를 기점으로 여성인권 문제가 세계인권 논의의 핵심과제로 부상하였다. '여성의 권리가 인권이다(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라는 선언 아래 UN 활동 전반에 여성운동의 주류화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세계 인권운동사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권운동의 여성화'로 표현된다.[25] 동 대회 선언문인 북경행동강령(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은 여성의 권한 강화(Women's Empowerment)를 아젠다로 내세우며, 남녀가 모든 영역에 등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개선하고, 인권을 증진 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여성운동은 남녀의 동등한 대우를 전제로 하되 여성으로서 누려야 할 '차이'를 권리로 발전시켜야 함을 시사하였다.[26] 나아가 동 대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성평등을 규정하였으며, 젠더(Gender), 평등(Equality), 여성권한 강화(Empowerment)라는 표현 확립의 계기가 되었다.

2015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해 수립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또한 성평등과 여성인권 증진을 주요하게 다룬다. SDGs는 선언문 서두에서 성평등과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강조하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23) 허민숙, 앞의 책, p. 104.
24) 허민숙, 앞의 책, pp. 104~105.
25) 강남식(2002), p. 79.
26) 위의 책, p. 86.

차별·폭력 척결을 선언하였다.[27] 17개 목표 중 SDGs 5번은 '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을 강화한다(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를 목표로 여성 및 여아의 건강관리, 양질의 일자리 제공, 정치적 참여 기회 확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해관행 근절 등을 세부 목표로 제시한다. SDGs 5번 외에도 총 10개의 목표[28]에서 여성, 여아, 성격차, 모성사망률, 임산부, 성평등, 성 인지적 관점 등 여성인권 관련 문제를 다룬다.

북경행동강령, SDGs는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성 주류화를 강조하였는데, UN 경제사회이사회는 성 주류화란 모든 정책, 프로그램 등을 입안·시행함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필수 요소로 고려하여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근절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의하였다.[29] 즉, 성 주류화란 여성정책을 넘어 일반 정책까지도 성차별적인 기존 제도의 부당성을 인식하는 관점에서 정책의 성별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불평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30]

이처럼 국제사회의 여성인권담론은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비차별 평등주의에서 여성으로서 삶의 경험과 그 차이까지 고려한 궁극적 성평등 달성으로 발전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또한 법·제도적 차원에서 성평등을 명문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정책 추진을 통해 여성으로서 누려야 할 차이를 여성이 갖는 권리로 보장하고, 정책 시행으로 인한 성별에 따른 영향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27) UN(2015), pp. 10~11.
28) 17대 목표 중 독자 목표인 SDGs 5 외에도 아래 10개의 목표에서 여성인권 관련 문제를 다룸 SDGs 1(빈곤퇴치), SDGs 2(기아 해소), SDGs 3(건강과 복지), SDGs 4(양질의 교육), SDGs 6(깨끗한 물과 위생), SDGs 8(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s 10(불평등 감소), SDGs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SDGs 13(기후 행동), SDGs 17(글로벌 파트너십)(자료: 신혜수(2017), pp. 55~56)
29) 신혜수(2017), p. 51.
30) 허라금(2008), p. 46.

(2) 여성인권 개념과 여성노동권[31]

인권의 개념과 범주는 인류의 역사 발전과 함께 범위가 확장되어 왔으나,[32] 기존의 인권 개념은 가치중립을 표방하며 인간으로서의 보편성과 여성으로서의 특수성이 동시에 고려되지 않은 한계점을 갖는다.[33] 여성주의자들에 의해 구체화된 여성인권 개념은 소극적 개념과 적극적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여성인권 문제로 인식하는 적극적 개념이 소극적 개념을 포괄한다.

소극적 개념은 기존 인권논의가 공적영역에서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에 주안점을 둠에 따라 여성인권 침해가 주로 발생하는 사적영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사적영역 문제 또한 인권 문제로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34] 적극적 개념은 '여성의 권리가 인권이다'라는 의식 아래 여성으로서 누려야 할 차이 또한 인권의 한 부분으로 보고, 여성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 또한 여성인권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35] 적극적 개념 필요성의 예로 모든 분야의 고용평등이 법적으로 보장되더라도 여성들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 구조, 재생산 노동 전담 등으로 전통적 여성 직종에 집중되고, 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도입 의미가 퇴색됨을 이해하는 것이다.[36]

여성인권의 구체적 분야 또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많은 여성주의자들은 근대적 인권 논의에서 가족과 여성 영역이 사적영역으로 간주됨에 따라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이분화되었으며, 여성을

31) 강남식(2002), 김혜영(2003)에서 상당 부분을 발췌·인용함
32) 강남식(2002), p. 79.
33) 김혜영(2003), p. 16.
34) 위의 책, p. 16.
35) 위의 책, p. 17, 재인용: 심영희(1998), pp. 250~252.
36) 강남식, 앞의 책, p. 86.

사적영역에 귀속시켜 공적영역에서 배제시켜 왔다고 비판하였다.[37] 특히, 여성인권의 대표적 석학인 MacKinnon, C. A.(1993)은 보편적 인권의 개념과 원칙을 논의·실천함에 있어 여성이 광범위하게 배제된 점을 지적하고, 형식적 평등 개념이 실질적 평등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여성인권담론 아래 여성노동권 또한 공적영역의 소극적 관점에서 사적영역의 적극적 관점까지 확장되었다. 공적영역에서의 소극적 관점은 여성이 일할 기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형식적 권리로서, 모집, 배치, 승진, 임금 등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공적영역에서의 적극적 관점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평등한 조건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육아와 가사노동의 사회화 등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38]

여성노동권을 사적영역으로 확장하면, 소극적 관점은 여성이 가사노동과 사회적 노동을 선택함에 자발적 선택이 가능하여야 하고, 이러한 선택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불평등한 지위에 놓이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적극적 관점은 소극적 관점에서 나아가 가정 내 가부장제의 억압과 성별분업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적 노동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 자신의 진정한 선택으로 혼인, 임신, 출산할 권리가 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여성이 임금노동이나 가사노동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이는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는 여성의 출산 자유권이 실현되기 위해 어떠한 차별도 동반하지 않는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39]

이처럼 여성노동권은 여성이 동등하게 일할 권리를 명문화한 공적영역의 소극적 관점에서 가부장제적 억압과 성별분업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보장하는 사적영역의 적극적 관점까지 발전하였다.

37) 강남식, 앞의 책, p. 86.
38) 강남식, 앞의 책, p. 89.
39) 강남식, 앞의 책, p. 89.

2) 양질의 노동에 관한 개념

(1) 국제사회와 양질의 노동

노동에 관한 화두가 고용의 여부인 '일을 하는 것'에서 노동의 질인 '어떤 일을 하는지'로 이동함[40]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접근 또한 고용률 제고 등 양적 측면에서 노동에 대한 적정 보수와 근로환경과 같은 질적 측면으로 확장되었다. 노동의 질에 관한 논의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가 1998년 제87차 국제노동회의를 통해 '전 세계인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의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EU의 일자리의 질(Quality of job), OECD의 더 나은 일자리(Better job)에 관한 개념 등이 제시되었다.[41]

ILO가 정의한 양질의 노동(Decent work)은 '자유롭고 공평하며 안전하고 인간적 품위가 존중되는 조건 속에서 남녀 모두 종사하는 생산적인 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양질의 노동, 괜찮은 노동, 일다운 일, 괜찮은 일자리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고 있다.[42] 〈표 2-1〉과 같이 ILO는 양질의 노동을 일곱 가지 주요 개념과 11개의 세부 영역으로 정의하였는데, 생산적인 노동 활동이 양질의 노동을 구성하는 주요한 개념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즉, 양질의 노동 개념에서 제시되는 노동 관련 기준들은 생산성 증진을 통한 성장 논리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고용 수준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도구로 평가할 수 있다.[43]

ILO는 양질의 노동 개념을 모든 인류의 노동권이라는 종합적이고 포용

40) 박광옥(2016), p. 126.
41) 박은하(2011), pp. 3~4.
42) Decent work에 관한 적절한 한글 번역이 없으며, 상대성을 내포함에 따라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됨 (이상헌(2005), p. 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노동으로 번역·사용함
43) 황준욱(2005), p. 26, 재인용: ILO(2002), p. 163.

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반면, EU는 유럽 시장 내 노동시장의 분절에 주목하였다. EU는 유럽이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노동시장 안에서 높은 교육 수준과 기술력을 가진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간의 분절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높은 질의 일자리(High quality in work) 개념을 제안하였다.[44] 〈표 2-1〉과 같이 네 가지 주요 요소와 13가지 하위 내용을 바탕으로 일자리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계약과 직업훈련 여부, 임금 수준 등에 따라 장래성 없는 일자리[45], 저임금/저생산성 일자리[46], 합리적 수준의 일자리,[47] 양질의 일자리[48]로 구분하였다.[49]

OECD는 일자리의 질을 웰빙(well-being)[50]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보았는데, 일자리의 질을 가계와 개인의 웰빙 결정요인이자, 생산성, 노동시장 참가율, 경제적 성과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보았다.[51] 2015년 OECD 일자리 질의 프레임워크(Job Quality Framework)에 따르면 일자리의 질은 개인의 웰빙과 더 나은 사회적 성과라는 기본 원칙하에 임금의 질, 노동시장 안정성, 근로환경의 질로 구성된다.[52]

〈표 2-1〉과 같이 각 기구는 노동의 질 결정요인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고용 기회, 적절한 임금, 고용 안정, 안전한 작업환경,

44) 박은하(2011), p. 6, 재인용: EU(2001), p. 65.
45) 계약 없이 노동하며 직업훈련이 제공되지 않는 일자리(dead-end jobs)
46) 임금 수준이 국가 전체 임금 중위값의 75% 미만이지만,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고 직업훈련이 제공되는 일자리(low pay/productive)
47) 적절 수준의 임금과 생산성을 갖고 고용 안정성, 직업훈련, 진로 전망 중 한 가지라도 제공되는 일자리(job of reasonable quality)
48) 적절한 수준의 임금과 생산성을 갖고 고용 안정성, 직업훈련, 진로 전망 모두가 제공되는 일자리(jobs of good quality)
49) 위의 책, p. 6.
50)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임(두산백과(검색일: 2021.10.7))
51) 강은영(2017), pp. 200~201, 재인용: OECD(2015)
52) 위의 책, p. 202.

고용 평등 등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접근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EU와 OECD는 회원국 내 사회적 문제 개선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 ILO는 인류의 노동권이라는 개념 아래 전 세계인이 양질의 노동 기회를 갖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53]

〈표 2-1〉 국제기구별 노동의 질 개념과 세부 영역

구분	주요 개념	세부 영역
ILO	• 노동의 기회 • 고용선택의 자유 • 생산적인 노동 • 노동에서의 평등 • 노동의 안정성 • 노동에서의 존엄성 • 거시경제 사회적 합의	• 고용 기회 • 적절하지 않은 노동 철폐 • 적절한 소득 및 생산적 노동 • 적정한 노동시간 • 고용의 안정성 • 일·가정 양립 • 고용에서 공정한 대우 • 안전한 일자리 환경 • 사회 보장 • 작업장 및 사회적 수준의 대화 창구 • 양질의 노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맥락
EU	• 경력과 고용의 보장 • 노동자의 건강한 삶 유지 및 증진 • 기술의 발전 • 일과 생활의 조화	• 고용 지위 • 소득 • 사회보장 • 노동자의 권리 • 건강 문제 • 위험 노출 • 노동 조직 • 자격 요건 • 훈련 • 교육 체계 • 경력 발달 • 노동·비노동시간 • 사회적 인프라
OECD	• 임금의 질 • 노동시장의 안정성 • 근로환경의 질	

자료: 박은하(2011), pp. 5~7; 강은영(2017), pp. 202~206.

53) 박은하, 앞의 책, p. 7.

〈표 2-2〉 ILO 양질의 노동 세부 영역별 측정지표

세부 영역	측정 지표
고용 기회	•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 • 실업률 • 청년 실업률 • 비농업부문 임금노동 비율
적절하지 않은 노동 철폐	• 임금 노동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아동 비율 • 노동을 위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비율
적절한 소득 및 생산적 노동	• 주요 직종의 평균임금 • 부적절한 임금 비율 • 최근 직무 교육을 받은 근로자의 비율
적정한 노동시간	• 초과 근무 비율 • 단기직 근로자 비율
고용의 안정성	• 단기계약 근무자 비율 •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비율
일·가정 양립	• 초등학교 연령 이하 아동의 보호자인 여성의 고용률
고용에서 공정한 대우	• 경영, 관리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 성별에 따른 직종 비율, 근로조건의 차이
안전한 일자리 환경	• 근로감독관 비율 • 치명적인 업무상 부상 비율 • 산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비율
사회 보장	• 공공사회보장 지출 • 공공부조 지출 • 현금소득보조 수혜자의 비율 • 65세 이상 연금 수혜자의 비율 • 연금 기금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인구의 비율 • 월평균 임금액 비율(중위임금과 최소임금 대비)
작업장 및 사회적 수준의 대화 창구	• 노조 조직률 • 단체임금협상의 보장률 • 파업과 직장폐쇄 빈도
양질의 노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맥락	• 비공식 경제에서의 고용(비농업 또는 도시 고용비율)

주: 고용의 질 결정요인 중 국제기구별 공통요인은 굵게 표기함
자료: 박광옥(2016), pp. 129~130, 재인용: Anker, R. *et al.*(2003)

ILO 양질의 노동 개념은 황준욱(2005), 박은하(2011), 박광옥(2016) 등 많은 연구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범세계적인 접근방법이라 평가되었다. 특히,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포용적인 접근인 점,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리에 초점을 두는 점, 일자리 문제를 노동시장 내의 개별적 계약이 아닌 넓은 범위의 사회경제적 틀 속에서 이해하는 점 등을 들어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일자리 정책을 논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54]

나아가 이를 측정하기 위해 Anker, R. *et al.*(2003)가 제시한 세부 지표(〈표 2-2〉)는 사회경제적 평등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아래 임금, 노동시간 등과 같은 일자리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과 이들의 고용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55]

(2) 성별에 따른 양질의 노동 결정요인

박은하(2011)는 일자리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고, 양질의 노동 세부 영역 중 적절한 소득, 적정 노동시간, 고용 안정성, 사회 보장, 일·가정 양립 다섯 가지 요소를 주요하게 다루었다. 이 중 적절한 소득, 고용 안정성, 사회 보장은 상대적으로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 노동의 일반적 특성을 보인 반면, 적정 노동시간과 일·가정 양립은 여성노동권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적정 노동시간은 근로시간을 규정하여 노동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노동권의 기본적 수단이자 임금산정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활용되고, 노동과 여가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규정하여 인간적인 노동을 구현하

54) 박광옥, 앞의 책, p. 129.
55) 박광옥, 앞의 책, pp. 129~130.

는 주요 요소이다.[56] 이러한 적정 노동시간은 성별에 따른 상대적 개념으로 박은하(2011)에 따르면, 여성노동자들은 사회로부터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을 겸할 것을 요구받음에 따라 사적영역 활동을 수행할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해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7]

일·가정 양립은 노동활동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가치이다.[58] 황준욱(2005)은 여성노동자에게 사적영역 노동 부담이 가중된다면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하고, 이는 여성의 노동 만족도와 생산성 하락, 일자리 상실까지 야기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2. 여성 노동 관련 국제 논의 동향

여성인권과 여성노동권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대표적으로 각국의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고 여성인권 향상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지수를 공표하고 있으며, 여성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협약의 체결과 이행을 요구한다.

1) 성평등 국제지수[59]

성평등지수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지 평가하고, 성평등 수준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도구이다.[60] 각국의 성평등 수준을 평가, 비교하는 주요 지수로는 성불평등지수, 성개발지수, 성격차지수가 있다.

56) 황준욱, 앞의 책, p. 25.
57) 박은하, 앞의 책, p. 9.
58) 박은하, 앞의 책, p. 10.
59) 성평등지수별 세부 점수는 부록 1-2 참조
6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검색일: 2021. 8. 28)

〈표 2-3〉 성평등지수

구분	성불평등지수(GII)	성개발지수(GDI)	성격차지수(GGI)
발표기관 (연도)	UNDP(2010년)	UNDP (1995년, 2014년 수정발표)	WEF(2006년)
목적	성불평등으로 인한 인간개발 손실을 측정	인간개발수준에서 성별 격차를 추정	주요 지표의 성별 격차 측정
지표구성	• 생식건강 • 여성권한 • 경제활동 참가율	• 건강한 삶 • 교육(지식) • 적절한 표준 삶	• 경제참여와 기회 • 교육적 성취 • 건강과 생존 • 정치권한
특징	• 남녀의 수준과 격차를 함께 고려함 • 불평등이 높은 지표를 개선하면 더 높은 효과를 나타냄	• 지표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HDI 점수 성비로 측정함 • 남녀의 성취 수준이 동일할 경우 GDI 점수와 HDI 점수는 동일함	• 모든 지표를 성별 격차(성비)로만 측정함 • 국가별 발전 상태를 고려하여 성평등을 측정함
2020년 순위	189개국 중 11위 (0.064점)	0.936점(3그룹)	156개국 중 102위 (0.687점)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검색일: 2021. 8. 28)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이하 GII)는 각국의 성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기존 지표인 여성권한 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와 남녀평등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를 대체·개발되었다. 동 지수는 성불평등으로 인해 각 지표에서 발생하는 인간개발의 손실을 측정하는 것으로 점수가 0에 가까울수록 완전 평등(no inequality)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189개국 중 11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하였는데, 이는 여성권한 영역 지표[61] 하락에 따른다.[62]

성개발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이하 GDI)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이하 HDI)와 같이 건강한 삶, 교

61) 여성의원 비율, 중등 이상 교육인구 비율(부록 1-2 참조)
62) 부록 1-2 참조

육, 적절한 표준 삶 영역으로 구성되며, 남녀의 성취 수준을 성비로 측정한다. GDI 값이 1보다 작다면 여성의 인간개발지수가 남성에 비해 낮은 것을 의미하고, GDI 순위는 성별 격차에 따라 5개 그룹[63]으로 구분된다. 2020년 우리나라의 HDI 점수는 여성 0.881점, 남성 0.941점으로 GDI 점수는 0.936으로 나타나 전년과 동일한 3그룹에 위치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HDI 순위 대비 GDI 순위가 낮은데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성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교육부문과 적절한 표준 삶 부문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점수가 높고, 적절한 표준 삶을 측정하는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이하 GNI) 또한 성별에 따른 격차가 커 GDI 순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64]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에서 발표하는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이하 GGI)는 기본적 권리인 건강, 교육, 경제참여, 정치 권한 부여 등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국가 내에서 자원과 기회에 접근하는 성별 격차를 측정하는 것으로 '수준(level)'보다 '격차(gap)'를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GGI 점수는 1에 가까울수록 성별 격차가 적은 것을 의미하며, 0에 가까울수록 성별 격차가 심각함을 의미한다.[65] 2020년 우리나라는 102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6순위 상승하였는데, 정치 권한 부문에서 여성장관 비율과 관리직 비율 상승이 주된 원인이다.[66]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지수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지수를 측정하는 목적과 구성 지표의 차이에 따른다. 다만, 전술한 지수 모두에서

63) GDI 순위 구분: 1그룹(0.975 이상), 2그룹(0.950~0.975 미만), 3그룹(0.925~0.950 미만), 4그룹(0.900~0.925 미만), 5그룹(0.900 미만)
6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검색일: 2021. 8. 28.), 부록 1-2 참조
65) 김선화·이재영(2020), p. 7.
6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검색일: 2021. 8. 28.), 부록 1-2 참조

우리나라는 성별에 따른 권한[67] 수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여성의 권한 수준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성별에 따른 권한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2) 여성노동권에 관한 ILO 협약

ILO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노동현장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차별인 점을 인지하고 설립 초기부터 성차별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다. 대표적으로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가치노동에 동일보수 제공을 규정한 제100호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제111호 차별협약의 주요한 차별 이유 중 한 가지로 성별을 다룬다.[68] 이 외에도 여성노동권과 관련하여 가족부양에 관한 제156호 협약, 여성의 임신, 출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183호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중 우리나라는 〈표 2-4〉와 같이 제100호, 제111호, 제156호 협약을 비준하였다.[69]

〈표 2-4〉 여성노동권 보장을 위한 ILO 주요 협약

분야	협약	연도	비준(년도)
차별금지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년	비준('97)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년	비준('98)
가족부양	제156호 가족부양의무 근로자 협약 (Workers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Convention)	1981년	비준('01)
모성보호	제183호 모성보호 협약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2000년	-

자료: 신동윤(2020), p. 26; 한국노동연구원(2003);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검색일: 2021. 8. 28) 재구성

67) GII 여성권한 영역, GDI 교육과 적절한 삶, GGI 경제참여 및 기회, 정치적 권한 영역
68) 한국노동연구원(2003), p. 106.
69) 노사발전재단(2010), pp. 169~171.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등보수 지급을 규정한 것으로 노동인권법의 기본원칙이자 임금에서의 평등대우원칙을 구현하는 방안이다.[70] 동 협약 제2조는 동일가치노동의 동등보수 원칙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여야 함을 명문화하였다.[71] 동 협약은 성평등의 초석을 마련하고, 차별금지라는 큰 틀에서 서로 비교 가능한 자격을 가진 남녀의 소득 차이, 직장 내 차별, 여성의 일에 대한 저평가 문제, 재생산 노동을 책임지는 근로자에 대한 평등 도모에 기여한다.[72]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은 고용과 직업에 있어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노동입법의 역할을 명시한다.[73] 동 협약에서 차별이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사회적 배경을 이유로 고용과 직업에서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무가치하게 만들거나, 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구분(Distinction), 배제 (Exclusion), 선호(Preference)로 정의된다.[74]

제156호 협약은 결혼,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것이다. 동 협약은 남녀근로자가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차별당하지 않고, 직업과 가족부양 책임 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규정한다.[75] 또한, 가족부양 책임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함을 명문화하였다.[76]

70) 김엘림(2003), p. 1.
71) C100. Article 2: 1. … ensure the application to all workers of the principle of equal remuneration for men and women workers for work of equal value.
72) 한국노동연구원, 앞의 책, p. 103.
73) C111. Article 3: (b) to enact such legislation and to promote such educational programmes as may be calculated to secure the acceptance and observance of the policy; (c) to repeal any statutory provisions and modify any administrative instructions or practices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 policy.
74) 한국노동연구원, 앞의 책, p. 92.
75) 고용노동부(2012), p. 713.
76) C156. Article 8: Family responsibilities shall not, as such, constitute a valid reason for termination of employment.

제183호 모성보호 협약은 여성근로자의 출산과 모성보호를 목적으로 각국이 지향해야 할 법·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동 협약은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휴가, 휴가 중 급여 및 지원, 육아시간 보장, 모성휴가 중 해고제한 등을 규정한다.[77]

2021년 ILO 협약적용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는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협약 이행 정도를 평가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제100호 협약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78] 특히, 노동시장 내 남녀의 임금 격차가 지속되고, 그 금액의 차이가 커 현존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이행으로 제100호 협약을 실현하는 데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79] 제156호 협약과 관련해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대상이 모든 사업체로 확대되고,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편 휴가 기간이 10일로 늘어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이러한 가족 친화적 조치들이 여성노동자에게 가족 내 돌봄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권고하였다.[80]

3. 여성어업인 관련 국제 논의 동향

여성어업인에 관한 국제 논의는 UN 식량농업기구(이하, FAO) 성평등 정책(Gender Equality Policy)을 제외한다면 산발적·소극적 수준에 그친다. 성평등을 강조한 SDGs에서도 해양수산분야의 경우 여성문제를 다루지 않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FAO는 성평등 정책을 개정하였다.

77) 김수군(2015), pp. 37~40.
78) ILO(2021), p. 491.
79) 매일노동뉴스(2021. 2. 18)
80) 위의 자료

1) FAO 여성어업인 관련 정책 동향

(1) FAO 성평등 정책

FAO 성평등 정책[81]은 여성어업인을 비롯하여, 식량생산·자원분배·지역개발 등 1차 산업 전 분야를 포괄하는 국제규범적 성격을 갖는다. FAO의 여성 관련 주요 아젠다는 권리신장과 차별철폐로, 2013년 수립한 성평등 정책을 통해 여성권리 향상과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규범을 제시하였다. 동 정책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농촌개발에서의 성평등 달성, 기아와 빈곤 해소'로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회원국 참여 확대와 규범 및 표준 개발과 같은 기반 확립을 목적으로 하였다.[82]

2020년 FAO는 성평등 정책을 개정하였는데, 기존 정책목표를 계승하는 동시에 세부 목표는 UN SDGs와 연계하여 향후 10년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표 2-5〉 참조). FAO는 성격차의 원인으로 고정관념과 같은 사회적 인식을 꼽았으며, 가부장적 사회적 인식이 경제주체로서의 여성 역량강화를 제약하는 것으로 보았다.[83] 또한, FAO는 여성의 권리향상을 위해서는 일과 생활 전반의 여성 접근성 확대, 남녀 동등한 권한과 통제력 확보, 성별에 상관없이 소득과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81) FAO의 성평등 증진 역할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UDHR)과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바탕 회원국 여성의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협의에 기인함
82) FAO(2013), p. 7.
83) FAO(2020), pp. 3-4.

〈표 2-5〉 FAO 성평등 정책 2020-2030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정책목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농촌개발에서의 양성평등 달성 및 기아와 빈곤 해소
세부 목표 및 SDGs 연계 내용	**세부 목표 1. 여성과 남성은 법률체계·정책·프로그램 구성과 관련하여, 지역의 기관·조직에서 동등한 자격 및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 SDGs 관련 목표: 5. 양성평등, 10.불평등 완화 - 5.1: 여성 및 소녀를 대상으로 한 모든 차별을 철폐 - 5.5: 정치, 경제,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 보장 - 5.c: 여성과 소녀의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 및 법안 강화 - 10.2: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강화하고 증진
	세부 목표 2. 여성과 남성은 자연 및 생산요소에 대한 통제, 지속가능한 농업 및 지역 개발의 기여와 수혜를 받는데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SDGs 관련 목표: 1. 빈곤증식, 5. 양성평등, 13. 기후변화 대응 - 1.4: 남녀, 빈곤층, 취약계층에 자원 및 서비스에 관한 동등한 권리·통제권 부여 - 5.A: 여성의 경제 및 기타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권리 부여 - 13.b:여성·청년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의 효과적 계획, 관리를 위한 역량 증진
	세부 목표 3. 여성과 남성은 서비스, 시장, 양질의 일자리에 관하여 동등한 접근 권한을 가지며, 소득과 이익에 대해서도 동등한 통제 권한을 가진다. SDGs 관련 목표: 2. 기아 해소, 지속가능 농업, 8. 일자리 및 경제 - 2.3: 여성, 주민, 가족농, 목축민, 어민 등의 생산성과 소득 2배 증대 - 8.5: 남녀의 완전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동일노동 및 동일 임금 달성 - 8.8: 이주근로자, 여성이주자 권리보호
	세부 목표 4. 여성의 기술, 실습,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부담은 가사일을 포함하여 공평한 책임분배를 통해 감소한다. SDGs 관련목표: 5. 양성평등, 11. 지속가능 도시 - 5.4: 공공서비스, 사회보장정책 등을 통한 무급양육 및 노동 중요성 인식 - 5.b: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 이용을 증진 - 11.2: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 제공

자료: FAO(2020), pp.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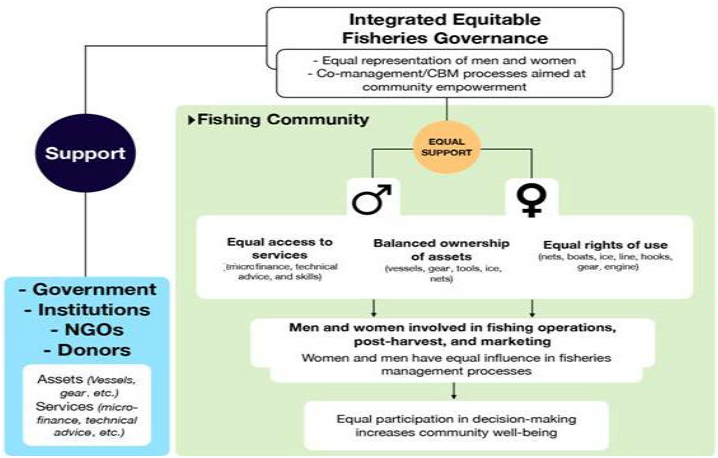
(2) FAO의 여성어업인 관련 논의 동향

FAO는 성평등 정책 추진과 더불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달성과 남녀 평등한 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여성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다룬다. 2019년 FAO 제17차 COFI 수산물 교역소위원회(Sub-Committee on Fish Trade of the Committee on Fisheries)는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 달성

및 생계유지를 위한 소규모어업(Small-Scale Fisheries)의 중요성을 밝히고, 소규모어업 종사자들의 수산자원과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SDGs 14.b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여성어업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84]

이에 앞서 2015년에는 소규모어업에서 여성의 역할을 유형화[85]하고, 역할과 기여를 수산업 가치사슬 전반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남성 중심의 수산업 의사결정 구조의 편향성을 진단하고, 여성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는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하였다.[86] 2016년에는 '어업·양식업에서의 성평등 진흥을 위한 리플릿'을 통해 수산업 내 여성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과소평가 문제를 지적하였다. 나아가 수산분야 전반에 걸쳐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87]

〈그림 2-1〉 성평등한 수산분야 의사결정 체계



자료: FAO(2015), p.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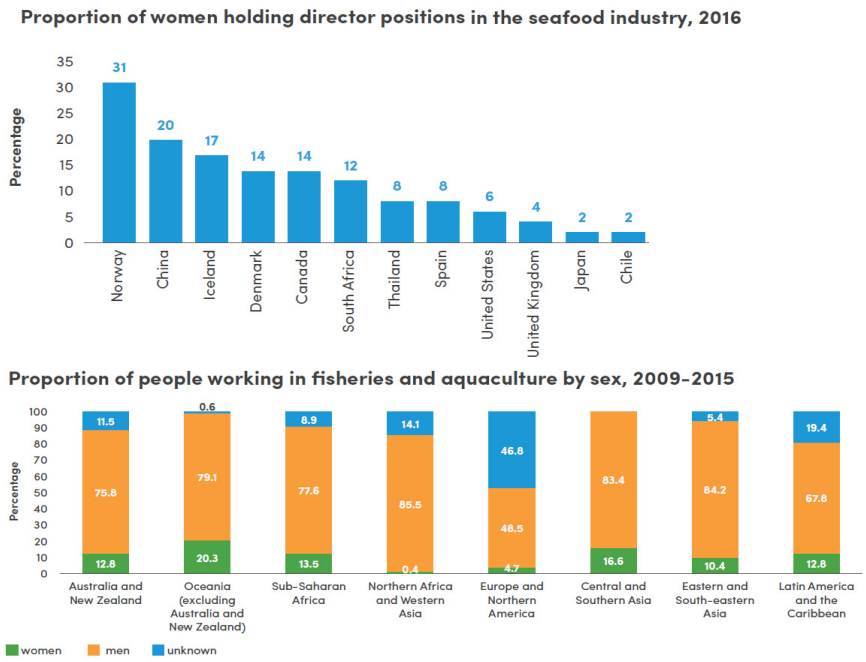
84) FAO(2019), p. 4.
85) 1. 주 참여자(Primary user): 수산물을 직접 어획·생산하는 여성
2. 2차 참여자(Secondary user): 가족 또는 친족이 어획·생산한 수산물을 취급하는 여성
3. 3차 참여자(Tertiary user): 어업인 또는 유통업자에게서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는 여성
86) FAO(2015), pp. 10-11; p. 23.
87) FAO(2016), pp. 1~4.

2) 국제사회의 여성어업인 논의 동향

(1) UN 여성기구의 수산분야 성별 직종분리 현상 지적

FAO 외 여성어업인에 관한 논의는 산발적으로 이뤄졌으나, 여성어업인이 수산업 내 특정 직종에 집중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점을 공통적으로 다루었다. UN 여성기구(UN Women)는 수산업이 여성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어업과 양식어업 등 생산분야에서 직종분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세계적으로 여성들은 산업 내 주요 부문인 생산분야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직종에는 참여가 제한되고, 주로 가공단계에 참여가 집중된 점을 지적하였다.

〈그림 2-2〉 국가별 수산업 내 여성의 종사 비율과 의사결정 권한 직종 종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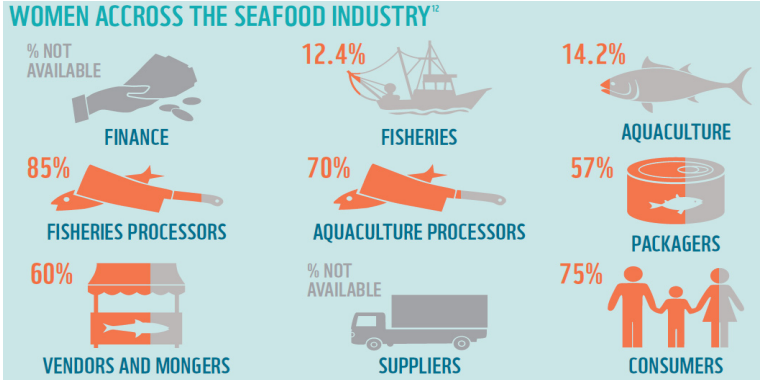
자료: UN WOMEN(2018), p. 122

또한, 현행 수산분야 통계에서 성별 관련 정보와 데이터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여성의 산업적 기여와 수산자원 보존에 대한 노력을 규명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인 SGD 14(Life Below Water)에서 성평등과 여성 관련 이슈를 다루지 않는 점을 들어 수산분야에서 여성문제가 도외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수산업 여성종사자 현황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직종 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과 지역별·성별 종사자 비율을 제시하였다.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여성의 비율이 높은 국가로 노르웨이, 중국, 아이슬란드, 덴마크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오세아니아, 중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2) 세계자연기금의 수산분야 여성역할 증진의 필요성 강조

세계자연기금(WWF)[88]은 해양·수산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달성을 위해 여성의 역할 증진을 강조한다.

〈그림 2-3〉 전 세계 수산업 분야별 여성 종사 비율



자료: WWF(2019), 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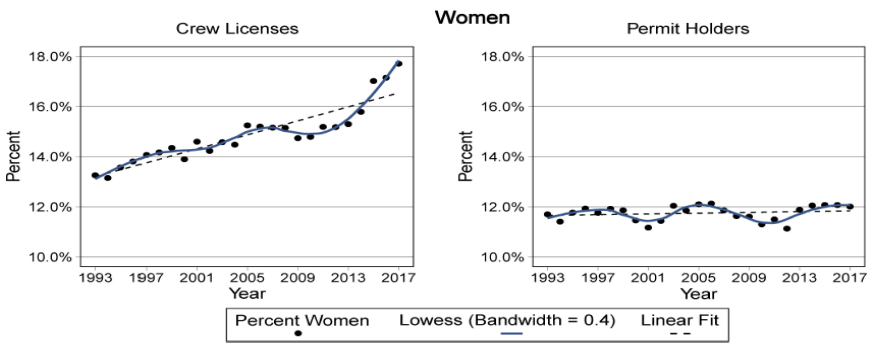
88)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정부 자연보호 국제기구로, 해양, 담수, 야생동물, 기후 에너지, 식량, 산림 등 종합적인 보전 활동을 수행함

2019년 정책설명 자료에서는 전 세계 수산업에서 나타나는 성별 직종분리 현상을 조명하였는데, 수산업 내 여성종사자들은 주로 가공·포장·판매 등 어획 후 처리 과정에 종사하고 있으며, 생산(어업·양식)과 금융활동 등 의사결정 권한이 주어지는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환경보존 측면에서 여성들이 자원보호와 환경개선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발·보존 정책에서 여성의 권한 증진과 성평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89]

(3) 미국 해양대기청의 어업분야 성격차에 관한 연구

2020년 미국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이하 NOAA)은 알래스카 지역을 중심으로 어업분야의 성격 차에 관해 연구하였다. 동 연구는 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성인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북미와 유럽지역의 수산·경영·여성 등에 관한 정량·정성적 자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알래스카 지역 어업에서 여성 종사자의 참여 비율을 추정하였다.

〈그림 2-4〉 알래스카 지역의 여성 선원 면허증 및 어업허가권 비율 추정



자료: Szymkowiak and Rhodes-Reese(2020), p. 10

89) WWF(2019), pp. 2-10.

주요 결과로, 알래스카 어업 허가권과 선원 면허증을 소지한 여성의 비율은 각각 13%, 18% 내외로 추정되어 생산분야의 여성 참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산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상징하는 허가권의 여성 소지 비율 증가폭은 선원 면허증 증가폭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OAA는 여성의 기여가 과소평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어업 내 여성의 기여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데이터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기존 여성어업인 연구는 개발도상국 소규모어업의 성격차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동 연구를 통해 선진국 어업분야에서도 성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제2절 여성어업인 관련 국내 법·제도

1. 우리나라 여성노동 관련 법·제도[90]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1980년대 국가발전을 위한 여성인력 개발을 시작으로 1990년대 성차별 근절, 2000년대 여성 진출 지원 및 성 주류화 제도로 발전하였다.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남녀 고용평등 강화 정책 등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노동분야의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 확립 노력으로 평가된다.[91]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노동 정책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을 주축으

90)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정책용어가 양성평등으로 통일되었으나 '양성'이라는 표현이 성별이분법을 재생산하고, 제3의 성과 동성애자 등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이어짐(여성신문(검색일: 2021. 10. 20)).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본 절의 정책용어를 서술함에 있어 '양성평등' 용어를 혼용함

91) 여성가족부(2015), pp. 10~14.

로 각 중앙부처를 통해 분야별로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1)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정책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의 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92] 실현'으로 전환됨에 따라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었다.[93]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여성 역할 증진과 남녀평등한 사회 구축을 위해 수립된다.

여성가족부는 동 기본계획 실현 필요성으로 남녀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필요, 성별 고용격차 해소 및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 다각화 필요, 일·생활 균형을 갖춘 직장문화 정착 필요, 여성폭력 예방 및 대응강화 필요를 제시하였다.[94] 노동활동에 관한 세부 정책은 여성의 의사결정권과 대표성 향상을 위한 성 주류화 정책에서부터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지원을 촉진하는 삶의 질 분야까지 복합적으로 구성되었다.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은 대국민 의견수렴[95]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가사·육아에서의 남성 참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개선을 신규 과제로 도출하였다. 특히, 일자리 진출과 경력관리 등 고용 전반에서의 양성평등 제고를 통해 사회 구조적 성별 격차 해소에 주안점을 둔다.[96]

92) 양성평등(성평등) 정의: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양성평등법」 제3조)
93) 위의 책, p. 9.
94) 여성가족부(2018), p. 9.
95)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 발굴을 위해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2016년 9~10월)와 대국민 양성평등 아이디어 공모전(2017년 6~9월)을 진행함
96) 위의 책, p. 14.

〈표 2-6〉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변화(1차~2차)

구분		제1차 기본계획('15~'17년)	제2차 기본계획('18~'22년)
비전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목표		• 성별격차 해소 • 일과 가정의 조화 • 차이와 인권 존중	•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 일과 생활의 균형 • 여성안전과 건강 증진
분야별 추진방향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 학교 교육, 미디어, 생활 속 양성평등 확산	•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 언론·미디어 등 전문인력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 청년, 재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 확대 등 고용기회 확대 •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활성화	• 공공부문 중심 대표성 향상	•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 여성임원 비율 공개 등 민간부문 대표성 향상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자녀 돌봄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일·가정 양립 지원	•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지원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 오프라인 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	•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 등 신종 여성폭력 근절 • 성인지적 건강증진 정책 기반마련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양성평등위원회(분과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제도 연계, 성인지 교육 의무화	•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체계 마련

자료: 여성가족부(2018). p. 15

(2)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정책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노동환경 정책을 관장하는 중앙부처로 여성의 노동활동과 관련된 세분화된 정책이념을 제시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은 노동환경의 성평등 실현과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7〉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일자리 대책(제6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기본방향		
현장의 목소리에 초점을 두고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 경력단절 예방, 재취업 지원에 주력 –'22년까지 여성고용률 60% 달성 차별 없는 공정사회 구현–		
핵심분야	**정책과제**	**핵심 정책수단**
차별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	성차별 고용관행 타파	• 남녀고용평등법 등 全 사업장 적용 • 노동위에 성차별 권리구제 절차 신설 • 성희롱 관련 예방 및 감독 강화 • 전담근로감독관·고평상담실 등 인프라 확충
	양질의 일자리환경 조성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확대 및 점검 강화 • 기업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 등 임금격차 개선 • 고용영향평가에 성별평가 반영
경력단절 예방	출산·육아 사각지대 해소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 임신노동자 지원 강화 • 아빠육아 참여 확산 • 비정규직 출산급여보장 등 모성보호 강화 •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 중소기업 중심,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 대기업의 설치 의무 강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대대적인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 전개 • 가족친화인증 확대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고용유지 촉진	• 경단여성 재고용·고용유지 기업 세제지원 강화 •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경력단절여성 특화 취업성공패키지 도입 • 고학력 경단여성 특화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분야별 일자리 기회 확대	• 가사·돌봄서비스 시장 제도화 •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복귀 지원 강화 • 창업 및 사회적경제 분야 여성진출 확대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및 유연근무 활성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7), p. 9

〈표 2-7〉과 같이 제6차 기본계획[97]은 여성들에게 출산과 육아가 여전히 직장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과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98]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 고용의 실질적 확대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2) 여성농업인 정책 사례

(1) 여성농업인 정책 배경

농업분야 여성정책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인력의 노동 참여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시작되었다. 과거, 농업은 가족 협력적, 남성 위주 경영형태가 주를 이뤘으나, 산업화로 인한 농가 노동인구 부족으로 부부중심 경영이 불가피해지면서 농가 여성의 경제활동이 촉발되었다.[99] 특히, 1990년대 농촌은 기존 논벼 농사 외 채소·화훼·과수 등 원예작목 생산으로 영농형태가 다변화[100]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현장노동 참여가 더욱 증대되었다. 여성농업인의 산업적 중요성 증대로 2001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법을 근거로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전신인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01~'05년)'이 최초 수립되었다.

(2)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 경과[101]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2001년 근거법 제정 후 2021년까지 5차례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초기 여성농업인 정책 비전은 여성농업인의 역

97) 제6차 기본계획(2018~2022년)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여성 고용노동정책의 로드맵인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 대책」으로 대체함(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검색일: 2021. 6. 3))
98) 관계부처 합동(2017), pp. 5~8.
99) 정기환(1997), p. 26.
100) 정은미·김태환·박은지(2020), pp. 11~12.
101) 차수별 기본계획 세부 사항은 부록 2-1 참조

량강화와 지위향상, 삶의 질 제고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기존 정책 강화와 더불어 양성평등한 농촌사회 구축까지 확장되었다.

여성농업인 정책은 노동여건개선, 대표성 강화, 삶의 질 향상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히, 2016~2020년 추진된 제2차 기본계획은 공동경영주 제도를 도입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여성친화형 농기계 확대, 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급, 특수건강검진 도입 여건 조성 등 구체적인 정책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다만, 농업경영에서의 실질적 지위향상과 지자체 전담인력 확보, 지역조합 내 여성조합원 확대, 생활 속 양성평등 체감 등은 다소 미흡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102]

〈표 2-8〉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구분	주요내용
제1차 2001~2005년	비전: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지위향상·삶의 질 제고를 통한 건강한 농촌 가정 구현과 농업·농촌사회의 발전 *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강화,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촉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여성농업인 정책시스템 구축
제2차 2006~2010년	비전: 남녀 농업인이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제3차 2011~2015년	비전: 창조성·전문성·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직업적 지위와 권리향상, 전문 농어업 경영역량 강화,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정책추진 인프라 강화
제4차 2016~2020년	비전: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 *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제5차 2021~2025년	비전: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쉼터 *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정제고,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검색일: 2021. 6. 3)

102) 농림축산식품부(2020), pp. 7~8.

2021~2025년 시행되는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성 주류화 정책 내실화를 위해 농업 성별통계 생산, 농촌형 성평등 지표 개발 등 세부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범정부적 접근을 비롯하여 지자체, 여성농업인 단체 및 관련 조직간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여성농업인 참여 공동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여성어업인 관련 법·제도

1) 여성어업인 정책 배경 및 추진 경과

우리나라 기존 어업 정책은 수산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어업생산력 강화에 집중됨에 따라 노동력 공급 기반인 어촌, 어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어촌, 어가인구가 갖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이후 어가인구 감소, 어업 노동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시작되었다. 이러한 수산업 정책 변화는 1980~90년대부터 농가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농업 사례에 비해 다소 늦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103]

수산업 내부적으로 어가인구 감소에 따른 어업노동력 저하, 어촌계 소멸 우려에 따른 정책적 대안으로 여성어업인 육성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04] 다만, 주목할 점은 여성어업인의 어업생산 활동 종사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인지가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일례로 이창수·박지훈(2017)은 나잠어업, 맨손어업의 경우 오랜 기간 여성어업인의 참여 비중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어업활동을 가사노동의 연장선으로 보아 경제활동의 사후가치나 후생 관련 문제가 정책적

103) 이창수·박지훈(2017), pp. 13~17.
104) 이창수·박지훈·임종선(2019), pp. 3~5.

논의 대상에서 소외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동일한 1차 산업인 농업부문에서 여성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0년대 후반 들어서이나, 여성어업인은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정책 수혜의 대상으로 편입되었다.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신설되고, 농수산부문이 통합됨에 따라 여성어업인은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06~'10년)'의 정책 수혜대상으로 편입되었다.[105] '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11~'15년)'은 농어업 분야를 통합한 여성정책으로 여성어업인의 역할과 지위 향상, 경제활동 인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만, 동 기본계획의 많은 내용이 농업부문에서 파생된 것으로 어업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2013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해양수산부가 부활함에 따라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과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으로 이분되었다.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16~'20년)'[106]은 이전 정책의 연속성 부재와 성과관리 미흡 등 기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반성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는 1, 2차 기본계획이 여성농업인만을 정책 대상으로 수립되었고, 제3차 기본계획 또한 여성농어업인을 정책 대상으로 다룸에 따라 여성어업인만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기존 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그림 2-5〉 여성농업인,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 흐름



자료: 저자 작성

105) 이창수·박지훈, 앞의 책, p. 4.
106) 제4차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본 절에서 후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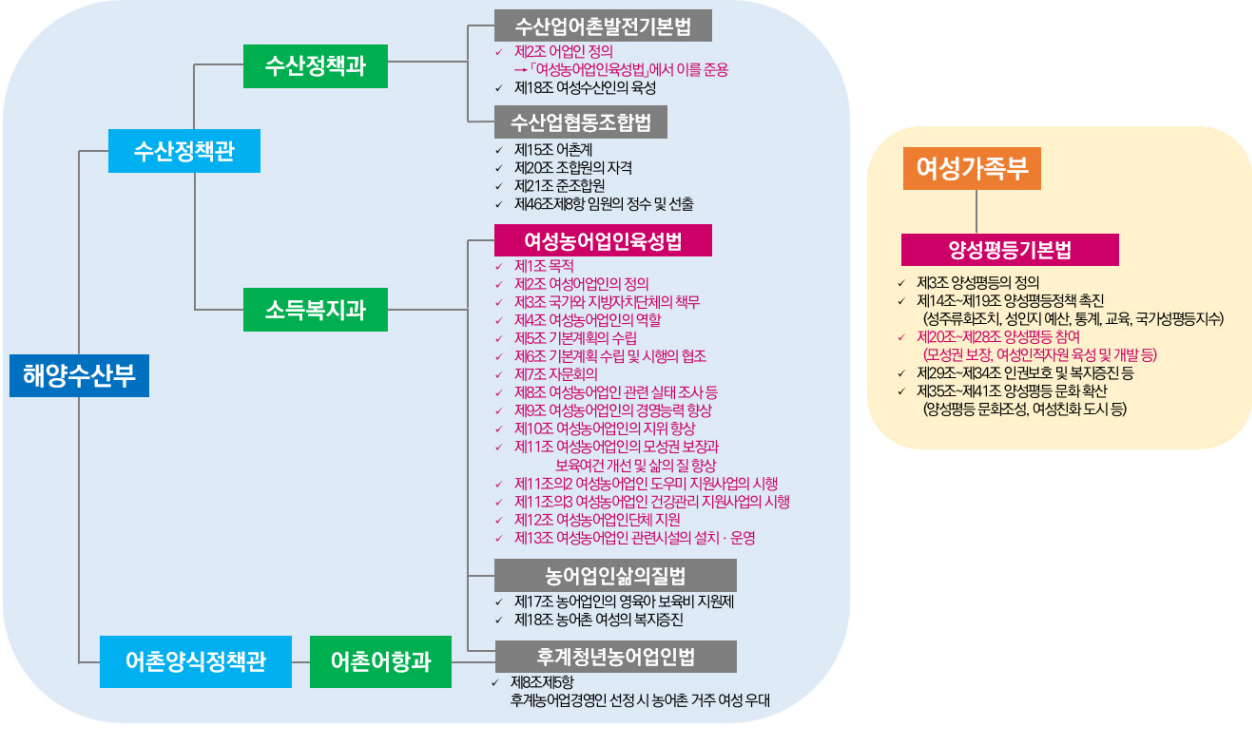
2) 여성어업인 관련 국내법

국내법상 여성어업인의 정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상 어업인 정의를 따른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은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근거법으로 여성어업인에 대한 정의와 권익보호, 지위향상 등을 규율하는 여성어업인에 관한 대표법이다. 이 외에도 〈그림 2-6〉과 같이 「수산업협동조합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여성어업인에 관한 사안을 규율한다.

국내법 편제에 따라 여성어업인 정책은 어업인 복지증진과 삶의 질 업무를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내 소득복지과에서 주관한다.[107] 소득복지과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한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외에도 영유아 보육비 지원, 후계농어업인 선정 시 여성어업인 우대 등을 주관한다. 소득복지과 외에도 수산정책과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통해 수산업 전반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에 있어 여성수산인 육성을 명기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상 노동 관련 조항 또한 여성어업인과 관련성을 갖는다.

10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그림 2-6〉 여성어업인 관련 법·제도 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동시소관으로 2001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동법은 여성농어업인 지위향상,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지원 등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산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08] 이를 위해 동법 제2조, 제4조는 여성농어업인의 정의와 역할을 규정하고,[109] 제3조는 동법 시행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를 명시한다.

동법의 주요 내용은 제정 목적에 따라 〈표 2-9〉와 같이 지위 향상,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외 정책 집행과 지속적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목적별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권익보호, 지위 향상	• 지위 향상: 제10조
삶의 질 제고	• 모성권보장, 보육여건 개선: 제11조, 제11조의2 • 건강관리 지원: 제11조의3
전문인력화	• 경영능력 향상: 제9조
거버넌스 구축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 제6조 • 자문회의: 제7조 • 실태조사: 제8조 • 단체 지원 및 관련시설 설치·운영: 제12조, 제13조

자료: 저자 작성

10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조(목적)

109) 2009년 농업, 수산업 통합 기조에 의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수산 관련 개념이 포함됨에 따라 법률 명칭 또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은 동법 제3조제2호가목, 제3조제2호나목에 각기 정의됨. 이후 2015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여성어업인의 정의는 동법 제2조를 따르고, 여성농업인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따르는 것으로 근거법이 변경·적용됨

여성농어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동법 제10조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참여 확대와 직업의식 고취,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책임을 명시한다.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시책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관리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인력화에 관한 내용은 인적자본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교육, 후계인력 육성과 산업 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정비, 자동화 추진, 자금 지원으로 이뤄진다. 이 외에도 여성농어업인 정책 이행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관련 기관 설치·운영 등을 다룬다.

동법이 제정된 2001년 이후, FAO 성평등 정책 마련,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등 여성정책은 빠르게 변화하고, 여성역할과 지위에 대한 논의도 확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동법 또한 14차례 제·개정을 통해 농어촌 여성의 노동력 활용을 위한 인력개발 정책에서 여성 권리향상과 양성평등 실현 정책으로 발전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2005년 일부 개정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이 모성보호와 삶의 질 향상으로 세분화되고, 정책추진 여건 마련을 위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갖추었다.[110] 2018년에는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 친화적 정책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 권고에 따라 모성보호 개념을 모성권 보장으로 개정하였다. 나아가 여성농어업인에게서 발병하는 주요 질환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관리 지원 내용을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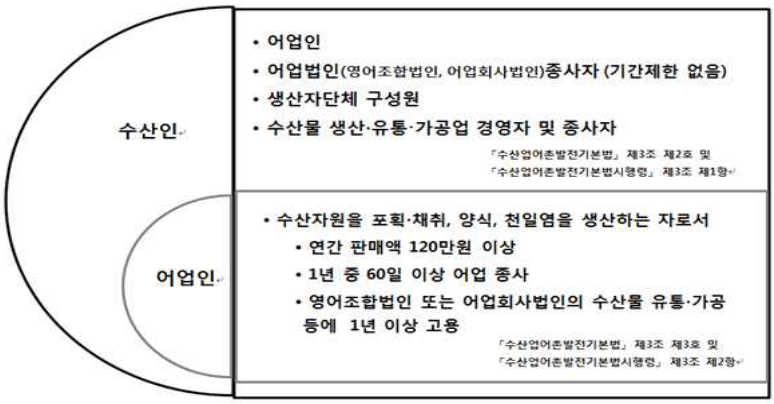
110)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가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로 개정되고, 제13조(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서도 삶의 질과 관련된 요소가 포함됨에 따라 다방면에 걸친 복지증진과 지원 여건 마련의 근거가 포함됨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5년 제정되었다. 동법은 수산업 종사자를 '수산인'과 '어업인'으로 구분하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상 여성어업인에 대한 정의는 동법을 준용한다.

수산인과 어업인 정의는 〈그림 2-7〉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수산인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어업인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어업인은 어업을 경영하거나 수산자원을 포획·채취·양식하거나 소금을 생산하는 자로 정의된다. 또한, 동법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수산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 책임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향후 여성어업인 정책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2-7〉 어업인, 수산인의 정의 비교



자료: 해양수산부(2017), p. 10.

(3)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어민과 수산제조업자 조직화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수산업 생산력 증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합원 자격 및 임원 선출은 동법에 의해 규율되는데, 제46조는 지구별수협 이사 정수의 1/5은 여성조합원에 할당되어야 함을 명시한다.[111] 이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0조 지위 향상 시책과 궤를 같이하며, 여성어업인 비율이 증가하고 지구별수협의 여성 조합원 비율 또한 확대됨에 따라 여성 임원의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4) 그 외 관련 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업인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지역단위 개발·관리 정책 수립,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교육·건강관리, 생활안정지원 등을 다룬다. 동법은 여성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모성권 보호, 보육여건 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명시하고, 영유아 보육비, 다문화가족과 고령인구 지원시책 마련 등 여성특화 지원제도 또한 다룬다.

후계농어업인 육성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0년 5월 제정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은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농어촌 거주 여성 우대를 규정한다.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다루는데, 제25조(모성·부성의 권리

111)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구별수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함(동법 제46조제8항)

보장), 제26조(일·가정 양립지원),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 등이 여성어업인 관련 법·제도와 관련성을 갖는다.

3)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근거[112]로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현재까지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2차례 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으며, 2021년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17~'21년)'이 시행 중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정책대상에 어업 내 여성 종사자가 중도 편입됨에 따라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태동하였다.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한 '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11~'15년)'이 수립되면서 여성어업인에 대한 인식이 사회·경제활동의 주체로 전환되었다. 동 계획은 여성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생산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화, 후계인력육성 기반 확충과 같은 기존 계획과 더불어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보급을 위한 세부과제를 수립하였다. 또한, 동 계획은 양성평등 교육 및 성별영향평가 필요성을 제시하며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 개념을 고도화하였다. 나아가 고정적 성역할에 의

11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5조(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 목표
2.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 기본방향
3. 다음 각목의 핵심정책과제
가. 농어업경영능력향상 나.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다.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라.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시책
4.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지원계획 (중략)

해 여성농어업인에게 생산노동과 가사노동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다.[113] 다만, 동 기본계획은 농어업 통합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어업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립됨에 따라 정책 실효성에 한계를 갖는다.

해양수산부에 의해 수립된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17 ~'21년)'은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산업 발전 도모'를 비전으로 3대 전략과 9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었다. 동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은 〈표 2-10〉과 같으며, 여성어업인만을 정책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2-10〉 제4차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과제

구분	4차 기본계획
목표	· 업종별 여성어업인 단체 설립 : 0개('17) → 5개('21) · 어업인 후계자 / 어업경영자 중 여성 비중 확대(35%까지)
추진 전략 및 과제	·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관련 법·제도 정비 └ 거버넌스 확립 └ 정책 확산을 위한 연구 및 홍보 강화 ·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 여성어업인 단체활동 강화 └ 경제권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여성친화형 작업기반 구축 ·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서비스 지원 └ 복지서비스 확충 └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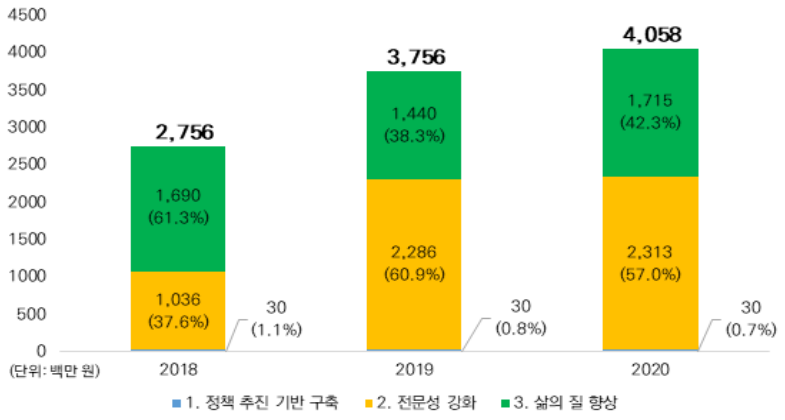
자료: 해양수산부(2017), p. 9

113) 이창수(2019), p. 39.

해양수산부는 동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어업인의 위상이 여전히 낮고, 이들이 직면한 불평등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애로사항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114] 이에 제4차 기본계획은 여성어업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어업인을 조직화하는 한편,[115]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1~3차 기본계획 시행 과정에서 담보하지 못한 정책 연속성을 갖고자 하였다.

2018~2020년 시행계획 예산 현황[116]을 통해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전략과 세부과제의 이행 수준을 살펴보았다. 전체 예산은 3년간 연평균 21% 증가하여, 2018년 27억 원에서 2020년 4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매년 예산의 99%는 3대 전략 중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할애되었으며, 정책 추진 기반 구축에 할애된 예산은 1% 수준에 그쳤다.

〈그림 2-8〉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전략별 시행예산



자료: 해양수산부 연도별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114) 해양수산부(2017), pp. 3~5.

115) 농업에서는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모는 전국 42개소에 달함. 여성농업인센터는 2002년 도입, 2005년 지자체로 이관되며 여성농업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온라인 사이트인 '여성농업인 광장'을 운영하며 정책 확산을 도모함. 이에 반해, 여성어업인은 맞춤형 지원센터가 전하고, 정책 확산 방안 또한 부재함에 따라 정주지역 또는 관계지역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하기로 계획함

116) 2021년 시행예산은 확인이 불가하여 3개년 예산만을 활용함

전략별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표 2-11〉과 같다.[117] 첫째 전략인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는 3년간 전체 예산의 1%(약 3천만 원)만이 할애되었는데, 여성어업인 포럼 개최 및 정례화에 사용되었다. 이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계획된 전국단위 실태조사와 정책설명회, 성인지 교육 등은 예산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법·제도 정비[118] 및 거버넌스 확립[119] 예산 또한 3년간 편성되지 않았으나, 여성어업인 정기 건강검진 시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는 이루어졌다.

둘째 전략인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 지원은 총 4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세부 과제 중 여성친화형 작업 기반 구축[120]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주로 수산장비 임대사업과 여성어업인 안전보험 보장강화에 사용되었다. 경제적 지위 강화 예산은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의 여성어업인 우선 선정 비율 확대, 수산 후계인력 장학금 등으로 활용되었으며, 맞춤형 교육 예산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여성어업인 아카데미 운영에 활용되었다. 여성어업인 단체활동 강화 예산은 여성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에 전액 사용되었다.

셋째 전략인 여성어업인 삶의 질 향상은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낙도지역 의료서비스 확대에 연간 9억 원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조건불리지역 거주민을 주 대상으로 함에 따라 전체 여성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는 괴리가 있다. 맞춤형 서비스는 여성어업인 질환 조사 및 예방 프로그램 보급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당초 계획한 행복바우처 확대, 지원센터 사업 확대 등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17) 전략별·과제별 세부 사업 및 예산은 부록 2-2 참조
118) 세부 추진과제로 특화 건강검진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여성어업인 지원 조례 제·개정 등을 포함
119) 세부 사업으로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여성어업인 정책 관심도 제고 등을 포함
120) 세부 추진과제로 여성친화형 기자재 개발, 여성어업인 안전보험 보장 강화, 여성어업인지원센터 시범사업 등으로 구성됨

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제4차 기본계획의 주안점을 살펴보면,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 여성임원 비중 확대, 여성친화형 작업환경 구축 등 실질적 지위향상과 전문성 확대 노력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단위 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수립된 계획의 상당 부분이 이행되지 못하였다.

〈표 2-11〉 4차 기본계획 전략별·추진 과제별 예산(2018~2020년)

단위: 백만 원

추진과제	2018	2019	2020
합계	**2,756**	**3,756**	**4,058**
1.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30**	**30**	**30**
	1.1%	**0.8%**	**0.7%**
1-1. 관련 법령 · 제도 정비	-	-	-
1-2. 거버넌스 확립	-	-	-
1-3. 정책 확산을 위한 연구 및 홍보 강화	30	30	30
2.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지원	**1,036**	**2,286**	**2,313**
	37.6%	**60.9%**	**57.0%**
2-1. 여성어업인 단체활동 강화	76	60	60
2-2. 경제적 지위 강화 지원	140	252	252
2-3.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성 제고	220	201	201
2-4. 여성친화형 작업 기반 구축	600	1,773	1,800
3.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1,690**	**1,440**	**1,715**
	61.3%	**38.3%**	**42.3%**
3-1. 여성 맞춤형 서비스 확대	790	200	500
3-2.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900	1,240	1,215

자료: 해양수산부 연도별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어업인 관련 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 제5조에 의거, 5년마다 '시·도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현재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에서 시·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어업인 정책은 농어촌지역의 불리성을 고려한 복지관련 정책이 주를 이루며, 업종별 정책으로는 해녀로 대표되는 나잠어업에 집중되어 있다.[121]

〈표 2-12〉 시·도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현황

명칭	시·도	요건 및 내용
여성 어업인	강원도	• 요건: 실제 영어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 만 75세 미만 여성어업인 • 혜택: 1인당 연간 20만 원 한도의 바우처 카드
	경상 남도	• 요건: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 여성어업인 • 혜택: 1인당 연간 13만 원 한도의 바우처 카드
	제주도	• 요건: 도내 주소를 두고, 2년 연속 행복바우처를 수혜받지 않은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 여성어업인 • 혜택: 1인당 연간 13만 원 한도의 바우처 카드
여성 농어업인	충청 북도	• 요건: ① 도내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 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②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이 5만 ㎡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 혜택: 1인당 연간 18만 원(자부담 2만 원) 한도의 바우처 카드
	충청 남도	• 요건: ① 도내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전업농 및 겸업농) ②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혜택: 1인당 연간 20만 원 한도의 바우처 카드
	전라 남도	• 요건: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중인 만 20세 이상 ~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 혜택: 1인당 연간 20만 원(자부담 2만 원) 한도의 바우처 카드

121) 해양수산부(2017), p. 7.

명칭	시·도	요건 및 내용
여성 농업인	전라 북도 주2)	• 요건: ①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만 ㎡ 미만인 농가 ② 만 25세 ~ 만 75세 미만(기혼은 만20세~만24세) • 혜택: 1인당 연간 15만 원(자부담 2만 원) 한도의 바우처 카드
	경상 북도 주3)	• 요건: ① 도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 ② 만 20세 ~ 만 70세 미만 • 혜택: 1인당 연간 15만 원(자부담 3만 원) 한도의 바우처 카드
	인천 광역시 강화군	• 요건: ① 시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 만 75세 미만 여성농업인 ②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이 5㏊(5만㎡) 미만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업 경영가구의 여성농업인 • 혜택: 1인당 연간 20만 원(자부담 4만 원) 한도의 바우처 카드

주: 1) 복지로에 공개된 주요 시·도 사업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함
2)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요건은 농지소유면적으로 한정되나, 사업 목적이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제공으로 명시되어 겸업어가 여성어업인 또한 수혜를 입는 것으로 추정함
3)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지원대상에 여성어업인을 포함함
자료: 복지로(검색일: 2021. 10. 21) 및 각 시·도별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복지 관련 대표적 정책인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122]은 정주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직업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본 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해양수산부 4차 기본계획 등을 통해 여성어업인까지 확대되었다.[123] 다만, 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의료목적 사용처 확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은 현재까지도 미진한 수준이다. 특히, 본 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지방비로 운영됨에 따라 시·도별 수혜요건과 혜택, 자부담 비율 등이 상이하고, 복지로[124]에서도 지역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보접근성에 한계를 갖는다. 시·도별

122) 시·도별로 행복바우처, 복지바우처, 생생카드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나 본 보고서에서는 제4차 기본계획을 따라 행복바우처로 표기함
123) 해양수산부(2017), p. 25.
124) 복지로(www.bokjiro.go.kr)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국내 대표 복지포털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원 연령 20~75세, 지원 금액은 연간 2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한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125] 현재까지 개선되지 못하였다. 일례로, 〈표 2-12〉와 같이 경상북도의 경우 영농 종사 여성농어업인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자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정책으로는 나잠어업(해녀)[126] 지원사업이 있다. 해녀는 물질을 통해 축적한 생태환경 지식과 독특한 방식의 협동조업, 공동체 문화를 전승하고, 어업 발전에 대한 기여 외에도 지역의 역사를 상징하는 존재로 평가되어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되었다.[127] 해녀 활동이 이어지는 제주, 경남, 경북 등을 중심으로 시·도별 해녀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표 2-13〉 시·도별 해녀 지원사업 현황(2019년 기준)

사업		시·도			
		경북	경남	부산	제주
복지	해녀진료비 지원	○	○	·	○
	어업인안전보험가입비 지원	○	○	·	○
	(유색)해녀복 지원	○	·	○	○
	해녀 테왁보호망 지원	·	·	○	○
	어촌계 신규 가입 지원	·	·	·	○
	해녀모임 지원	·	·	·	·
	교육 지원(안전, 취미, 정책 등)	·	·	○	○
소득	현업 고령해녀수당 지원	·	·	·	○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지원	·	·	·	○
	치패방류사업 지원	○	·	·	○

125) 농민신문(2018. 4. 30)
126) 해녀는 바닷속에 산소공급 장치 없이 들어가 해조류와 패류 캐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여성이며, 이를 나잠어업이라 칭함(한국민족문화대백과(검색일: 2021. 10. 23))
127) 김명화(2020) 자문 결과 활용

사업		시·도			
		경북	경남	부산	제주
	어촌계 복지회관 및 직매장 시설지원	·	·	·	○
	해녀문화 홍보마켓 운영 및 시설지원	·	·	·	○
	해산물 판로 지원	·	·	·	○
작업환경	해녀 탈의장 설치				·
	해녀 탈의장 운영 및 보수 지원				○
	해녀공동작업장 설치				·
	해녀공동작업장 운영 및 보수 지원				○
	어장진입로 정비				○
	안전조업장비 지원				○
	해녀공연운영 및 시설 지원				○
	친환경 해녀 탈의장 시설개선 지원				○
	물질도구 지원				·
문화전승	해녀문화재 지정(무형문화재 등)			·	○
	해녀학교 운영비 지원			·	○
	해녀공연 운영 및 시설 지원			·	○
	해녀문화 전승사업(해녀축제 등)			·	○
	해녀박물관, 홍보관 등 운영			○	○
	해녀문화 홍보 지원			·	○

주: 각 시·도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자료: 김명화(2020) 자문 결과 활용, 재인용: 김명화·박효영·이민성(2019), pp. 41~42

〈표 2-13〉과 같이, 시·도별 해녀 지원사업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제주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다. 경북, 경남, 부산의 해녀 지원사업은 진료비 지원, 어업인 안전 보험 가입비 지원 등 일부 사업에 그치는 반면, 제주도 지원사업은 소득 지원, 작업환경 개선, 문화 전승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뤄진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해녀 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국 내 해녀 전담부서인 해녀문화유산과[128]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128) 해녀문화유산과는 해녀정책팀(6명), 해녀박물관팀(12명)으로 총 19명으로 이뤄졌으며,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관련 기본계획, 복리증진 사업 등을 추진함(제주도청(검색일: 2021. 10. 23))

제3절 소결

여성인권에 대한 국제 논의는 CEDAW를 통해 본격화되었으며, 북경행동강령과 SDGs를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특히, 북경행동강령의 채택으로 여성인권 논의는 기존의 비차별 평등주의를 넘어 여성으로서 누려야 할 차이도 권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적극적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여성노동권 개념 또한 궁극적 성평등 달성을 위해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평등한 조건 아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가부장제 억압과 성별 분업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향해 발전하였다. 즉, 현대 국제 협약들은 궁극적 성평등 실현이라는 철학 아래 공적영역을 넘어 사적영역에서의 여성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2000년대 성 주류화 노력을 계기로 성평등 논의가 더욱 진보하였는데, 성 주류화를 위한 일곱 가지 고려 요소[129] 중 네 가지 요소가 여성의 권한과 가정 내 불평등에 대한 것으로 여성문제에서 여성 지위와 가사노동 이슈가 중요하게 다뤄짐을 알 수 있다.

노동문제에 대한 접근은 양적 측면에서 질적 측면으로 발전하였다. ILO 양질의 노동은 전 세계 노동자의 기본권리에 주안점을 둔 개념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노동정책을 논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ILO 양질의 노동은 4대 전략적 목표, 11대 영역으로 구분되며, 성별에 따른 일자리의 질 결정요인으로 적절한 소득, 적정 노동시간, 고용 안정성, 사회 보장, 일·가정 양립이 있다.

FAO 성평등 정책은 여성어업인을 비롯한 1차 산업 전 분야의 성평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개정을 통해 SDGs 목표와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주요 세부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 재화, 기술 등에 남녀 모두 동등한

129) 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 가정 내 불평등, 법적 지위 및 자격의 차이, 경제의 성별 분업, 가사 및 무보수 노동에 대한 불평등, 여성에 대한 폭력, 성차별적 태도(UN(2002))

접근 권한을 가지고, 여성의 노동 이중고 해소를 위해 가사노동을 포함한 노동의 공평한 책임분배를 명시하였다. 또한, 수산업 내 성격 차는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고정관념에서 시작되며, 여성권리 향상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접근성 확대와 동등한 권한 획득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수산업 내 여성종사자에 대한 몰이해는 데이터 공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UN 여성기구, NOAA 등은 여성 종사자에 대한 데이터 공백이 많은 여성을 생산활동과 의사결정 권한에서 배제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여성정책 또한 국제적 흐름이 맞추어 양성평등 정책으로 발전하였다. 국가적 정책 목표인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분야별 중앙정부가 특화된 여성정책을 수립·시행한다. 〈표 2-14〉와 같이 여성가족부 정책은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6대 정책영역으로 구분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또한 이를 고려한 세부 실행목표를 제시한다. 여성농업인 정책이 산업 내 평등한 노동권과 여성 지위 향상을 넘어 양성평등 기반마련으로 확대된 반면, 수산분야 양성평등 정책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표 2-14〉 주요 부처별 여성정책 영역 및 실행목표

여성가족부 6대 정책영역	농림축산식품부 실행목표	해양수산부 실행목표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에서 여성 농업인 참여 확대	-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 소득 기반 확대 사업 참여와 성별 형평성 강화 • 여성농업인의 직업 역량 강화	• 해양수산 분야의 여성 전문인력 육성과 취업 영역 확대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여성농업인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	• 해양 분야 의사결정과정 여성 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사회 기반 조성	-	-
여성폭력 근절	-	-

여성가족부 6대 정책영역	농림축산식품부 실행목표	해양수산부 실행목표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

자료: 여성가족부(2018), pp. 118~124.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근거로 수립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정책은 초기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 지위향상에서 양성평등한 농촌사회 구축으로 정책 비전을 확장하였다. 특히, 여성농업인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급, 특수건강검진 도입 여건 조성 등 농업 현실을 고려한 구체적 정책 성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반해 여성어업인 정책은 제3차 계획까지 잦은 소관부처 이관 등으로 일관성과 지속성에 한계를 보였다. 2021년까지 이행 예정인 제4차 기본계획 또한 예산 중 상당 부분이 특정 사업에만 편성되고, 정책추진 기반 구축이 미진하여 구체적 정책 성과를 도출함에 한계를 갖는다. 일례로, 제4차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기존 정책의 한계점으로 지적한 정책대상 기초통계 부족, 정례적 실태조사 미시행[130] 등은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못하였다. 나아가 여성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지방재정에만 의존하고 있어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

우리나라 여성어업인 정책은 어가·어촌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산업적, 지역적 정책대안으로 시작되었다. 다만, 국내외 여성정책이 인권적 개념의 성 주류화로 발전하고, 노동문제의 화두 또한 질적 측면으로 확장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여성어업인 정책은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과 노동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성별에 따른 권한·임금 차가 크고, 여성의 가사부담이 높은 사회적 특성을 갖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은 더욱 요구된다.

130) 해양수산부(2017), p. 7.

03
여성어업인 현황과 어업 노동시장 구조

제2장에서 여성인권, 노동권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을 검토하여 여성정책의 수립 필요성과 지향점을 살펴보고, 관련 국내 법·제도를 검토하였다. 특히,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기존 여성어업인 정책의 한계점과 향후 정책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고찰하였다. 본 장에서는 어업 인구구조 변화를 검토하여, 기존 여성어업인 정책의 수립 배경으로 제시된 여성어업인의 산업적·지역적 중요성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어업관련 성인지통계가 부족하고, 정례적 실태조사 등이 이행되지 않았음에 따라 해양수산업통계조사,[131] 농림어업조사,[132] 농림어업총조사[133] 등 기존 통계자료와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여성어업인 현황을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제2장에서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여성의 권한 수준이 남성과 큰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노동시장 내 성격 차를 유발하는 구조적 특성이 무엇이고, 어업 노동시장에서도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성 분절지수를 활용하여 성별 직종분리 현상을 추정하고자 한다.

13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2조에 의거 시행되는 1년 단위 국가승인통계, 해양수산업 실태와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해양수산업 사업체와 어업인을 대상(표본 수 193명)으로 조사함

132) 「통계법」 제17조에 의거 시행되는 1년 단위 국가승인통계, 전국의 농림어가 규모 및 경영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농림어가를 대상(어가 표본수 8,541개)으로 조사함

133) 「농림어업총조사 규칙」에 의거 시행되는 5년 단위 국가승인통계, 농림어업 가구와 가구원 규모,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수조사로 이루어짐

제1절 어업 인구구조 변화와 여성어업인

1. 어가 및 여성어업인 인구변동

1) 어업 인구·가구구조 변화

(1) 어가인구 및 가구 수의 변화

우리나라 어가[134] 및 어가인구[135]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지속적인 인구·가구 감소와 고령화의 확산이라 할 수 있다. 어가인구는 2019년 11만 3,989명으로 1970년 91만 2,612명 대비 약 80만 명 감소하였다. 총인구에서 어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0.2%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어가 내 고령인구는 2019년 4만 4,692명이며, 고령인구 비율은 2005년 18.8%에서 2019년에는 39.2%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 유소년인구 감소, 생산연령인구의 유출에 따른다. 어가 내 유소년인구는 1970년 35만 6,942명에서 2019년에는 6,620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절대비율로 98.1%가 감소하였다. 어가 수도 2019년 5만 909가구로 1970년 14만 9,107가구에서 65.9% 감소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 규모에서 어가 비중 또한 2019년 0.2%까지 감소하였다. 이러한 어가인구와 어가 수의 변화는 산업적 측면에서 어업·양식어업이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134) 어가의 정의는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제2조에 따라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어업(어로어업 및 양식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의미하며, 농림어업조사상 지난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선어업, 마을어업(맨손, 나잠, 기타어업), 양식어업을 직접 경영한 가구이거나, 지난 1년간 직접 잡거나 양식한 수산물을 판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함

135) 어가인구는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없이,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함

〈표 3-1〉 어가 및 어가인구 현황 및 추이

단위: 백 명, 백 가구, %

구분	어가인구					가구 부문	
	어가 인구	어가 비율 (총인구)	유소년 인구	고령 인구	고령 비율	어가	가구 비율 (총가구)
1970년(A)	9,126	2.9	3,569	-	-	1,491	2.7
1980년	7,253	1.9	2,635	-	-	1,341	1.7
1990년	4,961	1.1	1,236	-	-	1,215	1.1
2000년	2,513	0.5	331	-	-	816	0.6
2005년	2,211	0.5	241	416	18.8	799	0.5
2010년	1,712	0.4	157	396	23.1	658	0.4
2015년	1,284	0.3	86	391	30.5	548	0.3
2019년(B)	1,139	0.2	66	447	39.2	509	0.2
증감(B-A)	-7,987	-2.7	-3,503	31	20.4	-982	-2.4
증감률(B/A)	-87.5	-	-98.1	7.3	-	-65.9	-
연평균증감률 (B/A)	-4.2	-	-7.8	0.5	-	-2.2	-

주: 유소년인구는 14세 이하 인구, 고령인구는 65세 이상을 의미함
자료: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검색일: 2021. 6. 3), 농림어업조사(검색일: 2021. 6. 3); 통계청(2020a), pp. 11~13.

(2) 어가구조 및 어촌환경 변화

가구원 수에 따른 어가구조는 기존 2인 이상 가구에서 1·2인 가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2009년 기준 3·4인 이상 어가 비중은 전체 어가의 40%를 상회하였으나, 2019년 들어 2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1인 가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2009년 대비 전체 가구를 비롯한 모든 유형의 가구 수가 감소하였음에도 1인 가구만 유일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어가에서도 핵가족 체제의 전환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그림 3-1〉과 같이 연령대별 어업 경영주[136]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 기준 60대 이상 어업 경영주 비율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

136) 어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경영을 총괄하는 가구원을 의미함

타났다. 특히, 40~50대 장년층 경영주의 감소 폭이 크고, 70대 이상 고령 경영주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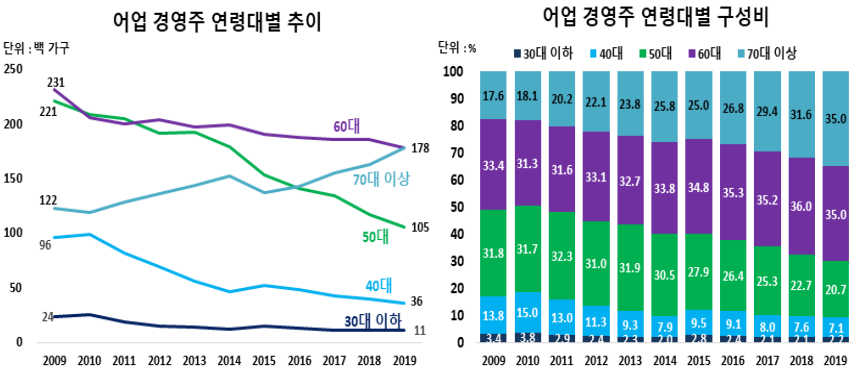
〈표 3-2〉 가구원 수별 어가 현황 및 추이

단위: 백 가구, %

구분	어가	1인		2인		3인		4인 이상		평균 가구원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2009년(A)	694	77	11.2	334	48.2	143	20.6	139	20.0	2.6
2010년	658	90	13.8	306	46.6	124	18.8	137	20.8	2.6
2015년	548	92	16.8	296	54.1	84	15.4	75	13.7	2.3
2016년	532	82	15.4	292	54.9	88	16.5	70	13.1	2.4
2017년	528	86	16.2	300	56.8	80	15.2	62	11.8	2.3
2018년	515	87	16.9	296	57.4	74	14.5	57	11.1	2.3
2019년(B)	509	88	17.3	296	58.1	73	14.3	52	10.2	2.2
증감(B-A)	-185	11	6.2	-38	9.9	-70	-6.4	-87	-9.8	-0.4
증감률(B/A)	-26.6	14.1	-	-11.5	-	-49.2	-	-62.4	-	-15.4
연평균증감률(B/A)	-3.0	1.3	-	-1.2	-	-6.6	-	-9.3	-	-1.7

주: 유소년인구는 14세 이하 인구, 고령인구는 65세 이상을 의미함
자료: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조사(검색일: 2021. 6. 3)

〈그림 3-1〉 어업 경영주 연령대별 현황 및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조사(검색일: 2021. 6. 3) 참고하여 저자 작성

어촌의 새로운 인구 유입원이 될 수 있는 귀어가구와 다문화 어가는 다음과 같다. 〈표 3-3〉에서 귀어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귀어가구는 904가구로 2013년 650가구 대비 39.1% 증가하였다. 귀어가구의 형태는 1인 가구(74.7%)의 비중이 가장 높고, 2인 가구(18.5%), 3인 가구(4.1%) 순으로 나타났다. 귀어인구를 성별로 살펴보면, 귀어인구 959명 중 남성은 638명(66.5%), 여성은 321명(33.5%)으로 남성의 비중이 높고, 지난 7년간 남성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연령대는 50대가 34.8%로 비중이 가장 높고, 60대 23.3%, 40대 20.2%, 30대 이하 19.0%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귀어가구 및 인구 현황

단위: 가구, 명, %

구분		2013년(A)		2019년(B)		증감 (B-A)	증감률 (B/A)	연평균 증감 (B/A)
		가구 / 명	비율	가구 / 명	비율			
어가	귀어가구	650	100.0	904	100.0	254	39.1	5.7
	1인	480	73.8	675	74.7	195	40.6	5.8
	2인	100	15.4	167	18.5	67	67	8.9
	3인	52	8.0	37	4.1	-15	-28.9	-5.5
	4인 이상	18	2.8	25	2.8	7	38.9	5.6
인구	귀어인구	690	100	959	100	269	39	5.6
	남	434	62.9	638	66.5	204	47	6.6
	여	256	37.1	321	33.5	65	25.4	3.8
	30대 이하	150	21.7	182	19.0	32	21.3	3.3
	40대	181	26.2	194	20.2	13	7.2	1.2
	50대	230	33.3	334	34.8	104	45.2	6.4
	60대	102	14.8	223	23.3	121	118.6	13.9
	70대 이상	27	3.9	26	2.7	-1	-3.7	-0.6

자료: 국가통계포털 귀농어·귀촌인 통계(검색일: 2021. 6. 3); 통계청(2020a), p. 40

다문화 어가[137]의 확산은 어가구조에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표 3-4〉와 같이 전체 어가 수와 어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반해, 다문화 어가와 인구 비중은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9년 다문화 어가 수는 1,216가구로 전체 어가 대비 2.4%에 불과하지만, 2011년 대비 203가구가 증가하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다. 인구유입 효과도 보이는데, 2019년 다문화 어가인구는 4,765명으로 전체 어가인구 대비 4.2%로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4〉 다문화 어가 및 어가인구 현황

단위: 가구, 명, %

구분	어가			어가인구		
	가구수	다문화 어가	다문화 가구 비율	인구수	다문화 인구	다문화 인구 비율
2011년(A)	63,251	1,013	1.6	159,299	4,261	2.7
2012년	61,493	988	1.6	153,106	4,121	2.7
2013년	60,325	1,011	1.7	147,330	4,236	2.9
2014년	58,791	933	1.6	141,344	3,988	2.8
2016년	53,221	1,106	2.1	125,660	4,331	3.4
2017년	52,808	1,042	2.0	121,734	4,172	3.4
2018년	51,494	1,224	2.4	116,883	4,711	4.0
2019년(B)	50,909	1,216	2.4	113,898	4,765	4.2
증감(B-A)	-12,342	203	0.8	-45,401	504	1.5
증감률(B/A)	-19.5	20.0	-	-28.5	11.8	-
연평균증감률(B/A)	-2.7	2.3	-	-4.1	1.4	-

주: 1)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다문화 어가 조사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2015년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2) 다문화 어가인구의 성별 인구 확인 불가
자료: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조사(검색일: 2021. 6. 3)

137) 다문화 어가란 어가의 가구원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또는 내국인(귀화 등)이 한 명 이상 같이 살고 있는 가구로 내국인(귀화 등)은 국적법상 출생 이외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의미함 (국가통계포털(검색일: 2021. 6. 7))

2) 여성 어가인구 및 여성어업인 인구변동 추이

(1) 여성 어가인구 변화와 특징

전체 어가에서 나타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여성 어가인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3-5〉와 같이 2019년 여성 어가인구는 5만 7,566명으로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를 통해 여성 어가인구 변화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 인구는 소폭 증가하는 반면 50대 이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9년 60대 이상 인구 비율은 55.8%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 반해, 50대는 22.1%, 40대는 6.2%에 불과하여 향후 고령인구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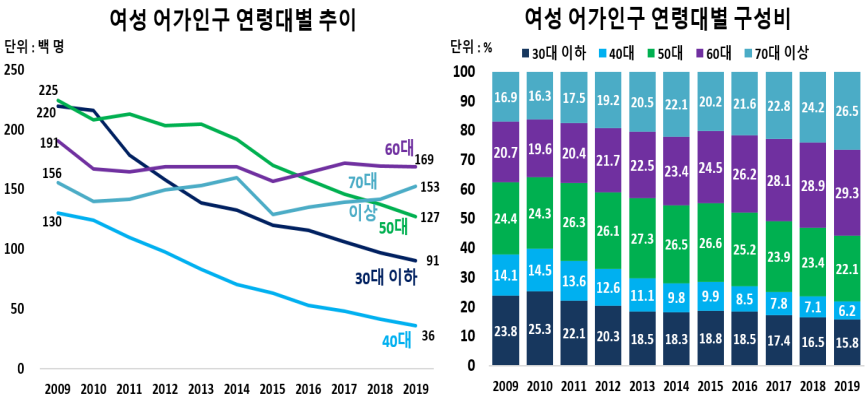
〈표 3-5〉 성별 어가인구 변화 추이

단위: 명, %

구분	어가인구	남성(a)		여성(b)		차이 (a-b)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2000년(A)	251,349	126,775	50.4	124,574	49.6	2,201
2005년	221,132	110,658	50.0	110,474	50.0	184
2010년	171,191	85,590	50.0	85,601	50.0	-11
2015년	128,352	64,443	50.2	63,909	49.8	534
2016년	125,660	62,959	50.1	62,701	49.9	258
2017년	121,734	60,590	49.8	61,144	50.2	-554
2018년	116,883	58,057	49.7	58,827	50.3	-770
2019년(B)	113,898	56,332	49.5	57,566	50.5	-1,234
증감(B-A)	-137,451	-70,443	-1.0	-67,008	1.0	-3,435
증감률(B/A)	-54.7	-55.6	-	-53.8	-	-
연평균증감률(B/A)	-4.1	-4.2	-	-4.0	-	-

자료: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조사(검색일: 2021. 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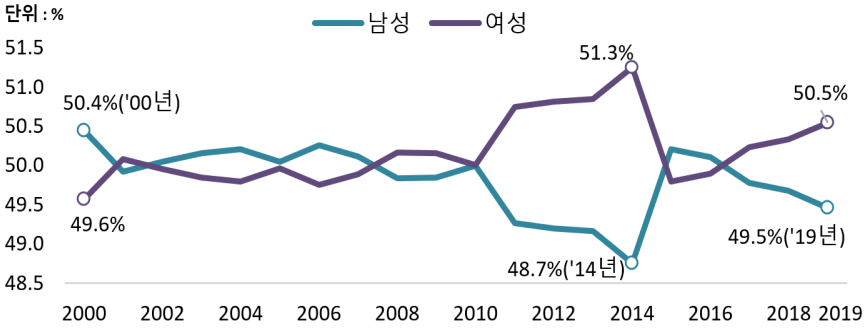
〈그림 3-2〉 여성 어가인구 연령대별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조사(검색일: 2021. 6. 3)

한편, 지난 20년간 어가인구의 성별 비중은 3% 이내에서 변화를 거듭하였다. 2000년 남성 인구 비중은 50.4%, 여성은 49.6%로 집계되었으며, 2010까지 1% 이내 차이를 보여 왔지만, 2014년에 최대 2.6%까지 벌어지는 등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여성 인구 비중은 1%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성별 어가인구 비중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조사(검색일: 2021. 6. 3)

(2) 여성어업인 인구변동 추이

여성어업인을 집계한 국가승인통계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어업종사가구원 통계를 통해 여성어업인 인구변동을 추정하였다.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어업종사가구원'은 15세 이상 어가 가구원 중 지난 1년간 1개월 이상 어업에 종사한 사람을 의미하며, 산업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어업인 인구변동은 〈표 3-6〉과 같다. 여성어업인은 2019년 기준 3만 9,110명으로, 어가인구와 함께 지난 20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그림 3-4〉를 통해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 인구는 66.1%로 고령인구 비중이 크고, 70대 이상 인구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40~50대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새로운 인구 유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령인구의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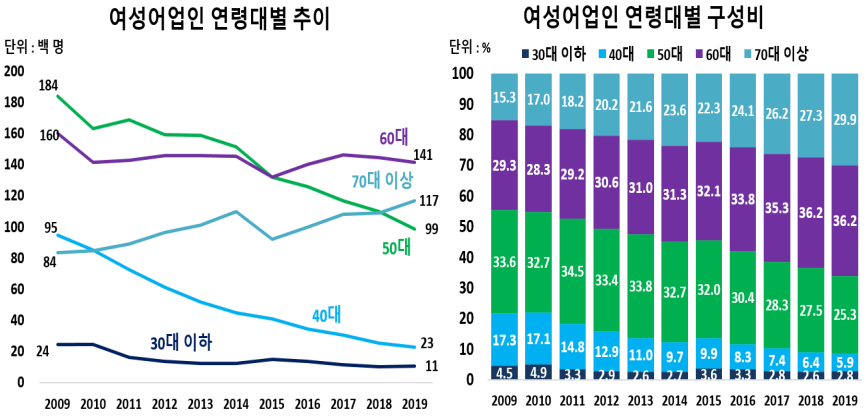
〈표 3-6〉 성별 어업종사가구원 변화 추이

단위: 명, %

구분	어업종사 가구원	남성(a)		여성(b)		차이 (a-b)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2000년(A)	139,837	76,188	54.5	63,649	45.5	12,539
2005년	130,589	70,307	53.8	60,282	46.2	10,025
2010년	107,163	57,224	53.4	49,939	46.6	7,285
2015년	90,144	48,913	54.3	41,231	45.7	7,682
2016년	88,214	46,745	53.0	41,469	47.0	5,276
2017년	87,885	46,507	52.9	41,378	47.1	5,129
2018년	84,982	45,017	53.0	39,965	47.0	5,052
2019년(B)	83,209	44,099	53.0	39,110	47.0	4,989
증감(B-A)	-56,628	-32,089	-1.5	-24,539	1.5	-7,550
증감률(B/A)	-40.5	-42.1	-	-38.6	-	-
연평균증감률(B/A)	-2.7	-2.8	-	-2.5	-	-

자료: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조사(검색일: 2021. 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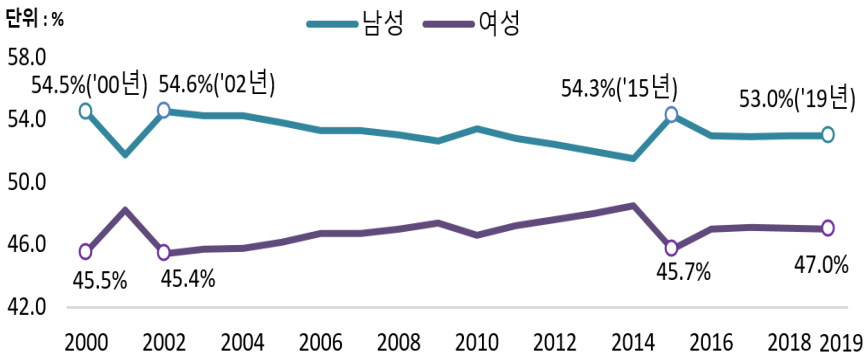
〈그림 3-4〉 여성어업인 연령대별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조사(검색일: 2021. 6. 3)

어업종사가구원은 남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 비중이 증가한 어가인구와 차이를 보인다. 〈그림 3-5〉와 같이 어업종사가구원의 성별 비중은 지난 20년간 평균 6.4%가량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기준으로 남성 비중은 53.0%, 여성은 47.0%로 집계되었다. 다만, 여성 어업종사가구원의 인구 비중은 2000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그림 3-5〉 성별 어업종사가구원 인구 비중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조사(검색일: 2021. 6. 3)

(3) 여성 어업경영주 변화추이

어업경영주는 어가 내 어업활동을 책임지고, 어가 경영을 총괄하는 가구원을 의미한다. 2019년 여성 어업경영주 수는 1만 1,446명으로 지난 20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어업경영주를 성별로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남성은 평균 79%, 여성은 21%대로 남성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남성경영주 수의 감소는 여성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20년간 여성경영주는 1.4% 감소한 데 반해, 남성경영주는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성별 어업경영주 변화 추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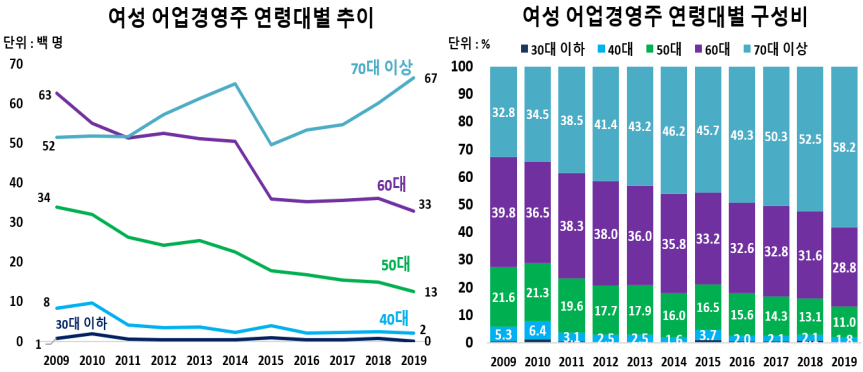
구분	어업경영주	남성(a)		여성(b)		차이 (a-b)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2000년(A)	81,571	66,586	81.6	14,985	18.4	51,601
2005년	79,942	62,988	78.8	16,954	21.2	46,034
2010년	65,775	50,707	77.1	15,068	22.9	35,639
2015년	54,793	43,944	80.2	10,849	19.8	33,095
2016년	53,221	42,399	79.7	10,821	20.3	31,578
2017년	52,808	41,942	79.4	10,867	20.6	31,075
2018년	51,494	40,033	77.7	11,462	22.3	28,571
2019년(B)	50,909	39,463	77.5	11,446	22.5	28,017
증감(B-A)	-30,662	-27,123	-4.1	-3,539	4.1	-23,584
증감률(B/A)	-37.6	-40.7	-	-23.6	-	-
연평균증감률(B/A)	-2.5	-2.7	-	-1.4	-	-

자료: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조사(검색일: 2021. 6. 3)

연령대별 여성경영주 변화는 〈그림 3-6〉과 같다. 여성 어업경영주 중 70대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2019년 기준 70대 이상 어업경영주 수는 6,657명으로, 2015년 4,960명 이후 지속적으로 증

가하였다. 반면, 60대 이하 경영주 수는 지난 20년간 감소하였다.

〈그림 3-6〉 여성 어업경영주 연령대별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조사(검색일: 2021. 6. 3)

〈표 3-8〉에서 전체 어업경영주 규모 대비 여성경영주 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았다. 여성경영주 규모는 60대 이하에서 전체 어업경영주의 20% 이하로 나타났지만, 70대 이상에서는 37%를 상회하였다. 이는 높은 연령대에서 여성 가구주가 증가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사별 또는 노년 남성의 노동역량 약화, 경제력 약화로 여성이 어업경영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8〉 연령별 여성 어업경영주(여성/전체) 비중 추이

단위: 명 %

연령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30대 이하	6.1	3.6	3.8	7.9	1.6
40대	7.7	4.5	5.4	6.2	5.8
50대	11.7	12.0	11.7	12.9	12.0
60대	18.9	18.8	19.2	19.6	18.5
70대 이상	36.2	37.5	35.3	36.9	37.4

자료: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조사(검색일: 2021. 6. 3)

어업경영주는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와는 개념이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어가인구 대비 어업종사가구원 비율이 높고[138] 전업어가의 비중이 증가[139]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업경영주를 어가 내 실질적 경제활동 주체이자 어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어가의 생계와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여성 어업경영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에서 그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2. 여성어업인 노동환경의 특성

어가 내 여성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실태와 노동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연속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최초의 전국단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는 최성애·황진회·엄선희(2005) 연구를 통해 수행되었다. 이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에서 지역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가 수행되었으나 전국단위 조사는 재개되지 못하였고, 2017년 들어 이창수·박지훈(2017) 연구를 통해 전국단위 실태조사가 재개되었다. 이창수·박지훈은 2019년도에 여성어업인 실태조사를 한 차례 더 수행하여 실태 및 정책수요 변화를 비교한 바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기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어업인의 노동실태와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1) 주요 선행연구의 실태조사 변천

최성애·황진회·엄선희(2005)는 어가여성의 노동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450개 표본어가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38) 2019년 어가인구 대비 어업종사가구원 수 비율은 73.1%,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함 (자료: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조사(검색일: 2021. 6. 3))

139) 2019년 전체 어가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업어가 비중은 39.2%로 지난 20년간 상승세를 보임 (자료: 농림어업조사(검색일: 2021. 6. 3))

설문은 일반사항, 노동실태, 가사노동과 생활만족도, 복지 실태, 정책수요 총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창수·박지훈(2017, 2019)의 2017년 설문 조사는 초기 연구의 주요 조사 항목을 계승·확장하였으며, 2019년 조사에는 2017년 조사 항목에 정부 및 지원기구에 대한 인식을 추가하였다.

〈표 3-9〉 선행연구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설문 개요

구분	최성애·황진회·엄선희(2005)	이창수·박지훈(2017)	이창수·박지훈(2019)
표본	전국 어가 450가구	전국 여성어업인 1,023명	전국 여성어업인 928명
조사 기간	2005년 7월 18~26일	2017년 9월 4~15일	2019년 6월 중순 ~7월 중순
조사 수단 및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 활용 면접원 직접 방문을 통한 1:1 개별면접	구조화된 설문지, 수협 계통 행정선 활용	구조화된 설문지,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설문 배포
설문 구성	• 5개 항목, 48문항 • 일반사항(5) • 노동실태(17) • 가사노동과 생활만족도(8) • 복지실태(11) • 정책수요(7)	• 5개 항목, 106문항 • 일반사항(4) • 어업노동 실태 및 인식(17) • 교육 인식 및 실태(8) • 가사노동과 생활만족도(3) • 정책수요(2)	• 6개 항목, 112문항 • 일반사항(4) • 어업노동 실태 및 인식(17) • 교육 인식 및 실태(8) • 가사노동과 생활만족도(3) • 정책수요(2) • 정부 및 지원기구 인식(6)

자료: 최성애·황진회·엄선희(2015), pp. 92~94; 이창수·박지훈(2017), pp. 35~37; 이창수·박지훈(2019), pp. 9~10

위 실태조사는 어가 내 여성만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설문 항목이 여성어업인 노동실태, 가사노동과 생활만족도, 정책수요로 구성된 공통점을 갖는다. 조사 항목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세부 문항 구성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최성애·황진회·엄선희(2005)는 노후생활, 보육활동, 건강관리, 연금 등 여성어업인 복지 실태에 포괄적으로 접근하였다면, 이창수·박지훈(2017, 2019)은 자격증, 어업관련 교육, 희망 프로그램 등 여성어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태 및 수요에 주안점을 두었다.[140]

140) 실태조사 세부 항목 구성은 부록 3 참조

2) 선행연구별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1) 2005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최성애·황진회·엄선희(2005)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업노동에 있어 어촌여성들은 10년 이상 장기간 어업노동에 종사하고, 성어기에는 1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분담률 또한 43%로 나타나 어업노동에 있어 여성의 역할과 기여가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어업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이 주도하는 결정은 저조하며, 특히 어업활동에 관한 세부 결정은 남성 배우자가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어가 내 주요 결정 시에는 여성들의 의사도 일부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2005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1. 어가 가족은 자녀를 포함한 가족형태로 구성, 어업후계자 확보에 유리
2. 10년 이상 장기간 어업에 종사, 어업노동 분담률은 43%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
3. 여성어업인의 어업경영 의사결정은 낮으나, 역할은 정착되고 있음
4. 주요 애로점은 노동 기여의 비가시화, 어업노동의 어려움(노동강도), 적합하지 않은 작업환경
5. 가사노동을 전담 수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낌
6. 노후대책 걱정, 어촌 보육시설 확충 및 활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필요
7. 불안정한 소득, 자녀 양육 및 교육여건 미흡에 대한 우려
8. 권리 확대를 위한 단체가입 추진이 효과적이나, 어촌여성 단체 및 조직가입률 저조
9. 여성어업인 관련 제도 인식 및 시설 이용 저조
10. 육아도우미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참여 확대, 노인시설확충, 청소년 자녀도우미 등 지원 필요
11. 가사노동경감이 가장 우선되며, 어업종사여건 개선, 지위향상, 적합업종 개발 순
12. 여성노동에 적합한 어업노동환경개선 및 후생복지 정책 필요
13. 어촌여성의 주요 희망사항은 교육비 지원, 기술교육, 노인시설 확충, 무료건강검진 등

자료: 최성애·황진회·엄선희(2005), pp. 125~128

이 밖에도 어촌여성들 또한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보육시설 확충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

안정한 소득, 높은 노동강도 등은 생활 전반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 자리 잡았으며, 자동화 또는 기계화 등을 통한 여성친화적 어업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한편, 어촌여성 권리향상을 위한 어촌여성 조직 및 단체에 대한 적극 지원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 2017년, 2019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이창수·박지훈(2017, 2019)은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설문으로 전국단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표 3-11〉 2017년, 2019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항목	2017년	2019년
어업 실태 및 인식	• 어업참여 동기는 경제적 요인, 인력난 • 어선·양식어업 부부공동 작업이 일반적 • 남성의 의사결정권한이 높고, 여성어업인 위상은 낮은 편 • 육체적 힘, 작업환경은 주요 애로사항	• 주부, 보조어업인으로 자신을 평가 • 1차 생산중심 사고(어획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신을 어업인으로 보지 않음) 경향
교육 실태 및 인식	• 자격증 필요에 대한 인식 저조 • 교육 필요성 공감, 교육 참석은 저조 • 취미, 여가, 교양 프로그램 수요가 큼	• 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교육 중요성, 참여 의향 확대) • 여성어업인 맞춤형 프로그램 및 환경조성 필요
가사노동 생활 만족도	• 여성이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함 • 청소, 식사, 빨래 등 여성 전담	• 노동에 대한 부담 확대 • 양식·나잠어업 만족도는 상승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소득에 대한 만족도 상승
정부 정책 요구	• 어가도우미 지원사업에 관한 인식 저조 • 가사노동 부담 경감, 지위향상, 환경조성을 통해 전문인력화 기회 조성	• 어업용 복지시설 확충 등 어업종사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 증가 • 적극적 어업참여 환경을 중시 • 특화된 정책사업 필요성 인식

자료: 이창수·박지훈(2017), pp. 73~76; 이창수·박지훈(2019), pp. 64~66

첫째, 여성어업인의 어업활동 종사 유인은 생계유지, 어업인력 부족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여성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력부족 현상은 어가를 넘어 수산업 전반의 공통적 현상으로 향후 여성들의 어업활동 참여가 수산업 유지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어업인보다 남성 배우자의 결정 권한이 크고, 주로 남성 배우자의 결정을 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어업인은 어업 노동활동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육체적 힘의 부족을 꼽았는데, 이처럼 어업활동에서 완력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남성의 적극적 참여와 의사결정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생산 이후 단계인 출하·판매에서는 여성의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어업인은 자신에 대한 위상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가계 소득에 본인의 기여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육상에서의 활동보다 해상에서 조업활동을 더 중요시하는 고정관념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청소, 식사, 설거지, 빨래 등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는 점이다. 다만, 노부모 봉양, 손님 접대, 자녀 양육 및 교육 등은 남편을 비롯한 가구 구성원들이 함께 분담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또한, 여성어업인은 현재의 가사노동에 큰 불만을 갖기보다는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다섯째, 복지시설 확충 및 여성어업인의 종사 환경 개선 요구가 증가하였다. 여성어업인은 소득·복지·문화 등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어업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노동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2절 어업 노동시장의 성별 구조적 특성

1. 어업 노동시장의 현황 및 특성

1) 어업 종사자 및 고용현황

통계청 해양수산업통계조사[141]에 따르면, 수산업[142] 종사자는 61만 1,324[143]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144]은 45만 5,067명(74.4%)으로 수산업 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활동 종사자 비중이 높은 것은 양식어업의 임시·일용근로자 수(32만 925명)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는 입식, 출하와 같은 특정 시기에 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단기간 임시·일용직 고용이 요구되는 양식어업 인력수급 특성에 기인한다.[145]

업종별로 살펴보면, 어로어업은 대표자의 비중이 30.9%로 가장 높고, 임시·일용근로자 28.8%, 상용근로자 23.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식어업대비 대표자의 비중이 커 대표자를 중심으로 소규모 종사자에 의해 운영됨을 추정할 수 있다. 양식어업은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이 87.9%로 가장 높은데, 이는 다른 업종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이다.

141) 해양수산업통계조사에서는 수산업의 산업규모, 생산구조, 운영형태, 고용, 임금 등에 관한 실태와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통계포털에 공시함. 현재 시점으로 확인 가능한 최신 자료는 2018년 조사결과임(검색일: 2021. 6. 8)

142) 수산업은 수산물 생산업(어로어업,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소금채취업),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유통업(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으로 이뤄짐

143) 통계청 해양수산업통계조사는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수 : 합계'와 '해양수산분야 종사자 현황 : 국적별, 성별' 모두 총 종사자 수를 제시함. 그러나 각 통계에서 제시된 총 종사자 수의 합은 차이를 보이는데, 전자는 61만 1,325명, 후자는 61만 1,324명으로 1명의 차이가 발생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술하는 성 분절지수와의 통계 일치성을 고려하여 61만 1,324명으로 조정함

144) 어업활동 종사자 관련 통계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어업인 정의(「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어로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종사자의 수의 합을 어업활동 종사자로 추정함

145) 한광석 외(2019), p. 54.

〈표 3-12〉 고용형태별 어업 종사자 현황(2018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비중	대표자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종사자
수산업	611,324	91,175	117,065	359,713	40,488	2,883
	100	14.9	19.1	58.8	6.6	0.5
어업	455,067	42,724	43,998	346,461	19,218	2,667
	100	9.4	9.7	76.1	4.2	0.6
어로어업	87,447	27,042	20,458	25,149	12,792	2,006
	100	30.9	23.4	28.8	14.6	2.3
양식어업	364,916	14,646	23,268	320,925	5,465	612
	100	4.0	6.4	87.9	1.5	0.2
소금채취업	2,704	1,036	272	387	961	49
	100	38.3	10.1	14.3	35.5	1.8

주: 어업 종자사 현황은 수산물 생산업 중 어업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를 제외한 어로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종사자의 합으로 추정함
자료: 국가통계포털 해양수산업통계조사(검색일: 2021. 6. 8)

〈표 3-13〉 국적별·성별 어업 종사자 현황(2018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비중	한국인	외국인	남성	여성
수산업	611,324	565,139	46,185	442,856	168,468
	100	92.4	7.6	72.4	27.6
어업	455,067	412,185	42,882	346,511	108,555
	100	90.6	9.4	76.1	23.9
어로어업	87,447	78,313	9,134	80,728	6,719
	100	89.6	10.4	92.3	7.7
양식어업	364,916	331,288	33,628	263,268	101,648
	100	90.8	9.2	72.1	27.9
소금채취업	2,704	2,584	120	2,515	188
	100	95.6	4.4	93.0	7.0

주: 어업 종자사 현황은 수산물 생산업 중 어업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를 제외한 어로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종사자의 합으로 추정함
자료: 국가통계포털 해양수산업통계조사(검색일: 2021. 6. 8)

〈표 3-13〉과 같이 수산업 전반에 걸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여성 종사자의 비중은 적게 나타났다. 수산업 종사자의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72.4%, 여성은 27.6%로 남성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업활동 종사자 중 남성 비중은 76.1%로 평균보다 크고, 어로어업(92.3%)과 소금채취업(93.0%)의 남성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식어업의 여성 종사자 비중은 27.9%로 어업활동 전체의 여성 종사자 비중(23.9%)을 상회한다.

〈표 3-14〉 어업 유형별·경력별 고용 현황(2018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남성		여성	
			고용인원	비중	고용인원	비중
전체		27,982	18,308	65.4	9,674	34.6
어업유형	어로어업	13,475	12,276	91.1	1,199	8.9
	양식어업	4,822	3,670	76.1	1,153	23.9
	맨손/나잠어업	9,685	2,362	24.4	7,322	75.6
어업경력	10년 이하	6,390	5,033	78.8	1,356	21.2
	11~20년	5,226	3,397	65.0	1,829	35.0
	21~30년	7,524	5,089	67.6	2,435	32.4
	31년 이상	8,842	4,788	54.2	4,054	45.8
연간종사기간	6개월 미만	5,125	1,235	24.1	3,890	75.9
	6~12개월 미만	12,869	8,694	67.6	4,175	32.4
	12개월	9,988	8,379	83.9	1,609	16.1
전업/겸업 여부	전업	20,412	14,706	72.0	5,706	28.0
	어업수입 많은 겸업	5,376	2,589	48.2	2,787	51.8
	어업 외 수입 많은 겸업	2,195	1,014	46.2	1,181	53.8

주: 종사 형태의 값은 중복응답으로 전체 합계와 상이하며, 통계표의 모든 수치는 반올림상의 차이로 세부 항목의 합과 총계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가통계포털 해양수산업통계조사(검색일: 2021. 6. 8)

〈표 3-14〉의 해양수산업통계조사는 어업(어로어업, 양식어업, 맨손/나잠어업)에 특화된 성별 고용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수산물 생산을 위해 고용된 인원은 총 2만 7,982명으로, 이 중 남성은 18,308명(65.4%) 여성은 9,674명(34.6%)로 집계되었다.[146] 어로어업, 양식어업에서 남성의 비중이 높지만, 맨손/나잠어업에서 여성의 비중이 75.6%로 남성보다 2배 이상 높다. 어업경력과 관련하여서는 경력이 낮을수록 남성 고용 비율이 높고, 31년 이상과 같은 높은 경력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고용비율 격차가 10% 이내로 감소하였다. 어업에서 여성은 주로 6개월 미만의 단기간 고용이 주를 이루는 반면, 종사기간이 길수록 남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전업 비중이 높고, 겸업의 경우 남녀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어업 임금 현황

통계청 해양수산업통계조사[147]에 따르면, 어업 부문 고용인 월평균 임금은 126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내국인 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외국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임금이 여성보다 월평균 약 50만 원 높게 나타났다. 어업유형별 월평균 임금은 어로어업, 양식어업, 맨손/나잠어업 순으로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 또한 어로어업에서 가장 크고, 양식어업, 맨손/나잠어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표 3-14〉와 같이 남성 고용비중이 큰 업종일수록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경력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어업경력 30년 이전까지는 경력이 높

146) 어업인 종사 형태 값은 중복응답으로 어업인의 수를 의미하지 않음

147) 과거 수산업실태조사('15~'16년)는 '성별·고용형태별 수산업 분야 종사자 월평균 임금'을 조사하였으나, 해양수산업통계조사('17~'18년)로 통합된 후 '해양수산분야 종사자 연간급여 현황(합계)'으로 대체됨. 이는 상용근로자 외 임시·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 현황조사가 불가능함에 따름(통계청(2020b), pp. 60~61)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업(어로어업, 양식어업, 맨손/나잠어업) 고용인원에 대한 월평균 임금 현황을 제시함

을수록 남성의 임금이 높고 성별 임금격차가 확대된다. 다만, 어업경력이 31년 이상인 경우 여성의 임금 수준이 남성을 역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어업유형별 종사자 월평균 임금(2018년 기준)

단위: 만 원

구분		월평균 임금	한국인	외국인	남성 (a)	여성 (b)	성별차이 a-b
전체		126.0	138.2	127.4	156.4	107.0	49.4
어업 유형	어로어업	140.3	154.8	118.0	174.8	91.8	83.0
	양식어업	133.7	154.1	155.3	153.4	98.0	55.4
	맨손/나잠어업	115.1	126.6	122.5	125.2	108.8	16.4
어업 경력	10년 이하	125.9	140.3	134.7	147.0	84.0	63.0
	11~20년	127.7	134.5	153.0	174.3	98.3	76.0
	21~30년	117.3	135.3	116.3	173.0	81.6	91.4
	31년 이상	131.6	142.1	99.3	133.4	138.0	-4.6
연간 종사 기간	6개월 미만	134.8	151.4	195.0	143.7	129.7	14.0
	6~12개월 미만	123.1	128.2	135.4	162.8	82.4	80.4
	12개월	122.0	140.5	117.4	153.0	99.7	53.3
전업/ 겸업 여부	전업	123.7	136.2	126.2	166.6	93.5	73.1
	어업수입 많은 겸업	106.6	116.7	142.2	142.4	77.6	64.8
	어업외수입 많은 겸업	181.6	193.2	93.6	109.4	215.4	-106.0

주: 종사 형태의 값은 중복응답으로 전체 합계와 상이하며, 통계표의 모든 수치는 반올림상의 차이로 세부 항목의 합과 총계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가통계포털 해양수산업통계조사(검색일: 2021. 12. 27)

3) 어업 노동시장의 특성[148)]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은 노동 특성에서 차이를 갖는다. 어로어업은 기후조건에 민감하고, 완력이 수반되며, 격리된 환경에서 위험한 활동을 수반하는 특성을 갖는다. 특히 해상을 기반으로 한 생산활동과 다양한 기계장비

148) 한광석 외, 앞의 책, pp. 48~55를 참고하여 작성함

의 활용, 갑작스러운 기후조건 변화에 대한 노출은 노동강도를 증가시키고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육상과 격리된 작업공간에서 자유롭지 못한 활동 범위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시간의 자율적 활용을 제약한다. 이러한 생산의 불확실성과 노동시간의 불명확성, 선장 중심의 단체 채용 및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노동환경은 인력수급과 임금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양식어업은 어로어업에 비해 노동시간을 특정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성을 특징으로 한다. 다만, 입·출하 시기에 인력 수요가 급증하여 상시인력 외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 또한,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 지인, 동종 간 협업을 통해 인력을 소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어업 노동시장의 특성

노동시장 특성		주요 내용
어로어업	생산의 불확실성	• 노동시장은 업황의 호조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어획고 상황은 선원임금에 영향을 미침
	노동시간의 불명확성	• 조업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이 불명확
	선장 중심의 단체 채용	• 어로장의 경험, 어선원의 노력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침 • 인력소개업체 활용보다 어로장이나 선장의 소개로 채용
	수작업 체계, 기계화 미비	• 업무의 메뉴얼화가 어려움
양식어업	인력수요의 계절성	• 종자입식, 출하 등 특정 시기의 인력수요 증가 • 상시인력 외 임시·일용직 투입을 통해 운영 • 인력수요 급증 시기는 품목에 따라 상이
	인력 확보 경로와 임금	• 양식산업 성격, 내외국인 근로자 여부에 따라 상이 • 굴 양식장 : 지역 주민, 소개를 통한 임시직 고용 • 어류 가두리 양식장 : 동종간 협업, 소개 통한 일용직 고용 • 외국인 노동자는 상시근로자로서 한국인력관리공단을 통해 고용

자료: 한광석 외(2019), pp. 48~55

2. 노동시장의 성별 구조적 특성

앞서 어업 노동시장은 종사자의 성비가 불균형하고, 업종별 편차 또한 상당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여성참여 노동시장의 특성을 검토하고, 노동시장 내 성격차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인 성별 직종분리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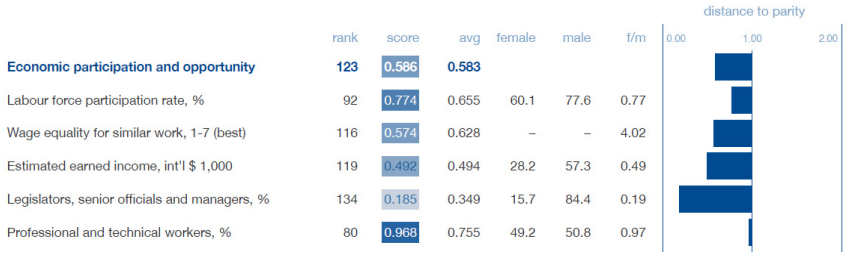
1) 여성참여 노동시장의 쟁점

1980년대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해체와 여성의 고학력화,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등 사회구조적 변화는 성평등 의식의 진전을 가져왔으며, 1990년 이후 고령화 등으로 여성인력의 활용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중요 요소로 부각되었다.[149]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 고용차별 등 노동시장 내 성격차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여성학, 경제학, 사회학, 사회복지 등 사회과학분야 전반에서 성격차 해소를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림 3-7〉 2021년 우리나라의 성격차 지수(GGI)



149) 황수경(2003), p. 요약1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21), pp. 241-24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성격차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GGI 순위는 156개국 중 102위에 그친다. 특히, GGI 지표 중 경제참여 및 기회부문의 성격 차 지수는 전 세계 123위로 하위 20% 수준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3-7〉과 같이 임금 평등(wage equality for similar work), 기대 소득(estimated earned income), 입법부·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legislators, senior officials and managers)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에서 성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성별 평균임금과 임금비

단위: 만 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월평균 임금	남성	267.3	277.4	293.2	304.8	318.6	329.8	344.0	353.4	373.9
	여성	181.1	187.9	199.9	209.1	219.3	220.2	227.7	236.6	249.7
성별 임금비		0.68	0.68	0.68	0.69	0.69	0.67	0.66	0.67	0.67

주: 성별 임금비는 여성임금/남성임금으로 계산
자료: 최세림·정세은(2019), p. 1[150]

전체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격차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성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17〉과 같이 2009~2017년 5인 이상 기업 취업자의 성별 임금격차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약 31~34%를 유지하는 것으

150) 최세림·정세은(2019)는 고용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2009~2019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성별 평균임금과 임금비를 산출함

로 나타났다. 임금격차 외에도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은 남성 대비 낮은 고용률, 결혼과 출산에 따른 M자형 노동 참여, 남성 중심의 내부노동시장 등을 특징으로 함에 따라 노동시장 내 젠더에 따른 권력관계가 이어지고, 성격차가 해소되었다 보기 어렵다.[151]

신경아(2016)는 여성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성격차를 줄이기 위한 쟁점 사항으로 여성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단절, 남성 중심의 내부노동시장 구조, 일·가정 양립제도의 효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 성별 직업분리의 완화 등을 제시하였다.[152] 교육 수준 향상 등으로 과거보다 개별 여성의 인적자본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내 성격차는 지속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기제에 대한 접근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여러 구조적 기제 중 노동시장 내에서 성에 따라 직업이 분리되는 성별 직종분리현상은 성격차를 야기하고, 남성노동자에게 유리한 노동시장을 조성·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였다.[153]

2) 성별 직종분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이론적 배경

성별 직종분리(Occupational segregation by gender)는 노동시장 내 여성과 남성의 직종이 분리되고 특정 직종에 특정 성별이 집중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154] 성별 직종분리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크게 성별에 따른 전공분리, 가정과 사회에서의 성역할 분리, 노동시장 내 차별과 편견 등을 들 수 있으며,[155] 다양한 이론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151) 신경아(2016), p. 322.
152) 신경아, 앞의 책, pp. 334~351.
153) 신경아, 앞의 책, pp. 323~346.
154) 사명철(2015), p. 2.
155) 최세림(2021), p. 2.

신고전주의(Neo-classical)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은 교육과 경력 등의 인적자본 역량 차이로 여성 또는 남성이 특정 직업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해 노동시장이 성별에 따라 분절(Labour market segmentation)되는 것으로 보았다. 일례로, 엔지니어 종사를 희망하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한 여성이 남성보다 많기에 성별에 따른 직종분리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이다.[156]

노동시장의 분절은 과밀효과(Overcrowding effect)[157]를 통해 여성 중심 직업군의 임금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여성 인적자원 낭비, 노동유연성 악화 등 노동시장 내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Anker, R.(1997)는 노동시장 분절과 성별 직종분리가 노동시장 구조를 넘어 남성이 여성을 보는 견해와 여성이 자신을 바라보는 견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여성의 지위와 소득, 사망률, 교육, 훈련 등 다양한 사회적 변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성 고정관념과 성 불평등 기반을 지속시킬 수 있다 주장하였다.[158]

성별 직종분리에 관한 이론적 배경은 전술한 신고전주의 인적자본이론과 이중노동시장론, 여성주의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고전주의 인적자본이론은 남성은 육체노동, 여성은 가사노동에 비교우위를 가짐에 따라 남편은 취업하고 아내는 가사에 종사하는 가정 내 성역할 분담을 전제로 한다.[159] 다시 말해 노동시장 내 성격 차 발생 원인은 남녀 노동자가 지닌 생산성의 차이에 있으며, 이러한 생산성 차이는 노동자 개인이 지닌 인적 자본

156) Anker, R.(1997), p. 336.
157) 저임금 직종에 여성근로자가 집중됨으로써 여성근로자 간 경쟁이 심화되고, 노동 공급의 증가로 해당 직종 임금이 하락하는 효과임. 성별 인적자본에 대한 차별,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별 등으로 일부 직종으로의 여성근로자 집중현상과 저임금 문제 간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혼잡가설, 집중가설로도 불림 (자료: 신경수(2002b), p. 13)
158) 위의 책, p. 315.
159) 금재호(2004), p. 263.

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한다.[160] 즉, 신고전주의 인적자본이론은 가정 내 돌봄노동 부담 등으로 여성들이 충분한 교육과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성별에 따른 인적자본 격차, 노동기회 상실 등이 발생한다는 관점이다.

이중노동시장론(Dual labor market theory)은 노동시장이 분단화 되어 있다는 노동시장 분단론(Labor market segmentation theory)에서 출발한다. 노동시장은 고임금·고용안정적인 1차 노동시장과 저임금·고용불안을 특징으로 하는 2차 노동시장으로 분단되어 있으며,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은 시장원리가 아닌 할당(ration)되는 것으로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이 매우 힘들다는 관점이다.[161] 이중노동시장론은 주로 수요측 원인을 중시하여 사용자들이 특정 성을 선호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사용자들이 고용과 임금, 승진, 경력개발 등에서 성별로 다른 기회를 할당하기 때문에 특정 직업으로의 진입이 제한된 여성들이 취업이 용이한 직종으로 이동하게 되고, 여성이 집중되는 직종의 임금이 낮아지고, 노동시장이 분절된다는 이론이다.[162]

여성주의 이론은 비 노동시장 변수(Non-labor market variables)에 주목하는 비경제적 이론으로 사회의 가부장적 가치관과 관습으로 인해 여성들의 사전적 인적자본투자 기회가 박탈됨을 지적한다.[163] 즉,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역할의 고정관념이 여성을 가사, 육아 등에 보다 집중하도록 가치관을 형성시키고, 그 결과 여성은 노동유연성이 확보되는 저임금·저생산성으로 대변되는 일부 직종에 종사하며 임금격차와 성별 직종분리 현상을 겪는다는 견해이다.[164]

160) 최성애·황진회·엄선희(2005), p. 6.
161) 금재호, 앞의 책, p. 264.
162) 권혜자(2005), p. 104.
163) 위의 책, p. 2.
164) 금재호, 앞의 책, p. 266.

(2)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165]

성별 직종분리 완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은 불평등 해소와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성별에 따른 불평등 해소 측면이다. 국내외에서 성별 직종분리는 노동시장을 분절시키고, 남성은 주로 고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여성은 저임금 2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도록 한다. 이러한 성별 직종분리는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유발하고, 나아가 노후의 생활수준과 의료 복지 수혜 가능성 등 사회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다.

둘째, 생산가능인구의 양성과 배치에 있어 효율성 제고 측면이다.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 현상은 노동시장 진입 이전 단계인 인적자본의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쳐 성별 직종분리 현상을 더욱 고착화시킨다. 일례로 여학생들은 여성 집중직종이 상대적으로 진입하기 쉽고, 유리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이에 여학생들은 전공 선택 등에 있어 실제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가 남성 집중직종이더라도 여성으로서 차별이 적고 진입이 용이한 직종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직종 선택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잠재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양성되고,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방해하여 노동시장 내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관점이다.

(3) 기존 연구의 검토

성별 직종분리에 관한 선행연구는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현상을 검증하고, 직종분리와 성별 임금격차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신경수(2002b)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현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직종분리 현상과 임금격차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165) 최세림(2021) 자문 결과를 참고하여 작성함

자 하였다. 성별 직종분리현상을 검증하기 위한 성 분절지수(Index of Sex Segregation)로 던컨지수(Duncan & Duncan Dissimilarity Index), 규모표준화지수(Size-standardized Dissimilarity Index), 혼잡지수(Crowding Index)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자료로 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를 사용하였다. 약 20년간의 성별 직종분리현상을 분석한 결과, 분절지수는 1980년대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1990년대 들어 증감을 반복하며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 과밀효과 검증을 위해 직종별 여성비를 기준으로 남성직종과 혼성직종, 여성직종으로 분류하여 검증한 결과 여성비가 증가할수록 해당 직종의 임금수준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남성직종에서는 과밀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직종별로 여성비의 증가가 여성근로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의 임금까지 하락시킴을 확인하였다.

황수경(2003)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우리나라 성별 직종분리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신경수(2002b)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던컨지수와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를 활용하였으며, 인적자본이론과 젠더이론 측면에서 성별 직종분리현상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기간 상당수의 고학력자가 노동시장에 새로이 배출된 점을 감안할 때 직종분리 현상의 개선은 매우 더디게 이뤄졌으며, 성별 직종분리를 성차별의 중요 지표이자 성별 임금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였다.

금재호(2004)는 성별 직종분리현상을 중심으로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성차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성별 직종분리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던컨지수와 실버(Silber)지수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별 직종분리현상은 심화됨을 확인하였다. 여성직종의 임시·일용직 비중이 남성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집중화에 따라 여성의 임시·일용직화가 발생함을 발견하였다.

이 외 사명철(2015), 최세림(2019), 신선미 외(2020) 등의 최근 연구에서도 노동시장의 성격차를 진단하기 위해 성별 직종분리 개념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3. 어업 노동에서 성별 직종분리

1) 성 분절지수

성 분절지수란 성별로 직종의 분리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로, 노동시장이 종사자의 성별에 따라 분절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성 분절지수를 통해 성별 직종분리 현상을 분석하는 경우, 방법론의 차이 외에도 어떤 지수를 선택하는지, 적용하는 직종의 정의와 분류방법은 무엇인지에 따라 그 크기와 결과가 달라진다. 즉,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더라도 분석에 사용된 직종 분류가 대분류인지 소분류인지에 따라 결과에 차이를 보이고, 일반적으로 직종의 분류를 세분화시킬수록 성 분절지수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에서 성별 직종분리를 추정함에 있어 성 분절지수를 활용하는 것은 제한된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이 가능하고, 노동시장 전체의 성별 직종분리 정도를 하나의 지수로 산출할 수 있어 직관적이고 해석이 용이하다는 이점에 따른다.[16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 직종분리 분석에 가장 폭넓게 활용되는 던컨지수와 직종별·성별 집중도 분석을 위한 성 집중도 모형을 활용·분석하였다.

166) 신경수(2002b), pp. 40~41.

(1) 던컨지수

던컨지수는 당초 특정 두 집단의 거주지 분포가 완벽하게 균일해지려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공간적 분리, 거주지 분화 등을 측정하는 데 활용되었다.[167] 노동시장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직업분포를 갖기 위해 재분배되어야 할 여성 혹은 남성의 비율로 정의할 수 있으며,[168] 아래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D = \sum_{i=1}^{n} \left| \frac{M_i}{\sum_{i=1}^{n} M_i} - \frac{F_i}{\sum_{i=1}^{n} F_i} \right| \times 100 \times \frac{1}{2}$$

위 식에서 i는 직종, n은 전체 직종, M_i는 i직종의 남성근로자 수, F_i는 i직종의 여성근로자수, $\sum_{i=1}^{n} M_i$는 전체 남성근로자의 수, $\sum_{i=1}^{n} F_i$는 전체 여성근로자의 수를 의미한다.[169]

던컨지수 값의 범위는 $0 \leq D \leq 100$으로 지수 값이 클수록 성별 직종분리가 심화됨을 의미하고, 지수가 0이면 각 직종의 성별 분포가 서로 동일하여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현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170]

던컨지수는 각 직종의 절대적 규모를 바탕으로 직종별 규모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는 가중지수(weighted index)로, 대규모 직종의 분리는 과대평가되고, 소규모 직종의 분리는 과소 평가되는 한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대규모 직종은 성별로 분리 고용하고 소규모 직종은 성별로 혼합 고용하는

167) 박윤환(2011), p. 111.
168) 황수경(2003), pp. 51~52.
169) 신경수(2002b), p. 41.
170) 위의 책, p. 42.

경우와 대규모 직종은 성별로 혼합 고용하고, 소규모 직종은 성별로 분리 고용하는 경우, 분리 고용과 혼합 고용의 성별 구성비가 동일하더라도 대규모 직종에서 성별로 분리 고용하는 전자의 경우, 던컨지수가 더 큰 값으로 도출된다.[171] 즉, 대규모 직종이 소규모 직종에 비해 지수 값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직종을 세분화할수록 값이 커지는 경향을 가져 던컨지수는 직종분리 수준의 추세를 살펴보는 데 적합하다.[172]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던컨지수는 계산이 용이하고, 제한된 통계자료로 산출이 가능함에 따라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가 제한된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2) 성 집중도 모형

성 집중도 모형은 노동시장 내에서 남성과 여성이 어떤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성별 직종분리 현상의 존재 여부와 정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입지계수 모형(Location Quotient)을 응용한 것이다.[173] 입지계수 모형이란 전체 근로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중과 산업별·직종별 남성 또는 여성의 비중을 비교하는 것으로 아래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LQ = \frac{(E_{gi}/E_i)}{(E_g/E)} = \frac{i\text{직종 여성 또는 남성 비중}}{\text{전체 여성 또는 남성 비중}}$$

위 식에서 E는 전체 근로자의 수, E_g는 전체 여성 또는 남성 근로자의 수, E_i는 i직종 전체 근로자의 수, E_{gi}는 i직종 여성 또는 남성 근로자의 수를 의미한다.[174]

171) 위의 책, p. 42.
172) 윤지현(2018), pp. 31~32.
173) 윤혜린(2013), p. 21.
174) 위의 책, p. 22.

입지계수 모형은 관심 항목의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 분할계수, 특화계수로 지역경제학에서 경제구조와 분화(differentiation)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특정 산업이 해당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여 특정 산업의 지역 간 상대 특화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계수 해석은 1을 기준으로 계수 값이 1보다 크다면 지역 내 해당 산업의 특화 수준이 높다고 해석하고, 계수 값이 1 이하일 경우 해당 산업이 전국 분포에 비해 적게 분포해 있음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계수 값이 1.25 이상이면 해당 산업이 지역 내에 집적되어 있다고 판단한다.[175]

다만, 입지계수는 한 지역 내 특정 산업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지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지역 내 종사자 규모를 고려하지 않아 특정 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더라도 집중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고, 해당 지역 내 관심 산업 규모가 반영되지 않는다.[176] 즉, 노동시장의 성별 구조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i직종에 종사하는 남성 또는 여성 비중이 다른 직종 대비 높은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며, 성별에 따른 강세 직종 분류로만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입지계수 또한 던컨지수와 함께 제한된 통계자료를 이용해 도출할 수 있으며, 성별·직종별 집적 정도를 확인하는 데 용이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2) 분석 자료

성 분절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계자료로 산업 내 성별 종사자 현황이 요구된다. 즉, 업종별 성별 직종분리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업별 성별 종사자 현황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수산업 관련 국가승인통계 중 종사자의 성별이 구분된 성인지 통계[177]가 부족하고 조사

175) 남기성·오민호·홍현균(2008), p. 2.
176) 위의 책, p. 3.
177) 개별 차원(individual level)의 통계에서 남녀로 분리되어 있는 통계를 의미함(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기간 또한 변화 추세를 보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여성어업인에 관한 국가승인통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산업 성별 직종분리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국가 통계들을 활용하여 추정·분석하였다.

첫째, 던컨지수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성별 직종분리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178] 자료를 활용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성 분절지수는 직종의 정의와 분류방법에 따라 분석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직종분류체계 활용을 위해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된 2009년 이후 자료를 활용하였다.

둘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수산업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해양수산업통계조사를 활용하였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생산 활동의 일반적 결합 형태 등을 기준으로 산업활동을 분류·유형화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179] 다만, 생산, 유통, 가공이 결합된 수산업은 중분류 중 어업(03)으로만 확인할 수 있고, 그 외는 분야별로 다른 산업과 혼용되어 특정이 어렵다. 어업 또한 업종별로 세분화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해양수산업통계조사는 해양수산업특수분류에 따라 수산업을 대분류로 유형화하고 있으며,[180] 해양수산업 내 분류별 종사자 성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승인통계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다만, 해양수산업통계조사의 이용 가능한 통계가 2017~2018년으로 한정되어 장기 추세를 확인할 수 없고, 현상에 대한 점검만 가능하며,[181] 업종별 종사자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통계(검색일: 2021. 6. 5))

178)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주를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1년 주기로 조사됨

179) 통계분류포털(검색일: 2021. 6. 1)

180) 한광석 외(2019), p. 4.

181) 해양수산업통계조사의 전신인 수산업실태조사 또한 성별로 종사자 수가 구분되지 않아 성별 직종분리 연구에 활용할 수 없음

셋째, 여성어업인 통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 업종별 성별 직종분리 수준을 추정하기 위해 통계청 농림어업조사[182]와 농림어업총조사[183] 자료를 활용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산업은 종사자의 성비가 불균형하고, 업종별 성별 편차가 존재함에 따라 어가인구 통계를 활용하여 성 분절지수를 도출하였다. 다만, 농림어업조사는 2010년 이후 어가인구의 성별 및 주종사 분야를 제공하나 종사 분야를 어업과 농업, 제조업 등으로 구분하여 업종별 종사자의 성비를 확인할 수 없고, 어가인구 중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원의 성비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에 반해 농림어업총조사는 어업종사가구원의 업종별 성별 종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나, 확인 가능한 통계자료가 3회차[184]라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업노동시장이 성별에 따라 업종별로 분절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 분절지수를 활용하였다.

3)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

(1)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성별 직종분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09년 이후 우리나라 전 산업의 성별 직종분리 추세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던컨지수를 도출하였고, 직종을 세분화할수록 던컨지수 값이 커지는 경향을 고려하여 대분류와 중분류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직종 대분류, 중분류, 어업(중분류 03) 모두 성별 직종분리현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추세선을 살펴보면 던컨지수가 다소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던컨지수 또한 큰 차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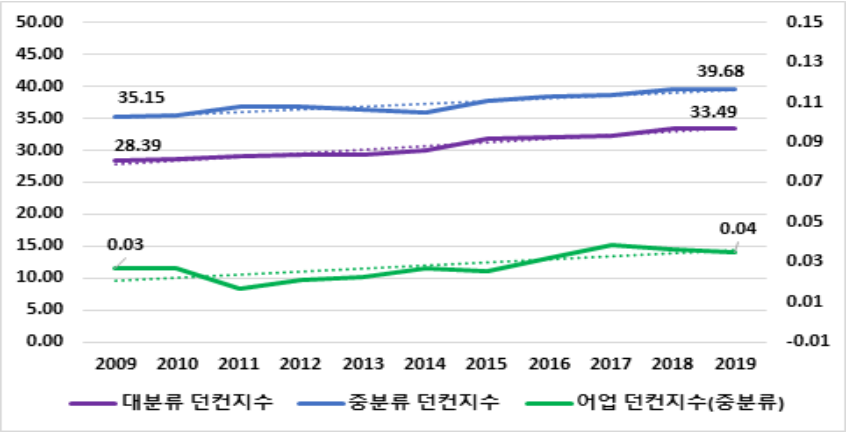
182) 전국의 농림어가의 규모, 인구, 분포 및 경영형태를 파악하여 농림어업 정책 수립 및 평가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1년 주기로 조사됨

183) 농림·어업을 경영하는 가구와 가구원의 규모, 구조,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하여 정책수립 기초자료 및 각종 학술연구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5년 주기로 조사됨

184) 어업종사가구원의 업종별 성별 현황은 2005년 이후 조사되었으며, 동 조사는 5년 주기로 시행됨에 따라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는 2005년, 2010년, 2015년 3회차에 그침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대분류 기준 2009년 28.39%에서 2018년 33.53%까지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33.49%로 나타나 2009년 이후 연평균 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중분류 기준 던컨지수는 지수 경향성에 의해 대분류에 비해 지수의 값이 크게 나타났으나, 대분류와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중분류 중 어업(03)코드 또한 대분류, 중분류와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그림 3-8〉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던컨지수 추이(2009~2019)



주: 국가통계포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검색일: 2021. 6. 1) 산업분류별 통계 활용
자료: 저자 작성

어업(03)은 전체 종사자 대비 종사자의 수가 극히 적어[185] 던컨지수의 값이 작고 변화의 양상을 확인하기 어려워 성 집중도 모형을 통해 어업 내 성별 집중 정도를 분석·파악하였다. 성 집중도 모형의 해석은 계수 1을 기준으로 전체 종사자 중 여성의 비중이 40%이고,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 종사자의 비중 또한 40%일 경우 집중도 계수는 1로 산출되고, 이 경우 어업에서 여성 고용이 전체 노동시장 내 균형과 일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186]

185) 2019년 기준 전체 종사자의 수는 1,085만 명이나 어업 종사자 수는 6.443명으로 집계됨 (자료: 국가통계포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검색일: 2021. 6. 1))
186) 윤혜린, 앞의 책, pp. 45~46.

〈표 3-18〉 우리나라 노동시장 및 어업 성 분절지수(2009~2019)

단위: %

연도	던컨지수			중분류 어업(03) 성 집중도		
	대분류	중분류	중분류 중 어업(03)	남(A)	여(B)	여-남 (B-A)
2009	28.39	35.15	0.03	1.29	0.38	-0.91
2010	28.66	35.40	0.03	1.33	0.33	-0.99
2011	29.08	36.92	0.02	1.30	0.39	-0.92
2012	29.29	36.90	0.02	1.30	0.42	-0.88
2013	29.37	36.40	0.02	1.34	0.35	-0.99
2014	30.02	35.87	0.03	1.44	0.22	-1.22
2015	31.81	37.76	0.03	1.46	0.19	-1.27
2016	32.14	38.35	0.03	1.49	0.15	-1.34
2017	32.32	38.63	0.04	1.46	0.22	-1.25
2018	33.53	39.56	0.04	1.46	0.26	-1.20
2019	33.49	39.68	0.04	1.45	0.27	-1.18
평균	30.74	37.33	0.03	1.39	0.29	-1.10
연평균 증가율	1.7%	1.2%	2.6%	1.2%	-3.3%	2.6%

주: 국가통계포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검색일: 2021. 6. 1) 산업분류별 통계 활용
자료: 저자 작성

지수분석 결과 어업의 남성 집중도는 2009년 1.29에서 2019년 1.45까지 증가하였으며, 집적의 기준인 1.25를 초과하여 어업 내 남성 종자사가 집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녀의 집중도 격차 또한 점차 커짐에 따라 성별 직종분리가 심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수산업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

수산업 노동시장 내 던컨지수는 2017년 12.5%에서 2018년 13.8%로 소폭 상승하여 성별 직종분리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187] 또한, 동

187) 해당 던컨지수는 해양수산업통계의 수산업 전체 종사자를 모수로 하였으며, 동 지수를 통해 수산업 노동시장 내 성 분절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음

기간 수산업 전체 종사자 감소 폭 대비 여성 종사자의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성별 직종분리 현상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표 3-19〉 수산업 노동시장의 던컨지수(2017~2018년)

단위: 명, %

연도	전체 종사자	남성 종사자	여성 종사자	던컨 지수
2017	638,646	389,410	249,236	12.49
2018	611,324	442,856	168,468	13.84
평균	624,985	416,133	208,852	13.16
연평균 증가율	-4.3%	13.7%	-32.4%	10.8%

주: 국가통계포털 해양수산업통계조사(검색일: 2021. 6. 1) 사업체 종사자 현황 통계 활용
자료: 저자 작성

〈표 3-20〉의 해양수산업통계조사[188]를 활용한 성 분절지수 분석에 따르면, 수산물 생산업 중 남성종사자는 어로어업과 소금채취업에 집중되어 있고,[189] 여성종사자는 양식어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남성 중심 산업으로 인식되는 어로어업의 2017년 남성 집중도가 1.34로 집적의 기준인 1.25를 상회함에 따라 성 분절지수 결과를 통해서도 남성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양식어업의 여성 집중도는 1.18로 추정되었는데,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남성 대비 여성종사자의 수는 적으나 수산물 생산업 종사자의 성비를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여성 집중도가 높은 산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분석을 통해 수산업 하위 노동시장 중 종사자 규모가 가장 큰 생산업 내에 성별 직종분리 현상이 존재함을 지수로 확인하였으며, 양식어업은 남성 중심의 생산업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여성 종사자가 집적된 산업임을 확인하였다.

188) 해양수산업통계조사는 수산업을 생산업, 가공업, 유통업으로 구분하고, 가공업을 제외한 생산업과 유통업은 다시 세분화함. 수산물 생산업은 어로어업,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소금 채취업으로 구분되고, 수산물 유통업은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수산물 운동 및 보관업으로 구분됨

189) 이 외 남성 종사자가 집적된 시장으로는 어업관련 서비스업,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이 있으나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제외함

〈표 3-20〉 수산업 노동시장의 성 분절지수(2017,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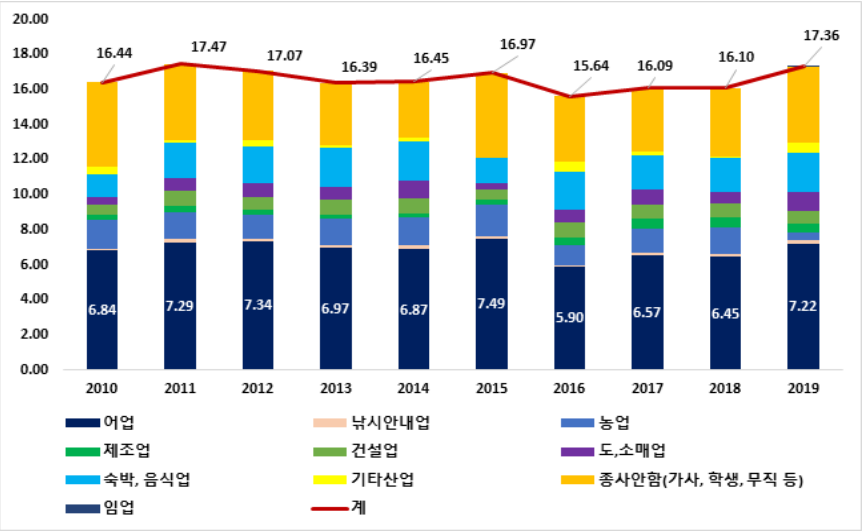
구분	종사자 현황						성 분절지수			
	전체		남		여		던컨(%)	남성 집중(A)	여성 집중(B)	여-남 (B-A)
	종사자(명)	비중(%)	종사자(명)	비중(%)	종사자(명)	비중(%)				
수산업(2017)	638,646	100.00	389,410	60.97	249,236	39.03	(중) 12.49 (소) 25.34	-	-	-
수산물 생산업[1)]	477,382	100.00	310,061	100.00	167,321	100.00	6.24	1.07	0.90	-0.17
어로어업	102,694	21.51	89,404	28.83	13,290	7.94	10.45	1.34	0.37	-0.97
양식어업	371,467	77.81	218,403	70.44	153,064	91.48	10.52	0.91	1.18	0.27
어업관련 서비스업	418	0.09	338	0.11	80	0.05	0.03	1.24	0.55	-0.70
소금 채취업	2,803	0.59	1,916	0.62	887	0.53	0.04	1.05	0.90	-0.15
수산업(2018)	611,324	100.00	442,856	72.44	168,468	27.56	(중) 13.84 (소) 21.09	-	-	-
수산물 생산업[1)]	455,500	100.00	346,860	100.00	108,640	100.00	6.92	1.05	0.87	-0.19
어로어업	87,447	19.20	80,728	23.27	6,719	6.18	8.54	1.21	0.32	-0.89
양식어업	364,916	80.11	263,268	75.90	101,648	93.56	8.83	0.95	1.17	0.22
어업관련 서비스업	434	0.10	350	0.10	84	0.08	0.01	1.06	0.81	-0.25
소금 채취업	2,703	0.59	2,515	0.73	188	0.17	0.28	1.22	0.29	-0.93

주: 1) 국가통계포털 해양수산업통계조사(검색일: 2021. 6. 1) 사업체 종사자 현황 통계 활용
2) 1)의 값은 수산업 중분류로 생산업, 유통업, 가공업이 있으며, 어로어업은 수산물 생산업 하위 소분류로 분류됨
3) 남녀 종사자 비중에서 소분류는 중분류 내 성비로 계산
4) 중분류의 성 분절지수 추정 시 수산업 전체 종사자 규모를 모수로 활용
5) 소분류의 성 분절지수 추정 시 해당 중분류 전체 규모를 모수로 활용
자료: 저자 작성

(3) 어가 내 성별 직종분리

어가인구 통계를 활용하여 어업 노동력의 공급 기반인 어가 내 성별 직종분리현상을 추정하였다. 〈그림 3-9〉에서 15세 이상 어가인구를 대상으로 던컨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던컨지수는 2010년 16.44%에서 2019년 17.36%로 상승함에 따라 성별 직종분리가 다소 심화됨을 알 수 있다. 하위 산업 중 어업 또한 2010년 6.84%에서 2019년 7.22%로 증가하였다.

〈그림 3-9〉 15세 이상 어가인구 던컨지수 추이(2010~2019)



주: 1)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조사(검색일: 2021. 6. 3) 주종사 산업 및 성별 어가인구 통계 활용
2) 본 통계는 어가 규모가 적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충북은 전국 값에서 제외
3) 임업은 2019년 추가되어 이전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자료: 저자 작성

〈표 3-21〉에서는 어가인구 종사 산업 중 종사자의 비중이 큰 어업, 농업, 숙박·음식업, 종사안함(가사 등)을 중심으로 성 분절지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3-21〉 15세 이상 어가인구 성 분절지수

구분		어가인구 현황						성 분절지수			
		전체		남		여		던컨(%)	남성 집중(A)	여성 집중(B)	여-남 (B-A)
		가구원(명)	비중(%)	가구원(명)	비중(%)	가구원(명)	비중(%)				
2010	**전체**	**155,493**	**100.00**	**77,437**	**49.80**	**78,056**	**50.20**	**16.44**			
	어업	77,307	49.72	43,814	28.18	33,493	21.54	6.84	1.14	0.86	-0.27
	농업	29,763	19.14	13,533	8.70	16,230	10.44	1.66	0.91	1.09	0.17
	숙박, 음식업	4,211	2.71	1,064	0.68	3,147	2.02	1.33	0.51	1.49	0.98
	종사안함	25,954	16.69	9,190	5.91	16,764	10.78	4.80	0.71	1.29	0.58
2015	**전체**	**119,748**	**100.00**	**60,002**	**50.11**	**59,746**	**49.89**	**16.97**			
	어업	63,809	53.29	36,456	30.44	27,353	22.84	7.49	1.14	0.86	-0.28
	농업	23,580	19.69	10,726	8.96	12,854	10.73	1.82	0.91	1.09	0.18
	숙박, 음식업	3,569	2.98	948	0.79	2,621	2.19	1.40	0.53	1.47	0.94
	종사안함	16,187	13.52	5,214	4.35	10,973	9.16	4.84	0.64	1.36	0.72
2019	**전체**	**107,278**	**100.00**	**52,866**	**49.28**	**54,412**	**50.72**	**17.36**			
	어업	62,181	57.96	34,516	32.17	27,665	25.79	7.22	1.13	0.88	-0.25
	농업	17,452	16.27	8,354	7.79	9,098	8.48	0.46	0.97	1.03	0.06
	숙박, 음식업	4,555	4.25	1,059	0.99	3,496	3.26	2.21	0.47	1.51	1.04
	종사안함	12,420	11.58	3,799	3.54	8,620	8.04	4.33	0.62	1.37	0.75

주: 1)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조사(검색일: 2021. 6. 3) 주종사 산업 및 성별 어가인구 통계 활용
2) 본 통계는 어가규모가 적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충북은 전국 값에서 제외
3) 주요 산업인 어업, 농업, 숙박·음식업, 종사안함만 다룸
자료: 저자 작성

〈표 3-21〉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나타난 공통적 현상으로 15세 이상 어가인구 중 어업의 남성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어업의 남성 집중도 계수는 2010년 1.14, 2019년 1.13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어업을 제외한 농업, 숙박·음식업 모두 여성 집중도 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집적의 기준인 1.25를 상회하여 여성이 강세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사 등을 이유로 외부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어가인구 또한 여성에게 집적되어 있다. 종합하자면, 15세 이상 어가인구가 종사하는 산업 중 어업은 남성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 어업을 제외한 주요 산업 모두 여성 집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어가 내 여성들 또한 어업 종사보다 타 산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지난 10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어가인구가 감소하는 국면에서도 유지되었다.

업종별 성별 직종분리 수준을 추정하고자 하였으나, 이용 가능한 통계가 부재함에 따라 어가인구 어업종사 가구원의 종사 부문으로 추정·갈음하였다. 일반적으로 어선어업은 남성이 주로 종사하고, 나잠어업은 여성이 주로 종사한다는 인식이 강한데 〈표 3-22〉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2005~2015년까지 공통적으로 종사 규모가 가장 큰 어선어업을 제외한 타 업종에서 여성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나잠어업의 경우 집중도 계수가 2 이상으로 여성 강세가 두드러졌다. 양식어업은 2005년 여성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2015년 성비 균형에 가까워졌으며, 어선어업의 성비 불균형은 큰 변화 없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반적 통념과 같이 종사 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기계화, 자본화가 이루어진 어선어업의 경우 남성 강세를 보이고,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나잠, 맨손어업에서 뚜렷한 여성 강세 현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난 10년 간 양식어업의 직종분리는 완화된 반면, 어선어업과 나잠, 맨손어업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 3-22〉 어가인구 어업 주종사부문 성 분절지수

구분		어가인구 현황						성 분절지수			
		전체		남		여		던컨(%)	남성 집중(A)	여성 집중(B)	여-남 (B-A)
		가구원(명)	비중(%)	가구원(명)	비중(%)	가구원(명)	비중(%)				
2005	**전체**	**130,589**	**100.00**	**70,307**	**53.84**	**60,282**	**46.16**	**29.11**			
	양식	41,631	31.88	20,282	15.53	21,349	16.35	3.28	0.90	1.11	0.21
	어선	58,257	44.61	40,812	31.25	17,445	13.36	14.55	1.30	0.65	-0.65
	나잠	6,574	5.03	214	0.16	6,360	4.87	5.12	0.06	2.10	2.04
	맨손	22,950	17.57	8,616	6.60	14,334	10.98	5.76	0.70	1.35	0.66
	기타	1,177	0.90	383	0.29	794	0.61	0.39	0.60	1.46	0.86
2010	**전체**	**107,163**	**100.00**	**57,224**	**53.40**	**49,939**	**46.60**	**24.55**			
	양식	29,712	27.73	16,352	15.26	13,360	12.47	0.91	1.03	0.96	-0.07
	어선	45,156	42.14	30,173	28.16	14,983	13.98	11.36	1.25	0.71	-0.54
	나잠	5,441	5.08	185	0.17	5,256	4.90	5.10	0.06	2.07	2.01
	맨손	25,954	24.22	10,155	9.48	15,799	14.74	6.95	0.73	1.31	0.57
	기타	900	0.84	359	0.34	541	0.50	0.23	0.75	1.29	0.54
2015	**전체**	**90,144**	**100.00**	**48,913**	**54.26**	**41,231**	**45.74**	**22.21**			
	양식	22,787	25.28	12,947	14.36	9,840	10.92	1.30	1.05	0.94	-0.10
	어선	38,439	42.64	25,244	28.00	13,195	14.64	9.80	1.21	0.75	-0.46
	나잠	4,613	5.12	239	0.27	4,374	4.85	5.06	0.10	2.07	1.98
	맨손	23,392	25.95	10,075	11.18	13,317	14.77	5.85	0.79	1.24	0.45
	기타	913	1.01	408	0.45	505	0.56	0.20	0.82	1.21	0.39

주: 1)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총조사(검색일: 2021. 6. 3) 주종사 산업 및 성별 어가인구 통계 활용
2) 비중은 해당 년도 전체 종사자 비중 대비로 계산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시사점

본 장에서는 여성어업인 정책이 어가·어촌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적, 지역적 정책대안으로 시작된 점을 감안하여, 인구통계 변화를 통해 여성어업인의 중요성을 점검하였다. 어가인구는 지속적 감소와 고령인구 확산이 가속화되고, 고령인구 중심의 핵가족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례로 어가 경영을 책임지는 어업경영주는 주로 남성으로 구성되었으나, 2000년 이후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며 20%를 상회하였고, 어업경영주 또한 고령인구와 여성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여성 어업경영주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어가 생계를 책임지는 고령 여성어업인에 대한 적극적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어가구조 변화에서 새로운 인구 유입원으로 다문화 어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지만, 실제 어촌·어업 일선에서는 다문화 어가의 수가 많지 않고, 다문화 어가 여성들의 어업참여 또한 극히 드물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다문화 어가를 대상으로 한 보다 면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190]

약 15년의 기간을 두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에서 도출한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여성어업인은 본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배우자보다 작고, 위상 또한 낮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여성들의 힘·완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가사노동 등으로 유연한 근무시간을 선호함에 따라 어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적 여건에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어구 손질, 어획물 선별 등 어업활동을 위한 노동보다 1차 생산을 중시하는 사고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사결정 권한과 위상 외에도 여성어업인 노동 기여에 대한 비가시화, 가사노동 전담에 따른 노동 부담, 여성이 고려되지 않은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은 2005년 이후

190) 제4장 제3절에서 후술할 여성어업인 면담조사 과정에서 얻은 결과임

모든 실태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성격차 문제는 성평등 국제지수, ILO 권고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 예로 성별 직종분리 현상과 이에 따른 과밀효과를 들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의 분절은 과밀효과를 통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야기하며, 나아가 사회 전반의 성 고정관념과 불평등 기반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지적된다. 어업 또한 통상적으로 성별에 따라 종사 직종이 분절된 것으로 인식된다. 불규칙한 노동시간과 선장 중심의 단체 채용이 주를 이루는 어로어업은 주로 남성들이 종사하고,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은 여성들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어업 노동시장 구조와 분절 여부를 실증적으로 추정·검토하고자 하였다. 종사자 성비를 통해 성별에 따른 어업 노동시장 구조를 살펴본 결과, 전체 어업 노동시장은 어로어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종사자 성비가 불균형함을 확인하였다. 성별에 따라 고용안정성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연간 종사기간을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6개월 이상 또는 12개월이 주를 이루는 반면, 여성은 6~12개월 또는 6개월 미만 임시·일용직 종사자가 주를 이뤘다. 월평균 임금의 경우 남성 임금이 여성보다 약 50만 원 높게 나타났다. 성별 직종분리 현상 또한 어업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성 분절지수에서 여성 집중도 값이 크다는 것은 성비가 불균형한 노동시장 구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여성의 참여가 활발한 직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가 내 어업종사 가구원을 대상으로 업종별 성 분절지수를 추정한 결과, 통상적 인식과 마찬가지로 여성어업인은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남성어업인은 어선어업에 강세를 보였다. 양식어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종사자의 성비가 균형을 이룬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정 결과를 통해 어업 노동시장 또한 여성참여 노동시장의 특성이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 여성이 집적된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은 어로어업에 비해 월평균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서도 월평균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업종별 성별 직종분리 현상의 존재는 여성어업인 정책의 업종별 접근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는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가 매우 제한됨에 따라 성별 직종분리현상을 실증분석하고 과밀효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성격차의 구체적 원인을 분석·파악하기 위하여 연속성을 갖춘 어업 노동시장에 대한 성인지통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한다.

04
여성어업인 노동환경 실태와 정책수요

제4장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어업인의 노동환경 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 실태조사는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남녀어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제3장에서 확인한 성별 직종분리 현상을 고려하여 성별·업종별로 조사대상을 구분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어업인 노동환경과 지위·권한 수준, 시간 활용 현황 등을 검토하고, 성별·업종별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남녀어업인의 시간 활용 현황을 비교하여 여성어업인이 체감하는 무급노동(가사노동, 무급 가족노동 등)의 부담을 제시하고, 이들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여성어업인 노동의 가시화와 어가소득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면담조사를 병행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정책수요를 구체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고자 한다.

제1절 남녀어업인 노동환경 실태조사

1. 실태조사 개요

본 연구는 전국 남녀어업인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어업인 노동환경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어업인의 노동실태, 생활 만족도, 복지 실태 파악에 주안점을 둔 선행연구와 달리 노동실태와 삶의 질 외에도 성별에 따른 의사결정 권한과 사회적 지위의 차이, 일평균 시간 활용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여성노동권 논의에서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전담과 이에 따른 과중한 노동시간이 화두로 제기됨에 따라 남녀어업인의 일평균 생활시간 활용이 차이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UN 권고안에 따라 작성된 통계청 「2019년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를 바탕으로 어업인 시간 활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본 실태조사는 2021년 8월 지역별·업종별 표본을 추출하여 남녀어업인 2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어업인은 연안어업,[191] 양식어업, 맨손/나잠어업 종사자로 한정하였다.

〈표 4-1〉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성별·업종별 어업인 노동실태, 지위·권한 수준, 삶의 질, 시간 활용 파악
조사대상	연안어업, 양식어업, 맨손/나잠어업 종사자 211명 (남성 63명, 여성 148명)
조사방법/기간	방문면접조사/2021년 8월
조사 수행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

자료: 저자 작성

191) 본 단락에서 연안어업은 연안에서 어선을 이용한 어로어업과 구획어업을 포함함

실태조사[192] 구성은 〈표 4-2〉와 같다. 어업인 공통설문은 노동실태와 지위·권한 수준, 삶의 질, 시간 활용 현황으로 구성되었으며, 여성어업인은 공통설문 외 업종별 정책수요와 애로사항도 조사하였다.

〈표 4-2〉 실태조사 구성

구분		내용
노동실태	어업 및 경제활동	• 종사업종, 작업 형태, 종사 이유, 어업경영 책임자, 업무 분담, 어업인으로서 본인의 지위, 어가 내 본인 지위, 어업인 직업 만족도 • 어업 외 소득, 종사 희망 분야, 어업 외 소득활동 장애요인, 본인 명의 자산 현황
지위·권한	의사결정 및 사회적 활동	• 어업생산, 어획물 가공, 어획물 판매, 어업 외 경제활동, 주요 가계 지출, 소규모 가계지출에서 의사결정 권한 • 수협 조합원, 어촌계, 여성어업인단체 등 사회적 활동 참여 여부
삶의 질	삶의 질	• 건강상태 • 문화·여가
시간 활용		• 지난 1달 일평균 24시간 활용
정책수요 및 애로사항 (여성어업인 대상)		• 교육 및 역량강화 • 사회적 활동 • 정책수요 및 애로사항
응답자 기본사항 및 가구현황		• 종사 업종,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어업 참여 형태, 가구소득, 어업소득, 학력, 결혼여부 • 가구 구성원, 자녀 여부, 자녀의 경제적 지원 및 노동력 지원, 후계의향

자료: 저자 작성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211명으로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종별로 연안어업 70명(33.2%), 양식어업 71명(33.6%), 맨손/나잠어업 70명(33.2%)이며, 남성은 63명(29.9%), 여성은 148명(70.1%)이다.[193] 종사 형태는 어업경영주 151명(71.6%), 어업경영주의 가족 구성원 60명(28.4%)으로 구성되었다.

192) 실태조사표는 부록4를 참조

193) 표본 추출, 조사 기간, 예산 등 제한된 여건 하에 업종별 여성어업인 정책수요 파악을 위해 부득이 여성 응답자 비중을 높여 실태조사를 수행함

〈표 4-3〉 응답자 특성

		사례	비중
전체		211	100.0
어업형태	연안어업	(70)	33.2
	양식어업	(71)	33.6
	맨손/나잠어업	(70)	33.2
성별	남성	(63)	29.9
	여성	(148)	70.1
연령대	40대 미만	(29)	13.7
	50대	(52)	24.6
	60대	(88)	41.7
	70대 이상	(42)	19.9
거주 지역	인천/경기	(19)	9.0
	충남	(27)	12.8
	전북	(17)	8.1
	전남	(45)	21.3
	대구/경북	(13)	6.2
	부산/울산/경남	(52)	24.6
	강원	(15)	7.1
	제주	(23)	10.9
종사형태	어업경영주(어업인)	(151)	71.6
	어업경영주의 가족원	(60)	28.4
가구 총소득	1,000만 원 미만	(15)	7.1
	1,000~2,000만 원 미만	(21)	10.0
	2,000~3,000만 원 미만	(55)	26.1
	3,000~5,000만 원 미만	(75)	35.5
	5,000~1억 원 미만	(33)	15.6
	1억 원 이상	(12)	5.7
어업소득	500만 원 미만	(20)	9.5
	500~1,000만 원 미만	(18)	8.5
	1,000~2,000만 원 미만	(22)	10.4
	2,000~3,000만 원 미만	(64)	30.3
	3,000~5,000만 원 미만	(50)	23.7
	5,000~7,000만 원 미만	(19)	9.0
	7,000만 원 이상	(18)	8.5

		사례	비중
학력	초등학교 미만	(45)	21.3
	중학교	(42)	19.9
	고등학교	(100)	47.4
	전문대졸 이상	(24)	11.4
결혼 여부	미혼	(6)	2.8
	기혼, 배우자 있음	(169)	80.1
	기혼, 배우자 없음	(36)	17.1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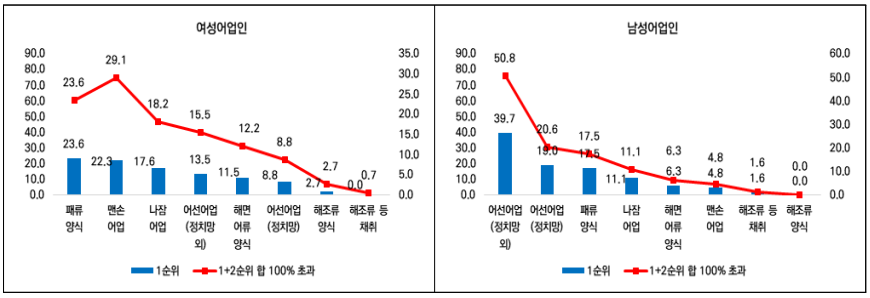
2. 성별에 따른 어업 노동환경

1) 주 종사업종

지난 1년간 어업소득을 기준으로 주 종사업종을 구분하면 남성어업인은 주로 어선어업(50.8%)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어업인은 맨손어업(29.1%), 패류양식(23.6%), 나잠어업(18.2%), 어선어업(15.5%)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업종에 주로 종사하였다.

〈그림 4-1〉 응답자 성별 주 종사업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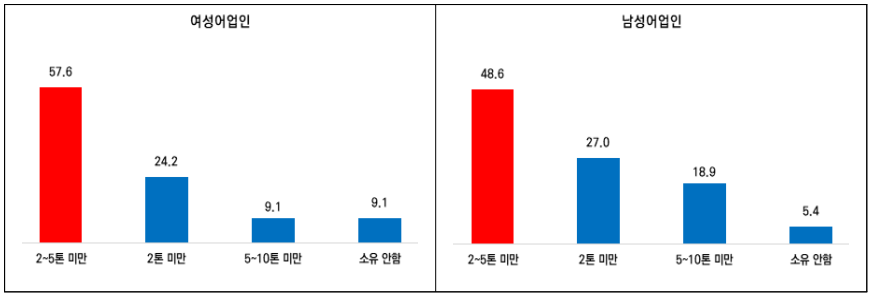
주: 전체 응답자 211명(남성 응답자 수 63명, 여성 응답자 수 148명)
자료: 저자 작성

2) 어선어업

전체 응답자 중 어선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유어선 규모를 조사한 결과, 남녀어업인 모두 5톤 미만 어선 소유가 주를 이뤘다. 특히, 여성어업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5~10톤 미만 어선 소유 비율이 낮고, 어선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도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4-2〉 소유어선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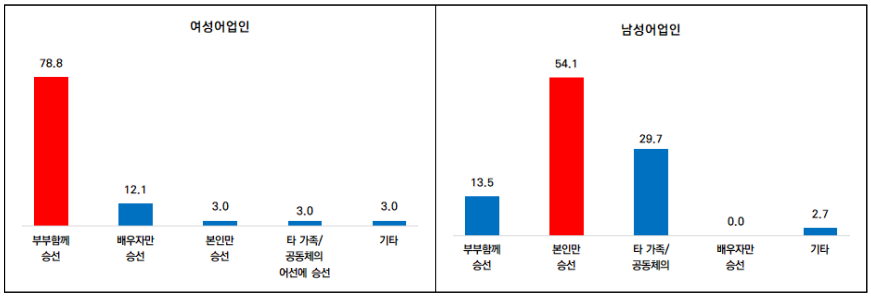
단위: %



주: 전체 응답자 중 어선어업 종사자 70명을 대상으로 함(남성 응답자 수 37명, 여성 응답자 수 33명)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3〉 어선승선 유형

단위: %



주: 전체 응답자 중 어선어업 종사자 70명을 대상으로 함(남성 응답자 수 37명, 여성 응답자 수 33명)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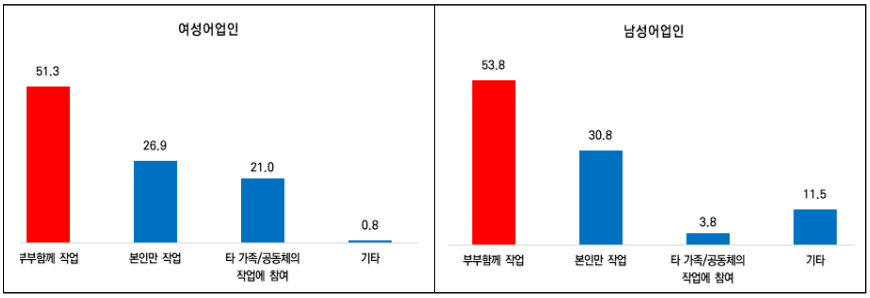
〈그림 4-3〉과 같이 어선승선 유형은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어선 조업 시 남성어업인은 주로 본인만 승선(54.1%)하거나, 타 가족 또는 공동체 어선 승선(29.7%)이 주를 이루고 부부조업은 13.5%에 그쳤다. 반면, 어선어업 종사 여성어업인의 78.8%는 부부조업을 위해 승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성어업인의 어선어업 참여는 어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어가소득 창출을 위한 어가 내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짐을 짐작할 수 있다.

3) 어선어업 외

어선어업과 달리 나잠어업, 맨손어업, 패류양식, 해조류 양식 등에서 노동 참여 유형은 부부조업이 주를 이룬다. 특히, 여성어업인은 남성어업인보다 타 가족 또는 공동체 작업의 참여율 비율이 21.0%로 높게 나타나 어선어업과 차이를 보인다.

〈그림 4-4〉 어업 참여 유형(어선어업 외)

단위: %



주: 전체 응답자 중 어선어업 외 종사자 145명을 대상으로 함(남성 응답자 수 26명, 여성 응답자 수 119명)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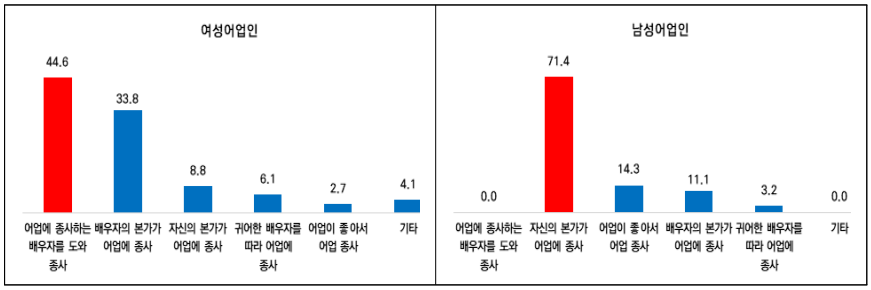
4) 어업 종사 이유

어업에 종사하게 된 이유는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남성어업인은 주로 본인의 가업(71.4%)을 물려받거나 본인 선택(14.3%)에 따라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여성어업인은 배우자를 도와서 종사(44.6%)하거나, 배우자의 가업(33.8%)을 물려받아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어업 종사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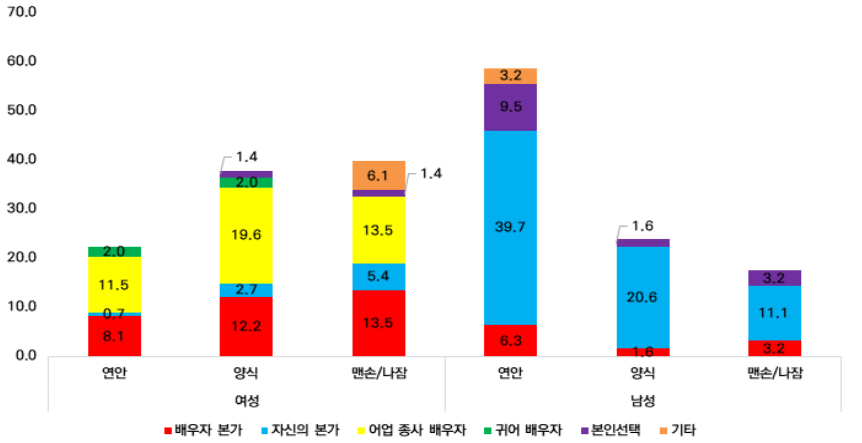
단위: %



주: 전체 응답자 211명(남성 응답자 수 63명, 여성 응답자 수 148명)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6〉 성별·업종별 어업 종사 이유

단위: %



주: 1) 전체 응답자 211명(남성 응답자 수 63명, 여성 응답자 수 148명)
2) 여성어업인 업종별 종사자 수(연안 33명, 양식 56명, 맨손/나잠 59명)
3) 남성어업인 업종별 종사자 수(연안 37명, 양식 15명, 맨손/나잠 11명)
4) 비율은 해당 성별 전체 인원 대비 비중으로 계산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6〉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성별·업종별 어업 종사 이유를 살펴보았다. 여성어업인은 업종을 불문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배우자를 돕기 위해 종사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의 경우 배우자를 도와 어업에 종사하게 된 비율과 배우자의 본가에 따라 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13.5%로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배우자의 본가가 어업에 종사하고 어촌계에 위치할 경우, 여성들이 가계 소득창출을 위해 초기 투입자본이 적고, 어촌계원이면 종사가 가능한 맨손어업, 나잠어업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남성어업인은 업종을 불문하고 본인 본가의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어업에 종사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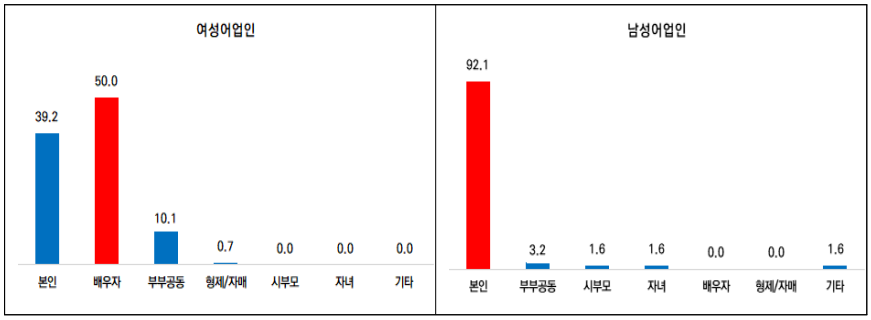
5) 어업활동 책임자

〈그림 4-7〉과 같이 어가 내 어업활동 책임자에 관한 응답 또한 성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남성어업인의 92.1%는 어업활동 전반을 책임지고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본인을 꼽은 반면, 여성어업인은 배우자(50.0%), 본인(39.2%), 부부공동(10.1%) 순으로 응답하였다.

어업활동 책임자에 대한 응답을 성별·업종별로 살펴보면 〈그림 4-8〉과 같다. 남성은 업종과 무관하게 어업활동 책임자로 본인을 응답한 반면, 여성어업인은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여성어업인 중 연안어업, 양식어업 종사자는 어업활동 책임자로 주로 배우자를 꼽았지만, 맨손어업, 나잠어업 종사자는 본인을 꼽았다. 특히, 여성어업인 응답자 중 본인을 어업활동 책임자로 꼽은 비율은 39.2%로 이 중 맨손어업, 나잠어업 종사자가 상당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연안어업과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일부 여성어업인은 부부가 공동으로 어업활동을 책임지고 있다 답변하였다.

〈그림 4-7〉 어업활동 책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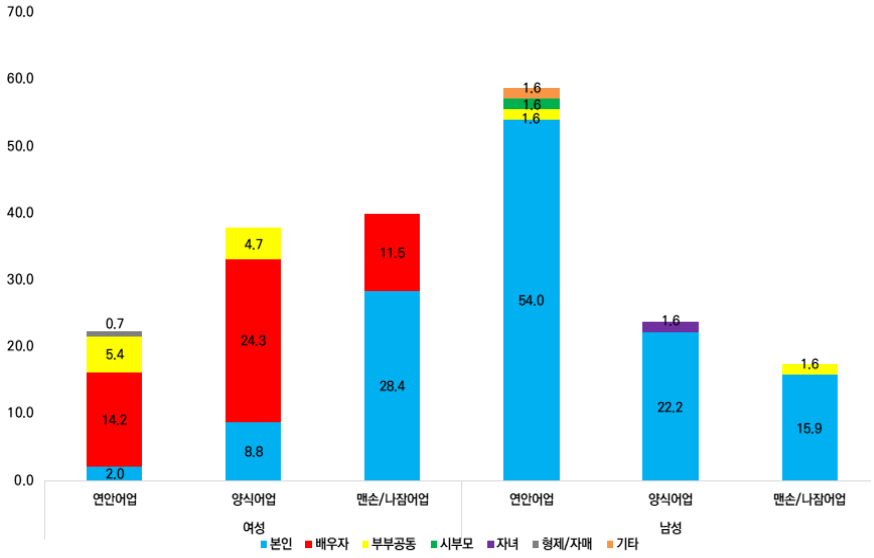
단위: %



주: 전체 응답자 211명(남성 응답자 수 63명, 여성 응답자 수 148명)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8〉 성별·업종별 어업활동 책임자

단위: %



주: 1) 전체 응답자 211명(남성 응답자 수 63명, 여성 응답자 수 148명)
2) 여성어업인 업종별 종사자 수(연안 33명, 양식 56명, 맨손/나잠 59명)
3) 남성어업인 업종별 종사자 수(연안 37명, 양식 15명, 맨손/나잠 11명)
4) 비율은 해당 성별 전체 인원 대비 비중으로 계산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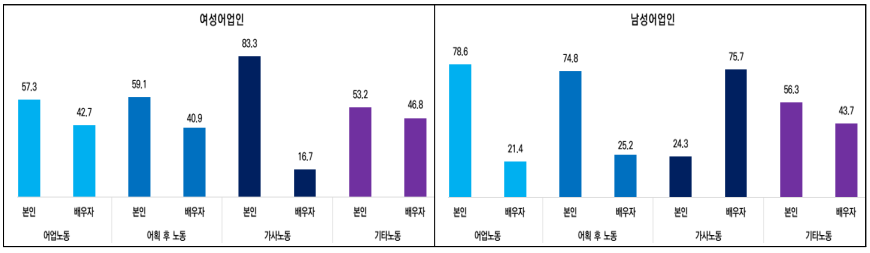
6) 노동 분담비율

주된 노동활동을 어업노동, 어획 후 노동,[194] 가사노동, 기타노동으로 구분하고, 응답자와 배우자(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 간 평균 업무 분담 비율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하였다. 여성어업인은 모든 노동활동에서 본인의 분담 비율이 크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가사노동의 경우 상당 부분을 본인이 전담한다고 인식하였는데, 가사노동 전체를 100%로 환산하였을 때 본인 분담비율은 83.3%에 달했다. 어업노동과 어획 후 노동, 기타노동에서도 본인의 분담 비율이 크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6~18% 수준으로 가사노동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남성어업인은 가사노동을 제외한 노동활동에서 본인의 분담 비율이 크다고 인식하였다. 가사노동의 경우 본인이 24.3% 분담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어업노동과 어획 후 노동 등 생산관련 활동에서 본인의 노동 분담 비율은 70% 이상으로 인식하였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남성어업인은 생산관련 노동활동을 본인이 주로 담당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여성어업인은 생산을 비롯한 모든 노동활동에서 본인의 분담 비율이 크다고 인식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어업인이 어가 내 노동활동 전반에 과중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4-9〉 가족 구성원과의 노동 분담 비율

단위: %



주: 전체 응답자 211명(남성 응답자 수 63명, 여성 응답자 수 148명)
자료: 저자 작성

194) 어획 후 노동은 그물 손질, 어획물 분류, 건조 등 생산을 위한 전후 노동활동으로 정의함

3. 성별에 따른 지위와 의사결정 권한

1) 어업인으로 종사상 지위

일반적으로 지위는 사회적 위치 또는 권한과 의무에서 비롯된 역할로 해석되며, 종사상 지위는 종사자의 신분이나 지위 상태를 의미한다.[195] 본 설문에서는 응답자가 어업인으로서 자신의 직업적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종사상 지위를 경영주와 종사자로 응답을 구분하였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위치가 높고 권한이 큰 경영주는 단독 경영주(어업인)와 공동경영주로 구분하고, 종사자의 경우 가족 내 무급종사자와 유급종사자로 구분하였다.[196]

종사상 지위에 관한 응답을 성별로 구분하면 〈그림 4-10〉과 같다. 남성어업인의 92.1%는 본인을 경영주로 인식하는 반면, 여성어업인은 44.6%만이 본인을 경영주로 인식하고 있다. 공동경영주라 응답한 여성어업인의 비중(24.3%)을 감안하더라도 본인을 경영주로 인식하는 여성어업인의 비중은 70% 수준으로 남성어업인 응답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여성어업인의 31.1%는 본인을 경영주가 아닌 무급 가족종사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여성어업인은 어가소득을 위해 어업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본인 노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얻지 못하고 자신의 지위 또한 보조적 역할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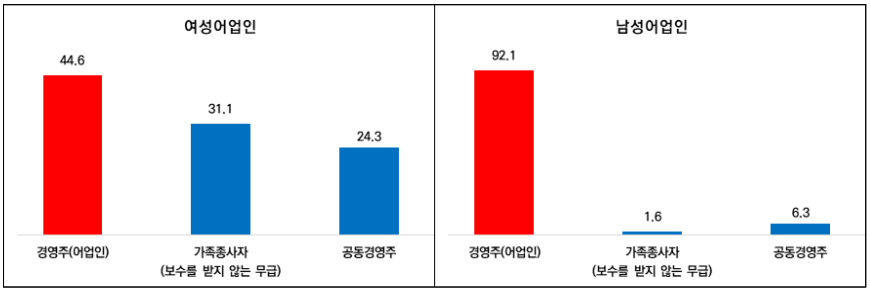
〈그림 4-11〉에서는 어업인으로 지위 수준에 대한 응답을 성별·업종별로 나타내었다. 남성어업인 응답자 중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일부(1.6%)만이 본인을 무급 가족종사자로 인식하고, 그 외는 모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인식하였다. 반면, 여성어업인은 업종과 무관하게 무급 가족종사자 비

195) 통계청(검색일: 2021. 9. 3)
196) 다만, 응답자 중 본인을 가족 내 유급종사자로 응답한 사람이 없어 결과에서는 이를 제외함

율이 10%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 중 본인을 경영주로 생각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0% 수준으로 타 업종에 비해서도 저조하게 나타났다.

〈그림 4-10〉 어업인으로 종사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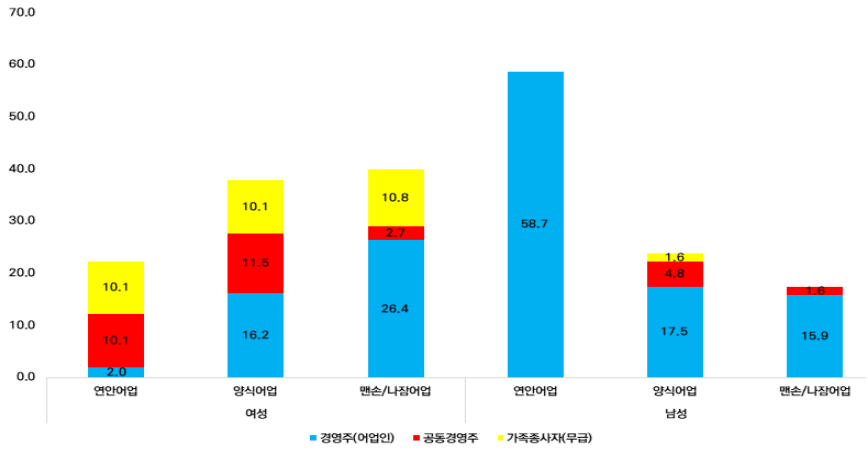
단위: %



주: 전체 응답자 211명(남성 응답자 수 63명, 여성 응답자 수 148명)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1〉 성별·업종별 어업인으로 종사상 지위

단위: %



주: 1) 전체 응답자 211명(남성 응답자 수 63명, 여성 응답자 수 148명)
2) 여성어업인 업종별 종사자 수(연안 33명, 양식 56명, 맨손/나잠 59명)
3) 남성어업인 업종별 종사자 수(연안 37명, 양식 15명, 맨손/나잠 11명)
4) 비율은 해당 성별 전체 인원 대비 비중으로 계산
자료: 저자 작성

2) 의사결정 권한

어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 중 성별에 따른 의사결정의 권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의사결정 과정은 어가 소득 창출 활동과 가계 소비로 구분하고, 소득 창출 활동은 어업생산, 어획물 가공, 어획물 판매, 어업 외 경제활동으로 세분하였다. 가계 소비는 식료품 구입과 같은 일상적 소규모 지출과 장비 구입과 같은 주요 가계지출로 구분하였다. 또한, 어가 내 의사결정 주체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타 가구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함에 따라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 어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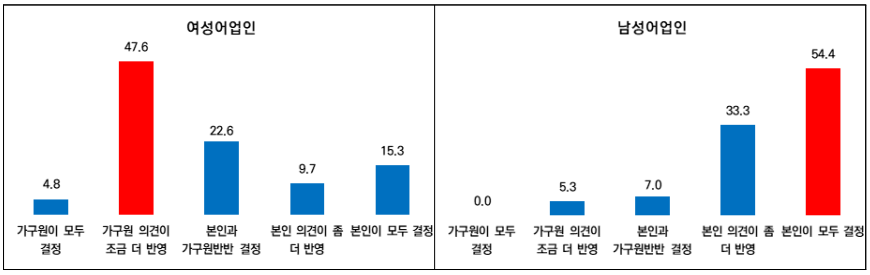
〈그림 4-12〉와 같이 어업 생산 방식, 조업 시기 등을 결정함에 있어 성별에 따른 권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남성어업인 응답자의 54.4%는 본인이 모두 결정한다고 답변하였으며, 본인 의견이 타 가구원보다 좀 더 반영된다는 응답도 33.3%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을 제외한 타 가구원이 모두 결정한다는 응답은 집계되지 않았다. 반면, 여성어업인의 경우, 어업 생산활동에서 타 가구원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사례가 응답자의 절반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타 가구원이 어업생산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한다는 응답도 4.8%로 나타났다.

〈그림 4-13〉에서 성별·업종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연안어업에서 여성은 맨손어업, 나잠어업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남성어업인 응답자 중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42.1%는 생산활동의 모든 의사결정을 본인이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반해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의 경우, 어업생산 결정에 관해 주로 가구원이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본인의 의견이 더 반영된다는 응답은 집계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연안어업에 있어 생산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은 상대적으로 남성어업인에게 집중되

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남성어업인은 양식어업과 맨손어업, 나잠어업에서도 본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크다(모두 반영+좀 더 반영)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여성어업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크다고 응답한 업종은 맨손어업, 나잠어업에 한정된다.

〈그림 4-12〉 어업생산 활동에서 의사결정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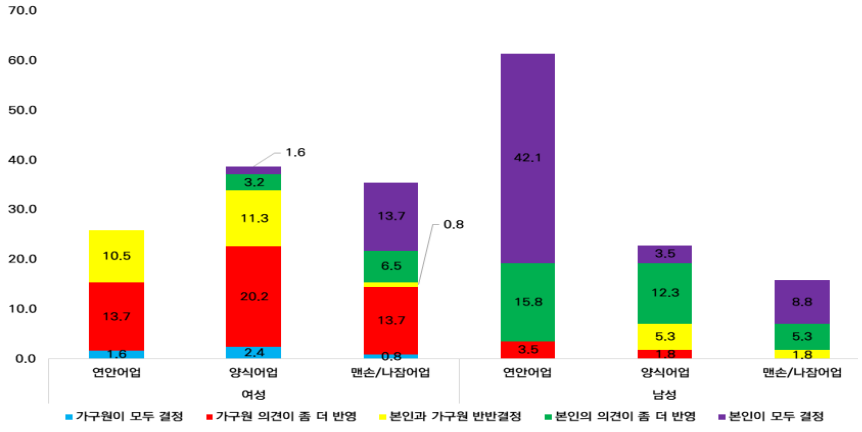
단위: %



주: 전체 응답자 181명(남성 응답자 수 57명, 여성 응답자 수 124명으로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3〉 성별·업종별 어업생산 활동에서 의사결정 권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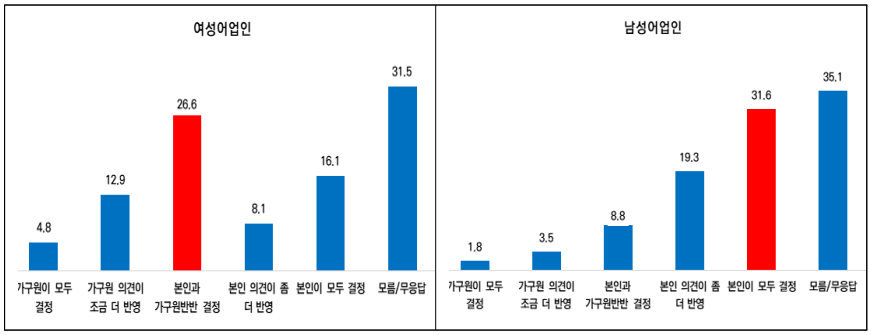
주: 1) 전체 응답자 181명(남성 응답자 수 57명, 여성 응답자 수 124명으로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2) 여성어업인 업종별 종사자 수(연안 32명, 양식 48명, 맨손/나잠 44명)
3) 남성어업인 업종별 종사자 수(연안 35명, 양식 13명, 맨손/나잠 9명)
4) 비율은 해당 성별 전체 인원 대비 비중으로 계산
자료: 저자 작성

(2) 어획물 가공

어획물의 가공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함에 있어 남성어업인은 본인이 모두 결정함(31.6%), 본인 의견이 좀 더 반영됨(19.3%) 순으로 응답하여, 타 가구원보다 본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크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여성어업인 응답은 어획물 가공에 관한 결정을 본인과 가구원이 반반 결정함(26.6%), 본인이 모두 결정함(16.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 어획물 가공 활동에서 의사결정 권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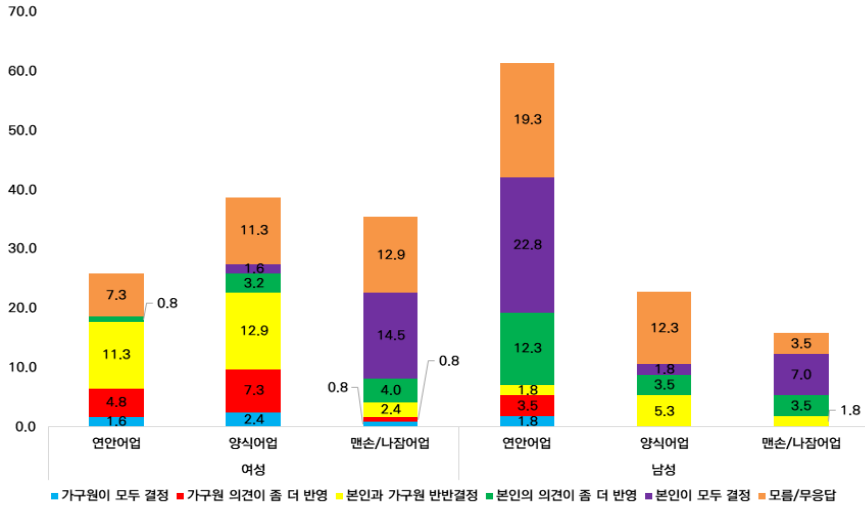


주: 전체 응답자 181명(남성 응답자 수 57명, 여성 응답자 수 124명으로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저자 작성

성별·업종별로 살펴보면, 맨손어업,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은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결정 권한이 강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본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더 크다는 여성어업인 응답은 16.1%로 이 중 연안어업 0.8%, 양식어업은 4.8%에 불과하나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에서는 18.5%에 이른다. 이에 반해 남성어업인은 모든 업종에서 다른 가구원보다 본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크다(모두 반영+좀 더 반영)고 응답하였다.

〈그림 4-15〉 성별·업종별 어획물 가공 활동에서 의사결정 권한

단위: %



주: 1) 전체 응답자 181명(남성 응답자 수 57명, 여성 응답자 수 124명으로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2) 여성어업인 업종별 종사자 수(연안 32명, 양식 48명, 맨손/나잠 44명)
3) 남성어업인 업종별 종사자 수(연안 35명, 양식 13명, 맨손/나잠 9명)
4) 비율은 해당 성별 전체 인원 대비 비중으로 계산
자료: 저자 작성

(3) 어획물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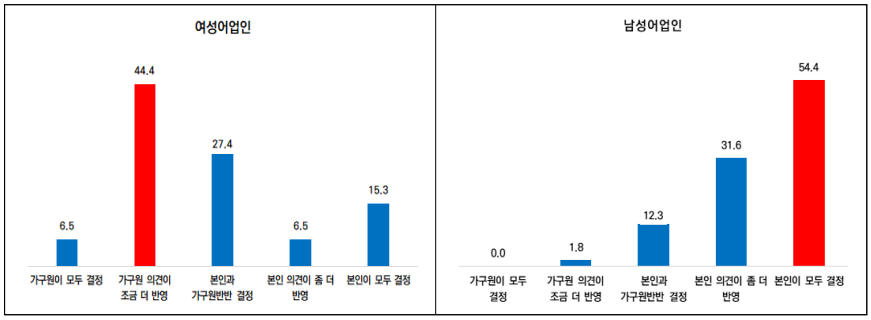
남성어업인은 어획물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어업인 응답자 중 모든 의사결정을 본인이 결정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54.4%, 본인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31.6%로 응답자 대부분이 어획물 판매에 있어 본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하였다.

여성어업인 응답자 경우, 의사결정 권한이 다른 구성원보다 더 크다(모두 반영+좀 더 반영)는 응답은 20% 수준이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어획물 판매를 결정함에 있어 다른 가구원의 의견을 따른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업종별로 살펴보면, 생산, 가공과 마찬가지로 여성어업인은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종사자의 의사결정 권한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연안어업에서는 주로 타 가구원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 어획물 판매 활동에서 의사결정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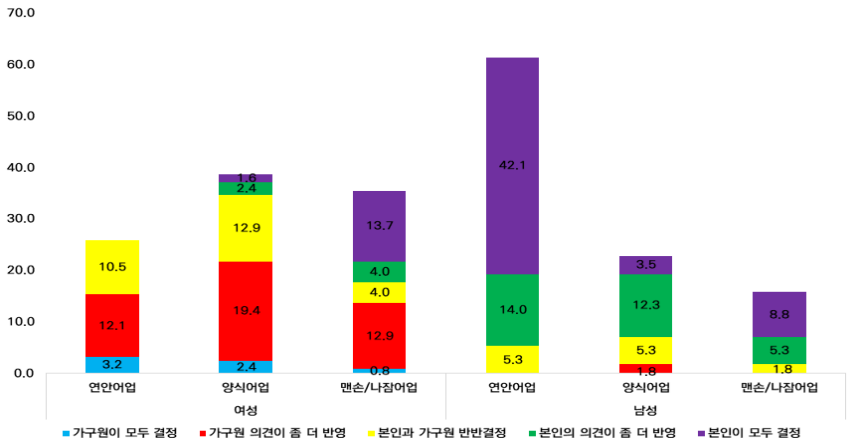
단위: %



주: 전체 응답자 181명(남성 응답자 수 57명, 여성 응답자 수 124명으로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7〉 성별·업종별 어획물 가공 활동에서 의사결정 권한

단위: %



주: 1) 전체 응답자 181명(남성 응답자 수 57명, 여성 응답자 수 124명으로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2) 여성어업인 업종별 종사자 수(연안 32명, 양식 48명, 맨손/나잠 44명)
3) 남성어업인 업종별 종사자 수(연안 35명, 양식 13명, 맨손/나잠 9명)
4) 비율은 해당 성별 전체 인원 대비 비중으로 계산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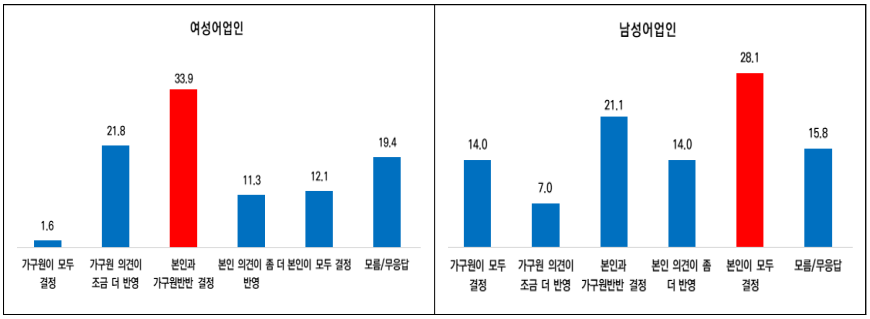
(4) 어업 외 경제활동

어업 외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또한 남성어업인의 권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앞서 살펴본 어업관련 활동의 경우, 본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크다는 응답이 전체 남성 응답자의 과반을 차지하였으나, 어업 외 경제활동에서는 42%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이 아닌 다른 가구원이 의사결정을 전담한다는 응답 또한 14%로 나타났다.

여성어업인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33.9%가 본인과 가구원이 반반 결정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1.8%는 가구원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된다고 밝혔다. 〈그림 4-19〉에서 업종별 여성어업인의 어업 외 경제활동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살펴보면,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종사자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연안어업 종사자는 타 업종에 비해서도 의사결정 권한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8〉 어업 외 경제활동에서 의사결정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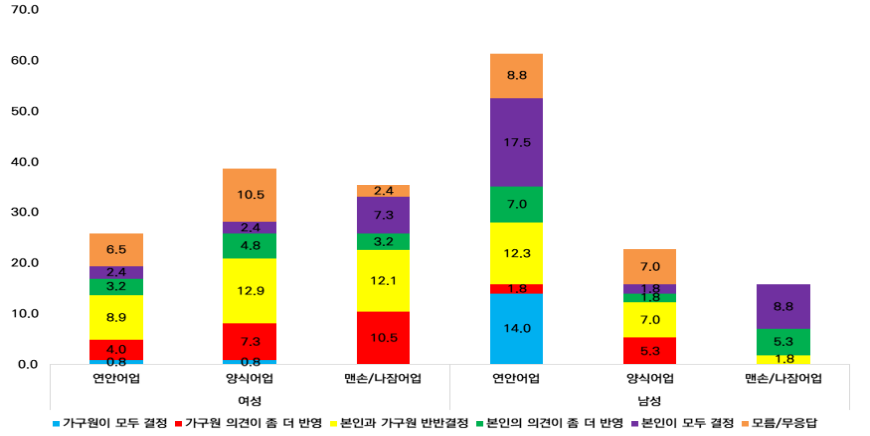
단위: %



주: 전체 응답자 181명(남성 응답자 수 57명, 여성 응답자 수 124명으로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9〉 성별·업종별 어업 외 경제활동에서 의사결정 권한

단위: %



주: 1) 전체 응답자 181명(남성 응답자 수 57명, 여성 응답자 수 124명으로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2) 여성어업인 업종별 종사자 수(연안 32명, 양식 48명, 맨손/나잠 44명)
3) 남성어업인 업종별 종사자 수(연안 35명, 양식 13명, 맨손/나잠 9명)
4) 비율은 해당 성별 전체 인원 대비 비중으로 계산
자료: 저자 작성

(5) 주요 가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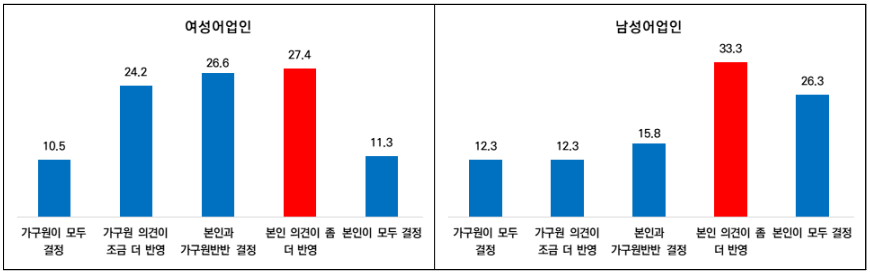
어가 내 소비활동과 관련하여, 남성어업인은 장비 구입과 같은 주요 가계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본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다른 가구원에 비해 크다고 답변하였다. 여성어업인은 전술한 소득 창출 활동 응답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소득 창출 활동의 경우, 여성어업인 본인 외 타 가구원의 의사결정 권한이 더 크다고 밝혔지만, 주요 가계지출 결정의 경우 본인 의견이 좀 더 반영됨(27.4%), 반반 결정함(26.6%)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4-21〉에서 성별·업종별 응답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어업인은 연안어업에서 여성어업인은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에서 강세를 보인다. 특히, 앞서 살펴본 소득 창출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연안어업은 주로 남성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이고, 여성어업인은 본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타 가구원에 비해 적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주요 가계지출을 결정함에 있어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 또한 본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더 크다는 응답이 11.3%로 타 업종(양식어업 12.1%, 맨손어업, 나잠어업 15.4%)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4-20〉 주요 가계지출에서 의사결정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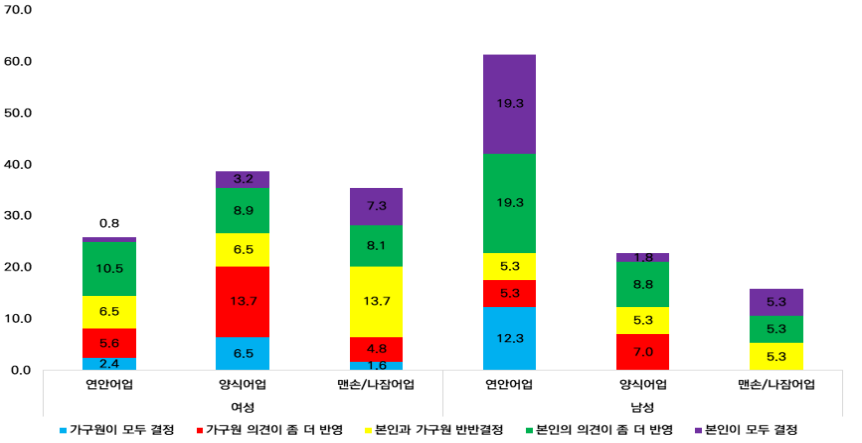
단위: %



주: 전체 응답자 181명(남성 응답자 수 57명, 여성 응답자 수 124명으로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21〉 성별·업종별 주요 가계지출에서 의사결정 권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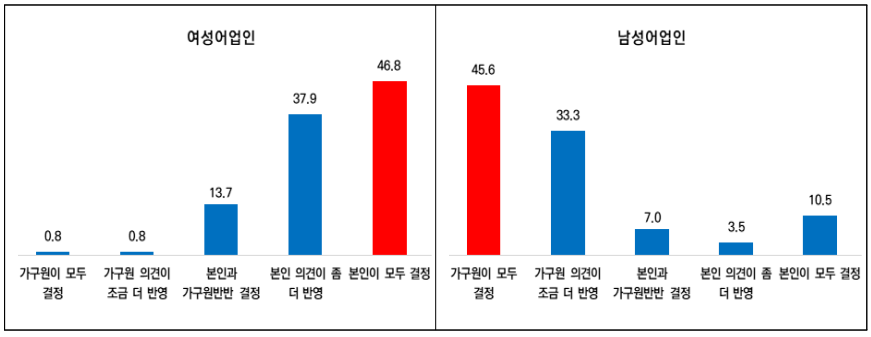
주: 1) 전체 응답자 181명(남성 응답자 수 57명, 여성 응답자 수 124명으로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2) 여성어업인 업종별 종사자 수(연안 32명, 양식 48명, 맨손나잠 44명)
3) 남성어업인 업종별 종사자 수(연안 35명, 양식 13명, 맨손나잠 9명)
4) 비율은 해당 성별 전체 인원 대비 비중으로 계산
자료: 저자 작성

(6) 소규모 가계지출

식료품 구입과 같은 일상적인 소규모 가계지출의 결정은 여성어업인의 의사결정 권한 큰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어업인은 소규모 가계지출에 관해 본인이 모두 결정함(46.8%), 본인 의견이 더 반영됨(37.9%) 순으로 응답하여, 본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더 크다고 인식하였다. 남성어업인 또한 타 가구원의 의사결정 권한이 본인보다 크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여성어업인이 가사노동의 상당 부분에 기여하면서, 식료품 구입과 같이 가사노동과 밀접한 소규모 가계지출을 전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22〉 소규모 가계지출에서 의사결정 권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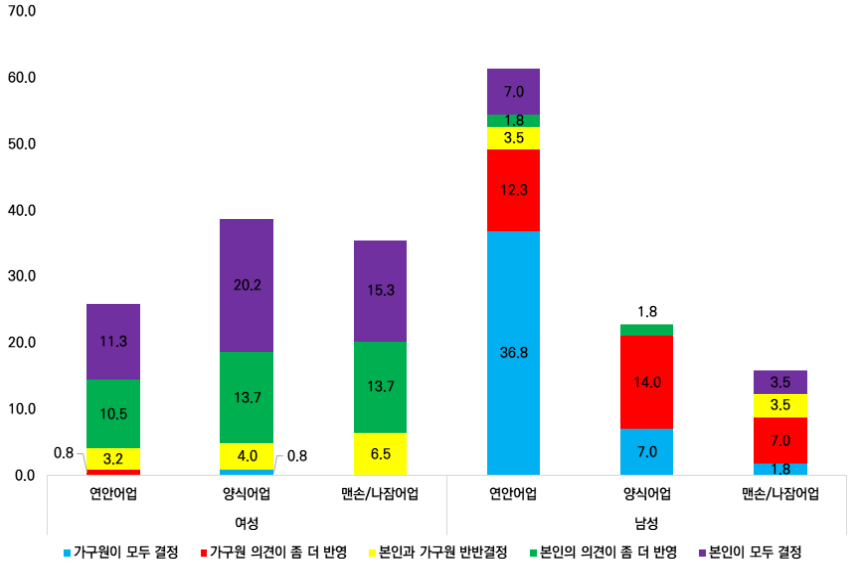


주: 전체 응답자 181명(남성 응답자 수 57명, 여성 응답자 수 124명으로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23〉에서 업종별로 살펴보아도 여성어업인은 업종과 무관하게 소규모 지출에 있어 본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타 가구원보다 크다고 답변하였다. 남성어업인은 업종과 무관하게 본인 외 다른 가구원의 의사결정 권한이 더 크다고 답변하였으며, 특히 전술한 대부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크다고 답변한 연안어업 또한 남성어업인 본인보다 타 가구원의 의사결정 권한이 더 크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그림 4-23〉 성별·업종별 소규모 가계지출에서 의사결정 권한

단위: %



주: 1) 전체 응답자 181명(남성 응답자 수 57명, 여성 응답자 수 124명으로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2) 여성어업인 업종별 종사자 수(연안 32명, 양식 48명, 맨손/나잠 44명)
3) 남성어업인 업종별 종사자 수(연안 35명, 양식 13명, 맨손/나잠 9명)
4) 비율은 해당 성별 전체 인원 대비 비중으로 계산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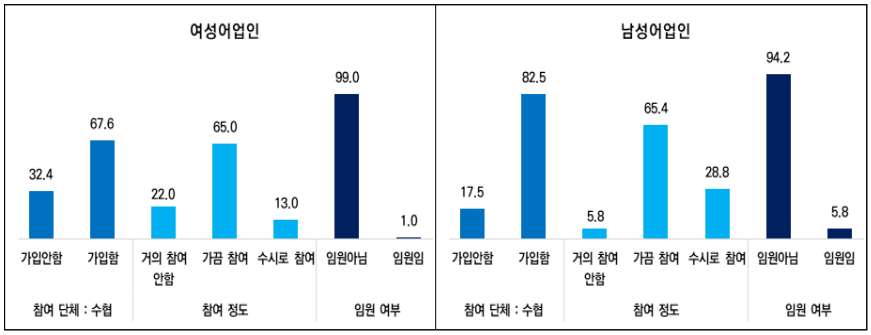
3) 사회적 활동 참여

어업인의 사회적 활동 참여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생산자 단체인 지구별 수협과 어촌계 가입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여성어업인의 경우, 여성어업인단체 가입 여부 또한 확인하였다.

성별에 따른 조합원 가입 비율은 여성어업인은 67.6%, 남성어업인은 82.5%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참여 정도도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어업인 응답자의 90% 이상이 수협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어업인은 78% 수준에 그쳤다. 임원 비율 또한 남성 5.8%, 여성 1.0%로 차이를 보인다.

〈그림 4-24〉 수협 조합원 가입 및 참여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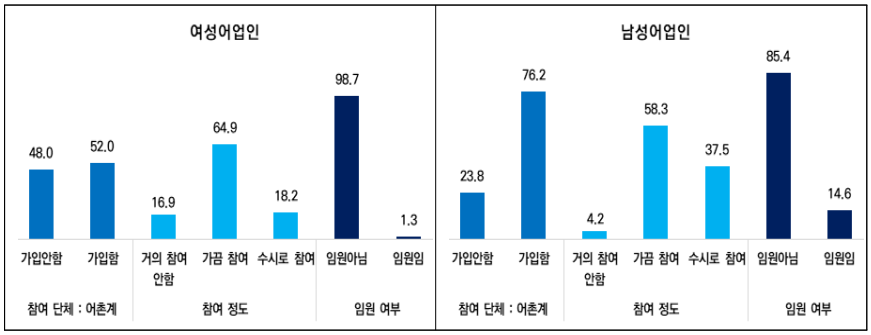


주: 전체 응답자 211명(남성 응답자 수 63명, 여성 응답자 수 148명)
자료: 저자 작성

어촌계원 활동 현황 또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여성어업인의 경우, 어촌계원이 52%, 비계원이 48%로 조사된 반면, 남성어업인의 경우, 어촌계원이 76.2%로 비계원의 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원 비율 또한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어업인 응답자의 14.6%가 임원으로 활동하는 반면, 여성어업인 응답자 중 임원 비율은 1.3%에 그친다.

〈그림 4-25〉 어촌계원 가입 및 참여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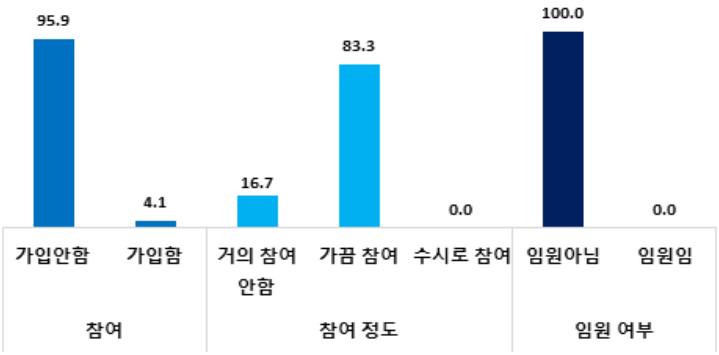


주: 전체 응답자 211명(남성 응답자 수 63명, 여성 응답자 수 148명)
자료: 저자 작성

여성어업인의 지위와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로는 전국 규모의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와 지역 규모의 강원도여성어업인연합회, 제부도여성어업인협동조합 등이 있다. 응답 대상 여성어업인에게 위와 같은 여성어업인단체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입률은 4.1% 수준에 불과하여 여성어업인의 조직화가 미흡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그림 4-26〉 여성어업인단체 가입 및 참여 현황

단위: %



주: 전체 응답자 148명
자료: 저자 작성

4. 성별에 따른 삶의 질과 시간 활용

1)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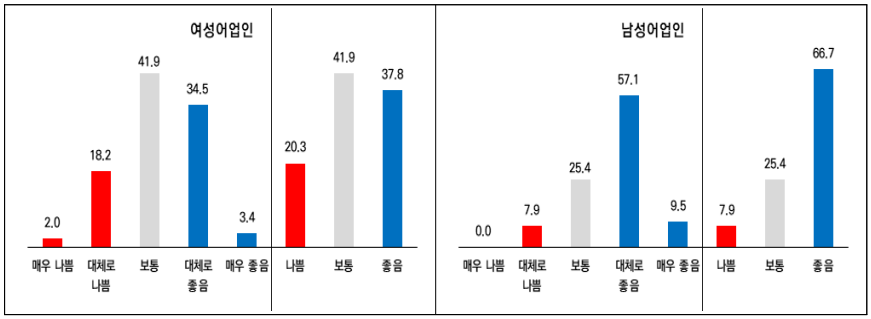
본 단락에서는 어업인의 삶의 질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삶의 질은 건강 상태와 문화·여가생활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건강 상태는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 상태의 수준과 주요 질환, 의료기관 이용의 애로사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화·여가생활은 이용 현황과 애로사항으로 구성하였다.

(1) 건강상태 및 주요 질환

남녀어업인은 본인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남성어업인 응답자의 66.7%는 건강상태가 좋다고 평가하였으나, 여성어업인은 남성 응답의 절반 수준인 37.8%에 그쳤다. 또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남성어업인은 7.9%인데 반해 여성어업인은 20.3%로 남성의 약 3배에 달했다.

〈그림 4-27〉 어업인 건강상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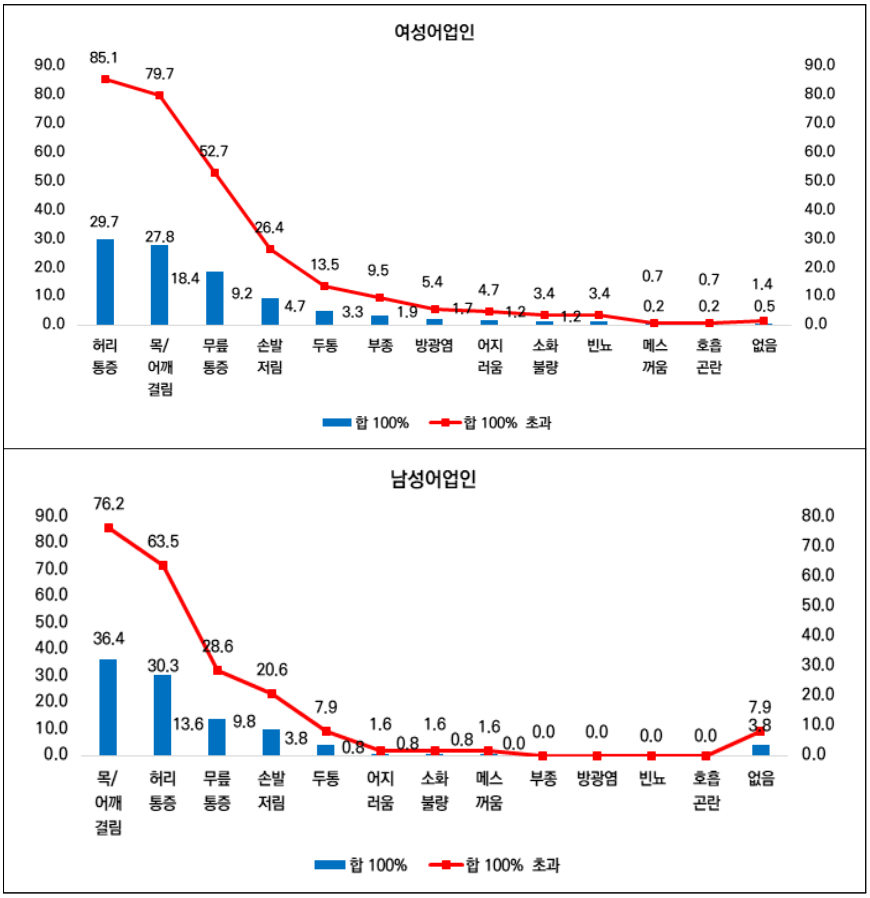
주: 전체 응답자 211명(남성 응답자 수 63명, 여성 응답자 수 148명)
자료: 저자 작성

남녀 모두 어업활동에 의한 주요 질환으로 허리 통증, 목·어깨 결림,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는 어업작업의 고강도 노동 특성과 어업인 고령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한다. 일부 여성어업인은 방광염, 빈뇨 등 부인과 질환을 호소하였다.

〈그림 4-29〉의 의료기관 이용 애로사항 또한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여성어업인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시간 부족(19.6%), 장거리(17.6%)를 꼽았으며, 남성어업인은 장거리(14.3%), 시간 부족(12.7%)을 꼽았다. 이는 어촌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28〉 어업종사에 따른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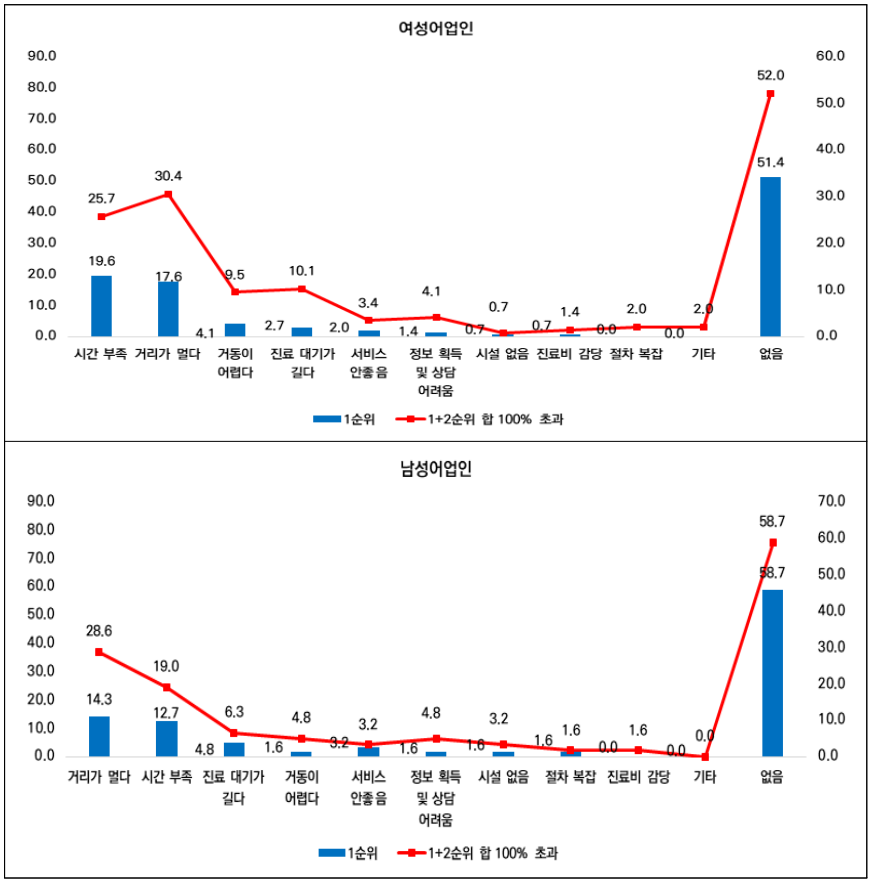
단위: %



주: 전체 응답자 211명(남성 응답자 수 63명, 여성 응답자 수 148명)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29〉 의료기관 이용 시 애로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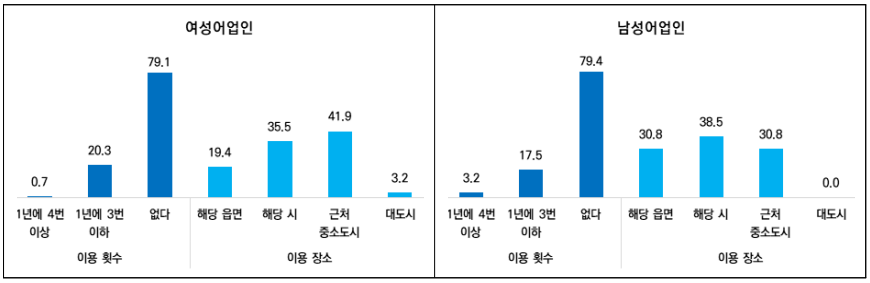
주: 전체 응답자 211명(남성 응답자 수 63명, 여성 응답자 수 148명)
자료: 저자 작성

(2) 문화·여가생활

문화·여가생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년 중 전시회, 음악회 등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남녀어업인 모두 1년 중 문화·여가활동을 즐기지 않은 경우가 70%를 상회하였다. 또한, 문화·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 단위를 벗어나 시 또는 근처 중소도시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0〉 문화·여가생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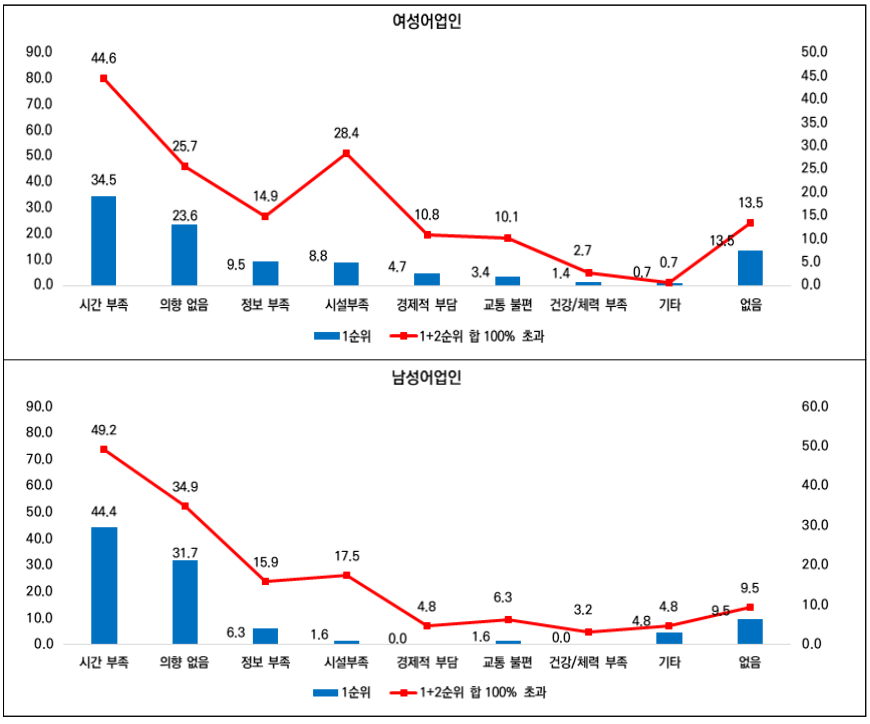
단위: %



주: 전체 응답자 211명(남성 응답자 수 63명, 여성 응답자 수 148명)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31〉 문화·여가생활의 애로사항

단위: %



주: 전체 응답자 211명(남성 응답자 수 63명, 여성 응답자 수 148명)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31〉과 같이 문화·여가생활의 애로사항으로 남녀어업인 모두 시간 부족과 정보 부족, 시설 부족 순으로 꼽았다. 이는 전술한 의료기관 이용과 함께 어촌계의 지리적 여건에 따른 것으로, 어촌계의 편의·공공시설 부족 현상을 엿볼 수 있다.

2) 시간활용 현황

(1) 생활시간조사 개념

통계청은 국민의 시간 사용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 UNDP 권고에 따라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생활시간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동 조사는 UN 행동분류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특정 행동을 10분 이상 수행한 경우, 해당 행동으로 시간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시간은 크게 필수시간, 의무시간, 여가시간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필수시간은 잠, 식사 등 개인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시간이며, 의무시간은 일, 학습, 가사노동, 이동 등 실행 의무가 부여된 시간이다. 여가시간은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시간으로 문화 및 여가활동, 자원봉사 등을 포함한다.[197]

다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결과는 어업인만을 특정하기 어렵고, 어가 내에서 이뤄지는 가족 간 무임금노동 현황을 살펴보는 데 한계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녀어업인이 일반적으로 일평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고, 여성노동권 문제에서 제기되는 가정 내 여성의 무급노동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UNDP의 행동분류표[198] 대분류를 기준으로 세부 활동을 구분하였으며, 후술할 여성어업인의 무급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해 노동을 어업활동, 어업 외 활동, 무급가족 노동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돌봄정책 수요를 검토하기 위해 가구원 돌

197) 통계청 보도자료(2020. 7. 29), p. 1.
198) 보다 자세한 행동분류표에 관한 내용은 제4장 제2절의 2에서 후술함

보기 노동을 미성년 가구원과 성년 가구원으로 구분하였다.

〈표 4-4〉 어업인 시간활용 조사의 활동 구분

구분	내용
필수시간	• 수면 • 식사 및 간식 • 개인위생 및 외모관리
의무시간	• 어업활동 • 어업 외 활동 • 무급가족 노동 • 학습 • 가사노동 • 미성년 가구원 돌보기 • 성인 가구원 돌보기
여가시간	• 교제 및 참여활동 • 문화활동 • 미디어 이용 여가 • 스포츠 및 레포츠 • 그 외 휴식 • 기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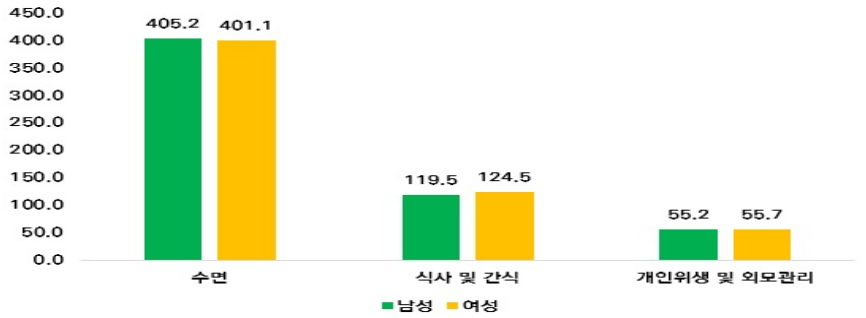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성별에 따른 시간활용 현황

〈그림 4-32〉와 같이 식사, 수면 등 필수시간 활용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남녀어업인은 일평균 403.2분(6.7시간)을 수면에 할애하였으며, 식사 및 간식 섭취를 위해 122.0분(2시간)을 사용하였다. 개인위생 관리를 위한 시간은 약 55분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어업인들은 개인유지를 위한 필수시간으로 일평균 580.7분(9.7시간)을 사용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림 4-32〉 어업인 필수시간 활용 현황

단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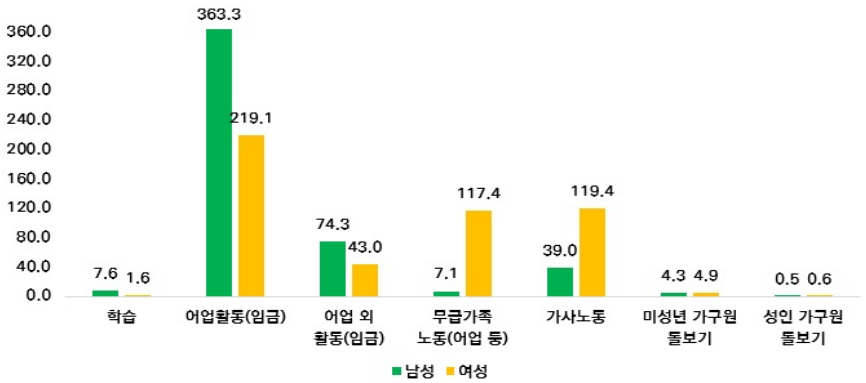


주: 1) 전체 응답자 211명(남성 응답자 수 63명, 여성 응답자 수 148명)
2) 활동시간의 합은 24시간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33〉과 같이 의무시간은 학습과 노동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노동활동은 유급과 무급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유급노동으로는 어업활동, 어업 외 활동이 있으며, 무급노동으로는 무급가족 노동, 가사노동, 미성년 가구원 돌보기, 성인 가구원 돌보기가 있다.

〈그림 4-33〉 어업인 의무시간 활용 현황

단위: 분



주: 1) 전체 응답자 211명(남성 응답자 수 63명, 여성 응답자 수 148명)
2) 활동시간의 합은 24시간임
자료: 저자 작성

남녀어업인의 일평균 노동활동 투입 시간은 남성은 488.6분(8.1시간), 여성은 504.3분(8.4시간)으로 약 20분의 차이를 보였는데, 노동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남성어업인은 노동시간의 대부분(437.6분, 7.3시간)을 유급노동에 할애하는 반면, 여성어업인은 전체 노동시간의 절반 수준인 262.1분(4.4시간)만을 유급노동에 할애하였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무급 노동시간 격차는 제2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어업인 또한 오랜 성역할 고정관념 등으로 무급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전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가사노동을 책임지는 여성어업인이 남성어업인과 동일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노동활동에 투입해야 하고, 유급노동에서의 여성어업인 배제는 생산활동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어업인의 권한 축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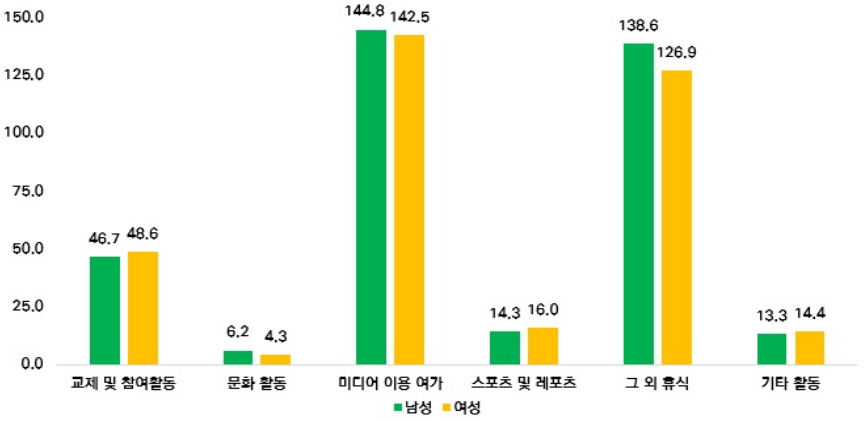
가구원 돌보기에 할애하는 시간은 남녀어업인 모두 약 5분 수준으로 전국 평균(25~27분)[199]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제3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어가인구 고령화 및 감소로 전체 응답자 중 40대 미만 응답자의 비중이 13.7%로 청장년층이 적고, 1·2인 가구로의 재편에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학습시간은 남성어업인이 여성보다 일평균 약 6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4〉와 같이, 남성어업인은 일평균 363.8분(6.1시간), 여성어업인은 352.7분(5.9시간)을 여가시간에 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녀 모두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주로 미디어를 이용하였으며, 그 외 휴식, 교제 및 참여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199) 통계청 보도자료(2020. 7. 29), p. 18.

〈그림 4-34〉 어업인 여가시간 활용 현황

단위: 분



주: 1) 전체 응답자 211명(남성 응답자 수 63명, 여성 응답자 수 148명)
2) 활동시간의 합은 24시간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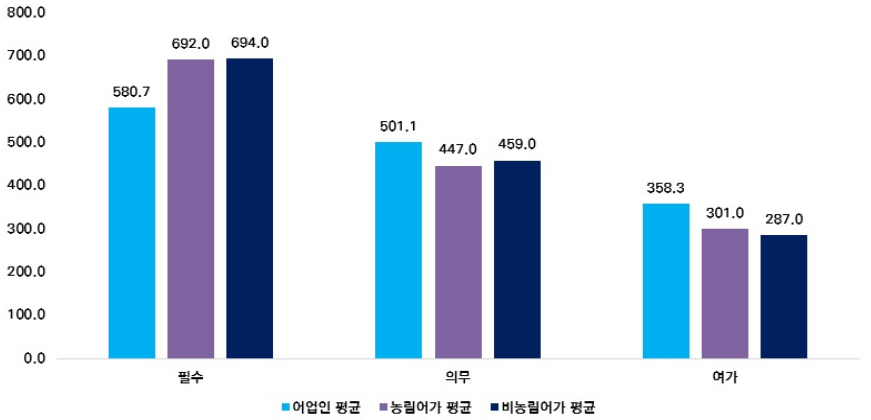
통계청에서 시행한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본 실태조사 대상 어업인들은 평균적으로 식사, 수면과 같은 필수시간 활용이 적고 의무시간, 여가시간 활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양상은 여성들의 생활시간조사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여성 어업인은 농림어가 여성, 비농림어가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필수시간의 활용이 적고 의무시간 활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업인들은 공통적으로 수면, 식사 등의 필수시간 활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새벽 조업, 작업의 불규칙성 등으로 적절한 수면시간 확보가 어려운 어업의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생활시간조사와 본 실태조사는 세분류에 차이[200]가 있으며, 조사대상 표본 또한 차이가 커 직접적 비교에는 한계를 가진다.

200) 일례로, 생활시간조사 시 이동시간 또한 의무시간으로 포함되나 본 실태조사에서는 이동시간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음

〈그림 4-35〉 하루 평균 시간 활용(어업인, 농림어가, 비농림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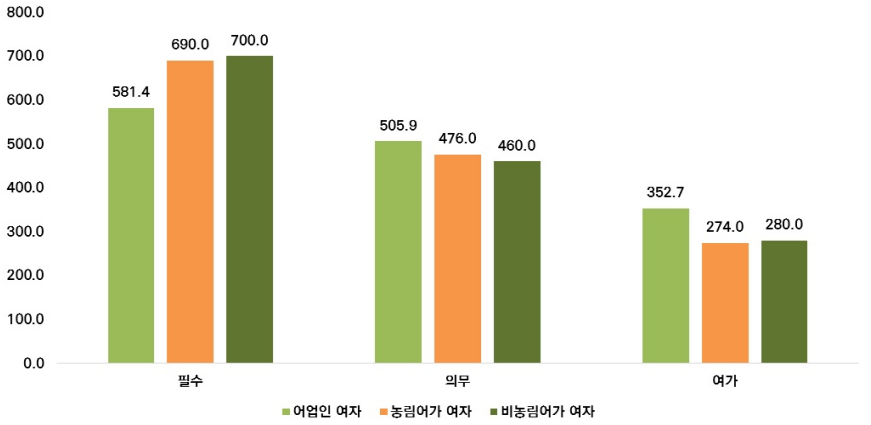
단위: 분



주: 1) 어업인 전체 응답자는 211명(남성 응답자 수 63명, 여성 응답자 수 148명)
2) 농림어가 평균과 비농림어가 평균은 통계청의 2019 생활시간조사 결과 활용
3) 조사 방식이 동일하지 않고, 표본 대상 또한 차이가 커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36〉 여성들의 하루 평균 시간 활용(어업인, 농림어가, 비농림어가)

단위: 분



주: 1) 어업인 전체 응답자는 211명(남성 응답자 수 63명, 여성 응답자 수 148명)
2) 농림어가 평균과 비농림어가 평균은 통계청의 2019 생활시간조사 결과 활용
3) 조사 방식이 동일하지 않고, 표본 대상 또한 차이가 커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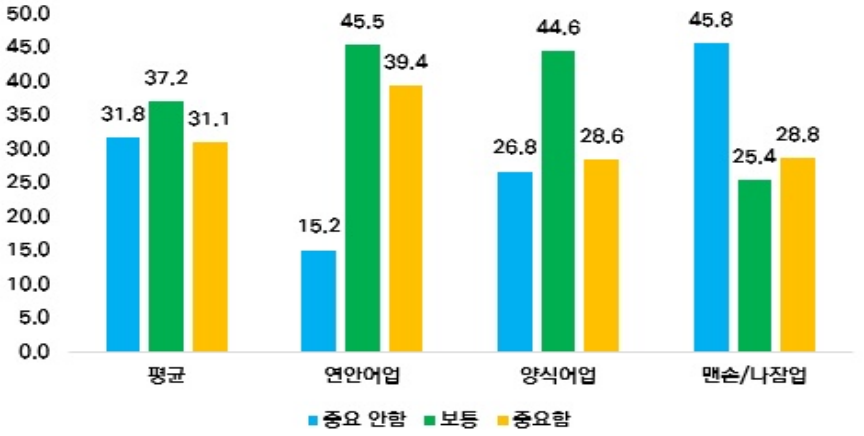
5. 업종별 여성어업인의 정책수요[201)]

1) 교육 및 역량 강화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밝힌 응답자는 연안어업 39.4%, 양식어업 28.6%,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28.8% 순으로 연안어업 종사자의 교육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맨손어업, 나잠어업 응답자의 45.8%가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수작업이 주를 이루고,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어법의 특성으로 교육을 통한 노동여건 개선이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그림 4-37〉 업종별 교육 중요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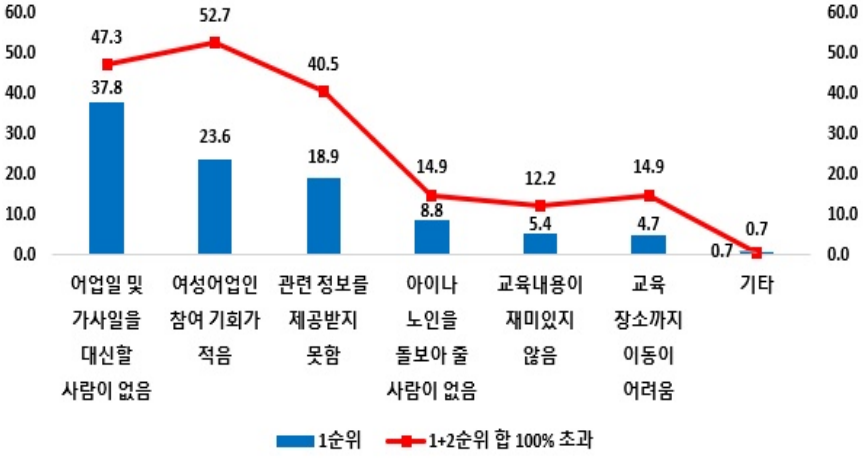
주: 여성어업인 148명 대상(연안 33명, 양식 56명, 맨손/나잠 59명)
자료: 저자 작성

201) 정책수요와 애로사항 발굴을 위해 여성어업인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함

교육을 참여하는 데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세 업종 모두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본인의 일을 대신할 사람이 없고, 참여 기회가 부족하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8〉 교육 참여 어려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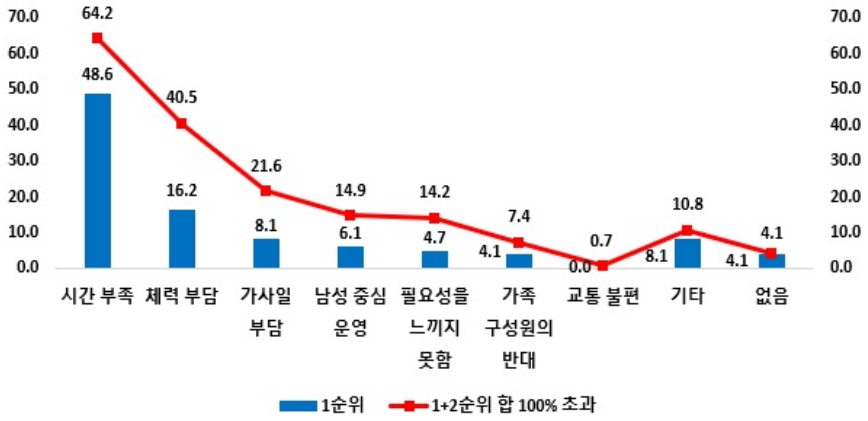
주: 여성어업인 148명 대상(연안 33명, 양식 56명, 맨손/나잠 59명)
자료: 저자 작성

2) 애로사항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겪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확인한 결과, 업종과 무관하게 시간의 부족(48.6%)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그 외 체력적 부담(16.2%), 가사일 부담(8.1%), 남성 중심 운영(6.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9〉 사회활동 참여 어려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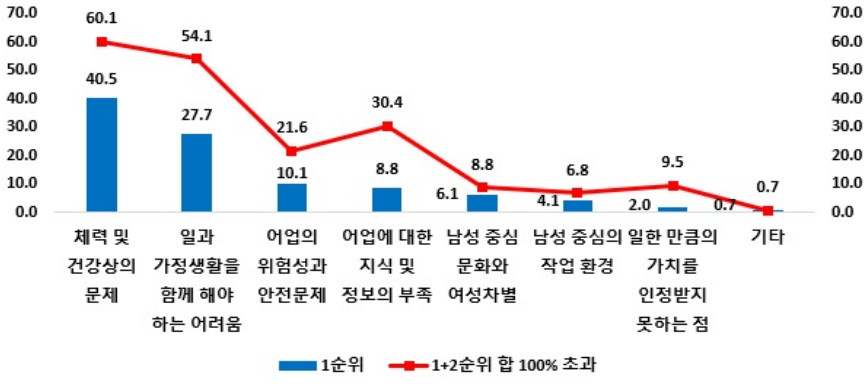


주: 여성어업인 148명 대상(연안 33명, 양식 56명, 맨손/나잠 59명)
자료: 저자 작성

어업에 종사하면서 겪는 대표적 어려움으로는 체력 및 건강상의 문제(40.5%)가 꼽혔으며, 이어서 가사노동 부담 등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뒤를 이었다.

〈그림 4-40〉 어업 종사 시 어려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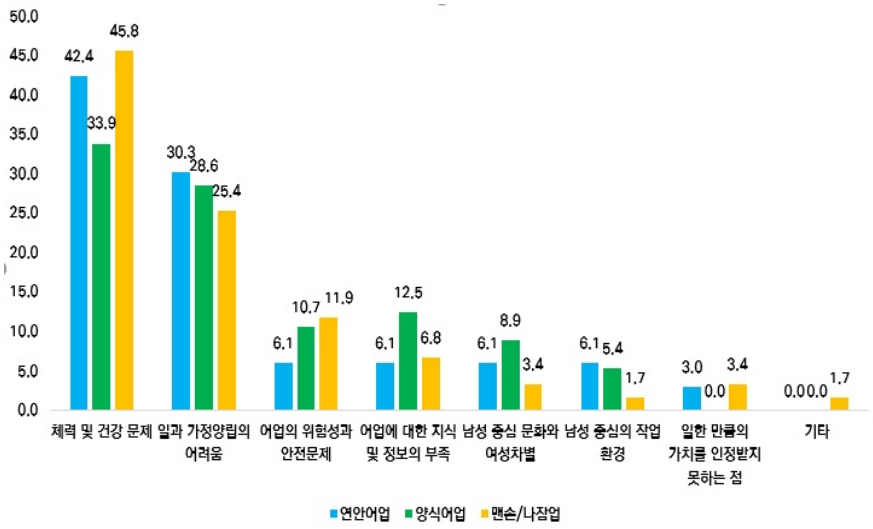


주: 여성어업인 148명 대상(연안 33명, 양식 56명, 맨손/나잠 59명)
자료: 저자 작성

다만, 하위 응답에서는 업종별로 차이를 보인다. 여성 강세 업종인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에서는 어업 안전문제를 3순위로 꼽은 반면, 연안어업과 양식어업은 남성 중심 문화와 작업환경, 여성차별을 꼽았다.

〈그림 4-41〉 업종별 어업 종사 시 어려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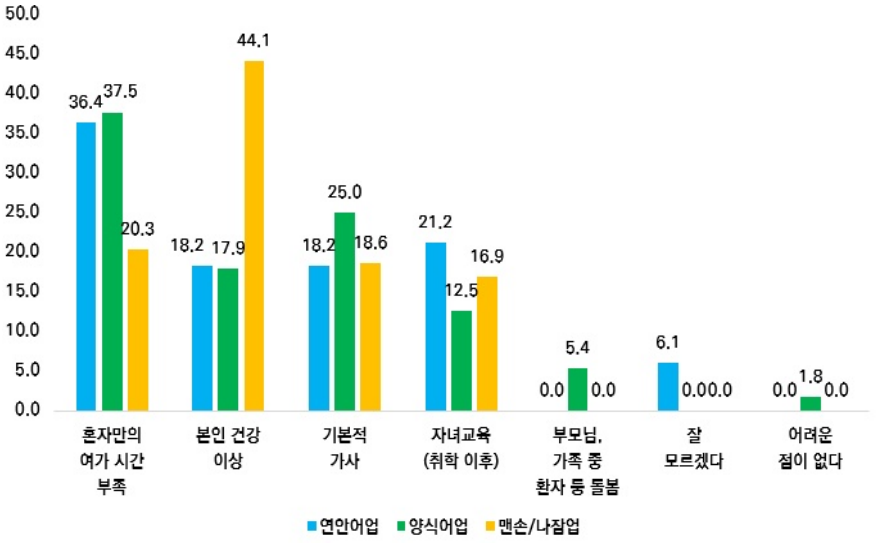
주: 1) 여성어업인 148명 대상(연안 33명, 양식 56명, 맨손/나잠 59명)
2)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함
자료: 저자 작성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체감하는 어려움은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연안어업과 양식어업 종사자들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혼자만의 여가시간 부족을 꼽은 반면, 맨손어업, 나잠어업 종사자의 44.1%는 건강 이상을 꼽았다. 이는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이 상대적으로 고령의 나이에도 종사가 가능하여, 고령의 여성어업인이 어업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며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외 여성어업인은 업종과 무관하게 여가시간 부족, 기본적 가사노동 책임, 자녀 교육 등 가정 내 무급노동

에 대한 부담을 공통적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림 4-42〉 업종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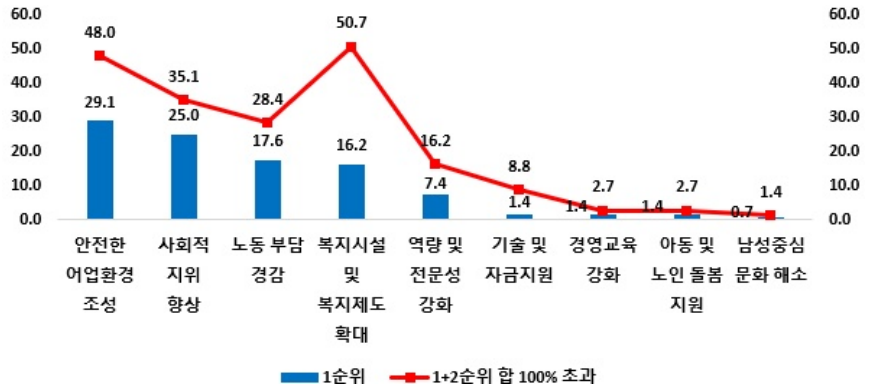
주: 1) 여성어업인 148명 대상(연안 33명, 양식 56명, 맨손/나잠 59명)
2)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함
자료: 저자 작성

3) 선결과제 및 정책수요

여성어업인이 본인의 여건 개선을 위해 뽑은 선결과제는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29.1%), 사회적 지위 향상(25.0%), 노동부담 경감(17.6%) 순으로 나타났다. 1, 2순위 응답을 모두 고려하면 복지시설 및 복지제도 확대가 50.7%로 나타나 복지정책에 관한 수요 또한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43〉 선결과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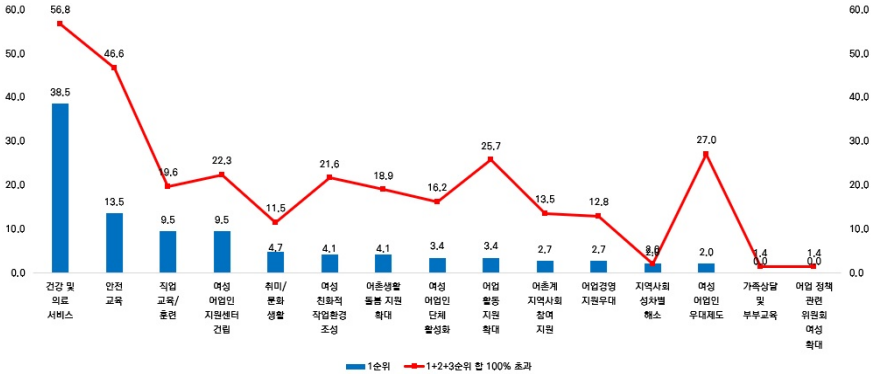


주: 여성어업인 148명 대상(연안 33명, 양식 56명, 맨손/나잠 59명)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44〉와 같이 여성어업인의 정책수요는 업종을 불문하고 건강 및 의료서비스 수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안전교육(13.5%), 직업교육(9.5%), 지원센터 건립(9.5%) 순으로 조사되어, 여성어업인의 직업적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그림 4-44〉 정책수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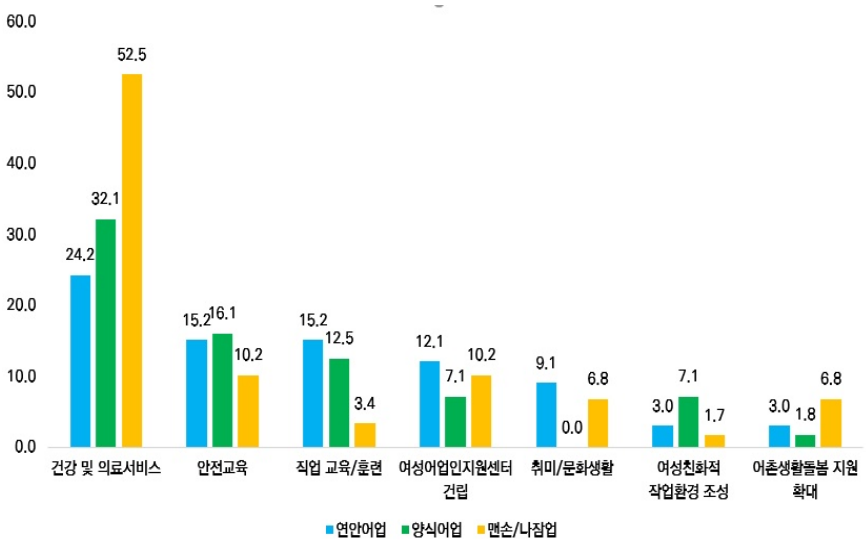


주: 여성어업인 148명 대상(연안 33명, 양식 56명, 맨손/나잠 59명)
자료: 저자 작성

정책수요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건강 및 의료서비스 지원을 꼽았으며, 어촌생활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 또한 타 업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고령에도 종사가 가능하고,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어업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성별 직종분리 현상이 심화되지 않은 양식어업 종사자들 또한 주요 정책수요로 여성친화적 작업환경 조성(7.1%)을 선택하고, 전술한 어업 종사의 어려움으로 남성 중심 문화의 여성차별(8.9%), 남성 중심의 작업환경(5.4%)을 꼽았다. 이는 타 업종 대비 성비의 균형을 이룬 양식어업에서도 어업의 오랜 남성 중심 구조가 여성어업인의 활동을 저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45〉 업종별 정책수요

단위: %



주: 1) 여성어업인 148명 대상(연안 33명, 양식 56명, 맨손/나잠 59명)
2)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함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여성어업인 노동의 경제적 가치 추정

1.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개념 및 추정 방법

1) 가정 내 무급노동의 개념과 중요성

여러 국가의 시간사용 조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202]에 사용하고, 남성보다 대체로 유급, 무급노동의 총합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203] 성평등 실현 노력으로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전히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고를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통적으로 무급으로 수행된 가사노동이 시장과 공적영역으로 이동하면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204]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평가될 수 있는데, 자녀나 부모를 돌보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시간을 의미하거나, 이러한 노동을 하는 사람이 상실한 임금이나 평생소득의 기회비용, 또는 무보수 노동을 수행하느라 포기해야만 했던 다른 유의미한 활동의 가치로 해석될 수 있다.[205] 무급 가사노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은 주로 노동자의 시간활용 현황을 바탕으로 한다. UN은 시간사용조사를 통해 무급 가사노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통일된 방법론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OECD는 국가의 생산적 활동 개념을 확대하여 국민소득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추정 연구를 수행한다.[206]

202) 본 절에서 가사노동은 가정 내 무급으로 행해지는 가사노동, 돌봄노동, 무급 가족노동을 모두 칭함
203) 장지연 외(2020), p. 13.
204) 윤자영(2020), p. 23.
205) 위의 책, p. 24.
206) 장지연 외, 앞의 책, p. 23.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은 1960년대 시카고학파를 중심으로 한 신가정경제학파의 발전에서 시작되었다.[207] 가사노동의 양적 규모와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것은 무급노동과 관련된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가늠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출 부담을 전망·예측하기 위한 중요 기초 작업으로 평가된다.[208] 즉,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사노동의 적극적인 고려 필요성을 강조한다.[209]

가정 내 무급노동의 개념과 가치는 1차 산업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소이 외(2003)는 1차 산업 종사 가구는 도시 가구와 달리 생산과 소비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져, 농가에서 농사일이 시급해지면 여성들이 가사활동 중에도 농사일에 참여하지만, 가사노동 시간은 크게 감소하지 않아 노동의 이중고를 겪는다고 보았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참여 시간이 증가하고 있지만, 농가소득에 대한 기여와 농가 내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210] 이후 여성농업인 노동에 관한 경제적 가치 추정은 일부 선행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나,[211] 여성어업인에 관한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였다. 여성어업인은 여성농업인과 마찬가지로 직접 생산활동에 종사하거나, 어획 후 처리, 판매 등 어가소득 창출 활동에 참여하는 동시에 가사노동의 부담을 지고 있다. 이러한 노동 이중고에도 불구하고, 여성어업인 노동의 양적 규모와 어가소득 기여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7) 유소이 외(2003), p. 159.
208) 장지연 외, 앞의 책, p. 14.
209) 위의 책, p. 19.
210) 유소이 외, 앞의 책, p. 158.
211) 선행연구 내용은 다음 단락에서 후술함

2) 가정 내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 추정 방법[212]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는 시간일지상 행동 범주에서 가정 내 무급노동과 관련된 행동을 무급 가사노동 할애 시간으로 정의하고, 해당 시간량과 임금률을 적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213] 즉, 무급 가사노동의 범위를 설정하고, 노동 시간량을 추정하여, 임금률을 적용하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214]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투입법(Input approach)과 산출법(Output approach)을 들 수 있다. 산출법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되는 전체 부가가치를 집계하는 이상적인 평가 방법이지만 가사노동 생산물의 경제적 가치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하다.[215] 투입법은 가사노동의 시간량을 측정하고, 시간량에 임금률을 곱해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임금률 적용 시 무급 노동 시간의 생산성을 일정 수준으로 가정해야 한다.[216]

투입법은 기회비용법과 대체비용법으로 세분할 수 있다. 기회비용법은 개인의 시간 배분이 효용 극대화를 이룬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가사노동에 종사했을 시간에 시장노동에 참여하였다면 얼마를 벌었을 것인가 가정하는 가치평가법이다.[217] 반면, 대체비용법은 무급노동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타인에게 의뢰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 가정하는 것으로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 관점에서 산정하는 것이다.[218] 대체비용법은 다시 일반인 대체비용법과 전문가 대체비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가

212) 장지연 외(2020)에서 상당 부분을 발췌·인용함
213) 장지연 외, 앞의 책, p. 26.
214) 윤자영, 앞의 책, p. 28.
215) 장지연 외, 앞의 책, p. 30.
216) 위의 책, p. 30.
217) 위의 책, p. 30.
218) 위의 책, p. 31.

대체비용법은 세부 활동별로 숙련 노동자가 대체한다고 가정하여 노동시간에 전문가 시장임금률을 곱해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무급노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숙련 수준을 전문가만큼 생산적일 것이라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다.[219] 일반인 대체비용법은 무급노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여 이에 상응할 만한 직업인을 고용한다고 가정하는 방법으로 전문가 대체비용법과 달리 개인의 숙련 수준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220]

3) 기존 연구의 검토

여성의 가정 내 무급노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가정 내 돌봄노동, 가사노동에 관한 가치평가 연구와 여성농업인 노동에 관한 가치평가 연구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가정 내 무급 돌봄노동이 갖는 경제적 가치에 관한 최근 연구로는 장지연 외(2020)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돌봄노동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돌봄노동의 유형을 직접 돌봄노동과 간접 돌봄노동으로 구분하였으며, 가치평가 방법은 돌봄노동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사회적 차원의 유용성과 공공성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해 대체비용법을 적용하였다. 시간당 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의 정액 급여를 실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며, 일반인 대체비용법과 전문가 대체비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19세 이상 전체 인구의 연간 돌봄노동 가치는 일반인 대체비용법의 경우, 남성은 12조 7천억 원, 여성은 37조 9천 원으로 국내총생산의 약 2.6%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대체비용법 활용 시 돌봄노동의 가치는 남성은 14조 3천억 원, 여성은 41초 9억 원까지 상승하며 국내총생산 대비의 약 2.9%로 평가

219) 위의 책, p. 31.
220) 위의 책, p. 31.

되었다. 동 연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돌봄노동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제시하고, 정부 재정 지출 부담과 예측 측면에서 무급 돌봄노동이 갖는 경제적 가치 고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여성농업인 노동의 가치평가에 관한 대표적 선행연구로 유소이·김경미(2003)를 들 수 있다. 유소이·김경미(2003)는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는 노동을 무급 가족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으로 구분하여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이를 국내총생산과 비교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동 연구는 설문·면접조사를 통해 미맥농가 남녀농업인 1인의 생활시간과 지역 노임, 생산물 가치 등을 파악하였으며, 총합적 대체비용법, 기회비용법, 잠재임금추정법을 적용하여 여성농업인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나아가 추정된 여성농업인 1인의 연간 노동 가치를 여성농업인 인구수에 곱하여 전체 여성농업인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국내총생산과 비교하였다. 연간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는 농업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추정 방법에 따라 560만 원에서 730만 원까지 추산되었으며, 가사노동은 280만 원에서 830만 원으로 추산되었다. 이를 전체 여성농업인으로 확대·적용하면, 전체 여성농업인의 연간 농업노동 가치는 8조 3천억 원에서 10조 7천억 원, 가사노동 가치는 4조 1천억 원에서 12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추정 결과를 국내총생산과 비교하면,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는 농업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국내총생산의 1.5~2.3%, 가사노동은 0.8~2.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강혜정·마상진(2007)은 잠재임금추정법을 통해 여성농업인 무급 가족노동의 가치를 추정하였으며,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가치를 기회비용법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성농업인 노동의 가치와 기여를 가시화하여, 이들의 역할과 지위 향상 필요성을 뒷받침하였다.

2. 여성어업인 노동의 경제적 가치 추정

어업 노동력 부족으로 어가 여성들의 어업노동 참여는 증가하였지만, 여성어업인의 어가소득 기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여성으로서 요구되는 자녀 돌봄, 가사노동 등과 같은 어가 내 무급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 또한 평가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단락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여성어업인의 노동시간을 활용하여, 여성어업인이 부담하는 무급 어업노동과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1) 분석 자료와 방법

(1) 생활시간의 유형화

가정 내 무급노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보상이 있는 유급노동과 달리 보상과 계약 없이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활동 중 '생계경제(Provisioning)'에 기여하는 생산적 활동이 무엇인지 한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러한 무급노동의 정의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과대 혹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221] 이에 많은 연구에서는 무급노동을 정의하기 위하여 시간사용조사의 가사노동, 돌봄노동에 해당하는 행동 범주를 그대로 무급 가사·돌봄노동으로 정의하였다.[222]

본 연구 또한 여성어업인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통계청 '2019년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를 바탕으로 여성어업인의 24시간 활용을 조사하였다. 시간 활용 유형은 행동분류표에 따라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교제 및 참여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

221) 위의 책, p. 26.
222) 위의 책, p. 26.

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경제적 가치 추정 대상은 일,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로 한정하였다. 또한, 실태조사에서 일은 유급노동(어업활동, 어업 외 활동)과 가정 내 무급노동으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의 경제적 가치 추정은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는 유급노동을 제외하고 무급노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93.9%가 수산물 생산에 120일 이상 종사하고,[223] 응답자의 65.5%가 어업 외 활동 종사 기간이 거의 없는 점[224]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무급노동을 어구 손질 등을 포함한 어업 관련 노동 활동으로 가정하였다.

〈표 4-5〉 행동분류표에 따른 시간 활용 유형

행동 분류	실태조사의 시간 활용 유형
개인유지	• 수면 • 식사 및 간식 • 개인위생 및 외모관리
일	• 어업활동(임금) • 어업 외 활동(임금) • 무급 가족노동(어업 등)
학습	• 학습
가정관리	• 가사노동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 미성년 가구원 돌보기 • 성인 가구원 돌보기
교제 및 참여활동	• 교제 및 참여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	• 문화 활동(영화, 스포츠 관람 등) • 미디어 이용 여가(TV 시청, 책읽기 등) • 스포츠 및 레포츠(조깅 등) • 그 외 휴식 • 기타활동

주: 행동분류는 통계청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의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 분류를 따름
자료: 저자 작성

223) 여성 응답자의 지난 1년 중 어업 종사 기간: 3개월 미만(6.1%), 3~6개월 미만(12.2%), 6~9개월 미만(26.4%), 9개월 이상(55.4%)
224) 여성 응답자의 지난 1년 중 어업 외 노동 종사 시간: 없음(62.8%). 1개월 미만(0.7%), 1~3개월 미만(2.0%), 6개월 이상(28.4%)

(2) 대체비용의 추정

본 연구는 여성어업인의 무급노동 가치를 사회적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대체비용법을 활용하였다. 기회비용법이 아닌 대체비용법을 활용한 이유는 여성어업인의 무급노동을 개인의 효용 극대화 관점이 아닌 어업 노동력 부족이라는 산업적 측면과 어가·어촌 유지라는 공공성 관점에서 접근하여 평가하기 위함이다. 대체비용법은 어가 내에서 이뤄지는 가사노동 전부를 가정부가 대신하고, 무급 어업노동은 고용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산출 방법은 아래와 같다. 아래 식에서 T_h는 여성어업인의 무급 가사노동 시간이며, W_h는 가사노동의 시간당 임금, T_f는 여성어업인의 무급 어업노동 시간이며, W_f는 어업 관련 단순 종사원의 임금이다.

$$W=(T_h\times W_h)+(T_f\times W_f)$$

대체비용 추정을 위해 사용할 시간당 임금은 장지연 외(2020)를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표 4-6〉 대체비용법 활용을 위한 시간당 임금 추정(2019년 기준)

직종 분류		소정실근로시간(시간)	정액 급여(천원)	시간당 임금(원)
단순노무 종사자(9)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원(99)	160.9	1,979	12,300
	가사 및 육아 도우미(95)	86.0	1,062	12,349

주: 1) 직종분류 ( ) 안의 값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분류코드를 명시함
2) 2019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직종 중(소)분류별 근로조건 통계를 활용(검색일: 2021. 9. 2)
자료: 저자 작성

시간당 임금은 종사원 정액 급여를 소정실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였다. 무급 가사노동 대체비용은 가사 및 육아 도우미의 시간당 임금을 사용하였으며, 가정 내 무급 어업노동은 농림어업 단순 종사

원의 시간당 임금을 활용하였다.[225]

2) 분석 결과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어업인은 하루 중 약 4시간(242.3분)을 어가 내 무급노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별로 살펴보면, 가사노동과 무급 가족노동이 119.4분과 117.4분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 평균 대비 가구원 돌보기에 할애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는데,[226] 이는 제3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어가의 고령화, 핵가족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일일 노동시간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표 4-7〉과 같다.

〈표 4-7〉 여성어업인 무급노동 투입 시간

행동 분류	시간 활용 유형	일일 사용 시간(분)	연간(시간)
합계		242.3	1,474.0
일	무급 가족노동(어업 등)	117.4	714.2
가정관리	가사노동	119.4	726.4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미성년 가구원 돌보기	4.9	29.8
	성인 가구원 돌보기	0.6	3.7

자료: 저자 작성

여성어업인 일일 무급노동 가치액을 월별 평가액[227]으로 추정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곱하여 무급노동의 연간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여성어업인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아래 표와 같다. 여성어업인의 일간 무급

225) 어업숙련직(61)의 소정실근로시간은 191.2시간, 정액급여는 2,098천 원으로 시간당 임금은 10,973원으로 추정됨. 어업 특유의 노동시간의 불명확성으로 숙련직의 시간당 임금이 단순 종사원 보다 작게 추정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단순 종사원 임금을 활용함

226) 2019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일중 여성의 미성년 가구원 돌봄 시간은 약 38.4분, 성인 가구원 돌봄은 4.4분으로 약 42.8분으로 나타남(자료: 윤자영(2020))

227) 월별 추정액은 일일 노동가치에 30.4일을 곱하여 계산함. 이는 국민계정 내 가사노동의 월별 가치 평가 시 GDP와 비교를 위해 1년 365일을 12달로 나눈 30.4일은 적용한 것에 따름(자료: 유소이 외(2003), p.164)

노동 가치액은 약 5만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월로 환산한다면 약 151만 원, 연으로 환산 시 1,817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어가소득과 비교하면, 2019년 기준[228] 전국 평균 어가소득은 4,842만 원[229]으로 여성어업인 무급노동의 연간 추정액은 어가소득의 37.5%에 해당한다. 다만, 본 추정에서 사용한 시간당 임금은 여성어업인의 숙련도, 어업·어촌 인력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 등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못한 것으로 일선 현장 임금 실정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230]

〈표 4-8〉 여성어업인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

단위: 원

행동 분류	시간활용 유형	일평균	월평균	연평균
합계		49,774	1,513,114	18,167,328
일	무급 가족노동(어업 등)	24,067	731,637	8,784,455
가정관리	가사노동	24,575	747,065	8,969,696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미성년 가구원 돌보기	1,009	30,658	368,103
	성인 가구원 돌보기	123	3,754	45,074

자료: 저자 작성

본 절에서는 여성어업인이 수행하는 가정 내 무급 어업노동과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어가소득과 비교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여성어업인 무급노동의 경제 기여를 가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체비용법을 활용하였는데, 대체비용법은 대체 노동자의 조건을 선정하는 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고,[231]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된 어업의 여건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또한, 임금 추정 시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률을 적용

228) 시간당 임금 추정이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짐에 따라 어가소득 또한 2019년 자료를 이용함
229) 국가통계포털 어가경제조사(검색일: 2021. 12. 29)
230)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짐에 따라 자영자(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업을 수행하는 사람)가 주를 이루는 어업 실정 반영에 한계를 가짐(자료: 고용노동부(2021), p. 1)
231) 유소이 외, 앞의 책, p. 254.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임금 결정 구조, 관행에 따른 가사노동 가치의 저평가가 반복될 수 있다.[23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여성어업인이 창출한 생산물 가치와 한계생산성에 관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체비용법을 활용하였으며, 향후 여성어업인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더욱 면밀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어업별로 다양한 작업유형과 생산성, 시간 사용 유형 확인이 필요하고, 임금률 또한 어업 실정에 부합하는 자료 사용이 필요하다.

제3절 여성어업인 정책수요 조사

1. 면담조사 개요

본 연구는 여성어업인의 정책수요를 보다 깊이 있게 확인하고, 양적 통계조사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심층적 탐구가 가능한 면담조사를 병행하여 여성어업인의 정책수요를 보다 깊이 있게 확인하고자 하였다. 앞서 살펴본 실태조사에서 여성어업인은 업종과 무관하게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 사회적 지위 향상, 노동부담 경감을 주요 선결과제로 꼽았으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으로 건강 및 의료서비스를 꼽았다. 이에 본 연구는 면담조사의 주요 내용을 노동환경과 삶의 질, 여성어업인 지위로 유형화하였다.

232) 장지연 외, 앞의 책, p. 29.

〈표 4-9〉 면담조사 기초 질문

유형	주요 내용
노동환경	• 해당 업종 종사 이유 • 여성어업인이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에서 주로 종사하는 이유 • 어업 종사의 애로사항
삶의 질	• 가사노동의 부담 • 의료서비스와 문화생활 • 여성어업인을 위해 필요한 정책
여성어업인 지위	• 성불평등 환경 • 여성리더로서 활동 • 어촌계 등 사회적 활동

자료: 저자 작성

면담조사는 2021년 7월에서 8월 사이 총 여섯 차례 진행되었으며,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10명의 면담대상을 섭외하였다. 면담조사 대상 섭외 시 종사업종을 고려하고, 직접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어촌계에 거주하고 어획물 유통·판매를 통해 어가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여성도 면담대상에 포함하였다. 면담조사는 1회당 최소 1시간에서 최대 2시간 진행되었으며, 연구자가 기초 질문을 제시한 뒤 면담조사 대상자 의견을 경청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또한, 면담조사 내용은 녹음과 필사를 거친 후 유형별로 구분·분석하였다.

〈표 4-10〉 면담조사 대상

구분	업종	대외활동
1	나잠어업	A어촌계장
2	나잠어업	A어촌계원
3	어획물 유통·판매	A어촌계 사무장
4	연안어업, 해조류양식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원
5	연안어업	B수협 비상임이사
6	연안어업, 맨손어업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원

구분	업종	대외활동
7	연안어업, 맨손어업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원
8	연안어업, 맨손어업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원
9	연안어업, 맨손어업	C수협 비상임이사
10	어획물 유통·판매	D어촌계 사무장

자료: 저자 작성

나아가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 세부 전략 수립을 위해 산·학·연·정 업무협의회와 여성어업인 워크숍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환류하고자 하였다.

〈표 4-11〉 의견수렴 사례

구분	일시	참석자
산·학·연·정 업무협의회	2021. 8. 11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수협중앙회, 지역재단, 지역농업네트워크, 해양수산부 관계자 참석
여성어업인 워크숍	2021. 9. 30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여성어업인 등
제5차 여성어업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 간담회	2021. 11. 12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수협중앙회, 지역재단, 지역농업네트워크,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 참석

자료: 저자 작성

2. 양질의 노동환경 실현을 위한 정책수요

1) 노동 여건 개선 수요

여성어업인은 고강도 노동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상을 기반으로 한 어업노동 특유의 위험성과 여성어업인이 주로 전담하는 후 처리 노동에 대한 어려움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고강도 어획 후 처리 노동

여성어업인이 강세를 보이는 나잠어업은 주로 성게, 전복 등을 어획하는데, 판매를 위해서는 성게의 가시를 제거하는 등 어획 후처리 노동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다만, 어획 후 처리 노동과 같이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작업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식되지 않아 작업장 설비나 도구 등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233] 노동강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 교육, 정책적 지원 등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어획 후 처리 노동은 장시간 부적절한 자세로 이뤄짐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야기하고, 추위와 더위를 막을 수 없는 열악한 작업환경은 노동강도를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녀학교에서는 잡는 것만 가르쳐 주고, 어획 후 처리 같은 건 알려주지 않아요. 어획 후 처리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해녀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후처리가 모든 관절을 아프게 해요.
- 어선은 기술이 개발되잖아요. 왜 해녀가 채취한 말똥성게 같은 어획물을 처리하는 기술은 기계화되지 않을까요? 장비도 없이 손으로 하나하나 해체하다 보니 관절에 심하게 무리가 와요. 손뼈가 다 휘어요. 장기간 앉아서 해체하다 보니 허리에도 무리가 심하게 가요. 다들 관심을 가지지 않는지 오래전과 작업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 후처리가 너무 힘들어요. 기계화는 규격화가 되어야 하는데 어획물은 규격화가 되지 않아 기계화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과거 보라성게를 해체하는 장치가 개발되었지만, 실제 사용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상품성을 해치고 다치기 쉬웠거든요. 그래서 기계화보다 처리장이라도 현대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해서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다 나가는 것 같아요.
- 후처리 작업장이 온열기도 없고 너무 추워서 작업장이라도 따뜻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 면담조사 내용 저자 정리

233) 김영택 외(2018), p. 234.

〈그림 4-46〉 어획 후 처리 작업환경



자료: 면담조사 결과 활용

(2) 작업 안전

어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산업으로 평가되며, 어선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다.[234] 사고는 어선 작업 중에서도 어구·어망을 당기거나 투망하는 중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고의 종류는 허리나 어깨 부상, 미끄러짐, 양망기 끼임 등이 있다.[235]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 또한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안전사고 발생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

- 엉킨 그물을 손으로 직접 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 그물이 풀리는 힘에 나도 바다로 끌려갈 것 같아요.

자료: 면담조사 내용 저자 정리

또한, 면담조사 대상들은 종사업종을 불문하고 작업 안전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나잠어업 종사자들은 조업 특성상 심장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맨손어업 종사자들 또한 갯벌 내 이동을 위해 주로 사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데, 이용 방법 등에 대한

234) 해양수산부(2016), p. 5.
235) 위의 책, pp. 6~7.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사륜오토바이 이용은 최근 한국관광공사 홍보영상에도 소개될 정도로 보편화되었음에도[236] 과속, 난폭운전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여성어업인의 안전사고 위협을 증가시킨다.[237]

〈그림 4-47〉 사륜오토바이 활용 모습





▲보령해경과 보령시청 해양정책과 담당자들이 사륜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에 대한 계도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이상원)

자료: SBS(2021. 9. 6); 프레시안(2021. 3. 27)

- 예전에는 갯벌까지 경운기를 이용했는데 요즘은 주로 사륜오토바이를 이용해요. 경운기보다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지만, 안전교육 등은 받지 못했어요.
- 안전교육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안전교육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같이 조업한 해녀가 쓰러졌는데 제가 간호사 출신이라 심폐소생술로 살렸지만, 그날 제가 같이 가지 않았다면 잘못됐을 거예요.

자료: 면담조사 내용 저자 정리

노동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장비도 작업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여성어업인들은 일반적인 구명조끼가 본인들에게 무겁고 작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껴 착용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동 팽창 구명조끼는 가벼운 무게에도 불구하고 물에 닿으면 쉽게 팽창하는 특성으로 작업 시 착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236) SBS(2021. 9. 6)
237) 프레시안(2021. 3. 27)

- 구명조끼가 너무 무거워 입고는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 자동 팽창 구명조끼는 가볍지만, 충전이 어렵고, 물이 조금만 닿아서 부풀어 올라서 작업 중에 입기는 어려워요.

자료: 면담조사 내용 저자 정리

(3) 직업병

해양수산부 '2019년 어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에 따르면 어업인은 허리, 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을 가장 많이 앓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업무상 유병률은 여성(5.9%)이 남성(4.9%)보다 높게 나타났다.[238] 또한, 나잠어업 종사자는 근골격계 질환 외에도 조업 특성상 잠수병, 청력 손실 등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과 질병, 장애, 사망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으로 '어업인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험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보장 범위 확대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어업인보험은 공제형 아닌가요? 보험 상품을 사보험과 비교하면 전체 보험금액 대비 보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과중한 노동으로 이미 근골격계가 약해졌는데 꼭 조업 중에 다쳐야만 보장받을 수 있어서 혜택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 보장내용이 너무 부족해서 치료를 원하는 항목은 적용되지 않아요. 어업인보험은 정말 최소한만 보장해주는 것 같아요.
- 어업으로 인해 발생한 직업병은 은퇴 후에도 관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나잠어업으로 잠수병을 얻지만 고령으로 은퇴하게 되면 이를 부담하는게 부담스러워요.
- 보험상품을 소멸성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 어업인보험의 사고 유형이 양식, 나잠, 맨손까지 크게 확대되고, 꼭 조업 중 사고가 아니라도 보장되면 좋겠어요.

자료: 면담조사 내용 저자 정리

238) 뉴스1(2021. 6. 30)

2) 삶의 질 향상 수요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촌계의 지리적 여건에 따른 문화생활과 의료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가사노동 부담 등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

(1) 문화생활 및 의료서비스 인프라 부족

앞서 살펴본 실태조사에서 1년 중 문화·여가생활을 즐기지 않는 여성어업인 비율은 응답자의 79% 수준이며, 문화·여가 이용을 위해서는 인근 시·군·구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애로사항 또한 의료기관 부족에 따른 장거리가 꼽혔으며, 면담조사에서도 인프라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용 시설의 부족은 이동에 제약이 있는 고령의 여성어업인 삶의 질 저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현행 복지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큰 부상을 입기 전 예방적 건강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밝혔다.

- 이미 많은 어업인은 고령이에요. 문화생활을 위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영화를 보러 가는 건 어려워요. 찾아온다면 모르겠지만 직접 이동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 광역시에서 시 단위로 귀어했는데, 도심과 비교하면 복지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특히, 조업 후 낮에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문화시설이 부족해요.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는 건 들어본 적 없어요.
- 크게 다치거나 골절이 되지 않으면 병원에 쉽게 가기 어려워요. 크게 다치기 전에 물리치료라도 먼저 받을 수 있는 어촌계 인근 시설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료: 면담조사 내용 저자 정리

(2) 가사노동 전담

면담대상자 모두 어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고를 호소하며, 여성어업인의 가사노동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연안어업의 경우 노동력 부족으로 부부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은 여전

히 여성어업인이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편과 함께 조업하고 돌아와서 가사노동을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 실상은 여성어업인의 일이 더 많아요.
- 항·포구에 그물을 손질할 만한 장소도 없어서 집에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어업이랑 집안일이 구분되지 못해요.

자료: 면담조사 내용 저자 정리

(3) 복지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어업인의 문화·여가생활 이용의 조건불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 수혜요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실제 어업활동 여부를 전제로 하여 여성어업인이 본인의 직업에 자긍심을 갖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시골에 살지만 내가 어업인이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생각해서 어업인으로 자긍심을 느껴요.

자료: 면담조사 내용 저자 정리

3) 지위 향상 수요

여성어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선결과제로 여성어업인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어촌계 내 성평등 인식 확산과 같은 사회·문화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1) 여성어업인 역할 인식 제고

여성어업인은 어가소득 창출을 위해 본인이 직접 어획에 참여하거나, 그물과 미끼를 손질하고 어획물을 관리, 판매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어획 활동만을 어업으로 생각하는 1차 생산중심 사고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여성어업인의 역할과 기여가 평가절하되고 있다. 향후 여성어업인의 역할은 어획 활동과 같은 생산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어획 활동을 위한 전후방 노동과 어획물 유통, 판매 등 어가소득 창출을 위한 활동까지 확대·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어업인이 주로 종사하는 맨손어업, 나잠어업은 어촌계 단위로 이뤄지고, 어획물 판매 수익 일부가 어촌계 운영에 사용된다. 즉, 여성어업인의 어업활동은 어가소득 창출, 어가 유지를 넘어 어촌계 운영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에 어업과 어가, 어촌계 유지 측면에서 여성어업인의 위상과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

- 어가에서는 어획물을 생산 후 관리하고 판매해서 돈을 만지는 것까지 어업으로 봐야 해요. 그런데 남자들이 어획물을 생산하는 일만 중요하게 부각이 돼요.
- 물 밖의 모든 일은 여자 몫이에요. 여자 손 없이는 할 수 없는데 남자들은 본인들이 잡아서 다 했다고 생각해요.
- 어촌계를 먹여 살리는 건 맨손어업이에요. 조개를 잡으면 개인이 파는 게 아니라 어촌계가 수거해서 입찰로 판매해요. 그래서 판매 수수료는 어촌계 수익으로 사용되니까..

자료: 면담조사 내용 저자 정리

(2) 성불평등 개선

연안어업을 중심으로 부부조업이 확산됨에 따라 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사회적 통념은 과거에 비해 해소되었지만, 근해어업과 같이 여성 참여가 저조한 업종에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어업 노동력 부족 현상은 업종을 불문하고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여성 참여에 대한 인식 전환은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이뤄져야 한다. 특히,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을 축소시키고, 어업과 관련된 사회적 활동에서도 여성을 배제할 것으로 우려되어, 성평등한 산업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

- 예전에는 배에도 재수 없다고 못 올라가게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노동력이 부족해서 부부끼리 조업하지 않으면 외국인 어선원을 써야 해서..
- 근해어업은 조업 기간이 길어서 여자가 함께 승선해서 조업하기 어렵고 여자가 조업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 여전히 근해어선처럼 큰 배는 여자가 배 위에 올라오면 재수가 없다고 해요.
-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여자도 조업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평등하다는 인식이 꼭 필요해요.

자료: 면담조사 내용 저자 정리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으로 여성어업인들은 성인지 교육의 남성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현행 성인지 교육은 여성어업인 단체 등을 통해 여성어업인 또는 일부 어촌계장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촌계의 가부장적 인식을 해소하고 실질적 성평등 달성을 위해서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 여자들의 사고방식은 많이 깨었지만, 어촌계 남자들 사고방식은 여전히 가부장적이에요. 저희 남편도 도심에 살 때보다 어촌계에 온 뒤 더 가부장적으로 바뀌었어요.
- 일은 함께하면서 무언가 결정할 때에는 여자가 뭘 아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업인, 어촌계장, 대의원 교육에 항상 여성에 대한 의식개선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만 교육하지 말고 남성들도 교육받아야 해요.
- 여자가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은근히 좋아하는 한편 자존심 상해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자료: 면담조사 내용 저자 정리

제4절 시사점

본 장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성별·업종별 어업인 노동환경 차이를 살펴보았다. 어업에 종사하게 된 이유에서 남성의 경우, 가업을 잇거나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지만, 여성은 업종을 불문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배우자를 돕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안어업의 경우, 소형 연안어선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부부조업 형태 승선이 주를 이뤄 여성어업인의 어업활동 참여가 어가 경제 유지 및 어가소득 창출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어업 시작 동기의 차이는 본인 지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결정 권한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인을 경영주로 인식하는 남성어업인은 전체의 92%로, 업종을 불문하고 대부분 본인을 경영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여성어업인의 상당수는 본인을 경영주가 아닌 무급 가족종사자로 인지하고, 자신의 지위를 보조적 역할로 평가하였다. 다만, 여성어업인이 강세를 보인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은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을 경영주라 평가한 비중이 컸다.

성별에 따른 의사결정 권한 격차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어업인은 소득 창출 활동 중 어업 외 경제활동을 제외한 어업생산, 어획물 가공, 어획물 판매에서 본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타 가구원보다 크다고 밝혔다. 반면, 여성어업인은 어업생산에 관한 의사결정 시 타 가구원의 의견을 따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남녀어업인 모두 소규모 가계지출에서는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이 더 크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여성어업인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면서 관련 소비 또한 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여성 강세가 뚜렷한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연안어업과 양식어업 종사 여성어업인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 노동시간의 활용 또한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일 평균 남성어업인은 488.8분(8.1시간), 여성어업인은 504.3분(8.4시간)을 노동에 할애하였는데, 남성어업인의 경우, 노동시간의 대부분(437.6분, 7.3시간)을 유급노동에 사용하였다. 반면, 여성어업인의 일 평균 유급노동 시간은 262.1분(4.4시간), 가정 내 무급노동 시간은 242.3분(4시간)으로 전체 노동시간의 절반가량을 가정 내 무급노동에 할애하였다. 남성어업인이 가정 내 무급노동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50.9분으로 한 시간에도 미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어업인은 가정 내 무급노동을 전담하고, 유급노동 또한 병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어업인의 가정 내 무급노동 전담 풍토는 여성어업인의 활동 시간을 제약하고, 나아가 남성과 동일한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노동에 할애해야 함을 시사한다.

시간활용 조사에 따른 무급 가사노동의 양적 규모를 바탕으로 여성어업인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산업적·공공성 측면에서 무급노동 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타인에게 노동을 의뢰한다는 전제하에 대체비용법을 활용하였다. 월평균 여성어업인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약 151만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연으로 환산 시 연간 1,817만 원 규모로 추정되었다. 전국 평균 어가소득이 4,842만 원임을 고려한다면 여성어업인의 역할과 기여는 더욱 제고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여성어업인이 창출한 생산물 가치와 한계생산성 등에 관한 통계자료 부족으로 대체비용법을 활용하였는데, 보다 실증적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여성어업인 실태에 관한 공신력·연속성을 갖춘 통계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주요 애로사항으로 노동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 여성어업인 지위 향상을 들 수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업 노동환경 개선과 가사노동 부담 경감은 2005년 실태조사부터 동일하게 제기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구

체적 수요로는 작업환경 개선, 작업 안전 확보, 직업병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있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의료 인프라 확충, 가사노동 경감, 복지제도 확대가 있다. 여성어업인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역할·인식 제고, 성평등 기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만, 삶의 질과 관련하여 2005년 실태조사와 달리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정책 수혜자인 여성어업인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향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귀어가구 유입 등 신규입력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전술한 정책수요는 상호유기적 관계를 갖는다. 일례로, 가부장적 인식 아래 노동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어업인의 가사노동 전담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촌·어가·어업 현장의 성인지 감수성 증대와 성평등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어업인의 역할과 인식에 대한 제고는 이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주의를 환기해 작업환경과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적·정책적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05
여성어업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제1절 여성어업인 정책 기본방향

우리나라 어가인구 중 여성 비율은 2010년대 이후 50%를 상회하는 가운데 여성어업인은 채취·승선 조업을 비롯하여 어구 관리, 어획물 손질 등 어업의 노동력 공급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39] 더불어 여성어업인은 살림·육아 등 가사노동과 마을행사 지원 등을 병행하며 어촌사회 유지에 기여하고, 수산물 가공 및 판매, 어촌 관광까지 수행하고 있어 여성의 역할과 중요성은 수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240]

여성어업인의 중요성이 인구구조 변화, 어촌사회 유지, 노동력 공급 등 산업적·지역적 측면에서 강조되었음에도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은 미결 과제로 남아 있다. 노동과 삶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어가의 특성과 어업 노동력 부족 현상의 결합은 많은 어가 여성을 어업활동 전선으로 이끌었다.

239)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한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어가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2000년 49.6%, 2010년 50.0%, 2019년 50.5%로 50%를 상회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가구원을 의미하는 어업종사가구원 중 여성의 비율은 2000년 45.5%, 2010년 46.6%, 2019년에는 47.0%로 지속적으로 상승함(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검색일: 2021. 6. 3))

240) 해양수산부(2017), p. 4.

이러한 참여 계기는 여성어업인이 본인 스스로를 조력자로 인식하게 하고,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주도적 의사결정 권한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여성어업인의 낮은 의사결정 권한은 오랜 남성 중심 어업구조와 여성에 대한 몰이해를 공고히 하고, 여성에게 가사노동과 어업노동의 이중고라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기존 여성어업인 정책은 산업적·지역적 정책 대안으로 시작되어 인적자원 개발과 낙후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집중된 한계를 보인다. 향후 여성어업인 정책은 기존 정책과 더불어 성 주류화 흐름에 발맞춰 여성이 갖는 특수성과 성역할에 대한 이해를 전제해야 한다. 또한, 여성어업인이 처한 과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족 내 무급노동과 다소 모호한 직업적 지위, 산업 내 구조적 여성 배제와 이에 따른 열악한 노동환경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양질의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성역할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ILO는 노동자가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노동을 하고, 적절한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고용에서의 공정한 대우와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ILO 양질의 노동 지표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의 소외계층이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표 5-1〉과 같이 많은 선행연구는 국내 노동시장 특성과 연구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표 중 일부만을 취사선택하여 일자리의 질을 연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여성어업인 정책수요가 ILO가 제시한 양질의 노동환경 세부 지표와 상호 부합하는지 살펴보았다. 다수의 여성어업인은 계약관계에 의해 어업에 종사하기보다는 어가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어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 안정성, 사회보장, 노사협의 등 계약관계와 관련성이 큰 여러 지표는 제외하였으며, 여성어업인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필수 요소로 다음과 같이 꼽았다.

〈표 5-1〉 양질의 노동 지표를 활용한 선행연구와 여성어업인 정책수요 비교

번호	ILO 양질의 노동 지표	최옥금 (2006)	문순영 (2008)	최희경 (2009)	손지아·박순미 (2011)	김보람·문은하·이승윤 (2012)	박광옥 (2016)	홍혜수 외 (2021)
1	고용기회							
2	적합하지 않은 노동			자발적 일자리 선택	일의 적합도			
3	적절한 소득과 생산적 노동	적절한 임금	적절한 임금	적절한 임금	적절한 임금	적절한 소득	적절한 소득	
4	적정 노동시간		적절한 노동시간	적정 노동시간	적정 노동시간	적절한 노동시간	적절한 근로시간	
5	고용 안정성	고용 안정성	고용 안정성	고용 안정성	고용 안정성	고용보장	고용 안정성	
6	**일·가정 양립**			일·가족 생활 양립	일·가족 생활 양립	양성평등		가사노동
7	**고용에서의 공정한 대우**		직업훈련	고용평등	고용평등		공정한 대우	성불평등 인식, 위상 제고
8	**안전한 작업환경**		작업환경 안전성	안전한 작업환경	안전한 작업환경			작업 안전, 직업병, 고강도노동
9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회보장	
10	작업장 및 사회적 수준의 노사협의			노사합의	노조유무, 노조가입 여부 등			
11	**사회경제적 맥락**							인프라 부족, 복지제도
12	연구자 추가 지표			전문가교육, 주관적만족	고용서비스 경험여부, 편의시설 설치 여부			

주: 1) 선행연구 지표는 ILO 양질의 노동 개념을 바탕으로 특정 직업의 노동의 질 측정을 위해 사용한 세부지표임
2) 위 표에서 본 연구 항목은 ILO 양질의 노동 지표와 이에 부합하는 여성어업인들의 정책수요를 제시함
자료: 박광옥(2016), p.132에서 수정·인용

첫째, 여성어업인은 작업 안전과 고질적 직업병, 여성이 전담하는 어획 후 처리의 고강도 노동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업무상 부상 비율, 작업환경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는 '안전한 작업환경' 지표에 부합한다. 둘째, 과중한 가사노동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일·가정 양립' 지표에 부합한다. 셋째, 성불평등 인식개선과 여성어업인 기여, 위상에 대한 인식 제고 수요는 성별에 따른 고용불평등을 다루는 '고용에서의 공정한 대우'에 부합한다. 이외 문화생활 및 의료서비스 인프라 부족, 복지제도는 '양질의 노동환경 구축을 위한 사회·경제적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상호유기적 관계를 형성함에 따라 각 세부 정책들의 통합적 이행과 지속성·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일례로,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의 일방적 책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여성어업인의 어업 이탈과 일과 삶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과중한 노동부담과 여성어업인에 대한 몰이해 속에서 형성된 작업환경은 재해 노출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남성 중심의 노동구조를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 즉, 여성어업인 친화형 어업기반 구축은 일·가정 양립 정책,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정책 등 개별 정책들의 분절적 시행이 아닌 정책 간 선순환 구조 아래 달성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어업인 정책 거버넌스라는 큰 틀 아래 노동환경 개선과 지위향상, 일과 삶의 균형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제2절 여성어업인 정책 추진전략

1. 여성어업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 전략

1)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자율적 의사결정 시스템으로,[241]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국제적 여성정책이 점진적 발전[242]을 보인 것과 달리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거버넌스 구축 아래 실천적·자율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1990년대 여성정책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오늘날 양성평등정책 시행까지 이르렀다. 일례로,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 여성발전기본법 등의 법·제도 개선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정책 전담기구 설치 등 다양한 의제가 표면화되었다.[243] 나아가 2000년대 중반 성 주류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성불평등과 성차별적 관계 해소를 위한 젠더 거버넌스 개념[244]이 제시되었으며,[245] 성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교육과 같은 성평등정책 과제의 실효성 논의가 시작되었다.[246]

나아가 김은경(2008)은 여성 정책사업 발굴에 있어 민간 영역의 중요성과

241) 김은경(2008), p. 68.
242) 국제 여성정책은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에 집중하였던 70년대 이후, 80년대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관계·지위에 따른 역할 차이 극복, 90년대 여성의 성역할 고도화에만 편승하는 개념을 지양하면서 남성과의 성(Gender) 경계를 완화하는 평등 추구의 방향으로 점진적 변화를 겪음
(자료: 이수연·장혜경·김경희(2012), pp. 22~43)
243) 위의 책, p. 71.
244) 젠더 거버넌스란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다양한 집단 간 네트워크를 통한 협치 체계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함
(자료: 이수연·장혜경·김경희(2012), pp. 35~36; 김은경·나성은(2017), p. 151)
245) 안경주(2013), p. 156.
246) 위의 책, p. 160

거버넌스 기능의 확장성을 주장하였다. 여성정책은 젠더 거버넌스와 정책 네트워크[247]간 상호 보완적 기능 아래 다양한 참여자를 수용해 왔다.[248] 즉, 여성정책 네트워크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 유기적 관계의 당위성을 담보하고, 주요 행위자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인식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5-2〉 여성정책 관련 사례에서 살펴보는 거버넌스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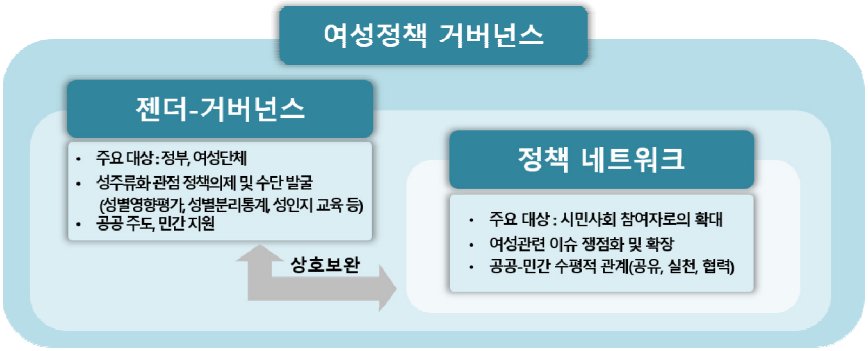
연구자	내용
김영미 (2002)	• 거버넌스 유형은 시장주도형, 정부주도형, 시민사회 주도형으로 유형화 가능[주] – 시장주도형 : 경제적 효율성 및 시장보호 극대화, 정부 역할 축소 – 정부주도형 :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효과적 관리체계 구축 – 시민사회 주도형 : 능동적 시민을 중심으로 사회 내 소통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우리나라 여성정책 거버넌스는 국가 주도로 여성문제를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여성단체 활동 또한 활발한 형태
원숙연·박진경 (2006)	•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을 사례로 거버넌스 관점에서 주요 행위자간 역할 및 상호작용을 분석 – 동법 제정에 있어 정치적 환경요소(총선, 여성의원 진출 등)와 제도적 인프라 구축(여성부 신설, 여성 법무부·여성부 장관 등용 등) 영향이 유효 – 입법 초기·중기·후기에서 거버넌스 관계 구조에 차이가 발생, 동법 제정에 있어 정보흐름 원활성, 연계 활동, 주도성 측면에서 여성단체 영향력이 지배적 – 여성 국회의원 활동 등 입법과정에서 의사결정 직위 여성 참여를 통해 여성 세력화(empowerment)가 거버넌스 가능성 제고의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
김은경 (2008)	• 여성단체와 여성부의 공동협력사업 세부 내용, 재정지원·규모 등의 요소를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 – 상호세력화 : 정부 부처는 재정적 측면, 사업내용은 여성단체가 주도하는 형태로 상호작용 – 주요 정부 부처에 여성정책 전문인력 부재, 여성단체 재정 부족의 상호 한계를 극복
김경희·나성은 (2017)	• 성 주류화 개념이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젠더 거버넌스를 연구 – 여성단체의 적극적 참여하에 네트워크형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 여성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위주체자에 역할 부여(정책환류, 컨설팅, 모니터링 등) – 우리나라 젠더 거버넌스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성화, 법·제도 개선에 여성단체 참여도 확대

주: 국회의원, 정부 관료, 여성단체, 학자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함(자료: 김은경·나성은(2017), p. 164)
자료: 저자 작성

247) 국회의원, 정부 관료, 여성단체, 학자 등이 네트워트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함(자료: 김은경·나성은(2017), p. 164)
248) 김재인·임미영(2004), pp. 372~375.

종합하자면 여성정책 거버넌스는 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세부 정책의 지속성, 실천 가능성,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젠더 거버넌스와 정책 네트워크 간 상호보완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에 여성어업인 정책 또한 거버넌스라는 큰 틀 안에서 수립·시행될 필요가 있다.

〈그림 5-1〉 여성정책 거버넌스 구성 체계



자료: 저자 작성

2) 여성어업인 정책 거버넌스의 특수성

여성정책의 최종 목표인 성평등은 거버넌스 기반 정책 과정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논제들을 정책화할 수 있었다. 이에 여성어업인 정책 또한 수산업 내 성평등 실현 수단으로써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다만, 여성어업인은 어업에서 나아가 수산업, 어촌지역을 구성하는 일원으로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이 매우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여성어업인 정책 거버넌스는 젠더 개념에만 국한할 수 없다. 따라서 산업적 측면에서 수산업 정책의 특수성과 여성어업인 간의 관계성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수산업은 지역·노동집약형 특성 아래 생산활동(어획)을 중심으로 산업적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산업 환경의 변화로 생산물 가공, 판매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산업 정책 또한 1990년대 어업생산력 극대화와 수산자원의 활용·관리에서 2000년대 어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산업 정책은 지역단위 공동체 활성화, 인력양성, 복지서비스에 대한 기조를 갖게 되었다. 즉, 어촌을 중심으로 한 정책수요가 증가하면서, 정책대상으로 어업인 노동환경과 정주여건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되었다.

오늘날 어촌의 기능은 수산물 생산에 의존하는 전통적 어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주변 지역사회와 발전·상생이라는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어촌 구성원의 역할 또한 다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성어업인은 노동력 공급과 어촌 인구구조 변화 국면에서 중요 주체로 부상하였으며, 어촌의 정주 여건 유지 활동에서도 그 역할과 범주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어촌을 중심으로 여성의 역할과 기여를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접근이다.

심용보·이호창(2010)은 지역단위 거버넌스를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자치제, 중앙정부 등이 민관협력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 공동 과제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 정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역정책 네트워크 구축은 여성어업인이 직면한 애로사항 해소를 넘어 동기부여·유지·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단위 참여, 역량 증진과 사회적 활동 활성화를 유도해낼 수 있다는 것으로 강조된다.[249] 나아가 여성어업인의 지역정책 참여 경로를 확장하여, 범정부적 거버넌스와의 실효성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여성어업인 정책 거버넌스는 여성어업인과 상호작용하는 다

249) 김상민·이소영(2018), pp. 5~6.

양한 사람들이 성평등 실현과 어업·어촌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보다 실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정부 또한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17~'21)'을 통해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3대 정책과제를 수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어업인 포럼 개최를 제외한 다수의 과제가 이행되지 못하고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기존 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 특성화 등 여성어업인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5-2〉 여성어업인 정책 기반 추진을 위한 기존 정책과제

과제	추진 일정					
	'16	'17	'18	'19	'20	'21
1. 여성어업인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1-1. 관련 법·제도 정비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관련법 개정	■	■				
- 성 주류화 정책 내실화	■	■	■	■	■	■
1-2. 거버넌스 확립						
- 여성어업인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	■	■
- 관계부처간 협업체계 구축	■	■				
1-3. 정책확산을 위한 연구 및 홍보 강화						
- 정책조사연구 확대	■	■				
- 정책홍보 강화(정책포털 개설 등)		■	■			

주: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17년부터 '21년까지 시행이 계획되었으나, 계획서에는 과제별 추진 일정을 '16년부터 밝힘에 따라 함께 표기함
자료: 해양수산부(2017), p. 30

여성어업인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를 고려하여 성(gender) 이슈 및 함의에 대한 재조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도적 거버넌스를 정립하여 어촌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여성어업인의 지위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수요를 발굴한다면 여성어업인 정책을 내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여성어업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1) 성평등 내실화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통해 성평등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가정,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 의식 제고를 강조하였다. 또한, 국내 여성정책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주목적으로 하였다.

〈표 5-3〉 「양성평등기본법」 제정을 통한 양성평등정책 강화 추진

구분	내용
여성발전기본법	• 여성정책조정회의 • 여성정책책임관(중앙) • 여성정책수요조사 • 여성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
↓	
양성평등기본법	•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안건 다양화, 정책 조정역량 강화) • 양성평등정책 책임관 및 전담전문인력(중앙, 시·도) 지정·운영 • 양성평등실태조사(5년 주기, 정책 수요 등 파악)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 • (신설)국가·지역 성평등지수 측정·공표 • (신설)여성친화도시 지정[250]

자료: 저자 작성

여성어업인 정책 또한 범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보다 구체화하여 시행해야 한다.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경우, 2016년 제4차 기본계획 수립에 이르러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전략을 수립하고, 2021년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화하였다. 반면, ‘제4차 여성

250) 여성친화도시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연계 강화, 시민(여성)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어업인 육성 기본계획('17~'21)'은 '성 주류화 정책 내실화'를 통한 성인지 교육 확산, 성별영향평가 질적 제고 추진 등을 계획하였지만 구체적 시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향후 수립 예정인 '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비롯한 여성어업인 정책의 성평등 강화를 위해서는 다각도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성인지 교육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어가 내 성역할 고정관념, 가사와 노동환경을 고려하여 어가 전 구성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여성어업인의 사회활동 제약요인으로 지목된 노동 외 시간 부족, 가사노동 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는 성인지 교육을 통한 어촌사회 내부 가부장적 의식 해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커리큘럼 체계화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 전문인력 양성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어업인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적·조직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부재는 지속되어 왔다. 또한, 해양수산부 내 성 주류화 및 성인지적 정책 수립·평가 등을 시행하는 양성평등 부문 담당 조직은 전무하다.[251] 이에 양성평등정책 담당 전문 조직 신설 및 인력 배치가 필요하며, 지자체를 비롯하여 여성단체와 같은 민간부문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성평등정책 내실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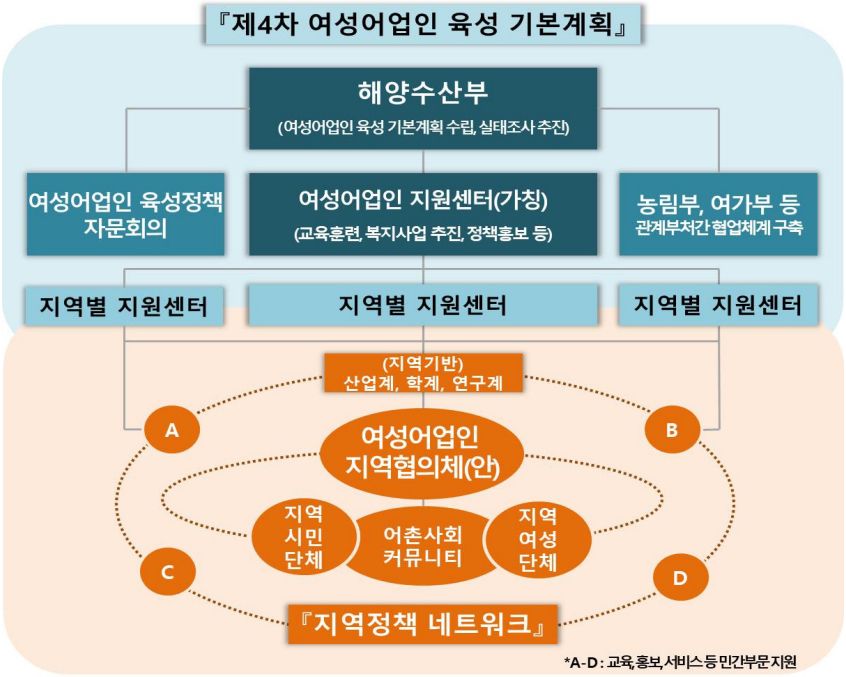
(2) 지역단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정책 네트워크 확립

박성재 외(2019)는 지역별 차별화를 위한 지역 특화 발전계획 수립 요구가 증대된다고 밝혔다.[252] 기존 여성어업인 정책 또한 지역 특화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에서는 지역별 여성어

251) 2020년 기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는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검찰청 등 8개임(자료: 연합뉴스(2020. 5. 12))
252) 박성재 외(2019), pp. 1~15.

업인 지원센터와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이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그림 5-3〉과 같이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지역별 지원센터 건립에서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지역정책 네트워크로의 확장을 제시한다.

〈그림 5-3〉 여성어업인 정책 지역단위 네트워크 확장(안)



자료: 해양수산부(2017), p. 15 수정·인용

지역정책 네트워크의 구축은 지역에 대한 이해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토착기업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고 환류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로 볼 수 있다. 여성어업인 정책 거버넌스 또한 수산업의 지역 집적형 특성을 고려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주

지역단위 조직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여성어업인의 정주 지역단위별 조직화와 연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여성친화형 어촌 환경 조성, 여성어업인 주도 지역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세부 사업으로 지역별 여성어업인 종사 어업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여성친화형 기반시설 확대와 주요 거점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와 같은 지역 특화사업 운용을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범정부적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이슈의 상향식 발굴을 도모하고, 현행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운영되는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지역별 형평성 문제에 대한 접근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여성어업인 정책연구 강화

기존 제4차 기본계획은 정책 조사연구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맞춤형 정책 발굴, 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립하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정책 현안 발굴을 위해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 제8조에서도 명시된 기초조사의 이행이 선결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어업인 현황조사 정례화를 통해 국가승인통계를 구축하고, 정책 수혜대상과 수요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초조사를 통해 수산업 내 여성 종사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요와 수혜자 환류 또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연구의 확대는 전문가 양성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민간 부문 연구조직과 수평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연구 인프라가 운영되어야 한다. 정책연구 결과물은 후술할 여성어업인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개정보로 개방하여, 여성어업인에 대한 범국민적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현안 발굴과 연구결과 정책화의 선순환 구조 정착은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여성어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추진전략

1) 여성어업인 지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지위는 개념 그 자체로 복합적 의미를 내포하며, 근본적인 여성어업인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다각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여성어업인 지위에 대한 개념적 고찰이 선행된 사례가 없는바, 지위의 관점에서 이들 특성을 검토하였다. 오늘날 지위(Status)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정립된 개념으로서 법·사회·경제·성별 등 다양한 범주에서 활용되고 있다. 지위에 대한 개념은 Weber의 계층이론에서부터 비롯된다. Weber는 지위를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주어지는 존경으로 규정하고, 위세(Prestige)의 차원에서 바라보았다. 이 외에도 많은 학자가 지위의 개념을 정립하였는데, Linton(1936)은 지위를 사회적 위치(Position)로 정의하고 지위에 따른 권한과 의무의 이행을 역할(Role)로 규정하였다. Haug(1977)은 지위를 위계에 의한 서열로 보았으며, Powers(1982)는 교육 수준·수입 등으로 구성된 객관화된 조건으로 규정하였다.

〈표 5-4〉 연구자별 지위(Status)에 대한 정의와 개념

연구자	지위에 대한 정의 및 개념
Weber	• 지위는 사회적구성원들에 의해 주어지는 존경의 위세(Prestige)로, 계급은 개인의 경제적 자원의 보유 수준으로 규정
Linton(1936)	• 지위는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회적 위치(Position)의 개념으로, 지위를 구성하는 권한과 의무의 이행을 역할로 규정
Prichard and Buxton(1973)	• 서열이 아닌 사회체계 내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위치
Haug(1977)	• 단순히 명목상의 범주(nominal categories)가 아닌 순차적 등급(ordinal rank)에 따라 위계적으로 배열된 것, 지위의 서열화
Powers(1982)	• 지위는 교육·수입 등으로 구성된 직업의 객관적 조건, 위세는 영향력·직무 안전성·회기성 등 권력관계에 기반

자료: Wasserman and Faust(1994), p. 348, 재인용: Linton(1936), pp. 113-114; 윤홍준·김월화(2002); p. 41, 재인용: Prichard and Buxton(1973), p. 124; Haug(1977), p. 51; Powers(1982), p. 13

과거 학자들이 정립한 개념과 같이 오늘날 지위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위치', '권한·의무에서 비롯된 역할', '권력·위계에 의한 서열'의 의미로 통용됨과 동시에, 현 시대에서는 '법률로서 인정하는 권리가 부여되는 위치', 인권보장·권리보호의 영역에서는 '불평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표 5-5〉 연구자별 여성의 지위에 대한 정의와 개념

연구자	여성의 지위에 대한 정의 및 개념
Sugarman and Straus(1988)	• 사회적 지위향상 여부를 경제, 정치, 법률 평등에 관한 지표로서 접근 – 경제 : 경제활동참가율, 관리직, 전문기술직, 중위소득 등 – 정치 : 의회 의원, 주 상원의원, 하원의원, 판사, 시장 등 – 법률 : 공정고용법, 동일임금에 대한 법, 성차별 금지법 등
Bradley and Khor(1993)	•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보다는 차별화와 가치평가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이러한 과정이 제도화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차별화됨 • 여성의 지위를 경제·정치·사회적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접근 – 경제 : 여성의 행정적 지위, 빈곤율, 노동권에 대한 법정 구성, 가사분담, 가정 내 경제적 자원, 경제적 분배 – 정치 :여성의 조직화, 고위공직자 수, 모권에 대한 부권의 우위성, 가정 내 의사결정 발언권, 성적 자율, 가정 폭력 – 사회 : 고등교육, 재생산권, 교육투자, 성역할 등
이금순(1994)	•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참여 그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 Weber의 계층적 지배(Hierarchical dominance)가 전제가 아닌, 여성의 자아결정(Self-determination), 자율(Autonomy),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을 강조하여 잠재력과 목적을 실현하는 능력
Tarique and Sultan(2008)	• 여성에 대한 폭력, 경제, 교육, 정치적 차원으로 구분 • 여성의 존엄성 권리, 인권 향상의 차원에서 여성의 지위를 설명

자료: 이금순(1994), p. 96; Bradely and Khor(1993), pp. 347-378; Sugarman and Straus(1988), pp. 229-290; Tarique and Sultan(2008), pp.1112-1113

여성의 지위는 성별을 기준으로 분화된 지위의 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지위는 역할에 대한 신념, 규범, 가치로서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지니며, 남녀 간 구조적 불평등을 좁혀 가는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다.[253]

Sugarman and Straus(1988), Bradely and Khor(1993)를 비롯한 많은 학자는 여성 지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였는데, 종합해 보면 여성의 지위는 사회체계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남성과의 구조적인 차이로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한을 가지기 위해 제시하는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어업인의 지위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지위, 그리고 여성 지위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여성어업인의 지위는 어업활동에서 고착화된 성별 간 역할 차이, 이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불평등, 권리·권한의 격차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주목할 점은, 어업 환경과 직업적 특성상 여성이 적절한 지위를 확립하기에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업이 조난과 위험을 수반하며 완력을 기반으로 한 강도 높은 노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의 일에 대한 참여와 접근성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이는 여성어업인이 임금·가사·권리·권한 등 여러 영역에서의 직면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내재된 차별이 현실에 고착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여성어업인의 지위향상 정책은 대상자들의 정책 수요뿐만 아니라, 이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2) 여성어업인 지위향상에 관한 주요정책

지위의 이론적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성평등 환경을 구축하는 모든 정책은 여성 지위향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추진되는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위치, 대표성·의사결정, 역량 강화 등으로, 지위를 통해 얻는 권한·권리를 증진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253) 김영란(2010), p. 2.

국내외적으로 여성어업인 지위향상 정책은 서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 유럽의회에서는 여성어업인에 대한 불평등한 보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식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조직화된 단체의 필요성, 불이익을 시정하고 여성어업인 노동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254] 또한, UN 여성기구, FAO, EU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수산분야에서의 성차별 철폐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해 지위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법률로서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결정 과정 참여 확대', '직업의식 확대', '양성평등 문화정착' 등이 있다.

〈표 5-6〉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0조 여성농어업인 지위 향상에 관한 조항

법률 내용
제10조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농어업인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 진작 3.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교양, 건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경영이나 정책 결정 또는 각종 교육 기회의 제공·지원 등을 할 때 여성농어업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자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발췌

정부는 동법에 근거하여 여성어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해 왔다. 3대 전략 및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사실상 모든 정책이 지위향상과 관련이 있지만, 특히 두 번째 전략인 '여성어업인인의 전문성 강화 지원'을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정책으로 볼 수 있다.

254) European Parliament(2013), pp. 9-10.

이들 과제는 여성어업인의 대표성을 향상하고, 발언권 강화 및 보상체계 개선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특히, 어업에서 나타난 구조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여성 친화형 작업기반 구축',[255] '단체활동 확대',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은 여성의 어업활동 참여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4〉 여성의 수산업 참여 관련 기존 정책과제

추진 과제		추진 일정					
		'16	'17	'18	'19	'20	'21
2.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2-1. 여성어업인 단체활동 강화							
- 여성어업인 단체 설립	전국단위 단체 설립	■	■				
	업종별 단체 설립		■	■	■		
-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			■	■			
-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내실화		■	■				
2-2. 경제권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 사회보장 보험 가입 확대			■	■			
- 공동소유제도 도입 추진			■				
- 여성어업인 후계자 지원 강화	자금지원 확대			■	■		
	수산계 학교 지원		■	■	■	■	■
2-3.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 맞춤형 교육훈련 및 교육 후 관리 추진				■	■	■	■
- 지역별 거점기관을 통한 특화교육 추진	기관별 협의, 교육과정 개발		■			■	
	지역별 단계적 추진			■	■		■
2-4. 여성친화형 작업기반 구축							
- 여성친화형 기자재 개발			■	■		■	■
- 여성친화형 기자재 보급사업					■	■	
- 여성친화형 작업장 전환사업			■		■		■

주: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17년부터 '21년까지 시행이 계획되었으나, 계획서에는 과제별 추진 일정을 '16년부터 밝힘에 따라 함께 표기함
자료: 해양수산부(2017), p. 30

255) 여성어업인 정책은 상호 유기적 관계를 이루며, 특히 여성친화형 작업기반 구축은 노동환경 개선과 밀접하여 노동환경 개선 정책방안에서 후술함

3) 여성어업인 지위향상 정책방안

본 연구에서는 여성어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여성어업인 지위의 특성과 현행 정책을 검토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였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5-7〉과 같다.

〈표 5-7〉 여성어업인 지위에 관한 주요 검토 사안 및 정책방향

검토사항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주요 실태	• 남성 경영주 비율이 높고, 무급형태의 가족종사자로 포함된 여성비율이 높음 •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비중이 높고, 어획 후 노동도 여성의 비율이 높음 • 반면 어업노동 참여는 남성 비중이 높음, 승선활동 시 여성은 본인만 승선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여성은 수협, 어촌계 등 단체 가입 비중이 남성 대비 낮고, 참여 의향도 낮음 **→ 경영주, 노동형태, 단체활동 등 어려 영역에서 여성어업인이 인식하는 지위는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지위향상 관련 현행 정책의 실효성, 홍보 등 검토 필요**
여성어업인 지위의 개념과 특성	• 여성어업인 지위는 어업활동으로부터 고착화된 성격차와 이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불평등, 권리, 권한이 특징 • 어업은 강도 높은 노동으로, 여성의 참여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 여성어업인은 임금·가사·권리·권한 등 여러 영역에서의 구조적 불평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차별이 현실에 고착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
여성어업인 지위향상 관련 주요 정책	• 대표성 향상, 발언권 강화, 보상체계 개선 등이 중요하며, 여성 친화형 작업기반 구축, 단체활동 확대, 역량제고 등 구조적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필요 **→ 현행 중요정책의 홍보 및 고도화 필요** **→ 여성의 어업활동의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정책의 강화 필요**
여성어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 어업노동의 구조적 성 불평등 개선 및 현행 정책의 실효성 개선을 통한 여성어업인 지위향상 – • **구조적 불평등 개선** : 여성의 어업활동 제약요인 개선, 단체활동 강화, 남성 어업인 인식제고 등 • **대표성 향상 및 역량강화** : 교육프로그램 확대, 여성어업인 활동범위 확대, 신규인력 유입 등 • **현행 정책의 실효성 향상** : 단체 활동 및 경제적 지원 정책 강화, 중요정책 홍보 및 고도화 등	

자료: 저자 작성

주요 시사점들을 종합해 보면, 여성어업인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첫째, 어업노동의 구조적 불평등 개선, 둘째, 대표성 향상 및 역량강화, 셋째, 현행정책의 실효성 향상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어업인의 활동 참여에 대한 제약요인 검토, 여성의 대표성 및 발언권 확보, 전문성 및 역량강화 정책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지향점이 궁극적으로 지위향상에 부합하는바, 기존 중요정책의 고도화 및 실효성 개선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1) 여성어업인 단체 역할·기능 확대 및 활동지원 강화

여성어업인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은 공통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화된 역량으로부터 기인한다.[256]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를 비롯한 여성어업인 단체 역량강화 교육, 「수산업협동조합법」 여성 임원 의무 선출 조항 개정을 위한 입법 대응, 수산관련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점검 및 정부행사 초청 협의 등 여성어업인 단체활동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57] 그럼에도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전국 수협의 여성 비상임이사는 7.9%로, 여성 조합원이 34%인데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며, 2019년 말 전국 어촌계장 2,309명 중 여성의 비율은 49명(2.1%)으로, 여성어업인의 지위가 향상되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258] 이는 여성어업인의 조직적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 동기 부족, 단체활동 홍보 부재, 운영체계 전문성 부족, 배우자 의사 등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어업인 단체의 역할·기능 확대 및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들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여성어업인의 의사를

256) 김영란 외(2016), p. 132.
257) 해양수산부(2020), p. 5.
258) 어민신문(2021. 7. 2)

대변하는 역할에서 어촌환경 정비활동, 식품안전 강화활동과 같은 공익적 기능 수행까지 확대하여, 실질적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여성어업인 단체의 지속적인 활동 체계 구축,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여성어업인 교육 프로그램에 배우자 등 남성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양성 간 이해도를 넓히고, 지역별·산업별 여성기관 등 다양한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를 통해 의사 교류의 장으로써 여성어업인 단체의 기능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2) 여성어업인 경제적 지원정책에 관한 홍보·정보제공 강화

경제적 지위 강화는 여성들이 어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재생산 가능 소득을 확보하는 것으로, 1차 산업 측면에서 투입 노동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체계 구축 및 불평등 개선을 통해 여성이 생산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는 개별경제주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259] 더불어, 경제적 지위는 여성의 비가시적 노동에 대한 인정,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불평등 해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여성어업인 경제적 지위 강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 '여성어업인 출산급여제', '사회보장 보험 가입 확대', '여성어업인 후계자 육성' 등의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260] 특히, 공동경영주 제도는 기존 제도 아래 부부가 공동으로 어업에 종사할 경우, 남편이 경영주가 되면 아내는 어업에 종사하면서도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었는데, 직업적 지위를 부부공동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경제적 지위 강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공동경영주로 인정받게 되면 여성어업인은 수산 직불금, 수산업 관련 융자, 보조금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어업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 기회가 주어진다.[261]

259) 정은미(2015), p. 13.
260) 해양수산부(2020), p. 6.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지원 강화 정책에 대한 홍보는 사실상 미미하다. 정부는 어업 공동경영주 제도를 도입한 이후, 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안내 공문 발송, 어업인 행사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여성 어업인에게 이러한 정보가 적절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공동경영주 등록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정책이 여성어업인에게 어떠한 혜택을 제공하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 자료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을 야기, 공동경영주 등록을 유인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결국 이러한 정보전달 체계 개선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화된 정보제공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다양한 경제적 지원 정책은 정책 수혜대상이 정책을 인지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본인이 확인하는 개별적 확인 절차가 수반되므로, 첫째, 정책의 인지도, 둘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정보를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일률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과 리플릿, 포스터, 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사업이 필요하다.

(3) 여성어업인 교육과 신규인력 양성을 연계한 교류·협력네트워크 구축

여성어업인 지위는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통해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어업인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을 통해 여성어업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여성어업인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262]

261)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9. 2. 19)
262) 해양수산부(2020), p. 6.

한편, 현행 여성어업인 교육제도는 역량강화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어업인 참여형 인력양성 교육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을 통해 여성어입인의 역량강화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향상된 여성어업인의 역량을 어업활동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력양성으로 역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이 여성의 어업활동 참여 동기를 확대하여 새로운 인력양성 계기를 마련하고, 다시 여성어업인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로 이어지는 인력 유입과 교육 활성화를 아우르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개념은 현행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다. 현행 '여성어업인 리더 역량 교육'과 '신규 인력 발굴 및 육성기반 마련' 정책을 융합하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여성어업인과 어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신규인력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성어업인의 전문적인 역량을 인력양성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여성어업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전략

1) 노동환경에서 성별 특수성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건강정책 또한 남성 중심적 접근에서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는 방안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263]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차이는 동일한 작업환경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여성 노동안전 규정은 대부분 임신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일례로, 근로기준법은 임신·출산 관련 모성보호에만 집중하고, 특정 산업·직종의 제한, 근로시

263) 정경윤(2019), p. 18, 재인용: 김영택 외(2018), p. 13.

간 제한, 휴가제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264]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산업재해가 일반적으로 제조업, 건설업에 종사하는 남성에게 발생한다는 사회적 통념으로 여성의 산업재해가 상대적으로 가볍게 취급됨을 지적하였다.[265] 보다 실효성 있는 노동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성인지적 접근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ILO는 작업환경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노출되는 위험이 상이함에 따라 성별 차이를 고려한 작업 여건 및 환경 개선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5-8〉 작업안전건강의 성 주류화를 위한 10가지 지침

법률 내용
1. 성 주류화 접근법을 채택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률을 검토하고 발전
2.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 관행에서의 성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개발
3. 위험 관리에 있어 성별 차이에 대한 고려 보장
4. 산업안전보건 연구의 성별 차이 고려
5. 성인지통계를 기반으로 한 성인지 산업안전보건 지표 개발
6. 모든 노동자를 위한 직업 보건 서비스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촉진
7. 산업안전보건 대책에서 건강 증진 및 의사결정 시 남녀 노동자와 대표의 참여 보장
8. 성인지 산업안전보건 정보 및 교육, 훈련 개발
9. 남녀 모두를 위한 작업 장비, 도구, 개인 보호 장비 설계
10. 노동시간 배열과 일과 생활의 균형

자료: 정경윤(2019), p. 22, 재인용 ILO(2013)

정부 또한 전술한 제4차 기본계획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 전략을 통해 '여성친화형 작업기반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여성어업인 안전보험 보장을 제외한 뚜렷한 정책 추진이 미흡하였다.[266]

264) 정경윤(2019), p. 18.
265) 한겨레(2021. 7. 31)
266) 부록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세부예산 참고

2)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노동집약적이고 완력 사용이 많은 어업의 특성으로 상당수 여성어업인이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는데, '2019년 어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5.9%로 남성(4.9%)보다 높았다.[267]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제기되어 업종별 노동 특성을 고려한 차별성 있는 전략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5-9〉 여성어업인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주요 검토사안 및 정책방향

검토사항	주요내용
주요 실태	• 여성들은 어업활동 외에도 생산물 후처리 작업을 전담하는데, 수작업이 주를 이뤄 노동 부담이 과도 •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맨손어업, 나잠어업의 특성으로 기계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워 후처리 작업시설 여건 개선부터 순차적 접근이 필요 • 작업기기에 대한 안전성·실효성 확보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맨손어업에 활용되는 사륜오토바이 안전성 확보가 필요 • 심폐소생술 등 필수적인 안전교육은 모든 어업인을 대상으로 시행 필요
여성어업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 성인지적 관점에서 어업노동 안전성 제고를 통한 여성어업인 노동환경 개선 –	
• **작업 안전 강화** : 여성 집중도가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작업 안전성 확보, 시설 현대화	
• **여성친화형 작업기반 구축** : 자동화, 기계화 등 개발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직업성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지원 강화	

자료: 저자 작성

(1) 여성어업인 작업 안전 강화

기존의 작업안전건강에 관한 접근은 남성 중심 관점에서 선행되었으며, 어업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여성어업인은 여건 개선을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꼽았음에도 여성이 수행하는 작업은 위험성이 적다는 사회적 통념[268]으로 이들의

267) 뉴스1(2021. 6. 30)
268) 정경윤(2019), p. 18.

작업 안전 강화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일례로 맨손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이 갯벌 이동을 위해 이용하는 사륜 오토바이는 안전장치 미비에 따른 사고 발생이 잦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지 못하였다.[269] 또한,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부적절한 자세가 요구되는 후처리 작업은 여성들의 근골격계 질환 노출을 증가시키지만, 뚜렷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어업인 작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교육 실시 강화를 제시한다. 첫째, 여성어업인이 직면한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노동강도 저감과 직업성 질병 발병률 감소를 도모하는 것이다. 면담조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어항 내 열악한 후처리 시설, 그물 손질 작업시설 부족은 여성어업인의 노동강도를 증가시키고, 근골격계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작업환경 개선은 어항 인프라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어업활동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어항 구축을 위해 약 2,639억 원의 어항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강원, 전남, 경남 등의 노후 어항 시설 정비와 시설 확충을 진행하고자 한다.[270] 동 계획 시행의 일환으로 여성어업인의 작업환경 개선 요구가 반영된다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작업 안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안전에 관한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외에도 기존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사륜오토바이 면허취득 및 안전운항 교육 등을 확대 편성한다면, 보다 빠른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269) 중앙일보(2019. 3. 6)
270)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1. 9. 1)

(2) 여성친화형 작업기반 구축

앞서 지위향상 전략을 검토함에 있어, 위험에 취약하고 완력을 기반으로 한 어업 특성으로 인해 여성어업인 의사와 무관하게 참여가 제약될 수 있고, 산업에 내재된 불평등 또한 잔존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노동환경은 발언권·의사결정 권한·경제권 등 여러 영역에서 여성어업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친화형 어업활동 기반구축은 여성어업인 노동환경 개선을 넘어 지위 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과거, 정부는 여성친화형 기자재 개발 및 보급, 여성친화형 작업장 전환 등 여성어업인 활동에 적합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들을 계획하였다.[271] 이러한 정책들은 여성의 어업활동 편의성,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4차 기본계획은 주로 수산장비 임대사업과 안전보험 보장강화에 그쳐 보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여성친화형 작업기반 구축 정책은 여성어업인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완력, 위험성 등 어업에 내재된 제약요인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다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성어업인만을 고려한 정책 수립은 현실적 한계를 갖는다. 일례로, 어선 자동화 및 기계화는 여성의 주도적 참여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수산업 전반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그 목적을 여성어업인에게 국한하거나, 여성어업인만을 고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어선 자동화 및 기계화 사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수요 발굴 및 기술개발, 실용화 단계에 걸쳐 여성어업인에 대한 고려와 이들의 의견을 반영·

271) 해양수산부(2017), p. 24.

수용하고, 보급단계에서는 여성 활용 우대 등과 같이 여성을 고려한 기술 개발과 제도적 관점의 검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친화형 기자재 개발은 기 시행된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엄진영·최용호·박지연(2018)은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업은 세대별 잠재 수요층을 구분하여 접근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동 연구에 따르면, 청년층(26~45세)은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기존 농기계를 축소한 것으로 인식하며, 충분한 시간과 교육이 주어지고 필요 시 임대가 가능하다면 성별에 따른 기계 구분 없이 농기계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년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는 보다 내실 있는 농기계 교육 기회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중년층(46~65세)은 노동부담 경감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사용 수요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계는 남성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실생활에서도 남성 배우자가 주로 농기계를 다루기 때문이다. 이에 동 연구에서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용을 통한 중년여성농업인 노동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인식개선과 적절한 교육 제공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고령층(66세 이상)은 기계 사용이 크지 않고 농업노동을 줄여가는 세대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업보다 농작업 대행 정책 확대가 적절하다 밝혔다. 이러한 선행사례를 참고하여 어업에 있어 여성친화형 작업기반 구축 정책은 수혜자에 대한 세대별 수요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3) 직업성 질병에 대한 지원 확대

실태조사를 통해 남녀 모두 어업활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의 의료서비스 정책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성 질병에 대한 접근은 재해가 발생하기 전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접근과 재해 발생한 후 적절

한 치료를 위한 사후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적 접근법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부인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특화 건강검진 제도 확충을 들 수 있다. 2019년 시행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는 낙도·낙후지역 고령 어업인 500명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수혜대상이 제한적이고,[272] 조건불리 지역에 대한 지원 성격이 강했다. 해양수산부는 여성어업인 직업성 질병에 대한 지원 확대 차원에서 2022년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높은 맨손어업, 나잠어업 종사 여성어업인 약 1,500명을 대상으로 특화 건강검진 제도의 신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273] 향후에는 보다 많은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사후적 접근으로 어업인안전보험에 대한 인식 전환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는 현행 '어업인 안전보험'은 어업작업 관련 사고로 발생된 질병[274]을 보장하고 있으며, 간병, 직업재활, 행방불명 급여 등의 광범위한 범위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 보험 가입률은 52% 수준으로, 이는 연안 영세어업인의 보험료 부담과 낮은 재해위험 인식에 기인[275]함에 따라 향후에는 지역단위 네트워크와 통합적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72)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9. 5. 17)
273)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1. 9. 1)
274)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파상풍, 콜레라, 관절연골 장애, 근육장애, 과다한 자연열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임
275)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검색일: 2021. 9. 6)

4. 여성어업인의 일과 삶 균형을 위한 추진전략

1)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논의 동향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여성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며, 여성노동자의 근무환경과 복지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많은 여성어업인은 도시 여성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복지수준과 낮은 위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한계를 보인다.

2018년 저녁 있는 삶을 위해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작으로 '워라밸(Work Life Balance, 일-생활 균형)'이라는 단어가 확산되었으며, 2019년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76]에서 정부의 주요 일자리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일-생활 균형'을 꼽혔다. 또한, 기피현상이 큰 중소기업 채용에서도 '연봉이 적어도 워라밸이 좋으면 취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구직자들이 늘고 있다.[277] 정부에서도 워라밸 확산을 위해 '일·생활 균형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모범적 기업에는 재정지원, 근로감독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여성어업인은 주로 어가 내 무급노동과 가사노동에 종사하며,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존 일과 생활 균형 정책의 수혜에서 배제되었다. 제4차 기본계획은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진과제로 일·가정 양립 서비스 정책 등을 수립하였지만, 의료서비스 이행에 그쳤다.[278] 나아가 여성어업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인프라의 부족과 지원체계 미비는 어촌 정주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하여 젊은 여성어업인의 신규 유입을 저해하고, 귀어인구의 남성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76) 동아일보(2019. 12. 12)
277) 머니투데이(2021. 5. 7)
278) 부록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세부예산 참고

〈그림 5-5〉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존 정책 과제

추진 과제		추진 일정					
		'16	'17	'18	'19	'20	'21
3.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3-1.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 어업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			■	■	■	■	■
- 복지인력 양성			■	■	■	■	■
3-2.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서비스 제공	관계부처 협의		■				
- 어업인 교육훈련 강사 파견 서비스							
- 보건소 방문관리 서비스	서비스 제공		■	■	■	■	■
- 찾아가는 문화공연 서비스 제공							

주: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17년부터 '21년까지 시행이 계획되었으나, 계획서에는 과제별 추진 일정을 '16년부터 밝힘에 따라 함께 표기함
자료: 해양수산부(2017), p. 30

WHO는 사람의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한 상태가 아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279]으로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였다.[280] 과거에는 단순히 몸이 아프지 않으면 건강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정신적, 사회적 건강도 신체적 건강과 함께 중요해지고 있으며, 건강한 어촌생활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의 정책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WHO는 출생지, 성장배경, 노동환경, 주거지역, 노화 조건 등 일상을 형성하는 다양한 의학 외적 요인들이 사람의 건강상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이를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이하 SDH)[281]으로 지칭하였다. SDH는 자본, 정부 정책, 인프라, 자원 등의 불평등한 분배가 종국에는 건강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으로, 사

279) 한국건강학회 윤영회 회장은 신체적 건강이란 우리 몸에 질병 등이 없고 체력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 정신적 건강이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으며 기분이 안정된 상태, 사회적 건강이란 사회적으로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하고, 사회적 인간관계가 좋은 상태로 정의함(자료: 경향신문(2019. 8. 11))
280) 경향신문(2019. 8. 11)
281) WHO(검색일: 2021. 10. 07)

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지역일수록 해당 지역 거주민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각종 정책은 현재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 복지정책의 개념에서 어촌 정주여건 개선 정책과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귀어정책의 일환으로 확대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책방안

(1) 신체적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여성의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지원은 현재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을 위한 직접적 의료지원과 신규 청년층 여성어업인 유입을 고려한 가임기 여성 의료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어업인은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주 조건이 불리한 연안어촌 특성으로 지역 내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도심지역 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이에 여성농업인 단체는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 방안으로 '여성농업인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바우처 제도는 농촌 특성상 장거리에 위치한 의료시설 이용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의료시설 이용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행복바우처 제도에 준하는 정책이다.[282] 여성어업인 또한 여성농업인과 같이 열악한 정주여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직접지원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직업성 질병 지원과 연계하여 직업병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센터 신설 및 어촌지역 만성질환 치료 시설 확충을 통한 여성어업인 특화 의료 전문화 도모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기존 여성어업인 외 향후 여성어업인 신규 유입을 위한 시책으로 부인과

282) 한국농어민신문(2021. 6. 15)

(특히, 가임기 여성) 의료지원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의료지원은 구체적 예로는 임산부 지원과 부인과 질환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임기 여성은 본인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 진료가 필요함에도, 열악한 의료시설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출산 전후 여성어업인의 건강 보호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도우미제도의 정착, 여성암(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에 대한 조기검진 및 산부인과 관련 진료 확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동 정책은 여성어업인 복지를 증진함과 동시에 귀어 제약요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귀어정책과의 연계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건강을 위한 복지지원

사회적 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지원책은 기존 정책인 행복바우처 제도 확대와 세대별 수요를 고려한 청년층 여성어업인 이탈 방지를 위한 돌봄노동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복바우처 제도는 여성어업인의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어업인들의 높은 만족도, 자긍심 고취 등 긍정적 결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역별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수혜자 요건, 지원 규모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다. 이에 앞서 제시한 정책 거버넌스 아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행복바우처 제도의 지역 간 불평등 해소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어가인구의 고령화 국면 속에서 소수의 청년층 여성어업인은 어업노동과 가사노동 외에도 자녀 돌봄노동까지 전담하며 과중한 노동부담을 경험한다. 이들이 엄마, 배우자, 어업인 등 소속 집단의 일원으로 온전한 역할을 수행하고,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요구된다. 일터에서 어업활동에 집중하고, 가사와 돌봄에 대한 근심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성어업인의 자녀 양육, 보

육, 교육 등 기존 맞벌이 여성들의 노동 부담 경감 정책의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귀어 정책과 공조하여 어업인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촌 지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어업인의 특성(새벽 조업, 저녁 6시 이후 퇴근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시간대의 시간 단위 베이비시터 제도 신설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고령 어가 가사노동 지원을 위한 어촌생활돌봄 사업의 수혜자를 청년층까지 확대하여 돌봄노동과 가사노동 지원시책으로 확대·전환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정신적 건강을 위한 문화·여가 지원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어촌의 경우, 주요 사업수행기관과 동떨어져 있고, 기존 인프라 또한 부족하여 문화 활동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여성어업인 정주 지역 지원센터를 통한 취미·교양 강좌 운영과 찾아가는 문화·여가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등이 정책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과도한 노동부담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부부교육 등의 시행도 검토되어야 한다. 가사노동의 불공정한 분담은 여성의 일·가족 갈등을 증가시키고 여성의 결혼생활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283] 여성어업인의 상당수도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부부갈등 해소는 노동활동의 스트레스 해소와도 관련이 있는데, 여성어업인 중 상당수는 배우자와 함께 어업활동에 참여하고, 배우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임에 따라 부부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283) 여성신문(2019. 9. 18)

06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성평등 패러다임 속에서 여성어업인의 산업적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 여성어업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정책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의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은 여성인권과 노동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담론과 여성어업인의 구체화된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여성인권, 여성노동권, 노동의 질 결정요인 등을 검토하여 여성어업인 노동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여성의 일을 사적영역으로 치부하는 오랜 고정관념 속에서 성 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가사노동 부담과 이들의 지위가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노동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또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성별에 따른 권한과 임금

격차가 크고,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높은 구조적 특징을 가져 여성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 정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농어업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해 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여성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여성어업인 정책은 농수산부문 정부조직 개편으로 여성농업인 정책에 편승해 시작되었으며, 이후에도 잦은 소관부처 이관, 미비한 실태 파악 등으로 여러 한계점을 가졌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립된 '제4차 여성어업인 기본계획('17~'21)'은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 '여성어업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세부 계획이 이행되지 못해 뚜렷한 정책 성과 도출은 다소 미진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 여성어업인 정책이 어가와 어촌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적·지역적 정책대안으로 시작된 점에 착안하여 여성어업인의 산업적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어촌의 인구구조 변화로 어업·어촌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여성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며, 많은 여성어업인이 어가 일손 돕기의 일환으로 어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노동시장 내 성격차와 경제적 비효율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성별 직종분리 현상이 어업 노동시장 내에도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던컨지수와 성 집중도 지수를 통해 업종별·성별 직종분리 현상이 존재하고, 여성은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남성은 어선어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적 통념과 같이 상대적으로 기계화, 자본화가 이루어진 어선어업에 남성이 강세를 보이고,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고 소규모 자본으로 진출이 가능한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에서 여성이 강세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어업 노동시장 구조가 노동시장 내 여성 근로자가 집중된 직종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의미하는 과밀효과와도 상관관계가 있

음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여성어업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여성어업인의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요를 구체화하였다. 특히, 실태조사는 어업인의 노동환경과 시간 활용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뒀으며, 조사 결과, 남녀어업인은 종사 이유, 의사결정 권한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어업에 종사하게 된 계기는 남성어업인의 경우, 가업을 물려받거나 본인 선택이 주를 이루었다면, 여성어업인은 남편의 어업노동을 돕기 위해 시작하였다. 또한, 어업활동의 책임자로 남성어업인은 본인 자신을 꼽은 반면, 여성 과밀 직종인 맨손과 나잠어업 종사자를 제외한 여성어업인은 어업활동 책임자로 배우자를 선택하였다. 즉, 상당수의 여성어업인이 배우자 일손 돕기 또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력자 형태로 어업에 진입하여 어업인으로서 본인의 직업적 위치를 신장하기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3장에서 확인한 성별·업종별 분절은 본인 지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결정 권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맨손어업, 나잠어업과 달리 양식어업,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 상당수는 본인의 직업적 지위를 무급 가족 종사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 판매, 유통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 의사결정 권한이 배우자에 비해 작다고 답변하였다. 즉, 어업 내 성별·업종별 분절은 여성의 발언권 약화와 성 불평등한 구조의 고착화, 여성어업인이 누려야 할 합당한 권리와 지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불평등 구조는 시간 활용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평균 남녀어업인의 노동시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성어업인의 유급노동 시간은 남성의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 이는 어가 내 무급어업노동과 가사노동 부담이 여성어업인에게 전가됨에 따른다. 이러한 여성어업인의 노동 이중고는 삶의 질을 저해하고, 나아가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 부담을 안아야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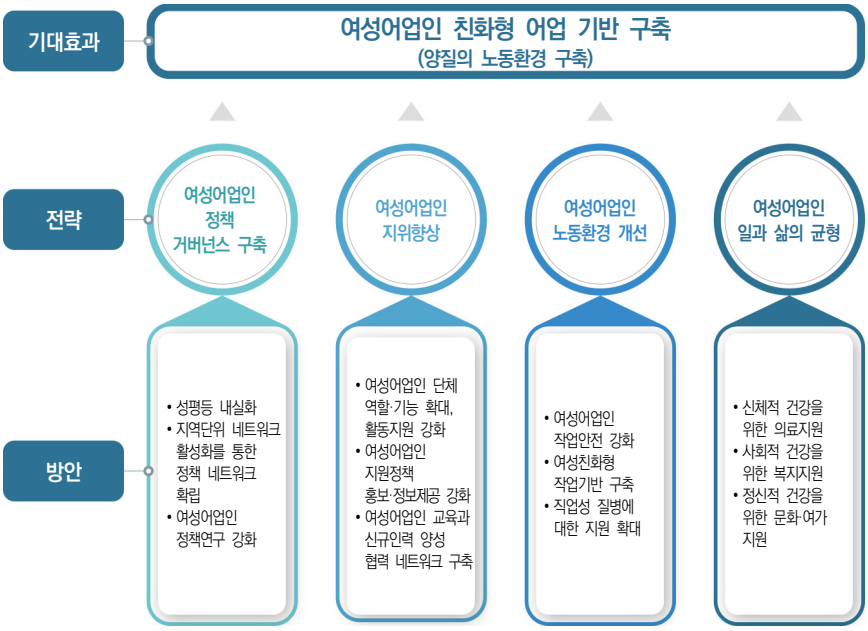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 준다.

여성어업인이 책임지고 있는 어가 내 무급노동은 어가와 어업, 나아가 어촌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제대로 된 평가와 위상이 확립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어업인 무급노동의 양적 규모와 대체비용법을 활용하여 이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여성어업인이 어가 내에서 행하는 무급노동을 타인에게 의뢰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월평균 약 151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으로 환산한다면 연간 1,817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전국 평균 어가소득(4,842만 원)의 37.5%에 달하는데, 본 추정에 사용된 시간당 임금이 여성어업인의 숙련도와 인력 부족 현상을 반영함에 한계를 가짐에 따라 실질 여성어업인 무급노동의 가치는 추정액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여성어업인이 갖는 정책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다. 도출된 정책수요는 노동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 여성어업인 지위 향상으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들 정책수요는 상호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SDGs5는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FAO 또한 성평등 정책에서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제5장에서는 여성어업인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으로 여성어업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 여성어업인 지위향상, 노동환경 개선, 일과 삶의 균형을 구분·제시하였다.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어업 내 성평등 내실화, 어업의 지역집약형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 네트워크 활성화와 정책 네트워크 확립 그리고 이러한 거버넌스 구축의 기초가 되는 정책연구 강화를 제시하였다. 여성어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여성어업인 단체의 역할·기능 확대와 활동 지원, 각종 경제적 지원 정책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홍보·정보제공 강화, 여성어업인 교육과 신규인력 양성을 연계한 교류·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하였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교육 강화를 통한 작업 안전 강화, 완력에 기반한 어업 특성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여성친화형 작업기반 구축,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병에 대한 지원이 있다. 나아가 여성어업인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기 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네 가지 전략 모두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 일례로, 여성어업인의 노동환경 개선은 이들의 작업 안전을 제고하는 동시에 여성의 생산 참여를 확대하여 지위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여성의 지위는 단순히 경제적 요소로만 규정되지 않고, 고정관념,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에 따라 성평등 의식 확산 등의 노력도 요구된다. 즉, 여성어업인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여성어업인 친화형 어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부 정책 간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림 6-1〉 여성어업인 노동정책 기본방향



자료: 저자 작성

2. 결론

여성의 경제참여 중요성이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여성노동권 개념 또한 여성들의 실질적 평등 조건과 성별 분업에서 자유로울 권리로 확대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성평등 논의는 더욱 진보하며 성 주류화를 위한 주요 요소로 여성 권한과 가정 내 불평등에 주목하였다. 우리나라 여성정책 또한 실질적 성평등 실현으로 확장·전환되었는데, 여성어업인에 대한 논의는 인권, 성(gender)에 대한 개념이 아닌 산업적·지역적 정책 대안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다수의 정책이 정주여건에 따른 삶의 질 지원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성평등에 관한 정책적 논의는 미진하였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성별에 따른 권한과 임금 격차가 크고, 여성에게 전담되는 가사노동 부담을 특성으로 한다. 어업 또한 어업인 성별에 따라 고용 안정성과 임금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이 집적된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노동집약적 성격을 보였다. 여성어업인은 어업노동 외에도 어가 내 가사노동은 전담하고 있으나 그 가치와 기여는 평가절하되고, 여전히 모호한 직업적 지위와 산업 내 구조적 배제에 처해 있다. 특히 어가와 어촌의 오랜 성 고정관념, 높은 노동강도의 어업 현장은 여성의 참여를 제한하고, 여성에게 불평등한 구조적 기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어업인 정책은 기존의 인적자본 역량강화와 삶의 질 향상 지원책에서 나아가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수립될 여성어업인 정책은 여성으로서 갖는 특수성과 성역할에 대한 고찰, 여성어업인이 처한 보다 과중한 노동부담과 남성 중심의 산업적·문화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여성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은 여성 개개인의 인적 역량 강화에 그치기보다는 이들이 산업 내 개별경제

주체로 인정받고 자리매김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내재된 구조적 기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노동환경 개선도 단순히 작업환경을 현대화한다는 접근이 아닌, 여성들이 어업에 더욱 활발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성평등한 산업구조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어촌 내 실질적 성평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어업인의 역할과 기여를 어업 생산활동에 한정하여 접근하기 보다는 어가 소득 창출과 어촌 유지를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여성의 활동으로 확대·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된 현시점을 고려하여, 제5장에서 제시한 정책방안의 구체적 시행계획은 정책 수혜대상에 대한 생애주기별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기준 60대 이상의 고령 여성어업인 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어가 생계를 책임지는 고령의 여성 어업경영주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와 경제활동 지원 방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년 여성어업인은 어가·어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과중한 노동 부담을 경험하고 있어 이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노동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년층 여성어업인은 그 수가 적지만 어업의 지속가능성과 어촌의 재생산을 위해 정책 수혜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어업을 선도할 핵심 인력 육성책에서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인구 유입을 불러올 수 있는 관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여성어업인에 대한 국가승인통계가 부재하고, 관련 자료 또한 부족한 여건 속에서 이루어져 다양한 분석에 한계를 갖는다. 실태조사 또한 제한된 여건으로 인해 표본 내 여성어업인의 비중이 높고 적은 수의 표본으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업 내 성별 직종분리 현상을 검증하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여성어업인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UN 권고안에 따른 일평균 행동 분류에 기초하여 추정함에 의의를 갖

는다. 다만, 성인지통계를 바탕으로 한 성별·업종별 분절과 과밀효과의 상관관계 분석, 여성어업인 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한계생산성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 추정, 여성수산인으로 정책 대상 확대 논의 등은 향후 과제로 남겨두었다.

제2절 정책제언

1. 지원체계 정비

기존 여성어업인 정책이 갖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어업인 정책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동일한 근거법을 바탕으로 하는 여성농업인 정책의 경우, 제3차 기본계획 아래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보다 구체적 정책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17~'21)' 또한 여성어업인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못하였다.

여성어업인 지원체계는 그 역할에 따라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내 여성어업인 정책 전담 조직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규정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자문회의, 정례적 실태조사, 단체 지원과 관련 시설 설치의 책임을 맡는다. 나아가, 여성어업인의 수혜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여성어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여성어업인 정책포털 구축과 해양수산부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시행을 담당할 수 있다.

어업의 지역단위 집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여성어업인 정책 네트워크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지역자치단체 법규가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수립되어 여성어업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여성어업인 행복 바우처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협력체계는 지역별 쉼터 운영과 현안성 정책수요 발굴을 통해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어업인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6-2〉 여성어업인 지원체계 구축(안)



자료: 저자 작성

나아가 전담 조직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업 창구를 일원화한다면 다양한 기관과 보다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담 조직과 여성가족부와의 협력 네트워크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기존 해양수산부 정책의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 또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의 긴밀

한 협력을 통해서는 건강바우처 시행, 어업인 의료 복지 지원책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해 여성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 교육 확대, 정책 이슈의 상향식 발굴을 도모할 수 있고, 여성단체와는 여성관련 이슈의 쟁점화 또한 가능하다.

2. 어업분야 성 주류화 실현

여성어업인이 직면한 성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이들의 역할과 기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업분야 성 주류화 실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국가승인통계 마련, 성인지 통계 구축, 성별영향평가 확대를 제시할 수 있다. 데이터는 현실을 압축해 보여 주고 설득력을 갖는 반면, 데이터가 없다면 명백히 존재하는 현실도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여성어업인 문제 또한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역할과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 자료와 통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국가승인통계 마련 및 성인지 통계 구축을 제안한다. 국가승인통계 구축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8조에 규정된 여성어업인에 대한 정례적 실태조사 시행을 통해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보다 구체적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남녀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성별에 따른 차이가 고려되어야 하며, 귀어정책과의 시너지를 위해서는 귀어가구 여성어업인과 기존 여성어업인에 대한 분리 접근과 다문화 어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성인지 통계란 개별 차원(Individual level)의 통계에서 남녀로 분리된 통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 예로 「해양수산업통계」의 종사자 성별 통계, 「농림어업총조사」의 어가인구 성별 통계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현행 성인지 통계는 단년 자료가 주를 이뤄 성별에 따른 추이를 살펴봄에는 적합하지 않아 장기적 통계 구축이 필요하며, 향후 '사람'과 관련된 통계를 구축·운영함에 있어 대상자의 성별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림 6-3〉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례



자료: 여성신문(2016. 8. 31), 재인용: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경험과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의 결정과 실행, 평가와 같은 각 단계에서 성차별과 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다. 성 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도구인 성별영향평가는 이미 해양수산부 정책의 성별 균형적 참여 확대를 달성한 바 있다. 2015년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성 주류화를 실천하였다.[284]

284) 여성신문(2016. 8. 31)

향후 어업분야 정책에서 성별영향평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285]한다면, 성인지 예산 확보와 기존 정책의 개선과제 도출을 넘어 여성친화형 작업기반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여성어업인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여성어업인 정책의 실효성, 인지도, 접근성 제고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광장 시스템 사례를 참고하여, 여성어업인에 대한 통합적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여성농업인광장은 크게 '여성농업인정책', '여성농업인 자료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성농업인정책에서는 차수별 여성농업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제공한다. 또한, 현장 밀착형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을 위한 농촌 여성 전문가 인력풀을 모집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 자료실은 관련 통계 및 정책자료, 교육·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여성농업인광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산재된 다양한 지원정책을 게시판 첨부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시행계획 단위별로 확인할 수 있어 정책 수혜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여성어업인 통합 정보 시스템은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그 외 다양한 정책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원클릭 지원 기능 등을 도입하여 정책 시행의 실효성과 수혜자 접근성 향상 도모를 제안한다. 또한, 여성어업인 전문가 인력풀 모집 기능을 활용하여, 전술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연계하고, 자료실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여성어업인 현황 제시 및 정책연구 게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85) 2020년 기준 해양수산부 성별영향평가 개선 이행률은 93.3%로 평균 이행률(71.0%)을 상회하나, 개선과제의 수는 14개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 중앙행정기관 중 개선과제의 수가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자료: 여성가족부(2021), pp. 107~109))

참고문헌

국내 문헌

강남식(2002),「여성인권으로 본 여성노동권과 여성노동정책」,『아시아여성연구』, 4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pp. 77~98.

강은영(2017),「고용의 질 해외사례 검토 및 지표체계 구축 방안」,『2017년 하반기 연구보고서』,제Ⅳ권, 통계개발원, pp. 115~254.

강혜정·마상진(2007),『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2020. 8. 28),「경북 해녀문화 보존·전승에 대한 관심 높여야」,『경북여성가족정책 브리핑』, VOL. 114.

경상북도,「2021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 지침」

고용노동부(2012),『ILO 주요협약』, 고용노동부 국제기구담당관실.

_____(2021),『2020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금재호(2004),「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성차별-직종분리를 중심으로-」,『응용경제』, 6(3), 한국응용경제학회, pp. 259~290.

관계부처 합동(2017),「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

권순헌(2017),「성평등과 경제성장」,『여성연구논총』, 20,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pp. 47~74.

권혜자(2005),「성별 고용형태별 직업분리의 임금효과」,『노동사회』, 97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pp. 103~113.

김경희·나성은(2017),「성 주류화 정책에서의 젠더 거버넌스와 여성운동」,『여성학

연구』, 27(3), pp. 149~186.

김명화(2020), 「경북 해녀 정책 관련 서면자문」(내부자료).

김명화·박효영·이민성(2019), 『영덕군 해녀문화 기록화 사업 조사보고서』, 영덕군.

김병호 외(2017), 『수산의 이해』, 수산경제연구원BOOKS·블루앤노트.

김보람·문은하·이승윤(2012),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일자리의 질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3,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pp. 31~59.

김상민·이소영(2018), 『사회혁신을 위한 참여적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연구보고서2018-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선화·이재영(2020), 「성 평등 국제지수의 함의와 과제」,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11호, 국회입법조사처, pp. 1~9.

김수군(2015),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제183호)과 권고(제191호)에 의한 임산부의 건강보호」, 『월간산업보건』, 9월, 대한산업보건협회, pp. 37~47.

김엘림(2003),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에 관한 쟁점」, 『노동법학』, 17, 한국노동법학회, pp. 1~24.

김영미(2002), 「거버넌스와 여성, 여성정책」,『한국정책과학학회보』, 6(3), 한국정책과학학회, pp. 77~91.

김영란(2010), 「한국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 진보와 반동」, 『현대 아시아 여성의 지위변천과 21C 과제』, pp. 1~13.

김영란 외(2016), 『전남 여성어업인 생활실태 및 지원 방안』, 정책연구-04, 전남여성플라자.

김영택 외(2018),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Ⅲ)』, 2018 연구보고서 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경(2008), 「여성정책 거버넌스 유형에 대한 분석: 여성부의 협력사업 사례」, 『아시아여성연구』, 47(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pp. 67~101.

김재인·임미영(2004), 「한국 여성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실태 분석」, 『한국행정학보』, 38(6), 한국행정학회, pp. 371~390.

김혜영(2003), 「한국의 가족주의와 여성 인권」, 『아시아여성연구』, 4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pp. 9~46.

남기성·오민호·홍현균(2008), 「새로운 상대집중 계수 NOHI 제안」, 『e-고용이슈』, 20

08-6호, 한국고용정보원, pp. 1~10.

노사발전재단(2010), 『ILO 주요 협약』

농림부(2000),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2001-2005)」

_____(2006), 「2006~2010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

농림수산식품부(2011), 「제3차('11년~'15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_____(2015), 「제4차('16년~'20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_____(2020), 「제5차('21년~'25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문순영(2008), 「돌봄노동 일자리의 일자리 질(quality of job)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3,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pp. 207~237.

문순홍·정규호(2000), 「거버넌스와 젠더: 젠더친화적 거버넌스의 조건에 대한 탐구」,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박광옥(2016), 「ILO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개념에 따른 장애유형별 고용의 질 평가」, 『장애와 고용』, 26(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pp. 125~152.

박성재 외(2019), 『어촌뉴딜 조성의 고용효과』,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박윤환(2011),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 거주지분리에 대한 연구: 서울시 사례연구」, 『서울도시연구』, 12(4), 서울연구원, pp. 103~122.

박은하(2011), 「성별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결정요인 연구」, 『한국여성학』, 27(3), 한국여성학회. pp. 1~38.

사명철(2015),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의 변화」, 『노동정책연구』, 15(4), 한국노동연구원, pp. 1~24.

세계법제정보센터(2011), 『북경행동강령 번역본』

손지아·박순미(2011),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 고용의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동정책연구』, 11(1), 한국노동연구원, pp. 131~166.

신경수(2002a),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분절화현상」, 『경영교육저널』, 대한경영교육학회, pp. 101~129.

_____(2002b),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직종분절화현상과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신경아(2016),「여성노동시장의 변화에 관한 여덟 가지 질문」,『페미니즘 연구』, 16(1), 한국여성연구소, pp. 321~359.

신동윤(2020),『ILO 핵심협약의 비준현황과 과제』, 입법·정책보고서 Vol. 46, 국회입법조사처.

신선미 외(2020),『노동시장 성 격차 해소를 위한 분야별 전략개발(Ⅲ): 성별 전공분리를 중심으로』, 2020 연구보고서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혜수(2017),『젠더기반 국제개발협력과 인권』, 국제개발협력저널, 한국국제협력단.

심영희(1998),「여성의 인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현대사회와 인권』, 나남출판사.

심용보·이호창(2010),「지역거버넌스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통합적 연구」,『노동정책연구』, 10(1), 한국노동연구원, pp. 129~150.

안경주(2013),「성별영향평가와 젠더-거버넌스의 구축: 세 지역사례의 분석을 통해 본 쟁점」,『한국여성학』, 29(4) 한국여성학회, pp. 155~190.

엄선희 외(2016),『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해양수산부.

엄진영·최용호·박지연(2018),『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여성가족부(2015),「2015~2017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_____(2018),「2018~202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_____(2020),「2020년 성불평등지수(GII) 현황」

_____(2021),「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원숙연·박진경(2006),「젠더-거버넌스의 가능성 탐색-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한국여성학』, 22(4), 한국여성학회, pp. 85~124.

유소이·김경미(2003),「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농촌사회』, 13(2), 한국농촌사회학회, pp. 245~270.

유소이 외(2003),「여성농업인 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대한가정학회지』, 41(7), 대한가정학회, pp. 157~168.

윤자영(2020),「무급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월간 노동리뷰』, 2020년 11월호(통권 제188호), 한국노동연구원, pp. 23~34.

윤지현(2018),「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성별 분절화 실증연구」, 경제학석사 학위논문,

한국해양대학교.

윤홍준·김월화(2002), 「한국사회의 직업지위에 관한 연구-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5(2), pp. 35~65.

윤혜린(2013),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격차와 직종분리현상에 관한 연구」, 경제학석사 학위논문, 동아대학교.

이금순(1994), 「경제개발과 여성의 지위-한국의 사례-」, 『아시아여성연구』, 33,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pp. 95~120.

이상헌(2005), 「[ILO] Decent work :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국제노동브리프』, 3(7), 한국노동연구원, pp. 4~11.

이수연·장혜경·김경희(2012),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수용성 제고 방안』, 2012 연구보고서(수시과제)-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인혜(2012), 「어촌 여성금기의 변화와 지속: 충청남도 서천국 W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5(2), 한국문화인류학회, pp. 195~238.

이창수·박지훈(2017), 『여성어업인 어업노동 실태와 지원 방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_____(2019), 『여성어업인 실태 및 인식 변화 분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이창수·박지훈·임종선(2019), 『여성어업인 어촌 비즈니스 지원 방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장지연 외(2020),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 정책연구 2020-10, 한국노동연구원.

전라남도(2017),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지침」

정경윤(2019), 「여성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안전한가?」, 이슈페이퍼 2019-05,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기환(1997), 『농가 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은미(2015),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 『농정포커스』, 제10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1~24.

정은미·김태환·박은지(2020),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체 제도 개선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성애·황진회·엄선희(2005),『어촌여성의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기본연구 2005-0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세림·정세은(2019),『성별 직종분리와 임금격차-현황 및 임금공개의 기대효과』, 한국노동연구원.

최세림(2021),「노동시장의 성격차와 성별직종분리에 관한 서면자문」(내부자료).

최옥금(2006),「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 및 실태파악을 중심으로」,『사회보장연구』, 22(2), 한국사회보장학회, pp. 227~252.

최희경(2009),「'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개념의 노인 돌봄 서비스직에 대한 적용」,『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pp. 27~57.

충청남도,「2020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통계청(2020a),「통계로 본 어업의 구조변화」

_____(2020b),「해양수산업통계조사 통계정보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2003),「ILO 노동 입법 가이드라인 Ⅲ」,『국제노동브리프』, 1(6), 한국노동연구원, pp. 89~118.

한광석 외(2019),『수산업 노동시장 구조 분석과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연구』, 기본연구 2019-1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허라금(2008),「여성주의 성평등 개념을 통해 본 성주류화」,『여성학논집』, 25(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pp. 45~79.

허민숙(2013),「국제 여성인권운동과 여성인권의 지역적 실천」,『세계정치』, 19,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pp. 97~134.

해양수산부(2016),「어업작업 안전사고 예방가이드」

_____(2017),「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17~'21)」

_____(2018),「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17~'21)에 따른 '18년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_____(2019),「2019년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17~'21)-」

_____(2020),「2020년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황수경(2003),『여성의 직업선택과 고용구조』, 연구보고서 2003-03, 한국노동연구원.

황준욱(2005), 「ILO의 '일다운 일(decent work)'에 대한 발전적 논의」,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pp. 21~34.

OECD 대표부(2014. 7. 4),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방안」, 『OECD 정책 동향』.

국외 문헌

Anker, R.(1997), " Theories of occupational segregation by sex: An overview",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6, ILO, pp. 315-339.

Anker, R. *et al.*(2003) "Measuring decent work with statistical indicators", *Working Paper No. 2*, ILO.

Bradley, K, and D. Khor(1993), "Toward an Integration of Theory and Research on the Status of Women", *Gender and Society*, 7(3), pp. 347-78.

EU(2001), *Employment in Europe*,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Parliament(2013), *Women in fisheries: A european perspective.*.

FAO(2013), *FAO policy on geder equality attaining food security goals i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_____(2015), *A review of women's access to fish in small-scale fisheries*.

_____(2016), *Promoting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fisheries and aquaculture*.

_____(2017), *Towards gender-equitable small-scale fisheries governance and development - a handbook*.

_____(2019), *Report of the Seventeen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Fish Trade of the Committee on Fisheries*.

_____(2020), *FAO policy on gender equality 2020-2030*.

Haug, M. R.(1977). Measurement in Social Stratific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3, pp. 51-77.

ILO(2002), "Towards a Policy Framework for Decent Work", *International Review*, Vol.141, pp.161~174.

ILO(2013), *10 Keys for Gender Sensitive OSH Practice-Guidenlines for Gender*

Mainstreaming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_____(2021), *2021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MacKinnon, C. A.(1993), "Crimes of War, Crimes of Peace", *UCLA Women's Law Journal*, 4(1), pp. 59-86.

OECD(2015), "Measuring and Assessing Job Quality : the OECD job quality framework",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174, OECD Publishing.

Prichard, K. W. & T. H. Buxton(1973), *Concepts and Theories in Sociology of Education*. Lincoln: Professional Educators.

Powers, M. G.(1982), *Measure of Socioeconomic Status: Current Issue*, Colorado: Westview Press, Inc.

Sugarman, D. B & M. A. Straus(1988) "Indicators of gender equality for American States and Regio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3), pp. 229-270.

Szymkowiak, M. & M. Rhodes-Reese(2020), "Addressing the Gender Gap: Us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to Illuminate Women's Fisheries Participation", *Marine Affairs and Policy*, 7, pp. 1-16.

Tarique, M. D. & Sultan, Z. A. (2008), "STATUS OF WOMEN IN SAARC COUNTRIES:A COMPARATIVE ANALYSIS", *Gender Empowerment and Development*, 29, pp. 1112-1125.

UN(2002), *Gender Mainstreaming: An Overview*, New York.

___(2015),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WOMEN(2018), *Turning promises into action gender equality i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asserman, S. & K. Faust(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World Economic Forum(2021), *Global Gender Gap Report 2021.*

WWF(2019), *Empowering women in marine communities to mitigate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Zhao, M. *et al.*(2013), "Women as visible and invisible workers in fisheries: A case

study of Northern England", *Marine Policy*, 37(1), pp. 69-76.

인터넷 자료

강원도환동해본부 보도자료(2021. 5. 27),「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확대-70세 미만에서 75세 미만으로 복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검색일: 2021. 10. 21)

경상남도 보도자료(2021. 1. 11),「여성어업인 '바우처' 시행으로 삶의 질 높인다」(검색일: 2021. 10. 22)

경향신문(2019. 8. 20),「윤영호 한국건강학회 이사장 "개인을 건강하게 하는 사회, 국가가 만들어야죠"」, https://www.khan.co.kr/life/health/article/201908202133015(검색일: 2021. 8. 11)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339(검색일: 2021. 6. 3)

국가통계포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publicationYN=Y&statId=2001016#content-group(검색일 : 2021. 6. 1)

국가통계포털 귀농어·귀촌인통계,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parentId=K1.1&vwcd=MT_ZTITLE&menuId=M_01_01(검색일: 2021. 6. 3)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조사,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parentId=K1.1&vwcd=MT_ZTITLE&menuId=M_01_01&outLink=Y&entrType=#content-group(검색일: 2021. 6. 3)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총조사,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parentId=K1.1&vwcd=MT_ZTITLE&menuId=M_01_01&outLink=Y&entrType=#content-group(검색일: 2021. 6. 3)

국가통계포털 어가경제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4B131&vw_cd=MT_ZTITLE&list_id=F36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

색일: 2021. 12. 29)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parentId=A.1&vwcd=MT_ZTITLE&menuId=M_01_01(검색일: 2021. 6. 3)

국가통계포털 해양수산업통계조사,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parentId=K2.1;K2_11.2;&outLink=Y#content-group(검색일: 2021. 6. 1)

국가통계포털 해양수산업통계조사,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parentId=K2.1&vwcd=MT_ZTITLE&menuId=M_01_01(검색일: 2021. 6. 8)

국가통계포털 해양수산업통계조사,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publicationYN=Y&statId=2016032#content-group(검색일: 2021. 12. 27)

귀어귀촌종합센터, https://www.sealife.go.kr/policy/policy6.do(검색일: 2021. 9. 6)

농민신문(2018. 4. 30),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역별 혜택 제각각」, https://www.nongmin.com/news/NEWS/FLD/CNT/289886/view(검색일: 2021. 10. 22)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광장, https://www.mafra.go.kr/woman/1185/subview.do(검색일: 2021. 6. 3)

뉴스1(2021. 6. 30), 「"힘든 뱃일에 넘어져 다치고"…어업인 '허리·무릎' 질환 가장 많아」, https://www.news1.kr/articles/?4355017(검색일: 2021. 9. 5)

동아일보(2019. 12. 12), 「가장 효과적인 일자리정책, 학생 63%가 '워라밸' 꼽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1212/98766528/1(검색일: 2021. 9. 1)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0942&docId=1222578&categoryId=32182(검색일: 2021. 10. 7)

머니투데이(2021. 5. 7), 「달라진 청년들 "中企 워라밸 좋으면 간다"…희망연봉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0714034960043(검색일: 2021. 9. 1)

매일노동뉴스(2021. 2. 18), 「ILO "한국 법·제도, 100·111호 협약에 위배"」, https://w

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87(검색일: 2021. 8. 28)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zzza/intgSearch/moveTWZZ01000M.do(검색일 : 2021. 10. 21)

어민신문(2021. 7. 2), 「일선수협 여성 지도자 비중 낮다」, http://m.eomin.co.kr/etnews/?fn=v&no=54465&cid=21030100(검색일 : 2021. 7. 2)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890(검색일: 2021. 5. 30)

여성농업인광장, https://www.mafra.go.kr/woman/index.do(검색일: 2021. 9. 6)

여성신문(2016. 8. 31), 「복지·주거·재난안전… 양성평등 관점으로 개선」,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164(검색일: 2021. 10. 31)

여성신문(2017. 8. 31), 「정부,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쓴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608(검색일: 2021. 10. 20)

여성신문(2019. 9. 18), 「가사노동 평등할수록 결혼·부부만족도 높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924(검색일: 2021. 10. 31)

연합뉴스(2020. 5. 12), 「양성평등전담부서 설치 1년… 성평등 정책 얼마나 진전됐나」,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2069800005(검색일: 2021. 10. 31)

전라북도 보도자료(2021. 1. 7),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로 챙겨가세요!」(검색일: 2021. 10. 21)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https://overseas.mofa.go.kr/ch-geneva-ko/brd/m_8852/view.do?seq=773691&srchFr=&%253BsrchTo=&%253BsrchWord=&%253BsrchTp=&%253Bmulti_itm_seq=0&%253Bitm_seq_1=0&%253Bitm_seq_2=0&%253Bcompany_cd=&%253Bcompany_nm=&page=8(검색일: 2021. 8. 28)

중앙일보(2019. 3. 6), 「농어촌 ATV 사고 3년간 사상자 1200명… 상당수 무면허에 보험도 안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02727#home(검색일: 2021. 9. 6)

제주도청,https://www.jeju.go.kr/group/part11/dept/org.htm#1000014002004(검색일: 2021. 10. 23)

충북도 보도자료(2021. 1. 19),「충북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하세요! - 2월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검색일: 2021. 10. 21)

충청남도 보도자료(2021. 2. 17),「'자부담 없앤다'…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검색일: 2021. 10. 21)

통계분류포털,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common/selectIntroduce.do?gubun=2&bbsId=sea_ug#(검색일: 2021. 6. 1)

통계청, https://kostat.go.kr/understand/info/info_lge/1/detail_lang.action?bmode=detail_lang&pageNo=1&keyWord=5&cd=SL4050&sTt=(검색일: 2021. 9. 3)

통계청 보도자료(2020. 7. 29),「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검색일: 2021. 6. 20)

프레시안(2021. 3. 27),「보령 비지정해수욕장 사륜오토바이 과속·난폭 운행 '공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32715054297569?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검색일: 2021. 10. 30)

한겨레(2021. 7. 13),「건설업은 위험, 돌봄은 안전?… 성별 편견에 가려진 여성 산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52274?sid=001(검색일: 2021. 9. 5)

한국농어민신문(2021. 6. 15),「여성농업인 리더를 만나다 〈8〉 강은주 한여농제주도연합회 회장」,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79(검색일: 2021. 10. 3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26941&cid=46634&categoryId=46634(검색일: 2021. 10. 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https://gsis.kwdi.re.kr/gsis/kr/introduce/introduce.html(검색일: 2021. 6. 5)

_____, https://gsis.kwdi.re.kr/kr/stat2/NewStatList.html?stat_type_cd=STAT002(검색일: 2021. 8. 28)

해양수산부, 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30567&boardKey=2&searchEtc5=code338&menuKey=341&currentPageNo=1(검색일: 2021. 9. 6)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 https://m.blog.naver.com/koreamof/221863866364(검색일: 2021. 9. 6)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7. 1. 16)「해수부,「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17~'21)」 발표-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 등 지원하여 수산업 발전 도모-」(검색일: 2021. 5. 29)

_____(2017. 5. 11)「해수부, 여성어업인 육성 위해 적극 나선다」(검색일: 2021. 5. 29)

_____(2019. 2. 19)「부부가 함께 어업할 때, 아내도 공동경영주로 인정한다」(검색일: 2021. 8. 30)

_____(2019. 5. 17),「낙도·낙후지역 어업인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개시」(검색일: 2021. 8. 30)

_____(2021. 9. 1),「해양수산부, 어촌소멸 대응과 탄소중립에 중점 투자」(검색일: 2021. 9. 30)

ILO, https://www.ilo.org/global/lang—en/index.htm(검색일: 2021. 6. 5)

_____,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1200:0::NO::P11200_COUNTRY_ID:103123(검색일 : 2021. 6. 2)

IWRAW, https://cedaw.iwraw-ap.org/cedaw/cedaw-principles/cedaw-principles-overview/(검색일: 2021. 6. 4)

SBS(2021. 9. 6),「갯벌서 경운기 몰고 '머드맥스'…또 터진 홍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TMbuTCRoiY(검색일: 2021. 10. 30)

WHO, https://www.who.int/health-topics/social-determinants-of-health#tab=tab_1(검색일: 2021. 10. 7)

법령 자료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2021. 5. 18., 법률 제18178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약칭: 농어업인삶의 질법)」(2020. 12. 8., 법률 제17618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농어업인안전보험법)」, (2021. 6. 15., 법률 제18257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1553호).

「수산업법」(2021. 6. 15., 법률 제18288호).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약칭: 수산업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748호).

「수산업협동조합법」(2020. 2. 18., 법률 제17007호).

「양성평등기본법(2021. 4. 20., 법률 제18099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2019. 12. 10., 법률 제16786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21. 2. 25., 대통령령 제3148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21. 4. 27., 해양수산부령 제482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후계청년농어업인법)」(2020. 5. 19., 법률 제17278호).

C100 -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No. 100)

C111 -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No. 111)

C156 - Workers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Convention, 1981 (No. 156)

C183 -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2000 (No. 183)

관련 자료

김엘림(2013), 「여성노동관계법 60년사 성찰」, 『노동법학』, 47, 한국노동법학회, pp. 59~95.

농림축산식품부(2019),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박영진(2020), 『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추진 방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은정(2017), 「여성, 노동, 법」,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젠더법학회, pp. 119~147.

방하남·이상호(2006), 「좋은 일자리의 개념 구성 및 결정 요인의 분석」, 『한국사회학』,

40(1), 한국사회학회, pp. 93~126.

엄선희(2011), 「수산업 거버넌스 정립과 정책적 대응방안」, 『계간 해양수산』, 해양수산 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p. 98~117.

엄선희 외(2017), 『여성어업인의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해양수산부.

엄태석(2005), 「지역발전과 로컬 거버넌스-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15(3), 21세기정치학회, pp. 97~116.

임우연(2018),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19~2023) 수립 연구』, 기본과제 2018-04,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이선주·변화순·박성정(2010), 『북경행동강령 이행 15주년 점검 및 향후과제』, 연구보고서(수시과제)-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옥지(1996), 「성별직업분리 실태와 변화추이」, 『96년 10월 고용평등의 달 기념 심포지움 기념 자료집』,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1996년 남녀고용평등의 달 기념 정책토론회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발제문.

전영국(2017),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면담 및 심층면담에 관한 비교 고찰」, 『열린교육연구』, 25(1), 한국열린교육학회, pp. 147~168.

정성미(2014), 「여성 노동시장의 특징과 최근 변화」, 『월간 노동리뷰』, 2014년 6월호(통권 제111호), 한국노동연구원, pp. 5~19.

정은미·마상진·민자혜(2012),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방안(1/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은미 외(2013),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방안(2/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광석·이헌동(2014), 「새로운 수산업 개념 정립방안」, 현안분석 2014-0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성연·최진무(2016), 「활동공간에서 나타나는 계층 간 공간적 분리의 측정」, 『국토지리학회지』, 50(3), 국토지리학회, pp. 361~371.

황수경(2001), 「직종특성과 성별 직종분리: 미국 노동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가을호 2001, 한국노동연구원, pp. 1~29.

Alkire, S. *et al.*(2013), "The Women's Empowerment in Agriculture Index", *World Development*, 52, pp. 71-91.

Calhoun, S., F. Conway & S.Russell(2016), "Acknowledging the voice of women: implications for fisheries management and policy", *Marine Policy*, 74, pp. 292-299.

Cole, S. M. *et al.(2020)*, "Gender accommodative versus transformative approaches: a comparative assessment within a post-harvest fish loss reduction interven tion", *Gender, Technology and Development*, 24(1), pp. 1-18.

De Silva, D. A. M. (2011), *Faces of women in global fishery value chains: Female involvement, impact and importance in the fisherie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NORAD/FAO Value Chain Project.

FAO(2007), *Increasing the contribution of small-scale fisheries to poverty alleviation and food security*.

____(2013), *Good practice policies to eliminate gender inequalities in fish value chains*.

____(2015), *The role of women in the seafood industry*.

____(2015), *Voluntary Guidelines for Securing Sustainable Small-Scale Fisheries in the Context of Food Security and Poverty Eradication*.

____(2015), *Promoting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fisheries and aquaculture*.

____(2018), *WOMEN'S PARTICIPATION AND LEADERSHIP IN FISHERFOLK ORGANIZATIONS AND COLLECTIVE ACTION IN FISHERIES.*

Feed the Future(2014), *MEASURING PROGRESS TOWARD EMPOWERMENT Women's empowerment in agriculture index: Baseline report.*

Gopal, N. *et al.*(2014), "Gender in Aquaculture and Fisheries: Navigating Change", *Asian Fisheries Science*, 27, pp. 1-14.

Gopal, N. *et al.*(2020), "Expanding the horizons for women in fisheries and aquaculture", *Gender, Technology and Development*, 24, pp. 1-9.

Gustavsson, M.(2020), "Women's changing productive practices, gender relations and identities in fishing through a critical feminisation perspective", *Journal of Rural Studies*, 78, pp. 36-46.

Gustavsson, M. and M. Riley(2018), "Women, capitals and fishing lives: exploring

gendered dynamics in the Llŷn Peninsula small-scale fishery (Wales, UK)", *Maritime Studies*, 17, pp. 223–231.

Harper, S. *et al.*(2020), "Valuing invisible catches: Estimating the global contribution by women to small-scale marine capture fisheries production", PloS One, 15(3), pp. 1-16.

MACALISTER ELLIOTT AND PARTNERS LTD(2002), T*HE ROLE OF WOMEN IN THE FISHERIES SECTOR*, EUROPEAN COMMISSION.

Tilley, A. *et al.*(2021), "Contribution of women's fisheries substantial, but overlooke d, in Timor-Leste", Ambio, 50, pp. 113–124.

Williams, M. J. *et al.*(2002), *From women in fisheries to gender and fisheries*, Global Symposium on Women in Fisheries: Sixth Asian Fisheries Forum.

Yodanis, C. L.(2000), "Constructing Gender and Occupational Segregation: A Study of Women and Work in Fishing Communities", *Qualitative Sociology*, 23, pp. 267-290.

중앙일보(2019. 12. 22), 「"한국 성평등, 르완다보다 못한 108위"…다른 쪽선 10위 왜」, https://news.joins.com/article/23663187(검색일 : 2021. 6. 7)

Noaa Fisheries, https://www.fisheries.noaa.gov/feature-story/womens-global-fisheries-participation(검색일: 2021. 6. 5)

UN, https://www.un.org/womenwatch/daw/cedaw/text/econvention.htm#article11(검색일: 2021. 5. 31)

WHO, https://www.who.int/about/governance/constitution(검색일: 2021. 8. 11)

부록

1. 여성, 여성어업인 관련 국제 논의 동향 관련 자료

1) 여성 노동에 관한 이론적 검토 관련 자료

〈표 부록1-1〉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체계

서문
제 1부
제1조 차별의 정의, 제2조 당사국의 여성차별 철폐의무, 제3조 기본 인권 및 자유의 보장, 제4조 특별조치, 제5조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조치, 제6조 여성의 매매 및 매춘
제 2부
제7조 정치적·공적 활동, 제8조 여성의 국제적 활동, 제9조 여성의 국적 자유
제 3부
제10조 교육, 제11조 고용, 제12조 보건, 제13조 경제·사회적 활동, 제14조 농어촌(시골), 제14조 여성차별 철폐
제 4부
제15조 법 앞의 남녀평등, 제16조 혼인 및 가족관계에서의 여성차별 철폐
제 5부
제17조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운영 및 권한, 제18조 국가이행보고서, 제19조 절차·규칙, 제20조 위원회 회의, 제21조 위원회 보고서, 제22조 전문기관의 역할
제 6부
제23조 기타 조약에 대한 영향, 제24조 협약에 대한 해당국가의 의무 및 절차, 제25조~제30조 본 협약 관리 및 행정

자료: 여성가족부(검색일: 2021. 5. 30)

〈표 부록1-2〉 UN 여성차별철폐협약 법체계

사명 서언문
구조
주요 분야
주요 분야별 전략 목표 및 행동
A. 여성과 빈곤, B. 여성의 교육 · 훈련, C. 여성과 보건, D. 여성에 대한 폭력, E. 여성과 무력분쟁, F. 여성과 경제, G. 권력 및 의사결정과 여성, H.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L. 여성인권, J. 여성과 미디어, K. 여성과 환경, L. 여아
제도적 조치
A. 국가적 차원, B, 소지역·지역 차원, C. 국제적 차원
재정적 조치
A. 국가적 차원, B, 지역 차원, C. 국제적 차원
부록

자료: 세계법제정보센터(2011), p. 1

〈표 부록1-3〉 SDG 5번 목표 내용

세부 목표(targets)	
5.1	세계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5.2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인신매매, 성 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5.3	아동 결혼, 조혼, 강제결혼 및 여성 성기 절단 등 모든 악습 철폐
5.4	정치, 경제, 공공생활의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동등한 리더십 기회 보장
5.5	정치, 경제, 공공생활의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동등한 리더십 기회 보장
5.6	국제인구개발회의의 행동프로그램과 베이징 행동강령 및 그 후속 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성 및 생식건강과 생식 권리에 대한 모든 사람의 동등한 접근 보장
5.a	여성에게 국내법에 따라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줄 뿐만 아니라 토지, 자산, 재정서비스, 상속, 자연 자원의 소유와 관리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동등한 권리를 주기 위한 개혁 수행
5.b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기술사용의 확대
5.c	모든 수준에서 성 평등 증진과 여성·소녀의 권한강화를 위한 건전한 정책과 강제력 있는 법안의 채택과 강화

자료 :신혜수(2017), p. 54

〈표 부록1-4〉 성 관련 이슈들이 포함된 SDGs 목표

SDG 1. 빈곤 퇴치	1.2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범주에서 모든 연령대의 빈곤한 남성, 여성, 아동의 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감소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민층 및 취약계층의 경제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기초 서비스, 토지 및 다양한 형태의 자산 소유 및 관리, 상속, 자연 자원, 적절한 신기술, 소액융자 등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SDG 2. 기아 해소	2.2 2030년까지 모든 영양결핍 해소, 청소녀, 임부, 수유기 여성 및 노인의 영양적 필요에 대처 2.3 2030년까지 소규모 식량 생산자의 생산성과 수입을 두 배 증가, 특히 여성, 원주민, 가족농, 유목민, 어부 등 포함해서, 토지와 기타 생산자원, 투자, 지식, 재정서비스, 시장, 부가가치/비농업 고용기회 제공을 통함
SDG 3. 건강과 복지	3.1 2030년까지 전 세계 모성사망률을 출산 10만 명당 70명 미만으로 감소 3.7 2030년까지 성 및 생식건강 서비스 누구나 이용 가능케 하고, 가족계획, 정보와 교육, 국가전략과 프로그램에 생식건강 통합
SDG 4. 양질의 교육	4.1 2030년까지 모든 소년·소녀들이 무상으로 평등하게 양질의 초등, 중등교육을 완료하고 효과적인 배움의 결과 획득 4.2 2030년까지 모든 남녀 아동들이 양질의 조기 아동발달, 돌봄, 취학 전 교육을 받아서 초등교육 진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경제적 부담 없는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의 동등한 접근성 확보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격차를 철폐하고 모든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장애인, 원주민, 아동 등 취약계층의 동등한 접근성 확보 4.6 2030년까지 모든 청년 및 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녀의 문해력/수학력 확보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증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한 생활 스타일, 인권, 성 평등, 평화와 비폭력 증진, 지구시민권, 문화다양성의 존중 및 문화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바 등 교육 4.a 교육시설을 아동, 장애, 성 인지적으로 건설하고 개선하며,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모두에게 제공
SDG 6. 깨끗한 물과 위생	6.2 2030년까지 적절하고 공평한 위생시설에 대한 모두의 접근성 확보, 공개장소에서의 배변 척결, 여성과 여아 및 취약한 상황의 사람들에게 특히 관심 필요
SDG 8. 좋은일자리와 경제성장	8.5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청년, 장애인 포함-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고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 보장 8.8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과 불안정 고용상태의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 및 안전한 노동 환경 보장

SDG 10. 불평등 감소	10.2 2030년까지 연령,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적 또는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역량강화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통합 증진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1.2 2030년까지 안전하고 지불가능하며 접근성 높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모두에게 제공, 이는 무엇보다 여성,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특별한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대중교통을 확대함으로써 도로안전 개선 11.7 2030년까지 모두에게 안전하고 통합적이며 접근성 좋은 공공녹지 공간을 제공, 특히 여성과 어린이, 노인과 장애인 고려할 것.
SDG 13. 기후행동	13.b 저개발국과 소도서 개발도상국이 효과적인 기후변화관련 계획과 경영을 하도록 역량강화 메커니즘 설립, 여성, 청년, 지방 및 소외된 지역에 특별한 관심 포함
SDG 17. 글로벌 파트너십	17.18 2020년까지 저개발국과 소도서 개도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이 소득수준,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 신분, 지역, 또는 기타 국가적 특성별로 양질의 시의적 절하고 신뢰할만한 데이터 확보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역량강화 지원을 증진

자료 :신혜수(2017), pp. 55~56

2) 여성 노동 관련 국제 논의 동향 관련 자료

〈표 부록1-5〉 연도별 한국의 GII 순위

발표연도	기준연도	순위/대상	점수	생식 건강		여성 권한			노동 참여	
				모성사망비 1)	청소년 출산율 2)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3)		경제활동참가율 (%)4)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	’19	11/189	0.064	11	1.4	16.7	80.4	95.5	52.9	73.1
’19	’18	10/189	0.058	11	1.4	17.0	89.8	95.6	52.8	73.3
’18	’17	10/189	0.063	11	1.6	17.0	89.8	95.6	52.2	73.2
’17	’15	10/188	0.067	11	1.6	16.3	88.8	94.6	50.0	71.8
’15	’14	23/155	0.125	27	2.2	16.3	77.0	89.1	50.1	72.1
’14	’13	17/152	0.101	16	2.2	15.7	77.0	89.1	49.9	72.0
’13	’12	27/148	0.153	16	5.8	15.7	79.4	91.7	49.2	71.4

주: 1) 1) 모성사망비(UN Maternal Mortality Estimation Group, 2017) : 임신, 출산 관련 합병증으로 출생 10만명 당 사망 수
2) 2) 청소년 출산율(UNDESA, 2015~2020 추계치) : 15~19세 여성인구 1,000명 당 출산 수
3) 3)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비율(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15~2020 최근 값) : 25세 이상 인구 중, 중등교육(중 ·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
4) 4) 국제노동기구 통계 추계치(ILO, 2020)
자료: 여성가족부(2020), pp. 1~5

〈표 부록1-6〉 GII 상위 10위 국가 및 아시아 주요국 현황

국가명	순위	점수	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	
			모성 사망비	청소년출산율	여성의원 비율(%)	중등이상 교육받은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스위스	1	0.025	5	2.8	38.6	95.6	96.8	62.9	73.8
덴마크	2	0.038	4	4.1	39.1	91.2	90.9	58.2	66.3
스웨덴	3	0.039	4	5.1	47.3	89.3	89.5	61.4	67.8
네덜란드	4	0.043	5	3.8	33.8	87.6	90.3	58.3	69.1
벨기에	4	0.043	5	4.7	43.3	84.7	88.4	48.6	58.7
노르웨이	6	0.045	2	5.1	40.8	95.4	94.9	60.4	67.2
핀란드	7	0.047	3	5.8	47	100	100	55.5	62.8
프랑스	8	0.049	8	4.7	36.9	81.7	86.8	50.8	59.9
아이슬란드	9	0.058	4	6.3	38.1	100	100	70.8	79.2
슬로베니아	10	0.063	7	3.8	22.3	97.2	98.3	53.4	63.4
한국	11	0.064	11	1.4	16.7	80.4	95.5	52.9	73.1
싱가포르	12	0.065	8	3.5	23	78.1	85.1	62	78.3
일본	24	0.094	5	3.8	14.5	95.3	92.3	52.7	71.3
중국	39	0.168	29	7.6	24.9	76	83.3	60.5	75.3

자료: 여성가족부(2020), pp. 1~5

〈표 부록1-7〉 연도별 한국의 GGI 순위

발표연도	기준연도	순위/대상	점수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 수준	정치적 권력	건강과 생존
’21	’20	102/156	0.687	123위	104위	68위	54위
’20	’19	108/153	0.672	127위	101위	79위	1위
’18	’17	115/149	0.657	124위	100위	92위	87위
’17	’16	118/144	0.650	121위	105위	90위	84위

자료: 김선화·이재영(2020), p .7; World Economic Forum(2010), p. 241

〈표 부록1-8〉 성격차 상위 10위 국가 및 아시아 주요국 현황

국가명	순위	점수	전년도 순위
아이슬란드	1	0.892	1
핀란드	2	0.861	3
노르웨이	3	0.849	2
뉴질랜드	4	0.840	6
스웨덴	5	0.823	4
나미비아	6	0.809	12
르완다	7	0.805	9
리투아니아	8	0.804	33
아일랜드	9	0.800	7
스위스	10	0.798	18
싱가포르	54	0.727	54
인도네시아	101	0.688	85
대한민국	102	0.687	108
캄보디아	103	0.684	89
중국	107	0.682	106
일본	120	0.656	121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21), p. 10

〈표 부록1-9〉 연도별 한국의 GDI 순위

연도	그룹	HDI 성비	HDI 점수		건강한 삶		교육(지식)				적절한 표준 삶	
			여성	남성	출생 시 기대여명(세)[주1]		평균 교육 년수(년)[주2]		기대 교육 년수(년)[주3]		1인당 GNI(PPP$)[주4]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	3	0.936	0.881	0.941	86.0	79.9	15.9	17.0	11.4	12.9	27,734	58.309
’19	3	0.934	0.870	0.932	85.8	79.7	11.5	12.9	15.8	16.9	23,228	50,241
’17	3	0.932	0.866	0.929	85.3	79.2	11.4	12.9	15.9	17.1	22,572	49,297
’15	3	0.929	0.863	0.929	85.2	78.8	11.5	12.9	15.8	17.3	21,308	47,934
’14	3	0.930	0.861	0.926	85.0	78.5	11.2	12.7	16.0	17.7	21,896	46,018
					0.940		0.860		0.915		84.8	
’13	85/148	0.940	0.860	0.915	84.8	78.1	11.1	12.5	16.1	17.8	21,795	38,990
					(2013)		(2002-2012)		(2002-2012)		(2013)	

주: 1) 0세의 평균 기대수명
2)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
3) 학령기 아동이 기대하는 평균 기대 교육년수
4) 1인당 국민소득을 미국 달러 기준의 구매력평가 환율로 변경한 소득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검색일: 2021. 8. 28.)

2. 국내 여성어업인 관련 법·제도 관련 자료

1)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변천

〈표 부록2-1〉 1, 2차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과제

구분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
비전 · 목표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지위향상·삶의 질 제고를 통한 건강한 농촌가정의 구현과 농업·농촌사회의 발전	· 남녀 농업인이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남녀파트너쉽 정착
추진 전략 및 과제	·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 ㄴ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ㄴ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촉진 ㄴ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ㄴ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원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ㄴ 모자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ㄴ 농가도우미제도의 정착 · 여성농업인 정책시스템 구축 ㄴ 여성농업인정책과제의 개발연구 ㄴ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체계정비	·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ㄴ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인정 ㄴ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286] ㄴ 생산자조직 참여 확대 ㄴ 여성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ㄴ 국제결혼 이주 농촌여성 적응 지원 ㄴ 양성평등의식 확산[287] ·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 ㄴ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능력 및 리더쉽 향상 ㄴ 후계여성농업인력 육성 기반 확충 ㄴ 노동 생산성 향상과 노동 부담의 완화[288] ㄴ 여성농업인 창업활동 지원 ㄴ 농촌개발 리더로서 여성 농업인의 전문화 ·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ㄴ 연금 및 보험수급권 확대 ㄴ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확대 ㄴ 영농도우미 등 인력 지원 확충 ㄴ 여성농업인센터 확충 ㄴ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ㄴ 농어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ㄴ 농촌문화 여건의 개선 ㄴ 농촌종합문화복지관모델 개발 및 보급 ·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ㄴ정책추진체계의 구축 ㄴ 농업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확산 ㄴ 성인지적 통계의 생산과 활용 ㄴ 여성농업인 정책과제 개발

자료: 농림부,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2001~2005) 및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2006~2010)

286) 농림부소관 각종 위원회 여성위촉비율 확대 : ('06)38% → ('07 이후) 40% 이상으로 확대
지자체 농정관련위원회 여성위촉비율 확대 : 06)32% → ('07)34% → ('08)36% → ('09)38% →

〈표 부록2-2〉 3차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과제

구분	1차 기본계획
비전	· 창조성 · 전문성 · 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추진 전략 및 과제	·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 └ 공동경영인으로서 직업적 권익 향상 └ 여성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 추진 └ 정책결정과정 및 생산자조직 참여 확대 · 전문 농어업 경영역량 강화 └ 여성농어업인 역량 증진 교육 지원 └ 여성농어업인 창업지원 └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보급확대 ·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 농어촌 지역개발의 리더 육성 └ 농어촌 복지서비스 인력 양성 └ 신규 유입인력 정착지원 멘토 육성 └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 여성농어업인 모성보호 및 건강지원확대 └ 농어촌 보육 시설 확대 및 보육여건 개선 └ 농어촌지역 공동취사 활성화 └ 여성농어업인 문화활동 지원 · 정책추진 인프라 강화 └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 교육 확대 └ 지자체 여성 농어업인 육성 정책 강화 └ 여성농어업인 단체와의 정책 추진 거버넌스 구축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제3차('11~'15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10)40%(자료: 농림부(2006), pp. 18~19.)

287) 남녀가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3%(자료: 농림부, p. 27.)

288)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높은 농작업에 대한 기계장치 개발을 강화하고, 취급·조작이 용이하고 안전한 농기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농기계의 소형화·경량화, 자동화·로봇화로 편의성 증대 및 노동부담 경감하고자 한 것임(자료: 농림부(2006), pp. 35~36.)

〈표 부록2-3〉 4, 5차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과제

구분	4차 기본계획	5차 기본계획
비전·목표	·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	·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쉼터
추진 전략 및 과제	·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 여성농업인의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 └ 여성농업인 정책 참여 확대 └ 성주류화 정책 내실화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체계 개선 └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능력 향상 └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 ·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 여성농업인 지역역량 강화 └ 여성농업인 사회기여 활성화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 고령·영세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 ·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 다양한 농촌여성 융화 노력 └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정착 지원 └ 결혼이민여성 농촌인력 양성 지원	·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 농업·농촌 성평등 인식개선 및 문화확산 └ 여성농업인 대표성 강화 └ 성주류화 정책 내실화 └ 정책추진 체계 강화 ·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및 성인지적 교육체계 구축 └ 사회적 경제에서 여성의 역할 확대 └ 여성농업인 창업 및 경영지원 └ 여성농업인 지역사회 역할 지원 ·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 └ 일·가정 양립 및 복지서비스 강화 └ 노동경감 및 지원 └ 건강 및 안전제고 └ 문화·여가활동 지원 ·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 귀농·귀촌 여성 지원 └ 결혼이민여성 농촌인력 양성 지원 └ 다양한 계층의 여성농업인 활동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16~2020),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안)(2021~2025)

2)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시행 예산

〈표 부록2-4〉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2018년도 예산

(단위: 백만 원)

추진 과제	2018
합계	2,756
1.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30** **1.1%**
1-1. 관련 법령 · 제도 정비	-
- 모성권 보장 관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
-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 관련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
1-2. 거버넌스 확립	-
- 지방자치단체 여성어업인 정책 관심도 제고	-
-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기능 강화	-
- 여성어업인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기반 마련	-
1-3. 정책 확산을 위한 연구 및 홍보 강화	**30**
- 여성어업인 포럼 개최 및 정례화	30
- 성인지 교육 실시	-
2.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지원	**1,036** **37.6%**
2-1. 여성어업인 단체활동 강화	**76**
- 여성어업인단체 교육사업 및 조직활성화 지원	76
- 수협 여성임원 비중 확대를 위한 수협법 개정	-
2-2. 경제적 지위 강화 지원	**140**
- 수산 후계 인력 장학금 지원	140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여성어업인 지원 강화	-
2-3.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성 제고	**220**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110
- 지역별 특성에 따른 현장 특화교육 실시	17.5
- 다문화가정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17.5
- 어촌지역개발리더 교육	75
2-4. 여성친화형 작업 기반 구축	**600**
- 수산장비 임대사업	600
- 여성어업인 안전보험 보장 강화	-
3.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1,690** **61.3%**
3-1. 여성 맞춤형 서비스 확대	**790**
- 어업인 질환조사 및 예방 프로그램 보급	200
- 어업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지원	590
3-2.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900**
-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900

자료: 해양수산부(2018)

〈표 부록2-5〉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2019년도 예산

(단위: 백만 원)

추진 과제	2019
합계	3,756
1.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30** **0.8%**
1-1. 관련 법령 · 제도 정비	-
- 특화 건강검진 관련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령 개정	-
- 여성어업인센터 설치·운영 관련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	-
1-2. 거버넌스 확립	-
- 여성어업인 육성 자문회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	-
- 지방자치단체 여성어업인 정책 관심도 제고	-
1-3. 정책 확산을 위한 연구 및 홍보 강화	**30**
- 여성어업인 전국대회 및 포럼개최	30
- 권역별 여성어업인 육성 정책 설명회 개최	-
2.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지원	**2,286** **60.9%**
2-1. 여성어업인 단체활동 강화	**60**
- 여성어업인단체 교육사업 및 조직활성화 지원	60
- 수협 여성임원 비중 확대를 위한 수협법 개정	-
- 정부위원회 및 행사에 여성어업인 및 단체 참여 확대	-
2-2. 경제적 지위 강화 지원	**252**
- 수산계 고등학교 여학생 지원 확대방안 검토	-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여성어업인 지원 강화	-
-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의 여성어업인 우선 선정비율 확대	252
2-3.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성 제고	**201**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여성어업인 아카데미)	110
- 어촌지역개발리더 교육(여성 수료생 70%)	91
- 지역 여성어업인 리더와 창업어가 멘토 연계	-
2-4. 여성친화형 작업 기반 구축	**1,773**
- 여성어업인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 검토	-
- 여성어업인 안전보험 보장 강화	1,773
3.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1,440** **38.3%**
3-1. 여성 맞춤형 서비스 확대	**200**
- 어업인 질환조사 및 예방 프로그램 보급	200
- 어업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지원	-
3-2.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1,240**
-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900
- 안전조업 교육 등의 현장방문 훈련 진행	340

자료: 해양수산부(2019)

〈표 부록2-6〉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2020년도 예산

(단위: 백만 원)

추진 과제	2020
합계	4,058
1.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30** **0.7%**
1-1. 관련 법령 · 제도 정비	-
- 특화 건강검진 관련 시행규칙 개정	-
- 공동경영주 제도 실효성 확보	-
- 여성어업인 지원 조례 제·개정	-
1-2. 거버넌스 확립	-
- 여성어업인 육성 자문회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	-
- 지방자치단체 여성어업인 정책 관심도 제고	-
1-3. 정책 확산을 위한 연구 및 홍보 강화	**30**
- 여성어업인 전국대회 및 포럼개최	30
- 권역별 여성어업인 육성 정책 설명회 개최	-
- 전국단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추진	-
2.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지원	**2,313** **57.0%**
2-1. 여성어업인 단체활동 강화	**60**
- 여성어업인단체 교육사업 및 조직활성화 지원	60
- 수협 여성임원 비중 확대를 위한 수협법 개정	-
- 정부위원회 및 행사에 여성어업인 및 단체 참여 확대	-
2-2. 경제적 지위 강화 지원	**252**
- 공동경영주제도 교육 및 홍보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홍보(어촌계, 여성어업인 연계 교육)	-
-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 여성어업인 우선 선정	252
2-3.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성 제고	**201**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여성어업인 아카데미)	110
- 어촌지역개발리더 교육	91
- 수산계열 학교 여학생 지원 확대방안 마련	-
2-4. 여성친화형 작업 기반 구축	**1,800**
- 여성친화형 기자재 개발	-
- 여성어업인 안전보험 보장 강화	1,800
3.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1,715** **42.3%**
3-1. 여성 맞춤형 서비스 확대	**500**
- 어업인 질환조사 및 예방 프로그램 보급	200
-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제도 도입 추진	300
- 행복바우처 및 지원센터 사업 여성어업인에도 확대	-
3-2.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1,215**
-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900
-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서비스 제공	315

자료: 해양수산부(2020)

3. 선행연구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세부 구성

〈표 부록3-1〉 선행연구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세부 구성

구분	최성애·황진회·엄선희(2015)	구분	이창수·박지훈(2017, 2019)
노동 실태	종사기간, 종사어업종류, 겸업실태, 일평균 노동시간, 어업작업 및 경영의사결정, 어업노동 정체성, 어업노동 참여 정도, 어업노동 만족도, 어업노동 애로사항, 컴퓨터 이용현황	어업 노동 실태 및 인식	경력, 어업종류, 조업 및 작업형태, 조업활동 형태, 어업시기, 어업동기, 노동시간, 어업종사 형태, 어업활동 시 본인 위치에 대한 인식, 어업 의사결정권, 총수입 기여도, 어업노동 만족도, 어업노동 애로사항,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인지도 및 추가 지불의사, 가입 단체 현황, 단체활동 시 애로사항 등
가사 노동 및 생활 만족도	가사노동 부담 정도, 가사노동 역할분담, 여가시간 현황, 생활 만족도, 향후 경제생활 전망, 소득충족도, 총수입 기여도	가사 노동 및 생활 만족도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 및 분담 정도, 가정생활 만족도
복지 실태	노후부양, 건강, 보호노동 및 보육시설, 건강상태 및 건강검진실태, 노후생활 대책, 연금가입현황, 관광 및 문화행사 참여 현황	교육 실태 및 인식	자격증 취득 현황 및 인식, 어업관련 교육에 대한 중요성 및 참여실태, 교육 참여의 애로점, 참여 희망 교육 프로그램, 수협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참여 실태, 향후 교육 참여 의향
정책 수요	단체 및 조직가입 현황, 관련제도 인지 및 시설 이용현황, 필요정책 및 시설수요, 여성전문인력 요건, 여성노동에 적합한 시설개선	정책 수요	여성어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요건, 정부 정책에 대한 필요성
		정부 및 지원 기구 인식 (2019)	해양수산부, 한국여성어업인단체의 역할 및 기여, 여성어업인지원 기구의 필요성, 여성어업인 단체에 대한 인지 정도 등

자료: 최성애·황진회·엄선희(2015), pp. 92-94; 이창수·박지훈(2017), pp. 35-37; 이창수·박지훈(2019), pp. 9-10

4. 여성어업인 노동환경에 관한 설문조사지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ID

www.kmi.re.kr
우)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여성어업인 노동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해양수산 정책을 개발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2021년 「**여성어업인 노동정책 방향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어촌 거주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귀하의 귀중한 의견은 **여성어업인 관련 정책 수립 및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본 설문에서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2021. 8.

문의 사항	한국해양수산개발원(주관기관) 담당자: 홍혜수 전문연구원 (051-797-4553)	리서치앤리서치(실태조사 수행기관) 담당자: 정재원 차장 (02-3484-3045) 담당자: 김성구 전임연구원 (02-3484-3073)

응답자 기본 사항			
응답자 성명		연락처(핸드폰)	
응답자 주소	( ) 시/도 ( ) 시/군/구 ( ) 읍/면/동		
면접 일시	_____월 _____일 _____시		

조사 시 유의 사항

- 2021년 8월 현재 **어촌**에 거주하는 어가 구성원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남성 또는 여성**이 조사 대상입니다.
- 본 조사의 대상은 연안 어선어업(정치망 등 구획어업, 마을어업 포함), 내수면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소금생산업, 양식업(해조류, 패류 등)과 일부 수산물 가공업을 포함합니다.
- 일부 수산물 가공업은 패류껍질 까기, 어획물 선별 및 비늘 제거, 해조류(미역, 김, 다시마) 및 명태 등 가공(건조 등), 수산물 산지(어항 및 양식장)판매 또는 유통을 의미합니다.
- 본 조사 응답시점은 **2021년 8월** 기준입니다.

면접원 기본사항				
본 면접 조사는 면접지침 사항 내용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 합니다	**면접원 성명 :** **ID** _____	**S/V 확인**	**검증원 확인**	**에디터확인**

SQ1.	귀하는 현재 어업(수산물 가공업 포함)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요 조사 종료

PART A. 기본 사항

A-1.	귀하는 현재 주로 어떤 어업에 종사하십니까?	1) 연안 어업 2) 양식어업 3) 맨손/나잠업 4) 수산물 가공업
A-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A-3.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1) 20~29세 2) 30~39세 3) 40~44세 4) 45~49세 5) 50~54세 6) 55~59세 7) 60~64세 8) 65~69세 9) 70~74세 10) 75~79세 11) 80세 이상
A-4.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1) 부산 2) 대구 3) 인천 4) 울산 5) 경기 6) 강원 7) 충남 8) 전북 9) 전남 10) 경북 11) 경남 12) 제주
A-5.	귀하는 어떤 형태로 어업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1) 어업경영주(어업인) 2) 어업경영주의 가족원 3) 종사자(고용인) 4) 기타

PART B. 가구 현황

B-1. 귀하께서 현재 함께 거주하고 계신 가족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1) 배우자 2) 자녀 3)사위/ 며느리 4) 본인 부모 5)시 부모/빙부모
6) 손자/손녀 7) 손자 며느리/사위 8) 조부모 9) 형제자매
10) 기타친인척 11) 고용인 12) 홀로 거주 13) 기타 ( )

B-2.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같이 거주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가 있으실 경우 몇 명 있습니까?

1) 없다 ☞ PART C로 이동 2) 있다 ☞ B-3으로 이동

B-3. 귀하는 자녀로부터 생활비 보조를 받습니까? 1) 받지 않는다 2) 받는다

B-4. 귀하는 자녀로부터 노동력 보조를 받습니까? (일손 돕기, 1년 기준) 받는다면, 연간 며칠을 받습니까?

1) 받지 않는다 2) 10일 이하 3) 11일~30일 4) 31~60일 5) 61일 이상

B-5. 귀하는 향후 자녀에게 어업을 물려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1) 없다 2) 있다

PART C. 어업 및 경제활동 관련

C-1. 귀하께서 어업에 종사한 기간은 몇 년입니까? 총 [ ][ ] 년

C-2. 지난 1년 중 어업에 종사한 기간은 몇 개월 입니까?

1) 3개월 미만 2) 3~6개월 미만 3) 6~9개월 미만 4) 9개월 이상

C-3. 지난 1년 중 어업 이외 일에 종사하셨습니까? 종사하셨다면, 기간을 몇 개월 입니까?

1) 없음 2) 1개월 미만 3) 1~3개월 미만 4) 3~6개월 이상 5) 6개월 이상

C-4. 지난 1년간 어업 소득이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부적인 어종/품목도 응답 부탁드립니다.

1순위 ( ) 구체적 어종/품목 ( )

2순위 ( ) 구체적 어종/품목 ( )

1) 어선어업(정치망 외) 2) 어선어업(정치망) 3) 해조류 양식 4) 해면어류 양식
5) 패류양식 6) 육상어패류 양식 7) 해조류 등 채취 8) 나잠어업
9) 맨손어업 10) 수산물 가공 11)기타 ( )

※ C-5~6번은 C-4번의 1) 2) 어선어업 대상자만 응답합니다.

C-5. 귀댁은 어선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소유하신 경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1) 소유 안함 2) 2톤 미만 3) 2~5톤 미만 4) 5~10톤 미만
5) 10~20톤 미만 6) 20~50톤 미만 7) 50톤 이상

C-6. 귀하께서는 어선에 본인이 승선하십니까?

1) 부부함께 승선 2) 본인만 승선 3) 배우자만 승선 4) 타 가족/공동체의 어선에 승선
5) 기타 ( )

※ C-7번은 C-4번의 1) 2) 어선어업 이외 종사 대상자만 응답합니다.

C-7. 귀하께서는 평소 작업을 어떻게 하십니까?

1) 부부함께 작업 2) 본인만 작업 3) 배우자만 작업 4) 타 가족/공동체의 작업에 참여
5) 기타 ( )

C-8. 귀하가 어업에 종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1) 배우자의 본가가 어업에 종사 2) 자신의 본가가 어업에 종사
3) 어업에 종사하는 배우자를 도와 종사 4) 귀어한 배우자를 따라 어업에 종사(귀어 배우자 선택)
5) 어업이 좋아서 어업 종사(귀어 본인 선택) 6) 기타(구체적으로)

C-8-1. (C-8번에서 4)5) 귀어하신 분들만) 귀하께서 귀어하신 계기는 무엇입니까?

C-9. 귀댁에서 하는 어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 본인 2) 배우자 3) 부부공동 4) 시부모 5) 빙부모
6) 자녀 7) 형제/자매 8) 기타

C-10. 아래 활동과 관련하여 귀하와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의 평균 업무 분담비율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활동에 본인 또는 다른 가족이 종사하지 않는 경우 0%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본인	배우자(다른 가족)	합계
1. 어업노동	전체의 ( )% 담당	전체의 ( )% 담당	100%
2. 어획 후 노동	전체의 ( )% 담당	전체의 ( )% 담당	100%
3. 가사노동	전체의 ( )% 담당	전체의 ( )% 담당	100%
4. 기타노동	전체의 ( )% 담당	전체의 ( )% 담당	100%

※ 어업노동은 어선어업의 경우 승선 후 조업 등 생산 활동을 의미하며, 어획 후 노동은 그물 손질, 어획물 분류, 건조 등 생산 이후 활동을 의미함

C-10-1. 귀댁의 지난 1년 간 전체 어업활동을 100%라고 하였을 때, 본인은 몇 퍼센트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댁의 어업 활동 중 본인 기여 ( )%

C-11. 귀하께서는 어업생산 이외 분야에서 일하며 소득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1) 없다 2) 수산물 가공(과메기 손질 등 상품화)
3) 수산물 판매(직거래, 온라인 등) 4) 어촌관광사업(민박 등) 5) 유어 낚시
6) 농업 7) 임업 8) 제조업
9) 건설업 10) 도·소매업 11) 숙박, 음식업
12)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어업 임금노동(품삯 노동 포함)
13) 기타( )

C-12. 귀하께서 향후 어업생산 이외 분야에서 일하고 싶으면 분야가 있으시다면 순서대로 5가지를 체크해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4순위 ( ) 5순위 ( )

1) 의향 없다 ☞ C-15로 이동 2) 수산물 가공 3)(과메기 손질 등 상품화)
4) 수산물 판매(직거래, 온라인 등) 5) 어촌관광사업(민박 등)
6) 유어 낚시 7) 농업 8) 자영업
9) 일반 직장 취업 10)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어업 임금노동(품삯 노동 포함)
11) 기타( )

C-13. (C11번에 어업생산 외 분야에 일하고 있거나, C12번에 일하고 싶으신 분들만) 귀하께서 어업생산 이외 소득활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2) 일할 수 있을 때 추가소득 마련하려고 (노후자금 마련)
3) 유후시설(장비)를 잘 활용하고 싶어서 4) 내가 가진 재능(장점)을 활용하고 싶어서
5)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 6) 타인의 권유(정책적 지원이 있어서)
7) 기타(구체적:)

C-14. 어업생산 이외 소득활동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장애요인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1) 내 능력(지식/기술) 부족 2) 일을 해볼 기회나 관련 정보 부족
4) 신체적 한계(질병 또는 육체적 한계 포함) 5) 자본금 부족
6) 자신감 부족 7) 서류작성의 어려움
8) 가족이 반대하여 9) 어업생산이 바빠 시간적 여유가 없음
10) 기타(구체적:)

C-15. 귀하는 귀댁에서 어업인으로 자신의 지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경영주(어업인) 2) 공동경영주 3) 가족종사자(보수를 받는 유급)
4) 가족종사자(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 5) 기타(구체적:)

C-16. 다음 중 귀하의 명의로 된 자산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1) 집 또는 건물 2) 어선 또는 양식장 3) 면허권 또는 허가권
4) 본인 명의 보험 5) 본인 명의 예금통장 6) 기타 금융자산(주식, 펀드 등)
7) 본인 명의 토지 8) 기타(구체적:) 9) 본인 명의 자산이 없음

C-17. 귀하는 현재 '어업인'이라는 본인의 직업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 2) 불만 3) 약간 불만 4) 보통 5) 약간 만족 6) 만족 7) 매우 만족

PART D. 의사결정 및 사회적 활동 관련

D-1. (2인 이상 가구만 응답) 어업생산 활동 및 소득과 관련하여 귀하의 가구 내 의사결정 권한(생산 방식, 소득 사용 등) 및 본인의 의사 결정 반영 정도에 관해 응답해 주십시오.

활동	가구 내 의사결정은?					본인 외 주요 의사결정자	
	가구원이 모두 결정	가구원 의견이 조금 더 반영	본인과 가구원 반반 결정	본인 의견이 좀 더 반영	본인이 모두 결정	배우자	다른 가구원
1) 어업생산	1	2	3	4	5	1	2
2) 어획물 가공	1	2	3	4	5	1	2
3) 어획물 판매	1	2	3	4	5	1	2
4) 어업 외 경제활동	1	2	3	4	5	1	2
5) 주요 가계 지출 (장비 구입 등)	1	2	3	4	5	1	2
6) 소규모 가계 지출 (식료품 등)	1	2	3	4	5	1	2

D-2. 귀하가 참여하고 계신 어업 관련 모임 및 조직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 참여하신 단체의 참여 정도와 해당 단체 임원 여부(어촌계장, 임원진, 사무국장 등)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단체 종류		가입 여부		(가입 시) 참여 정도			가입 단체 임원 여부	
		가입 안함	가입함	거의 참여 안함	가끔 참여	수시로 참여	임원 아님	임원임
1	수협 조합원	1	2	1	2	3	1	2
2	어촌계	1	2	1	2	3	1	2
3	어촌지도자협의회	1	2	1	2	3	1	2
4	영어조합법인	1	2	1	2	3	1	2
5	어업인후계자	1	2	1	2	3	1	2
6	여성어업인단체	1	2	1	2	3	1	2
7	마을개발위원회	1	2	1	2	3	1	2
8	지역여성단체	1	2	1	2	3	1	2
9	마을부녀회	1	2	1	2	3	1	2
10	계모임(친목, 동창회)	1	2	1	2	3	1	2
11	기타 단체( )	1	2	1	2	3	1	2

PART E. 건강, 문화 등 삶의 질 관련

E-1. 귀하의 평소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나쁨 2)대체로 나쁨 3) 보통 4) 대체로 좋음 5) 매우 좋음

E-2. 귀하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어떤 질환을 얻으셨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1) 목 및 어깨 결림 2) 허리 통증 3) 손발저림 4) 방광염
5) 빈뇨(잦은 소변) 6) 자궁 및 난소 등 산부인과계 질환 7) 불면증
8) 어지러움 9) 복부 팽만감 10) 메스꺼움 11) 두통
12) 부종 13) 소화불량 14) 호흡곤란 15) 무릎 통증
16) 기타(구체적:)

E-3. 최근 3년간 몸이 아플 때 주로 이용한 곳은 어디입니까?(1가지만)

1) 병/의원 2) 한의원 3) 보건소 4) 약국 5) 대학병원 6) 기타( )

E-4. 귀하 또는 귀하 가족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데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1) 의료기관까지 멀다
2) 병원 갈 시간이 부족하다
3) 의료 서비스가 좋지 않다
4)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5) 진료 대기시간이 길다
6) 절차가 복잡하다
7) 의료 정보를 얻거나 상담받기 힘들다
8) 의료기관까지 이동(거동)하기 어렵다
9) 의료 시설이 없다
10) 기타 ( )
11) 힘든 점이 없다

E-5. 귀하께서 가장 최근 국민건강보험 포함해서, 일반종합건강검진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1) 1년 이내 ☞E-7 2) 1~2년 이내 ☞E-7
3) 2~4년 이내 ☞E-6 4) 4년 이전 ☞E-6 5) 받은 적 없다 ☞E-6

E-6. (E-6번의 3)~5) 응답자만) 귀하께서 1~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1)정기적 검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 검진 시간을 낼 수 없어서
3) 일을 쉬고 검진을 받으면 수입이 줄어서 4) 검진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5) 검진기관이 멀어서(교통 불편) 6) 검진 대기시간이 길어서
7) 현재도 충분히 건강해서 8) 기타 ( )

E-7.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문화·여가활동을 직접 관람하거나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이용 횟수와 이용 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E-7-1. 문화·여가활동	E-7-2. 문화 시설
종류	전시회, 국악·민속놀이, 음악회, 연극, 무용, 공연, 영화 등	문화(예술)회관, 시민(군민, 구민)회관, 공공도서관, 복지시설 등
1. 이용 횟수	1) 1년에 4번 이상 2) 1년에 3번 이하 3) 없다	1) 1년에 4번 이상 2) 1년에 3번 이하 3) 없다
2. 이용 장소	1) 해당 읍면 2) 해당 시 3) 근처 중소도시 4) 대도시	1) 해당 읍면 2) 해당 시 3) 근처 중소도시 4) 대도시

E-8. 귀하께서 문화·여가활동을 하지 못하셨거나 이용 횟수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1) 경제적 부담 2) 시간 부족 3) 교통 불편 4) 시설부족
5) 정보 부족 6) 의향 없음 7) 건강·체력 부족 8) 기타( )

PART F. 시간 활용

F-1. 귀하께서는 지난 1달 간 평균적으로 다음 활동을 하셨습니까? 하셨다면,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시간을 사용하셨습니까?

	활동 종류	활동 여부		활동 시간
		활동안함	활동함	
1	수면			( ) 시간 ( ) 분
2	식사 및 간식			( ) 시간 ( ) 분
3	개인위생 및 외모관리 (치료, 위생, 외모관리, 이미용 등)	1	2	( ) 시간 ( ) 분
4	어업활동(임금)	1	2	( ) 시간 ( ) 분
5	어업 외 활동(임금)	1	2	( ) 시간 ( ) 분
6	무급가족 노동(어업 등)	1	2	( ) 시간 ( ) 분
7	학습	1	2	( ) 시간 ( ) 분
8	가사노동	1	2	( ) 시간 ( ) 분
9	미성년 가구원 돌보기	1	2	( ) 시간 ( ) 분
10	성인 가구원 돌보기	1	2	( ) 시간 ( ) 분
11	교제 및 참여활동 (종교, 공동체 등)	1	2	( ) 시간 ( ) 분
12	문화 활동 (영화, 스포츠 관람 등)	1	2	( ) 시간 ( ) 분
13	미디어 이용 여가 (티비, 책읽기 등)	1	2	( ) 시간 ( ) 분
14	스포츠 및 레포츠(조깅 등)	1	2	( ) 시간 ( ) 분
15	그 외 휴식	1	2	( ) 시간 ( ) 분
16	기타 활동	1	2	( ) 시간 ( ) 분
	총 시간			24시간

F-2. 답변해주신 24시간 동안의 활동이 지난 1년 기준 평소 수준입니까?

1) 평소보다 길게 일함　　2) 평소 수준　　3) 평소보다 적음

PART G. 여성어업인 관련 정책 수요 및 애로사항 (여성 응답자만)

※ 이하 여성만 응답 부탁드립니다.

[교육 및 역량강화]

G-1. 귀하는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 관련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중요 안함 2) 별로 중요 안함 3) 보통 4) 대체로 중요 5) 매우 중요

G-2. 귀하는 평소 어업 관련 각종 교육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1) 참석 경험이 없음 2) 거의 참석하지 않음 3) 2~3년에 한번 정도 참석
4) 1년에 1~2번 참석 5) 1년에 3~4번 이상 참석 6) 기타( )

G-3. 귀하께서는 어떤 내용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1) 수산물 판매·마케팅 2) 어촌 관광사업 3) 취미·교양·여가
4) 부업·자격증 취득 5) 정보화 교육 6) 어업 경영자 교육
7) 어로 기술(어선 운항 등) 8) 양식기술 9) 성인지 교육
10) 위기 대처 및 안전 교육 11) 기타( )

G-4. 귀하께서 여성어업인으로 교육 참여에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1) 어업일 및 가사일을 대신할 사람이 없음 2) 아이나 노인을 돌보아 줄 사람이 없음
3) 교육내용이 재미있지 않음 4) 여성어업인 참여 기회가 적음
5) 교육 장소까지 이동이 어려움 6)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
7) 기타( )

G-5.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여성어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하거나 강화해야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1) 여성어업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술 교육 및 훈련 지원
2) 여성어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3) 어촌생활돌봄 지원 사업(구, 가사도우미사업) 확대
4) 어업활동지원 사업(구, 어업도우미 사업) 확대
5) 여성어업인 우대제도(수산경영인 육성사업 우선권 확대, 어업허가, 면허 등에 우선권 부여)
6) 여성어업인 여가 및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바우처(쿠폰) 확대
7) 어업 정책 관련 도 시군 위원회 여성 위원 수 증가
8) 어업 경영 지원 우대(정책 자금 및 금리 우대 등)
9) 기타 ( )

[사회적 활동]

G-6. 여성어업인으로 어촌계, 수협 등 <u>지역사회활동에 참여</u>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어려움이 큰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1) 남편 등 가족 구성원이 활동을 원하지 않음 2) 일이 바빠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
3) 건강, 체력적으로 어려움 4) 가사일과 돌봄 일로 집을 비울 수 없음
6)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함 7) 단체 및 조직이 남성 중심으로 운영됨
8)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9) 기타 ( )

G-7. 귀하는 지역사회에서 현재 여성어업인의 지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여성지위는) 예전처럼 여전히 남성보다 낮다 2) (여성지위는) 예전보다 높아졌으나 아직 남성보다 낮다
3) (여성지위는) 남성과 같다 4) (여성지위는) 남성보다 높을 때가 있다
5) 잘 모르겠다

G-8. 귀하께서는 현재 자신의 어업 노동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 2) 약간 불만 3) 보통 4) 약간 만족 5) 매우 만족

G-8-1. (불만족한 응답자만)어업 노동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G-9. 귀하는 어촌사회에서 여성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1) 여성 자신의 의지.의식 향상
2) 사회활동에 대한 가족들의 이해
3) 여성 자신의 능력 향상
4) 여성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인맥)
5) 어업 관련 정보나 습득기회 제공
6) 어촌사회 내 여성 사회활동에 관한 이해 제고
7) 어업 경영 참여 확대
8) 마케팅 기술 교육
9) 어업관련 단체 회원 자격요건 완화
10) 기타 ( )

[애로사항]

G-10. 귀하가 어업에 종사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1) 체력 및 건강상의 문제
2) 일과 가정생활(청소, 식사준비, 빨래, 육아 등 가사일)을 함께 해야 하는 어려움
3) 남성 중심 문화와 여성차별
4) 어업에 대한 지식 및 정보의 부족
5) 남성 중심의 작업 환경
6) 어업의 위험성과 안전문제
7) 일한 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점
8) 기타 ( )

G-11. 귀하가 어업과 가정생활을 함께 하시는 데 겪는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1) 식사, 빨래 등 기본적인 가사
2) 본인 건강 이상
3) 혼자만의 여가 시간 부족
4) 자녀보육(취학 전 아동)
5) 자녀교육(취학 이후)
6) 부모님, 가족 중 환자 등 돌봄
7) 어려운 점이 없다
8) 잘 모르겠다
9) 기타( )

G-12. 귀하는 여성어업인을 위해 향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 **1순위 ( ) 2순위 ( )**

1) 여성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2) 여성어업인의 가중한 노동 부담 경감
3) 여성어업인의 안전한 어업 환경조성
4) 여성어업인의 복지시설 및 복지제도 확대
5) 여성어업인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6) 다양한 진출을 위한 기술과 자금 지원
7) 남성중심 문화와 여성차별 해소
8) 정보화/마케팅 전문 경영교육 강화
9) 아동 및 노인 돌봄 지원
10) 기타 ( )

[정책수요]

G-13. 여성어업인을 위한 다음의 정책지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3가지와, 본인에게 가장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3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2) 본인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 직업 교육·훈련
2) 건강 및 의료서비스
3) 취미·문화생활
4) 가족상담 및 부부교육
5) 여성어업인지원센터 건립 (휴식, 상담, 훈련, 네트워크 형성 등)
6) 여성어업인단체 활성화
7) 어촌계 등 지역사회 참여 지원
8) 안전교육
9) 여성친화적 작업환경 조성 (기계, 장비, 시설 개선)
10) 지역사회 성차별 해소
11) 여성어업인 우대제도 (자금지원, 자격취득 등)
12) 어촌생활돌봄 지원 확대
13) 어업경영 지원우대
14) 어업활동지원 확대
15) 어업 정책 관련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16) 기타 ( )

G-14. 이 외 귀하께서, 여성어업인을 위한 정책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PART H. 응답자 특성

※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서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H-1. 귀댁의 세후 가구 총 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 (어업 및 어업 외 소득 포함)
1) 1,000만원 미만
2) 1,000~2,000만원 미만
3) 2,000~3,000만원 미만
4) 3,000만원~5,000만원 미만
5) 5,000~1억원 미만
6) 1억원 이상

H-2. 귀댁의 1년간 어업소득은 얼마입니까?
1) 500만원 미만
2) 500~1,000만원 미만
3) 1,000~2,000만원 미만
4) 2,000~3,000만원 미만
5) 3,000만원~5,000만원 미만
6) 5,000~7,000만원 미만
7) 7,000~1억원 미만
8) 1억원 이상

H-3. 귀하의 학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중퇴 포함)
1) 받지않음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전문대졸
6) 4년제 대학 이상

H-4. 실례지만 귀하께서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1)미혼
2)기혼, 배우자 있음
3) 기혼, 배우자 없음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21년

01	시민참여형 해안돌봄 정책 도입방안 연구	정지호
02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선박 운항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김보람
03	여성어업인 노동정책 방향 연구	홍혜수
04	순환경제 시스템을 활용한 어업폐기물의 자원화 방안 연구	고동훈
05	1conomy 시대, HMR 시장 확대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전략 수립 연구	마창모
06	AIS 데이터 기반 해상교통 안전 평가모델 개발 연구	황선일
07	항만 에너지 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로드맵 구축 연구 - 부산항 신항 전기에너지 소비를 중심으로 -	김근섭
08	해양분야 리빙랩 활성화 방안 연구	좌미라
09	빅데이터의 연계·활용을 통한 선박의 배출량 산정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안용성
10	해양공간계획 집행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최희정
11	수산식품산업 푸드테크 환경분석 및 적용전략 연구	이상건
12	AIS데이터기반 해상물동량 추정 연구	황수진
13	항만부문 정책의사결정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이기열
14	항만 컨테이너 물류 프로세스 디지털화 모형 연구	서정용
15	해양수산 분야 국제산업연관표 구축기반 연구	정수빈
16	해양수산 과학기술 정책평가모형 연구 - 해양수산 R&D를 중심으로 -	전형모
17	글로벌 경제위기와 해운산업 대응체계 연구	박성화
18	항만산업 경기진단체계 구축 연구 - 경기동행지수 개발을 중심으로 -	김성아
19	전국 무역항 부두 분류 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수영
20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글로벌 지속발전방안 연구 - 新해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제화 연구(5차년도) -	박한선
21	수소에너지 거점 구축을 위한 항만의 대응방안 연구	신수용

2020년

01	해양수산업의 지역 간 연관구조 분석	장정인
02	해양수산 분야 기술 대외의존도 분석연구 - 스마트항만을 중심으로 -	전형모
03	지역 해양수산 오픈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최지연
04	갯벌 거버넌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육근형
05	해양환경정책의 능동적 추진을 위한 재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	박수진
06	항만 대기환경 관리 표준 및 평가모형 연구	안용성
07	해양수산분야 사회문제해결형 R&D 기반 구축 연구	좌미라
08	해양 유입 하천쓰레기 관리체계 개선방안	이윤정
09	수산식품 품질·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헌동
10	국제법 변화에 대응한 어선원 안전 및 권리 제고방안 연구	한덕훈
11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추진 방안 수립 연구	이상철
12	해양포유류 보호에 관한 수산업 대응 방안 연구	정명화
13	수산물 수급통계 개선 방안 연구	김수현
14	IMO 온실가스 규제 대응 정책방향 연구	박한선
15	퇴직전문가 활용을 통한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안영균
16	글로벌 선사들의 물류통합화 전략에 대한 국적선사의 대응방안	전형진
17	내항여객운송항로 정책 발전방안 연구	김태일
18	블록체인 기술기반 식품콜드체인 체계 구축 연구	조지성
19	항만자동화 도입 관련 노무 갈등 해소 방안 연구	김찬호
20	스마트항만과 스마트도시 연계 발전 방안 연구	이언경
21	항만의 회복탄력성 측정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김성기
22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글로벌 지속발전방안 연구 - 新해사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연구(4차년도) -	박한선
23	국내 항만연계 산업의 가치사슬 및 공급사슬 연계성 강화방안 -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신수용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21년

01	해양환경산업 육성 방안 연구	한기원
02	선원의 인권 및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선원근로감독관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허성례
03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지역 해양축제 활성화 연구	최일선
04	회복탄력성 개념을 적용한 항만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김성기
0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항만에서의 대응방안 연구	최상균
06	크루즈산업 COVID-19 방역체계 구축방안 연구	황진회
07	한국형 선주사의 최적 운영방안 연구	고병욱
08	어촌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	이호림
09	원양산업의 ESG 도입 기초 연구	윤미경
10	수상레저활동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홍장원
11	연안지역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_간척지·담수호 중심으로	정지호
12	스마트항만 구축에 따른 탄소저감 효과 연구 - 동력전환을 중심으로 -	김가현

2020년

01	포스트 코로나 19 해양수산 분야 정책방안	박광서
02	생분해성 어구 사용 활성화 방안 연구	심성현
03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박영길
04	무인도서 해양주권 강화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정지호
05	지역 해양수산 재정분권 대응방향	황재희
06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항만·물류 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	이기열
07	양식 활어 유통 효율화 방안 연구	마창모
08	해양레저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	홍장원
09	해양바이오기업의 규제 정비 방안 연구	최석문
10	비상체제 시 선원의 안전을 위한 선박-항만-항공 이동경로 구축방안	이혜진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21년

01	해양수산 정책영향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김주현
02	해양교육의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 연구	이슬기
03	해양수산업 경기진단체계 기초연구 - 해운업을 중심으로	권장한
04	선박 기술진보를 고려한 탄소 배출량 추정 연구	최건우
05	서포트벡터머신(SVM) 기법을 활용한 해운시황 예측 연구	김병주
06	크루즈 여객 수요 전망 모형 구축 연구	안승현
07	디지털 공급사슬 물류정보통합 구축전략 연구(Ⅲ)	서정용
08	수출용 전복의 유통경로 분석 연구	이정필
09	인공지능기반 해상운임 예측 연구(3차년도)	황수진
10	인공신경망모형을 이용한 양식수산물 단수 전망에 관한 연구 - 김 양식을 중심으로 -	천성훈
11	해양수산분야 미래 리스크 발굴 및 파급효과 분석 연구	박광서

2020년

01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체계화 연구	최일선
02	AIS 기반 글로벌 선박 배기가스 배출량 분석 연구	강무홍
03	김 중기 수급전망모형「Gim-MFoS」구축 연구	허수진
04	중앙 북극 공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 이행방안 연구	김민수
05	동해 평화관광구역 조성 방안 연구	윤인주
06	디지털 공급사슬 물류정보통합 구축전략 연구(Ⅱ) - 일반 수출입 컨테이너 정보교환방식 중심 -	이언경
07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우리나라 해운·조선 기업의 안정성 분석	박성화
08	인공지능기반 해상운임예측 연구	황수진
09	국제물류주선업 실태분석 및 경쟁력 제고 방향 연구	최나영환
10	디지털화에 따른 개별 직업의 대체 가능성 추정 연구	박희대
11	시계열 분석을 통한 해운시장 분석 및 예측 연구	고병욱
12	해양수산분야 글로벌 경제효과 분석모형(KMI-GEM) 시범 구축 연구	임병호
13	해운항만물류 인력양성사업 관리운영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이자연

기본연구 2021-03

여성어업인 노동정책 방향 연구

인 쇄 2021년 12월 29일
발 행 2021년 12월 31일

발 행 인 김 종 덕
발 행 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 소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더크리홍보(02-737-5377)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02-394-0337
정가 15,000원